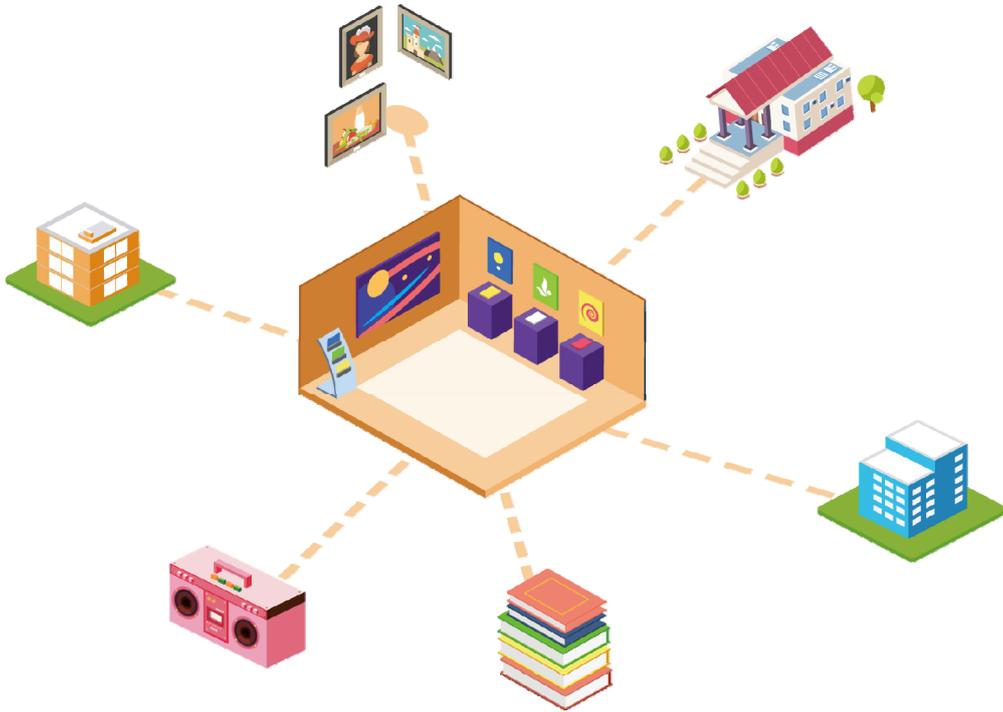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기초연구 보고서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7
1. 연구 범위 .....	7
2. 조사 방법 .....	7

## 제2장.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의 이해

제1절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이해 .....	11
1. 접근성이란? .....	11
2. 접근성 관련 제도 .....	13
제2절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이해 .....	18
1.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념 .....	18
2. 문화시설 접근성의 유형 .....	20

## 제3장.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사례분석

제1절 사례분석 방안 .....	27
제2절 국내사례 .....	29
1. 법령 및 조례 .....	29
2. 정책 및 제도 .....	43
3. 연구 사례 .....	52
4. 실태조사 사례 .....	62
제3절 해외사례 .....	67
1. 유럽연합(이하 EU) .....	67
2. 프랑스 .....	77
3. 영국 .....	85
4. 북미 : 미국 및 캐나다 .....	9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108



## 제4장. 장애인 접근성 요소 도출

제1절 접근성 요소 도출 방안 .....	115
제2절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에 대한 페르소나 분석 .....	117
제3절 문화시설 장애(예술)인 접근성 장애요소 도출 .....	133

## 제5장. 문화시설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	151
제2절 실태조사 주요결과 .....	154
제3절 표적집단 면접조사 결과 .....	170
제4절 소결 .....	184

## 제6장.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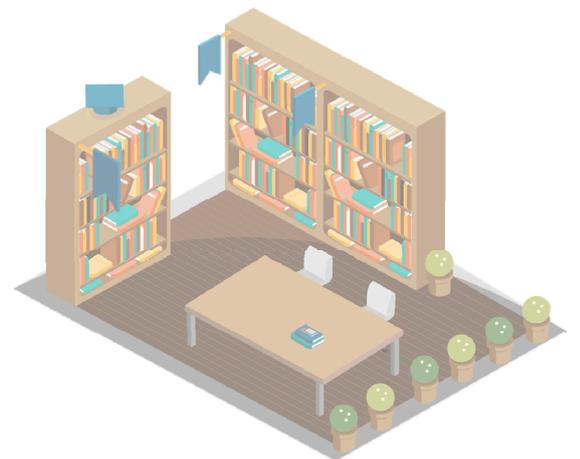
제1절 연구 및 조사의 의의와 한계점 .....	189
제2절 시사점 및 제언 .....	193

## 부록

1. 조사표 · 체크리스트 .....	199
2. 용어정의 .....	223

# 제1장. 서론

-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장애인의 문화시설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성 관련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 필요
  - 장애인 ‘도서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편의시설 실태조사 또는 비장애인을 포괄한 문화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바 있으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점에서 접근성 조사는 없었음
  - 문화시설은 향유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문화예술 창작/실연과 교육을 통한 참여활동 등이 동반되는 장소임
  -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에서 향유, 창작/실연, 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한데, 조사의 내용과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필요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있는 의의를 최대한 파악하여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잘 활용하기 위해 접근성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정한 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의 접근성 관련된 사항은 다양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장애인은 물론 모든 사람이 문화를 창작하고,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법상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등을 파악하고, 목적에 따라 접근성에 대한 사항 정리할 필요가 있음

〈표1-1〉 접근성 관련 주요 법령

구분	조항 내용
문화기본법 제4조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p>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5조</p>	<p>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법률 제8조 제1항에 다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li> <li>2. 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li> <li>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현황</li> <li>4. 장애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현황</li> <li>5. 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li> <li>6.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 실태</li> <li>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p>	<p>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li> <li>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li> <li>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li> <li>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ol>
<p>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p>	<p>제4조(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편의증진법은 그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로 확대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이동과 접근성 보장을 권리로써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p>
<p>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시행령 제3조</p>	<p>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하나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 포함되어있다. 여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을 말한다.</p>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활용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발의 중임

- 문화시설 접근성은 예술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예술인의 창작/실연 관점에서 문화시설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장애예술인의 창작/실연을 위한 접근성에 대한 관점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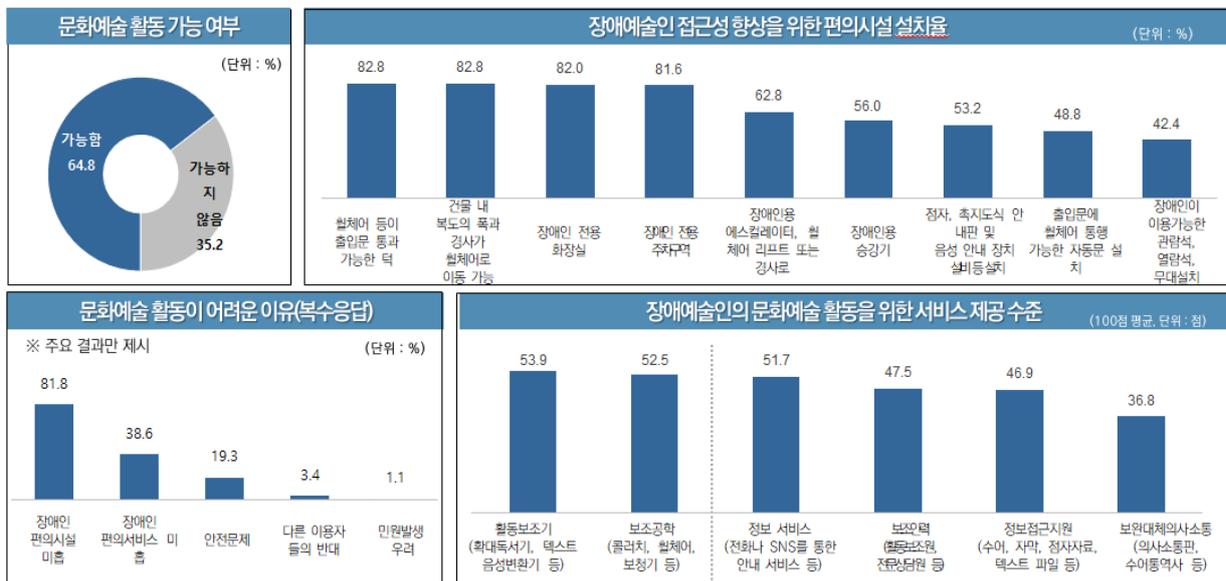
〈표1-2〉 접근권 법률 개정안

구분	조항 내용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p>(신설) 제12조의2(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활용 제고)</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연·전시의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22.11.10.기준)

- 장애예술인들은 문화시설을 잘 활용하여 활동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이용 및 활용이 어렵다고 함
  - 문화시설(250개소) 담당자의 35.2%는 해당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지 않음’으로 나타남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무대설치’(42.4%)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1-1〉 장애예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 출처 :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 2.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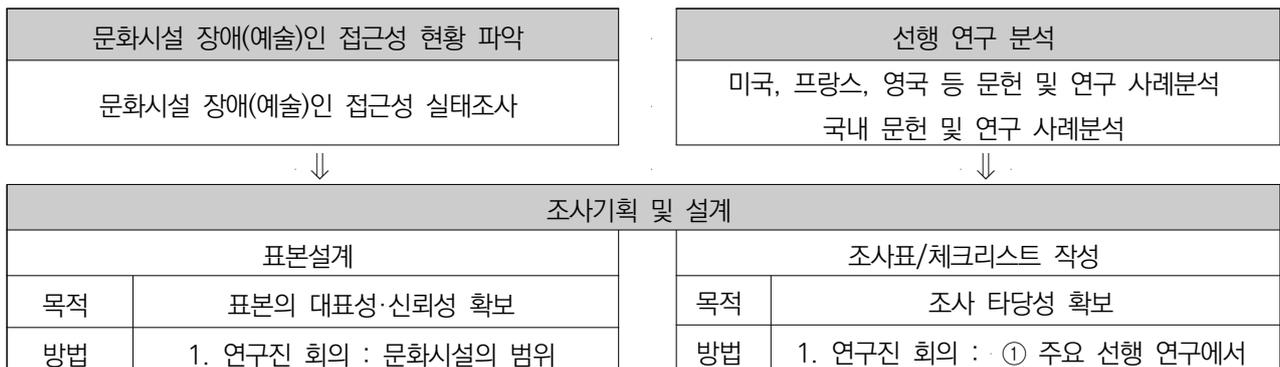
- 장애인의 문화시설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성 관련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 수행
  -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향유/창작/실연/공연/참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하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어떠한 시설 및 필요한 도구가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봄
  -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시설, 실연/공연이 이뤄지는 공연장, 도서관 등에서 관람은 물론 창작의 관점에서도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위한 정책이나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 국내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 및 정리하여 제도적인 부분과 더불어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부분 제시
  - 해외의 선행연구 및 문헌: 법과 제도 등의 취지, 이를 통한 접근성 개선 사례 등을 검토함. 특히, 예술활동 및 향유를 위한 관점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함
  - 국내의 선행연구 및 문헌: 접근성 서비스 분류방안 및 시설 및 서비스 정리
- 자문회의 및 심층면접을 통한 접근성 서비스 구성요소 도출
  - 자문회의: 선행연구 및 문헌 등에서 정리한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을 정립 또는 추가사항 정리
  -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시설에서 문화를 향유, 창작/실연, 참여 활동을 위한 접근성 관련 필요한 서비스 구성 요소 도출
-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정책적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방법론 및 설문지 개발
  -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통한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접근성 서비스 도출을 위한 연구 수행
  - 국내·외 문헌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한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범주 및 개념 정의
  - 문화시설별, 장애유형별로 장애인들이 향유, 창작/실연, 참여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접근성 서비스 구성요소 도출
  - 도출된 서비스 구성요소를 문화시설별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항목과 체크리스트 항목 구성
-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실태조사 수행
  - 문화시설별, 장애유형별로 문화시설에서 향유, 창작/실연, 참여를 위해 필요한 설문문항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방법 설계
  - 문화시설 관계자가 응답하는 설문문항과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보고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로 구분하여 진행
  - 조사의 대표성 확보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표본설계 진행
  - 장애인 대상의 심층면접조사와 장애인과 문화시설 대상의 표적집단면접조사 진행
    - 심층면접조사(IDI: In-Depth Interview): 설문을 작성하기 위해 장애유형인이 실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을 동행하면서 장애인 접근성 점검
    - 표적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실태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장애인 및 문화시설 담당자 심층면접 수행
-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연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2. 조사 방법



설정(공공영역+민간영역) 및 도출 2. 자문회의, 문체부 협의 : 표본 설계 최종 확정	제시되고 있는 접근성 서비스 도출을 통한 조사표 초안 구성 ② 문화시설별, 장애유형별, 향유·창작/실연·참여를 고려하여 설계 2. 자문회의, 문체부 협의 : 설문문항 및 조사방법 설계 확정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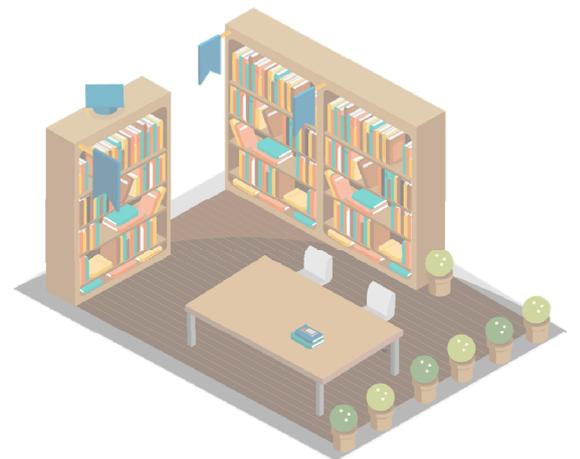
실사 수행		
심층 면접 조사	목적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애로사항과 필요사항 점검
	대상	총 10표본 : 장애유형과 시설 이용 유형(향유, 창작/실연, 참여) 고려
	내용 (안)	문화시설 이용 여정에 따른 장애인의 직접 이용 서비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문화시설 방문-이용-퇴장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 제기 ⇒ 문화시설 접근성을 위한 문항 또는 서비스 요소 도출 ※ 페르소나 분석 방법 적용
표적집단 면접조사	목적	실태조사(정량)에서 파악되지 않은 접근성 필요사항 및 개선방안 마련
	대상	총 20표본 : 장애유형과 시설 이용 유형(향유, 창작/실연, 참여) 고려
	내용 (안)	문화시설 이용현황(방문횟수, 방문 선호 등)과 방문여정에서의 접근성 장애 여부 문화시설 접근성을 위한 개선에 대한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목적	문화시설 장애(예술) 접근성을 위한 실태 파악
	대상	향유(박물관, 미술관) : 598개, 창작/실연(공연시설) : 662개 참여(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 240개
	표본 설계	시설유형을 향유, 창작/실연, 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 국립은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며, 공연시설에서 중앙정부(12개)와 문예회관(260개)은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며, 나머지는 표본추출을 통해 조사
	실사 방법	방문면접조사(대면 설문조사와 문화시설 접근성 체크리스트 병행)
	내용 (안)	문화시설 특수성에 맞는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조사표 구성 - 장애유형, 문화시설 이용 목적(창작/향유/참여), 문화시설 세부유형(공연장, 대기실, 화장실 등) 고려 - 공연장 : 객석, 무대, 야외공연장 등을 고려 - 전시장 : 전시장 및 사전 보관시설 등을 고려 (공통문항) 문화시설에서 공통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문항 - 매개시설(출입구, 주차구역 등), 내부시설(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보조견 화장실 등), 안내시설(안내사인, 유도블록 등)에 대한 접근성 문항



결과분석			
결과분석		정책제안	
목적	결과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목적	장애(예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을 위한 접근성 개선방안 제시
방법	정량·정성 보고서 작성 및 결과 종합·시사점 발굴	방법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현황 제시를 통한 개선방안 제시 창작/실연 등 문화시설을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점진적 개선방안 제시

## 제2장.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의 이해

-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





## 제1절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이해

### 1. 접근성이란?

#### ■ 접근성의 개념

- 접근성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발생 지역으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되고 있음<sup>1)</sup>
  - 국어사전의 추가적인 설명으로,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거리·통행 시간·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접근성이 높을수록 교통량이 많아진다고 되어 있어, 접근성은 거리, 시간의 물리적인 부분과 매력이라는 감각 또는 정서적인 부분을 수용하고 있음
  -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출발해서 위치까지 도달하기 위한 ‘물리적 접근성’을 기본으로 다루고 있어, 이동방식 또는 이동의 편의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또한 ‘매력도 따위’라는 표현을 유추해보면 찾아가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매력, 호감, 필요성 등이 있을 경우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영어에서의 Accessibility는 장소에 국한되어 사용되기보다(어떠한 서비스, 장소, 상태, 환경 등) 접근될 가능성, 방식, 접근이 허용되도록 함을 의미하고 있음<sup>2)</sup>
  -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접근성은 거리와 이동의 물리적 접근성만이 아닌 서비스, 장소, 시설상태, 다양한 환경을 수용하는 의미임
- 접근성은 가고자 하는 곳의 매력(서비스, 환경 등이 주는 호감 등)을 느끼거나 즐기고자 할 때, 이를 이룰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음.
  - 특정한 지역 또는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매력을 알고자할 경우, 장소가 주는 매력의 정보를 알아야 하며, 장소에 접근하여야 하며, 가서 매력을 느끼거나 즐길 수 있어야 함
  - 이때 접근성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불편 없이 가고자 하는 곳의 매력을 느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 즉,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지역, 나이, 지식수준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일하게 매력 등을 느끼고, 이를 즐길 수 있어야 함
-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이나 장소 이외에 산업 디자인, 디자인, 건축, 시스템 공학 등의 분야에서도 사용함
  - 제품을 만들 때도 누구나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만들며, 건축을 설계할 때도 누구나 건축물 안에서 편하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때 접근성을 만족했다고 할 수 있음
- 접근성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상대적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대상들도 동일하게 장소, 제품 등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접근성이 높다는 표현을 함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관점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함

1) 표준국어대사전

2) 김현경(2020),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시설 접근성

- 시설 접근성은 시설에 접근할 때, 누구나 어려움 없이 시설에 도달해서, 시설에 간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 시설접근성은 시설에 접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시설을 가려는 목적 즉,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 누구나 동일하게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시설을 접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설이 세워진 목적에 있음. 전시시설인 경우에는 전시 관람이며, 관광시설인 경우에는 관광, 체육관의 경우에는 스포츠관람 등을 위함.
  - 따라서 이용자가 시설에 접근하려는 이유는 시설을 찾았을 때, 시설을 찾는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함으로써 가치(즐거움, 감동, 학습, 여가 등)를 얻고자 함
- 시설의 접근성은 시설을 찾은 방문객 모두가 찾아온 목적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시설을 찾는 목적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유·무형으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콘텐츠,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데 있으며, 이때 가치는 제공되는 것의 품질에 의해 결정됨
  - 전시시설을 관람하기 위해 박물관을 찾은 방문객을 예로 살펴보면, 방문객이 박물관을 찾는 이유는 본인이 보고 싶은 전시물을 보기 위해서임. 그러나 전시물 관람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시물의 종류, 전시위치, 전시물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홈페이지 등에서의 정보 제공, 교통, 휴게공간, 전시관람을 위한 이동 동선 등 다양한 서비스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
- 시설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용객 또는 방문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서비스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이용객/방문객은 찾아 올 수 있는 모든 대상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함
  - 이용객들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간 또는 이동거리, 비용 등을 고려하게 됨. 즉, 특정시설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 하더라도 거리가 너무 멀거나 또는 교통편이 불편할 경우, 접근성은 떨어질 것이며, 시설을 입장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면 실제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 시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접근성은 더 향상될 것임. 예를 들어 박물관의 경우, ‘어떠한 전시물이 어떤 전시장소에서 전시되고 있는지’, ‘전시물에 대한 해설을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예약을 사전에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 대상들에게는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음
  - 시설에서는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함. 즉, 시설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 안내(안내요원, 홍보물), 서비스시설(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등의 이동시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 매점이나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등) 등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2. 접근성 관련 제도

- 접근성을 위한 지침으로는 크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BF-Barrier Free)) 인증제도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IT 발달에 따른 웹접근성도 고려하여야 함
  - 접근성은 누구나 (가능한) 쉽게 시설에 접근하여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지침들은 접근성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 다양한 표현 방법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여기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제도와 유니버설 디자인 그리고 웹접근성 3가지만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이 중에서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제도와 웹접근성은 법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제도임
- 접근성관련 제도 또는 가이드라인은 현재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정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켰다고 해서, 모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함
  - BF인증 받은 시설이나 웹접근성 인증 받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여전히 (건축물의)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기 쉽지 않다고 함
  - 현재 시점에서 장애인과 같이 접근성이 약한 대상들에게 정보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sup>3)</sup>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춘 신축건물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로,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회의에서 발표된 장벽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에서 시작된 개념임
  - 처음에는 건물의 문턱을 없애는 정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주택이나 도로 등에서의 물리적 장벽 뿐 아니라 자격과 시험 등의 제한하는 제도적 장벽, 매체의 정보전달 장벽,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제거하자는 취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적용대상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제화 되었음
- 법적근거
  - 처음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만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현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도 근거를 둬<sup>4)</sup>

3) <https://junshimjunshim.tistory.com/390> 내용 정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 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배리어프리 인증제도의 평가항목**

- 현재 우리나라의 BF인증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물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외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적용하고 있음
- 인증을 위한 항목은 많지만, 평가항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1-3〉 **배리어프리 인증제도의 주요 평가내용**

구분	주요 시설 및 설비	내용
매개시설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등	건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의 시설들
내부시설	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건물 내부 이동, 피난에 사용되는 공용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등	물을 쓰는 시설
안내시설	안내(안내판, 점자블록, 촉지도 등), 경보(시각경보기, 스피커 등)	건물 내, 외부 안내에 사용되는 시설
기타시설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안내데스크, 매표소, 판매기, 피난구, 휴게시설 등	특정시설

- 배리어프리 인증제도는 현재까지는 건축물과 교통수단 위주로 되어 있음. 즉 물리적 접근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차 문화생활 등을 불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으로 확대되고 있음
  - 현재의 배리어프리는 화장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 설치, 문턱제거, 휠체어가 통행 가능한 복도 폭 확장 등 건축물 접근이나, 이동성 등 물리적 접근성에 맞춰져 있음
  - 그러나 점차 배리어프리의 의미와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이나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또는 노인 등이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이동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 이상의 의미까지로 확대 되고 있음
  - 최근에는 배리어프리 영화, 뮤지컬, 소설 등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4) 법률의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음

##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sup>5)</sup>

###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People)이라고 하며,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과 같은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
- 일회용품부터 주택이나 도로 설계, 다양한 서비스 등의 넓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기본 취지는 모두가 제품이나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는데 있음
- 미국의 건축가인 로널드 메이스가 자신의 철학인 "모든 나이와 능력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ages and abilities)을 나타내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함

### ○ 유니버설 디자인은 7가지 원칙이 있으며 다음과 같음.<sup>6)</sup>

-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equitable use): 누구라도 차별감이나 불안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대표적인 공평한 사용의 예로는 센서로 작동되는 자동문이 있음
- 사용성의 융통성(flexibility in use): 서두르거나, 다양한 생활환경 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모두 이용이 가능한 가위와 같은 것이 융통성 있는 사용을 위한 예라 할 수 있음
-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simple and intuitive): 사용자의 경험, 지식 등과 무관하게 직감적으로 사용방법을 간단히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제품의 설명서는 사용자의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서 이해가 다르면, 제품을 모두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설명되어야 함
-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perceptive information): 정보구조가 간단하고, 복수의 전달 수단을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함
  - 음식점의 무인안내기, 은행의 ATM기를 이용할 때, 글자,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전달 방법을 고려하여 외국인,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오류에 대한 포용력(tolerance for error): 사고를 방지하고 잘못된 명령에도 원래 상태로 쉽게 복귀할 수 있어야 함
  - 실수 등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여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포용력 있게 설계하여야 하는데, 기계가 오작동하거나 컴퓨터에서 잘못 눌렀을 때, 리셋(reset)기능이나 되돌아가기 기능이 이에 해당됨

5) 위키백과 내용 각색 인용

6)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의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에서 제시

- 적은 물리적 노력(low physical effect): 무의미한 반복 동작이나,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런 자세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적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레버식 손잡이처럼 적은 힘으로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것이 예로 들 수 있음
-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이동이나 수납이 용이하고, 다양한 신체조건의 사용자와 도우미가 함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이에 대한 대표적인 공간은 장애인 화장이 있음

○ 유니버설 디자인의 8대 목적

- 몸에 맞게(Body Fit): 사용자의 체구와 장애와 관련하여 넓은 범위에 맞춤
- 편안하게(Comfort): 몸을 움직여 달거나 잘 알아챌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한도 이내를 요구
- 알 수 있게(Awareness): 사용할 때 중요한 정보를 쉽게 알아챌 수 있겠다는 것이 확실하도록 함
- 이해할 수 있게(Understanding): 작동방식이나 사용법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애매하지 않게 함
- 건강에 도움 되게(Wellness): 질병을 피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보건 증진에 기여하게 함
-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Social Integration): 모든 집단에 대해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우
- 각자에 맞게(Personalization): 선택 기회를 주고, 개인 선호를 표현할 수 있게 함
- 문화에 맞게(Cultural Appropriateness):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환경적 맥락을 존중

- 유니버설 디자인의 8대 목적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앞의 4가지는 사람의 활동-즉 인체측정, 생물역학, 지각심리, 인지심리-에 기반하고, 5번째는 인간의 활동과 사회 참여의 결과를 보여주며, 뒤의 3가지는 사회 참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웹접근성

○ 웹접근성(정보통신접근성)이란?

- 비장애인은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활용하여 불편함이 없이 활용 가능하지만, 장애인은 접근성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 특히 기술의 발달로 높은 해상도, 작아지는 버튼, 링크나 마우스나 키보드 등은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이용을 어렵게 하거나 쓸모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웹접근성은 모바일이나 웹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개념임. 즉 웹접근성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물론 어떤 사용자들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임
- W3C에서 만든 웹접근성 이니셔티브(WAI : Web Accessibility Initiative)는 웹접근성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Perceivable), 운영하고(Operable), 이해하고(Understandable),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Robust) 웹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sup>7)</sup>

- 웹접근성은 이용자 관점만이 아닌 제작의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함
- 웹접근성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의무사항임

#### ○ 웹접근성 준수 고려사항

- 웹접근성은 웹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야 함. 즉 웹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 시각 : 실명, 색각 이상, 다양한 형태의 저시력을 포함한 시각 장애
  - 이동성 : 파킨슨병, 근육병, 뇌성마비, 뇌졸중과 같은 조건으로 인한 근육 속도 저하, 근육 제어 손실로 말미암아 손을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상태
  - 청각 : 영상, 음성 콘텐츠에 자막, 원고, 수어 등의 대체수단 부제로 인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
  - 인지 : 문제 해결과 논리 능력, 집중력,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 학습 장애(난독증, 난산증 등)
- 웹접근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위해 추가적인 기술을 넣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광과민성 환자를 위해 1초에 3회 이상 깜박거리지 않도록 하거나, 음성 가이드를 이용하는 대상들에게 BGM을 없애주는 것 등도 웹접근성의 영역에 해당됨. 즉, 웹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추가적인 기술과 이용자가 이해하고 활용이 쉽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모두를 고려하여야 함
- 웹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는 다양하게 있지만, 이중에서 웹브라우저에 쓰이는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
  - 화면 확대 도구
  - 음성 인식
  - 키보드 오버레이

#### ○ 웹접근성 관련 법

- 웹접근성 관련된 법으로는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이 있음<sup>8)</sup>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34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 1

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0340&cid=59088&categoryId=59096>

8) 법의 주요한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음

## 제2절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이해

### 1.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념

- 여기서는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화 시설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각각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함
-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화시설의 범위와 장애인의 유형 분류를 살펴본 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함

#### ■ 문화시설

-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공연, 전시, 문화보급, 문화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함<sup>9)</sup>
- 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시설이 해당됨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 본 연구에서의 연구범위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장,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함
- 본 연구에서의 문화시설은 문화(예술)향유, 창작활동(작품전시, 공연, 실연 등),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참여활동<sup>10)</sup>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함

#### ■ 장애인

- 장애인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구분됨. 신체적 장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구분됨

9) 출처 : 토지이용 용어사전

10) 참여활동은 전문예술인은 아니지만, 교육 프로그램이나 동호회 등에서 직접 예술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

-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15개의 장애유형을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에 따라서 문화시설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각각 다른데, 이를 구분할 때 이동, 콘텐츠 이용방법 또는 필요한 서비스 등을 고려하였음
  - 문화시설 접근성을 위해 구분한 5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 정신장애
    - 그 외 장애

###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은 모든 장애(예술)인이 문화시설에 방문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 또는 예술의 향유는 물론, 장애예술인이 문화시설에서 창작활동 등을 통해 예술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또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통하여 문화(예술)향유를 하도록 하는 것과, 장애예술인들이 예술 창작활동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성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함
  - 장애인 접근성은 시설의 정보획득 용이성, 이동접근성, 정서적 환경, 비용 등의 다양한 부분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어려움이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
-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은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은 장애인을 특별하게 고려한다는 의미가 아닌,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를 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분야의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접근성이 충족된다면 다른 대상들도 문화시설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임
  - 모든 장애인들이 문화시설 접근성이 충족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문화시설에 와서 향유, 창작활동, 교육이나 참여활동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접근성을 고려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2. 문화시설 접근성의 유형

- 접근성의 개념은 장애나 나이와 관계없이 시설이나 장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활용 또는 즐길 수 있는 것인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의 장애요소를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성요소(장비, 도구, 서비스 등)를 파악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함
  -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지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 장애요소를 진단하고, 세부요소를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절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접근성 장애유형을 제시하고 의미를 살펴보도록 함
  - 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장애요소 유형을 얘기할 때, 대분류차원에서 물리적 접근성, 감각적 접근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시설 접근성 유형을 제시하고자 함
  - 이번 절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유형을 살펴보고 각각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후 IV장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접근성 장애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요소들을 제시한 후, 의미를 살펴보도록 함
- 문화시설 접근성이 충족되었다는 의미는, 문화시설을 찾는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나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시설 접근성은 크게 3단계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 찾아가는 과정, 문화시설에 가서 목적에 맞도록 활동하는 과정에서의 접근성임
  - 문화시설 접근성은 시설을 도착하는 관점이 아닌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유, 창작, 경험 등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이용자들에게 만족되어야 함
  - 개개인의 이용자들이 문화시설에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언제 어떻게 제공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파악하여야 문화시설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임. 최근에는 대부분 문화시설의 홈페이지 등 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경향이 많음
  - 웹에서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하는 방법(예 매방법 등)을 검색하고 찾아가는 방법 등을 파악함
  - 다음으로는 찾아가는 과정인데, 대중교통, 자가용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중교통의 경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어디서 내려서 찾아가면 되는지를 알아야 하며, 자가용의 경우 시설에 주차 등이 가능한지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찾아간다면, 대중교통에서 내려 찾아가는 입구까지 가는 이동동선 등이 어려움이 없는지, 찾기 편하게 안내가 잘되어 있는지 등이 고려사항이 될 것임
  - 문화시설에 들어가면 목적에 맞도록 관람, 작품전시, 공연, 참여활동 등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충족되어야 함

- 관람, 작품전시, 공연, 참여활동 등을 할 때 비장애인의 경우 보조도구가 필요 없겠지만,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장애에 맞는 보조도구가 필요함
- 문화시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 휴게공간, 매점이나 음식점 등의 공간 필요함
- 이외에도 이용객들의 편의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이벤트, 멤버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문화시설에 따라 접근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나 환경이 필요함

### ■ 문화시설 접근성 장애유형

- 접근성에 대한 장애유형은 많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접근성의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명 등을 제시한 연구는 별로 없음,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 연구에서 제시된 접근성 유형을 살펴 보도록 함
  - 여기서 제시한 접근성 유형의 설명을 위해 사용한 연구는 다음과 같음
    - 김현경(2020)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 남소영 외 7인(2021),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
- 먼저 김현경(2020)의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영국의 박물관·도서관 및 아카이브 협의회에서 2000년 발간한 「re:source-Disability Directory for Museum and Galleries」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접근 방해 요소를 인용하여 제시하였음
  - 접근성 장애유형이라고 제시한 이유는 장애유형이 해소되어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불편을 가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문화시설 접근성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임
  - 제시하고 있는 접근성 장애유형은 다음과 같음

〈표1-4〉 접근성의 장애유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방문객 개발 관점 적용

구분	고려사항	방문객 개발의 관점 적용 예
물리적 접근 (Physical access)	• 시설 환경이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가?	• 주차장, 유도블록, 조명 추가 설치, 핸드레일, 장애인용 의자, 엘리베이터 등
감각적 접근 (Sensory access)	• 전시와 이벤트 프로그램, 편의시설을 시각 또는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 만져서 이용 가능한 도구의 제공 • 다양한 방식(자막이 있는, 시각적 설명이 있는 등)이 적용된 전시설명 도구 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증폭 시스템 제공
지적 접근 (intellectual access)	• 배경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 • 습득능력 장애(learning disabilities)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전시 구성단계 있어 새로운 관람객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것 • 전시를 기획 단계에서, 다양한 관람객의 수준별 이해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움

구분	고려사항	방문객 개발의 관점 적용 예
경제적 접근 (Financial ac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장료가 수입이 낮은 사람들의 방문을 어렵게 하는가?</li> <li>샵과 카페에서 판매되는 아이템들이 가족들이 소비할만한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한 날 등에 대한 무료입장을 제공하고 이러한 적용을 널리 알리는 것</li> <li>박물관을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와 연결하는 것</li> <li>방문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li> </ul>
정서적/태도적 접근 (Emotional/attitudinal ac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기관은 새로운 방문자를 환대하는 환경인가?</li> <li>우리 직원은 다양한 관람객 (diversity)에 대한 열린 태도로 임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원 교육</li> <li>새로운 방문객들에게 기관의 환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등 개최</li> </ul>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Access to decision-m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기관은 새로운 관람자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서 외부 관계자들에게 컨설팅을 받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람객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li> <li>자문위원단 구성</li> </ul>
정보에 대한 접근 (Access to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에 대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새로운 관람객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닿아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롭고, 접근 가능한 마케팅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개발</li> <li>홍보물을 생산할 때, 다양한 언어로 제공</li> <li>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홍보물</li> </ul>
문화적 접근 (cultural ac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컬렉션과 전시디스플레이, 다양한 행사가 우리의 타겟 고객인 관람자의 삶과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수집 정책의 수립</li> <li>적정한 해석이 담겨진 전시디스플레이 재배치</li> </ul>

-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근성 장애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물리적 접근은 대부분 이동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음. 시설 이용을 위해 접근하는 과정과 시설에 와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 또는 도구를 설치 또는 제공하는 것과 이동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조명이나 단차와 같은 방해물을 없애는 것도 여기에 해당됨
- 감각적 접근은 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시각과 청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이용하여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전시와 공연을 관람하거나 창작활동을 하도록 장치와 도구 등의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됨
- 지적 접근은 주로 습득능력이 떨어지는 대상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글을 모르거나, 글을 읽기가 어려운 사람 또는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들 확대포함 할 수 있음. 따라서 글이나 어려운 표현이 아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색깔, 기호, 애니메이션 등을 이용하여 안내 등의 서비스를 의미
- 경제적 접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인데, 장애인의 관점에서는 혼자 오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올 때 도와주는 사람의 매표도 같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고려됨. 이 경우에는 무료입장이나 할인해주는 제도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통편의 제공 등도 이에 해당되며, 다른 단체들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활동도 여기에 해당됨
- 정서적/태도적 접근은 문화시설에 오는 이용자들이 시설에 들어왔을 때 또는 이용하면서 갖게 되는 느낌에 대한 부분인데, 시설의 분위기, 직원들의 응대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시설에서는 직원들에게 장애인 응대교육 또는 인식교육 등을 하고, 시설의 분위기를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이 여기에 해당됨

-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은 새로운 관람객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의 가치를 실현 또는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부분인데, 이를 위해 컨설팅 또는 자문위원 운영 등을 통하여 기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정책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나 프로그램 등의 방향성 결정이 포함됨
  - 정보에 대한 접근은 문화시설의 정보를 이용객들에게 알리는 부분인데,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은 물론, 시설의 정책이나 환경의 변화 등을 다양하면서도 쉽게 알리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됨. 이를 위해서 홍보물, 홈페이지 등을 다양한 언어, 쉬운 표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함
  - 문화적 접근은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인데, 고객들이 관심을 갖는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전시물 수집, 전시물들의 배치 등이 여기에 해당됨.
- 공연시설의 관점에서 접근성 유형은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sup>11)</sup>
- 여기서는 공연예술을 보러오는 관람자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을 하는 장애인들까지를 고려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시설을 설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장애예술 공연장 설립을 위해 고려사항으로는 정책·제도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콘텐츠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을 제시하고 있음
  - 정책·제도적 접근성은 예술공간을 조성할 때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거나 마련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적절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예술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매우 유리할 것임
  - 물리적 접근성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연시설에 접근과 시설 내에서 이동하기 위해 고려되는 장치나 도구를 설치 또는 배치하여 서비스하여 시설에서 움직이고 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을 의미
  - 콘텐츠적 접근성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용자들이 공연장을 찾는 주된 이유에 해당되며,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도구를 마련하여 콘텐츠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음
  - 심리적 접근성은 시설에서 주는 정서적/태도적인 부분과 연계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체적·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이나 시설의 직원들의 태도나 서비스 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11) 남소영 외 7인(2021),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의 내용을 각색 정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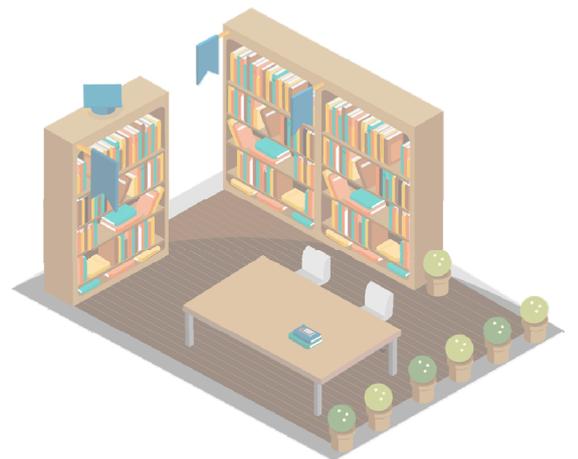
## ■ 접근성을 위한 운영 요소

- 문화시설의 접근성 장애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접근성 장애요소들이 생기는 원인이면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접근성을 위한 운영 요소인데, 이는 시설(건축물과 공간), 온라인 공간, 인력, 콘텐츠, 이용객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12)</sup>(김현경, 2020)
  - 시설은 이용객들이 방문하여 문화(예술) 향유, 창작, 경험 등이 이뤄지는 장소이며, 접근성 관련된 나머지 요소들을 설치 또는 배치, 홍보, 서비스가 이뤄지는 공간이 됨. 시설은 찾아오기 쉬우며, 찾아와서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도록 하여야 함
  - 온라인 공간은 대부분 웹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누구나 쉽게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설명, 시설 이용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웹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함
  - 인력은 이용객들의 어려움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부분이며, 방문객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물론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콘텐츠는 문화시설별로 구분하면 전시물, 공연내용, 도서물 등에 해당되며 이용객들이 문화시설을 찾는 주된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이용객은 시설이 존재하는 이유라 할 수 있는데, 문화시설은 이용객들이 찾아오도록 설계된 곳이기에 때문에, 관람객들이 찾아와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12) 김현경(2020)의 내용을 문화시설 전체로 재해석하였음

# 제3장.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사례분석

-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





## 제1절 사례분석 방안

- 3장에서는 접근성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해 접근성에 대한 환경을 살펴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에서 한 정책이나 연구 등에서 제안하거나 고려할 사항 등을 살펴보기로 함
- 사례분석 구성은 크게 국내사례와 해외사례로 구분하여, 국내사례는 법령 및 조례, 정책 및 제도, 연구사례, 접근성 관련 실태조사사례로 구분되어 분석하며, 해외사례는 국가별로 법제도 및 정책, 추진하여왔던 주요 연구 및 사업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국내사례는 크게 법령, 조례, 정책과 제도 파트와 연구와 실태조사 파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법령 부분은 장애인 관련 법령과 문화예술 관련 법령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장애인 관련 법령은 문화예술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률 위주로 살펴보았으며, 문화예술 관련 법령은 장애인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령 위주로 살펴보았음
  - 또한 장애인 인권현장과 문화현장을 살펴보고, 본 연구와 관련된 문화생활 또는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제시된 부분을 살펴봄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례와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도록 함
  - 정책 및 제도에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등과 지난정부와 현 정부에서의 장애인 관련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된 국정과제를 살펴보았음
  - 국내 연구사례분석은 문화시설 또는 편의시설에서의 장애인 전체의 접근성 관련된 연구와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함
  - 실태조사는 실제로 장애인 접근성 관련된 조사를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5년마다 진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통계조사의 조사진행 방안과 설문지 내용검토, 조사결과 등을 살펴보도록 함
- 해외사례는 EU, 프랑스, 영국, 북미(미국, 캐나다)로 구분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하였음
  - EU에서 법제도 및 정책에서는 장애인 접근 관련 내용과 주요 제도 및 정책 추진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고, 법제도에 기반을 둔 문화활동 및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된 일부 연구 및 사업을 제시함
  - 프랑스, 영국과 북미도 EU와 비슷한 관점에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가별 특성에 따라서 제도나 연구 및 사업에서 차이가 있도록 작성하도록 함
  - 영국의 경우는 2010년에 제정된 평등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며, 평등법에 근거한 다른 법령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였고, 무엇보다도 시설과 관련된 건축물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제시

하도록 함.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과 비슷하면서도 더 포괄적인 포용적 디자인 설계(Inclusive Design)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개념을 정리하도록 함

- 미국과 캐나다는 비슷한 제도와 환경이기 때문에 복미로 하여 같이 정리하였지만, 각각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과 캐나다의 내용을 구분하여 각각 수행했던 사업과 연구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해외사례의 경우 연구와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현실적으로 활용된 사례를 일부 같이 제시함으로써 보다 이해와 적용을 위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많은 예시들 중에서 주요한 것을 미리 제시하면 다음의 것들이 있음
- EU의 ‘읽기 쉬운 문서(Easy-to-read) 사업(2010) 정책’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문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사업
- 프랑스의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라인 시리즈 발간(2007~)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일련의 현장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분야별로 발간한 사례이며 이외에도 ‘모두를 위한 유산’ 상 등도 제시하였음
- 영국의 경우 역사적 건물에 대한 쉬운 접근개선 가이드 같은 경우는 역사의 유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을 통해 역사적 건물을 찾는 장애인들의 움직임을 어렵지 않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미국의 Theater Access NYC는 현재 브로드웨이 쇼에 대한 접근성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웹사이트인데,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연예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접근성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캐나다의 NNELS(National Network for Equitable Library Service)는 캐나다 공공 도서관이 소유하고 유지하는 콘텐츠 저장 및 서비스 네트워크로 인쇄장애(지각장애)가 있는 캐나다 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책 사본을 만드는 일을 함

## 제2절 국내사례

### 1. 법령 및 조례

#### 가. 주요 법령

- 장애인 관련 법률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률은 5개로 ① 장애인복지법,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③ 장애아동복지지원법, ④ 발달장애인법, ⑤ 장애인등편의법이 있음
  - 그 중 <장애인복지법>(1989년 제정, 심신장애자복지법 대체)은 문화생활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2007년 제정, 2008년 시행)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없게 하였으며, 장애인의 문화생활,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및 문화환경 정비 등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 특히, <장애인복지법>(1989) 제3조에 문화가 포함되고, 2001년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문화관련 내용, 곧 문화참여 권리(2조 2항), 문화차별 금지(8조 1항), 전문인력(71조)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 정책에서 문화시설 접근성은 주된 정책대상은 아니었음
- 문화예술 관련 법률 가운데 장애인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률은 5개로 ① 문화기본법, ② 문화예술진흥법, ③ 도서관법, ④ 박물관미술관법, ⑤ 공연법이 있음
  - <문화기본법>(2013년 제정, 2014년 시행) 제정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으로서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당사자가 장애 예술인(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아닌 비예술 장애인(예술 창작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이었음
  - <문화예술진흥법>(1972년 제정, 1972년 시행)은 개정(2008)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의 지원(제15조의 2)'이 포함됐으나, 문화예술정책에서 주된 내용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이었음
  - <도서관법>(1994년 제정, 시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대체), <박물관미술관법>(1991년 제정, 1992년 시행), <공연법>(1961년 제정, 1962년 시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일반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를 정하면서, 편의시설 제공을 명시하고 있음
-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2020년 제정, 2021년 시행)의 시행 전까지 장애인과 문화시설 접근성에 관한 법률은 대체로 장애인의 문화향유에 대한 차별금지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음. 그러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비예술 장애인이 아닌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었음

- 이를 근거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정책이 보다 다원화되고 구체화되어가고 있음. 특히,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과 관련하여 기존 장애인 관련 법률과 같이 단순히 이동이나 감각적인 부분의 장애로 인한 문화 향유의 약자의 관점이 아닌 창작 및 실연을 하는 장애인이 주요 정책대상이 되는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었음

**나. 세부 법령**

**■ 문화기본법**

- <문화기본법>(2013.12.30. 제정)은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음
- <문화기본법> 제1조에서는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였음. 제2조는 문화가 국민의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문화의 가치 확산 및 문화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였음
- <문화기본법> 제4조는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문화권을 누릴 권리를 명시하였음. 제5조는 문화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였음. 제7조는 차별 없는 문화복지 증진을 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였음. 마지막으로 제8조 6의2와 7은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음

**<표1-5> 문화기본법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5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분	조항 내용
제7조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제8조 6의2, 7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22.11.10.기준)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1981.6.5. 제정)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음
- <장애인복지법> 제4조 2항과 제8조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권리, 사회활동 참여 시 차별금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28조, 제40조의 경우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하여 공공시설과 교통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보조견 출입 허가를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표1-6> 장애인복지법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4조 2항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22.11.10.기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2014.5.20. 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받을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음. 특히, 이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등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영역의 구체적인 차별행위 및 금지에 대해 명시하였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를 명시하였음. 또한,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를 명시하였음

<표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24조	제24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5조	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22.11.10.기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 <발달장애인법>(2014.5.20. 제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자기결정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범죄 방지, 보호조치 등 보호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음. 더불어 발달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표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27조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22.11.10.기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약칭: 장애아동복지법)

- <장애아동복지법>은 장애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장애아동의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음
- <장애아동복지법> 제4조 5항에는 장애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 기회 제공 등 장애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제26조에서는 문화·예술 등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복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표1-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4조 5항	제4조(장애아동의 권리) ⑤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26조	제26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22.11.10.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장애인등편의법>(1997.4.10. 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4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평등한 접근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제3조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의 최단거리 이동을 지원하여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제16조, 제16조2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편의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명시하였음
  - 시행령 제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의 자세한 규모와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표1-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들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22.11.10.기준)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 <장애예술인지원법>(2020.6.9. 제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를 비롯한 제반 문화예술 활동(지원)이 예술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명시되었음
- 제6조, 제9조, 제10조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제6조 2항 5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대한 사항을 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음. 더불어 제12조 2항 및 시행령 제6조를 통해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표1-1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시행 2023. 3. 28.]

구분	조항 내용
제5조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구분	조항 내용
시행령 제6조	<p>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p> <p>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장애예술인이 문화 예술 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 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p> <p>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22.11.10.기준)

■ 도서관법

- <도서관법>(1994.3.24. 제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함
- 제5조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제7조는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제24조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2항 4는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음

<표1-12> 도서관법 관련 내용[시행 2022. 12. 8.]

구분	조항 내용
제5조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제6조	<p>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구분	조항 내용
제7조	<p>제7조(도서관의 책무)</p> <p>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p> <p>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제24조	<p>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p> <p>①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p> <p>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li> <li>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li> <li>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작·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li> <li>4.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li> <li>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li> <li>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li> <li>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li> <li>8.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li> <li>9.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li> <li>10.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li> <li>11.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li> <li>12.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li> </ol> <p>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22.11.10.기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약칭: 박물관미술관법)

- <박물관미술관법>(1991.11.30. 제정)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제9조의3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표1-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9조의3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22.11.10.기준)

■ 공연법

- <공연법>(1961.12.30. 제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제3조에 공연예술인의 정의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하였으며, 제11조의5의 경우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킬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표1-14> 공연법 관련 내용[시행 2023. 5. 4.]

구분	조항 내용
제1장 제3조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의5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22.11.10.기준)

## ■ 장애인 인권현장

- 장애인 인권현장 제1조, 제7조는 장애를 이유로 사회활동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문화, 예술 등에 참여할 권리 역시 강조하고 있음
  - 제1조는 장애인이 장애유형에 따른 이동과 시설이용에 있어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어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음

〈표1-15〉 장애인 인권현장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1조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출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0)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 ■ 문화 현장

- 문화 현장은 문화적 권리를 시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모든 시민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고 참여하며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5조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12조는 문화권리의 보장과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음

〈표1-16〉 문화 현장 관련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5조	5.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여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혼혈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외국인, 이주민, 이주노동자도 이 땅 어디에서나 시민과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성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언어적, 종교적, 민족적, 소수자와 소수집단은 자기 고유의 문화유산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순응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12조	12. (국가의 책무) (가) 문화권리 보장의 책무 - 국가는 이 현장에 천명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의 문화기반시설을 부단히 확충하고 봉사체제를 강화하며,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생활환경과 활동공간을 개선하고 법률과 제도에도 늘 문화의 관점을 도입한다. (나) 문화 활동 지원의 책무 - 시민의 문화적 능력은 그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능력의 기초이며 행복의 기반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 개개인과 민간단체들이 전개하고 자 하는 교육, 능력개발, 창작 기타의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다.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 문화현장 제정 의의

다. 조례

■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조례

- 전체 7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음(2023.1.10.기준)<sup>13)</sup>.
  - 17개 광역시도의 경우 모두 장애인 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음. 한편, 경기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모두 지정하였음. 그러나 장애인 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대한 조항을 명시한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6곳으로 나타남

〈표1-17〉 광역자치단체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조례

조례	조례를 제정한 시도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조항 포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6개 시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15개 시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출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1.9. 기준)

- 그 외 53개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 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음. 한편, 전라북도 전주시는 시군구 중 유일하게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모두 지정하였음. 그러나 장애인 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대한 조항을 명시한 곳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수원시, 광주광역시 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여수시 5곳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표1-18〉 주요 기초자치단체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조례

조례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 조항 포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7개 시군구)	경기도 군포시,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기도 군포시,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라남도 여수시
장애인 문화예술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가평군,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13)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장애예술인'으로 검색한 결과를 가나다순으로 정렬한 순임(2023.1.10.기준)

<p>활동 지원 조례 (46개 시군구)</p>	<p>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북도 상주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중구,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아산시</p>	<p>경기 군포시, 경기 수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라남도 여수시</p> <p>[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p> <p>강원 속초시, 경기 가평군, 경기 성남시, 경기 양주시, 경기 용인시, 광주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남 목포시, 전북 익산시, 전북 전주시, 전북 정읍시</p> <p>[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p> <p>경기 가평군, 경기 성남시, 경기 양주시, 경기 용인시</p>
<p>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조례</p>	<p>경상남도 거제시</p>	<p>[장애인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p>

출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1.9. 기준)

- 7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음. 그 중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10곳이었으며, 나머지는 63곳은 기초자치단체임
-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최적관람석의 설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장애인등의 보호자 관람석, 이동편의시설 확충, 재정지원,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안양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좌석선택권의 보장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15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통로 및 리프트 설치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장애인에게 최적관람석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홍보시책 등을 강구할 것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은 물론 장애인 보조인의 관람석 위치에 대한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와 경기도 성남시는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외에도 별도의 시행규칙이 제정하여 최적관람석의 위치 선정 등 장애인관람석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표1-19〉 지방자치단체 공연장,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시도	시군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8개 시도, 51개 시군구)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통영시,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전라남도 목포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제천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2개 시도, 9개 시군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안산시, 경상북도 포항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출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1.9. 기준)

-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그 중 광역 자치단체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총 4개 시도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안양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총 9개 시군구임

〈표1-20〉 지방자치단체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시도	시군구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 조례 (2개 시도, 4개 시군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울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2개 시도, 5개 시군구)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도 안양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1.9. 기준)

## 2. 정책 및 제도

### 가. 정책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1차, 2022~2026년)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은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5대 추진전략,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추진전략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에는 정책과제 3-1. 문화시설 및 공간 접근성 강화와 정책과제 3-2. 장애예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대국민 인식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 (맞춤형 시설·공간)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 조성, 대학로 ‘이음센터’ 개선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이음 역할 강화, 공연장 및 전시장에서의 장애유형별 보조 장비 및 편의서비스 제공 지원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함. 한편,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 조성 추진(‘23년 개관 예정)되고 있음
    - (문화시설 접근성 매뉴얼/자유지구) 본 연구 및 실태조사의 기반이 된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및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애유형별 매뉴얼 제작·보급, 문화시설 종사자 대상 무장애 공연장·전시장 운영 매뉴얼 개발 및 교육, 무장애 우수시설 및 지역 ‘장애예술자유지구’ 인증하고 등 공공인프라 개선 지원하는 추진과제를 제시함
    - (국공립 문화시설) 국립 문화시설 및 시·도별 거점 문화시설의 시설·콘텐츠·정보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지원, 국공립 공연장·전시장부터 장애예술인 창작물 공연·전시의 정기적 실시 도입하는 추진과제를 제시함
    - (문화시설 정보접근성) 온라인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자막·수어·음성 해설 지원 사업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 〈표1-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1차, 2022~2026년) 중점 추진과제3

중점 추진과제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3-1. 문화시설 및 공간 접근성 강화	장애예술인 맞춤형 시설·공간 조성	표준 공연장 조성
			이음센터 개선
		문화시설 접근성 매뉴얼 제작·보급 및 자유지구 운영	맞춤형 장비 지원
			접근성 매뉴얼 제작·보급
	3-2. 장애예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대국민 인식개선	국공립 문화시설 개선 사업 추진	문화시설 종사자 교육
			장애예술자유지구 인증
		장애예술인 서비스 및 문화시설 정보접근성 환경 구축	국공립 문화시설 개선
			장애예술인 공연 및 작품 전시 의무화
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및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및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 접근성 제고	
		장애인문화예술정보시스템 개선	
		장애예술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연구자 재구성

## ■ 장애인정책종합계획(1차~5차)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관계부처의 협동으로 계획을 수립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3차 계획부터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정책목표의 하나로 제시함. 1차부터 5차 계획에 나타난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은 ‘여가·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 향수권 확대 및 문화공간의 확충’이 포함됨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은 ‘장애인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권장’으로 문화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를 장애인 시설에서 개최하는 계획이 제시됨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은 문화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업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함.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과제를 제시하였음
    - 세부 추진과제로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시각장애인 용 원문정보 DB 구축 등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은 문화접근성 제고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향유권 신장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 확대하는 것과 지원 전후 만족도조사 실시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화면해설 작업 및 장애인을 위한 영화 상영 지속 확대에 대한 계획과 함께, 상영관의 장애인 영화관람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관람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장애인 영화제 개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은 제4차의 문화향수, 영화관람 접근성 등은 이전 사업을 계승하면서 세부 추진과제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를 담고 있음. 이는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관객, 장애예술인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장애예술인의 정책대상으로 포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관객 및 장애예술인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 마련, 지역의 기존 문화시설·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한 생활문화센터 등에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영화관람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보조기기(화면·음성 해설)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관람을 할 수 있는 폐쇄 상영시스템의 시범운영 및 확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1-22〉 장애인 종합발전계획(1차~5차) 내 문화예술 분야

차수	과제	세부 추진과제
1차	여가문화환경 조성	문화 향수권 확대 및 문화공간의 확충
		문예프로그램 개발·보급
		예능교육 강화
		문예활동 지원
2차	장애인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문화시설별 문화교육강좌 운영 확대
		장애청소년을 위한 문화현장체험활동 지원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권장
3차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확대	문화바우처 사업 및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전국 장애인 e스포츠대회 개최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대체자료 제작·보급을 통해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표준수화, 한국점자규정 보급으로 특수언어 표준화
4차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대
		장애인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 강화
5차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기회확대보장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장애인 영화 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권 증진

출처: 조현성(2020),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재인용

〈표1-23〉 제5차 장애인 종합발전계획 내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 내용

과제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관광·여가 향수 기회 보장	1.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현실화
		발달장애인(만9세~24세)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장애예술인 공연·전시·영상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접근성 제고	장애인예술 전용 극장 마련 추진
		기존 문화시설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생활문화센터에 장애인 편의 시설 권고
	3. 장애인 영화 관람 접근권 지원 강화	영화관 폐쇄 상영시스템* 시범운영 및 확대 추진
		자막·화면해설 등 영화 제작 편수 및 상영관 지속 확대
		배리어프리 온라인 VOD 서비스 제공 확대
		장애인 영화관람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4. 장애인 관광·여가 향수권 증진	열린 관광지 조성 확대
		청각, 지적, 맹아, 농아 등 특수학교 청소년 체험여행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2018),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연구진 재구성

■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3차, 4차)

- <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중 제3차는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사업으로 제시하였으나, 제4차는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한 연구를 통한 문화공연장 접근권 향상,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 지원, 전국관광지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과 관련된 추진사업을 제시함
  -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10~2014)은 사립 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15~2019)은 3차 계획에서 나아가 문화시설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민간 문화시설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 개발과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한 연구를 통한 문화공연장 등의 접근권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추진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 (매뉴얼 개발) 편의시설의 설치와 시설이용 상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문화시설 관련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개발 및 사립 문화시설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연구 및 예산 지원)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한 연구를 통해 문화공연장 등의 접근권 향상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을 산출하고 수직이동을 위한 비용을 추산하여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해당 소요 비용을 편의시설 확충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사항을 제시함
    - (대체자료/독서보조기기)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악보, 화면해설영상자료, 수화영상도서, 자막영상자료 등 대체자료 제작 및 수집,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공중이용보청기, 높낮이조절책상, 촉지도 등 독서보조기기 지원
    - (영화관람 환경 개선)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영화 자막·화면해설 제작 및 상영관 상영, 장애인영화제 지원,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실태조사를 추진사업으로 제시함
    - (실태조사) 매년 시·도 공모 및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미술관, 박물관 등에 점자블록,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보수 및 설치, 문화정보에 대한 음성, 수화안내 제공 필요(문체부와협의)
    - (열린 관광지 공모 사업) 장애인, 노인 등의 관광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관광지(지자체 및 민간운영)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사업으로 제시함

<표1-24>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15-2019) 중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 내용

중점 추진과제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공공 및 민간시설의 이용편의 수준 향상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확대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신축하는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주거·교육·작업·문화·교통의 편의 증진	1-5. 문화시설의 편의증진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수집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 개선 지원
			사립 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
		열린 관광지 공모 사업	

출처: 보건복지부(2015),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15-2019). 연구진 재구성

## ■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를 근거로 수립된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중 전략과제2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의 정책과제로 전국적인 박물관·미술관 문화향유 기반 구축과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 박물관·미술관 고객관리 선진화를 포함하고 있음
- 그 중 ①전국적인 박물관·미술관 문화향유 기반 구축은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박물관·미술관 조성으로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②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은 다양한 계층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 ③박물관·미술관 고객관리 선진화는 이용자 맞춤형 관람환경 조성 및 잠재적 수요층 발굴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BF 인증 취득)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지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여부를 포함하여 인증을 촉진하며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하도록 함
  - (취약점 발굴)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이용 취약점 발굴하는 과제를 제시함. 특히, 장애인 등이 이용 편리한 저상셔틀버스 도입 등 국립 박물관·미술관 주변 각종 교통시설 현황 재검토 및 개선책 마련하고자 함
  - (가이드라인)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설·공간, 각종 전시 기법 및 서비스, 동선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 접근성 강화 가이드라인 수립하고 공·사립·대학관에 배포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미술관 역할 확대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연계 인문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인류문화유산을 활용한 인문학 체험 및 학습기회 제공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 (맞춤형 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상설·정기 전시,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장애인들의 상시적인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 및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지표에 문화향유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적극도 반영, 관련 프로그램 확충 유도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 ‘(가칭)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변 박물관·미술관 전시·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이용 편의 제고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표1-25〉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중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 내용

전략과제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2.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2-2.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촉진	평가인증지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포함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박물관·미술관 장애인이용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이용 취약점 발굴 국립 박물관·미술관 주변 각종 교통시설 현황 재검토 및 개선책 마련 장애인 접근성 강화 가이드라인 수립, 공·사립·대학관 배포
		모두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확대	생애주기별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설계 문화향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심화, 지속 운영 ‘(가칭)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개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연구진 재구성

## ■ 기타 기본계획

- 문화예술정책 기본계획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은 많지 않으며, 몇몇 계획에서도 장애예술인의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가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문학진흥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문학진흥기본계획’ 중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18~2022)(2017. 12)에는 과제 2-1. 문학향유 및 접근 기회 확대 내 ‘문학향유 디지털 접근성 확대 시스템 구축’에 ‘장애인 문학 접근권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소설 점자책과 오디오북 제작 및 배포, 지적·지체장애인을 위한 사·소설 보급 등’이 포함됨
  - <문화예술진흥법> 제2차 문학진흥기본계획: 사람이 있는 문화, 사람이 만드는 문화 2020~2022 (문화체육관광부, 2020)에서는 장애예술인이 아니라 장애인 문화활동 및 복지강화가 추진사업으로 검토되었으며, 장애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이 주요 추진사업으로 제시됨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2024>에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 점자 안내문, 터치형 작품 개발, 수화안내서비스)이 추진사업으로 제시됨
  -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제3차 독서문화진흥계획 2019~2023’의 중점과제 10(포용적 독서복지 체계 구축)에는 ‘장애인 대체자료 확대’가 포함됨. 세부 추진과제로는 독서장애인 점자, 수화영상도서 등 장애인 독서 대체자료 제작·수집 및 보급 확대와 공공도서관 등에 장애인 자료실 설치 지원 확대 및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와 같은 추진사업이 제시됨
  - <도서관법> 제14조에 근거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2023’에는 주요 추진과제인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내에 ‘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내 장애인자료실(코너) 확대(2023년까지 35%),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2023년까지 100개관) 등이 포함되고, 장애인도서관 개선 방안이 제시됨

## 나. 국정과제

### ■ 노무현 정부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정부별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하였는데 그 시작은 노무현 정부 시기 문화정책 비전서인 「창의한국」에 8번 과제(추진과제 8.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내에 장애인과 관련된 문화예술분야 과제가 포함된 것을 시작으로 볼 수 있음
  - 「창의한국」은 3가지 목표, 5대 기본방향과 27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추진과제 8.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문화예술 분야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 과제로는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문화시설의 장애인 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이용권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문화정보 접근권 확대 등이 포함됨

〈표1-26〉 「창의한국」(2003):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권 신장: 장애인 부문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방안 수립

특수언어 표준화 지원 강화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이용권 강화

문화시설의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장애인 문화체험 지원 도우미 체제 도입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문화바우처제 실시 및 할인제도 확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문화정보 접근권 확대

장애인 문화활동 핸드북 제작·보급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지원

장애인 문화창작기회 확대

장애인 문화체험마을 조성

출처: 조현성(2020), '장애인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재인용

##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 시기에다 국정과제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포함되었으나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과제는 청각장애인의 수화 사용 촉진을 통한 문화·정보 접근권 보장과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국정과제는 총 4개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국정기조2. 국민행복-추진전략4의 맞춤형 고용복지와 국정기조3.문화 융성-추진전략8.문화참여확대-국정과제108번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와 추진전략9. 문화예술진흥-국정과제111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국정과제 50번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에서는 ‘한국수화기본법’ 법제화 추진 및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통한 문화·정보 접근권 보장에 대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국정과제 108번의 경우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에 대한 사항으로 문화시설 내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국정과제 111번의 경우 장애인 예술창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문화예술 창작아트페어를 개최하는 것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 시기 주요한 성과로 장애인들의 예술창작, 작품발표, 문화교류 활동의 구심점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정부에서 직접 설립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이 2015년 11월 정식 개관하였음

■ 문재인 정부

- 문재인 정부 시기 100대 국정과제에는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관련 정책으로 42번(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에 ‘장애인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가 포함되어 있음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라는 전략으로 국가 문화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 목표와 전략에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의 시대, 창작환경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등 7가지 국정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예술정책 계획인 <새예술정책>(2018~2022)에는 8대 핵심과제 중 ‘6.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에 대한 추진과제를 담았음
    - 장애인예술분야 연구 및 정책 지원에 대한 과제로는 장애인 예술 활동 조사(빈도, 장소, 애로사항 등) 및 기존 예술인 실태조사와 비교분석, 공공 공연시설·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 정책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모두에게 열려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등 모든 이를 위한 이동성 향상, 문화여가 향유 수준 개선 등을 위한 공간 개선 사업 추진이 포함되어 있음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배리어프리 무대·객석 및 장애인에게 필요한 멀티미디어 공연이 가능한 환경 조성 등 창작권·향유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예술 전용공연장 조성하는 사항이 담겨 있음

<표1-27> 문재인 정부 <새예술정책>(2018~2022) 중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관련 내용

핵심과제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주요내용
6.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	장애인예술분야 연구 및 정책 지원	-장애인 예술 활동 조사 및 기존 예술인 실태조사와 비교분석 -공공 공연시설·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공연전사 교육장애학 등 해외 학술도서 번역발간 및 국내 연구자료 발간 -‘포용적 예술’등 새 가치 발굴을 위한 장애인예술 연구 - 장애인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현장 정책개발 -문체부내 장애인예술 정책 전담부서 신설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문화예술 정보와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 사이트 구축 -창작권·향유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예술 전용공연장 조성 -문화예술 접근성 보장 가이드 북 제작,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다각도 지원, 장애문화예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및 인력 육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특성화 창작거점 구축 -청년 장애예술가 양성 사업(Slow Arts Factory) 추진 -장애인예술교육 교재개발 및 전문가 육성 -장애-비장애 예술인 교류·협업 확대 지원 -유망 예술인 및 신진 장애인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새예술정책>. 연구진 재구성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보장 가이드 북 제작,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다각도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세부 추진과제도 담겨 있음
- 문재인 정부 시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비전 2030’(2018)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문화정책의 비전이다.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대 가치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의 3대 방향을 세우고, 9가지 정책 의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담고 있음
- 3대 방향과 9대 의제 중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에 대한 정책의제는 문화 인프라-창작자-이용자를 연결하는 문화향유 생태기반 구축을 위해 무장애 환경 조성 및 장애인 위한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음. 그 중 장애인예술 전용극장 설립과 일반 영화 상영관 내 장애인·비장애인 동시관람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제정(2020년 6월)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특히, <장애예술인지원법>에 근거하여 2021년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본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2021년 장애예술 공연장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 ■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는 이전 정부에 비교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과 문화시설 접근성과 관련된 추진과제에는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외에도 국공립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와 창작물우선구매 등에 대한 추진과제를 담았음
- 국정과제는 6대 국정목표와 110개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 추진과제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반 조성 및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추진과제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등을 통한 장애인의 문화접근 장벽 해소, 공공수어통역지원 등 언어복지 환경 개선하는 과제를 담고 있음
- 추진과제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를 추진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음

〈표1-28〉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관련 내용

과제명	과제목표	주요내용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취약계층 등 문화 누림 기회 확대로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취약계층 등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와 예술산업 미래 경쟁력제고	(장애예술 활성화)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우선구매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출처: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연구진 재구성

### 3. 연구 사례

- 국내에서 이루어진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관련 연구에서는 장애유형별, 시설별로 접근성에 대한 연구하거나 장애인의 편의제공과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전체 장애유형과 다양한 문화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음
-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되어 편의제공과 물리적 접근성 외의 다양한 접근성 개념 및 요소를 도출한 연구로는 김현경(2020)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연구」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1)의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가 있음」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하여 접근성의 개념 및 요소 등의 도출을 위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접근성을 다룬 김현경(2020)과 공연장의 접근성을 다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1) 등 장애예술인이 창작 또는 실연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접근성에 대해 다룬 국내 선행연구들을 정책보고서와 학술지 게재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연구는 <표1-33>과 같음

〈표1-29〉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관련 국내 선행연구

No.	저자	발간연도	제목	시설구분	장애유형
1	김현경	2020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 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연구	박물관·미술관	장애인일반
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0	장애예술 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연장	장애인일반
3	문화체육관광부	201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문화시설	장애인일반
4	국가인권위원회	2021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편의시설	장애인일반
5	안금희	2020	미술관에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반 터치 투어 (Touch Your)에 관한 연구	미술관	시각장애인
6	김선희 외 3인	2019	시각장애인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전시예술품 감상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미술관	시각장애인
7	우채영 외 2인	2020	대규모 공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연구-휠체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공연장	지체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자
8	최상배 외 4인	2015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정보 접근 실태와 개선 방안	공연장	청각장애인

1) 김현경(2020),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 해당 연구는 본 연구의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의 표준화된 지표 및 조사항목을 도출하는데 있어 이론적인 기반이 되어 주는 연구로 2019년 발표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책 사업이 명시되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음. 그간 정책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문화 접근성의 문제를 박물관·미술관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목적으로 수행됨
- 국내 박물관·미술관의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장애인 접근성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존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아닌 ‘장애인 불편 없이 전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
- 연구는 문헌분석 및 사례분석, 기관 설문조사, 이용자 요구 분석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 전문가 및 실무자 FGI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였음
  - 박물관·미술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의 유형은 Museums & Galleries Commission(1998)에서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 중시되는 온라인, 의사결정 및 문화적 접근을 반영하고 박물관의 주요 4가지 요소인 공간(온라인 공간 포함), 인력, 컬렉션, 관람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1-30〉 박물관·미술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의 유형

접근 장애 요인 대분류	박물관 운영 요소	장애인 접근성 유형	
		대분류	세부 요소
물리적 접근 (Physical access)	공간과 시설(건물)  온라인 공간	물리적 접근성	이동편의성
감각적 접근 (Sensory access)			감각적 접근성
지적 접근 (Intellectual access)	인력	서비스 접근성	태도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 (Financial access)			경제적 접근성
정서적/태도적 접근 (Emotional/attitudinal access)	컬렉션	프로그램 접근성	웹접근성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 (Access to decision-making)			지적 접근성
정보에 대한 접근 (Access to information)	관람객	문화적 접근성	정서적 접근성
문화적 접근 (Cultural access)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

출처: 김현경(2020),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인용

- 국내 박물관·미술관의 접근성 관련 운영현황을 공립에서 운영하는 22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115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문항은 기관의 장애인 관람객 접근성 개선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운영정책, 조사 및 연구, 직원교육, 직원 고용, 의견수렴 피드백의 5가지 항목에 대한 총 13개의 문항임

- 박물관·미술관의 수요자 조사를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관 복지사, 박물관·미술관 실무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총 20명 대상으로 1:1면담과 FGI로 수행
- 대분류 물리적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프로그램 접근성, 문화적 접근성 4개의 관점에서 박물관·미술관 현황과 서비스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더불어 도출된 이슈와 현황 조사의 결과를 장애인 접근성의 유형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를 종합하여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과 수립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표1-31〉 박물관·미술관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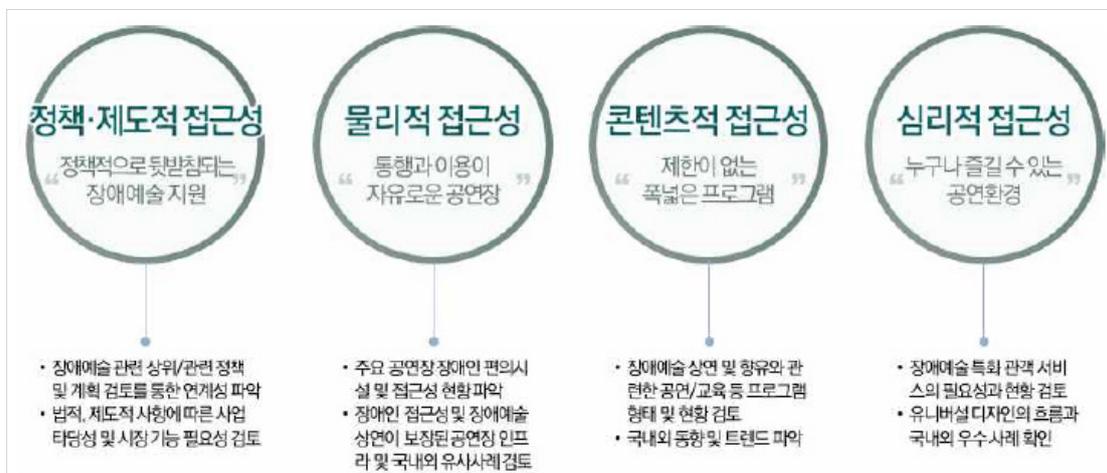
장애인 접근성 유형		기본 원칙	가이드라인 방향	세부 방향		
대분류	세부 요소					
물리적 접근성	이동 편의성	⇒ 물리적/서비스환경 인클루시브/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접근성이 향상된 전시관람 환경 조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시공간 연출	전시공간	
	감각적 접근성				시청각 및 인터랙티브 체험	
					전시설명판	
웹 접근성	⇒	조명수준				
서비스 접근성	태도적 접근성	⇒ 박물관의 사회적 포용과 공공성 확대	장애인 친화적 서비스 제공	장래인 방문 여정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서비스 제공	작품높이	
	경제적 접근성				전시 기획에서의 장애인 관련 주제의 활용	
					웹 접근성	⇒
	⇒				관람료	
프로그램 접근성	지적 접근성	⇒ 장애인 문화권 보장	포용적 관점이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연계 특수교육대상자 프로그램 개발	교통수단	
	정서적 접근성				⇒	편의시설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				⇒	가이드동반 투어
문화적 접근성	정서적 접근성	⇒	장애인 문화권 보장을 위한 환경 마련	기관 내의 운영정책에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필수 고려	맞춤형 현장 서비스 제공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				⇒	장애인 유형별 웹 접근성 고려 설계
					커뮤니티 연계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	
					고령친화(Age-Friendly) 프로그램 기획	
					기관 종사자의 장애 감수성 함양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기관 운영 내 장애인 참여 고려	

- 이 연구는 접근성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요소를 연결하여 분류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연구에서 이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의 관람만이 아닌 장애예술인의 관점에서의 접근성을 언급한 부분은 특히 의미가 있음. 더불어 물리적 접근성 외 다양한 접근성의 관점을 고려한 부분은 다른 연구와 차별화된 의미가 있음
- 장애유형별 접근성 개선 방식, 서비스 제안의 경우 세부적으로 다루이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후속연구와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장애유형별 대표성을 고려한 표본을 설정하고 세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더불어 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장애인의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1),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

- 해당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정과제 42-6. '장애인 문화·여가 접근권 강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장애예술 전용극장 조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초조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의 후속연구로서 장애예술의 특성에 기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공연장 모델을 제시하고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을 위한 실제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은 장애예술 관련 현황 및 환경 분석과 함께 환경 분석부터 건립 후보지 조사·분석, 건립 기본계획, 운영 프로그램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토 등으로 포함하고 있음. 특히,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념을 기준으로 한 분석조사 프레임을 바탕으로 건립 후보지를 4가지 특성별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최종 후보지 도출하고 있음
  - 분석조사 프레임은 ①정책 및 제도적 접근성은 정책적 연계성 및 관련 제도, 계획 등, ②물리적 접근성은 장애인 통행 및 이용 편의시설, 접근성 인프라 등, ③콘텐츠적 접근성 장애예술 상연 및 향유 관련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콘텐츠의 경향성 등, ④심리적 접근성은 장애예술 특화 관객 서비스, 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예술 권리의 법적보장 및 장애예술 전용 극장에 대한 정책적 동기가 이루어짐
    - 문화예술 시설 및 인프라 검토 결과,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공연장은 극소수로 파악되며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장애인들의 실질적 장벽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장애인들이 참여,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장애예술의 정체성을 반영. 확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지속적 제작 및 상연이 필요함
    - 장애인 및 장애예술인의 공연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물리적 장벽의 제거와 함께 정보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이 연구는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과 다양한 해외사례를 담고 있으며, 공연장 건립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고려사항, 조직 구성안 및 협력방안, 운영재정에 대한 사항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점을 지님

〈그림1-2〉 환경분석 분석 프레임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1),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 인용

### 3) 문화체육관광부(201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 국내에서도 공공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을 적용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2012)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개념과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파악하였음. 국내의 경우 화성시, 대전시, 서울시, 경기도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부천시 박물관 <감각의 확대, 관계의 확장> 전시, 서울도서관, 광진문화예술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박물관, 미술관 등의 사례와 해외의 경우 유럽, 미국, 일본, 노르웨이 등의 문화체육시설 관련 국가 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파악하고, 그 정책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문화체육 시설사례 등을 분석하였음. 그리고 국내 지자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사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유니버설디자인 추진방향과 추진과제(적용방안 및 지침마련)를 제시하였음
- 추진과제는 ‘2-2.소외 계층 이용 공공시설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문화적 공간 조성사업 시범추진’이 있음
  -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과 같은 공공 문화시설은 소외계층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내 문화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낙후하며, 청각장애인 들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오페라, 연극 공연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고, 비장애인도 외국어 능통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어 공연을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과제임
  - 이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로는 소외계층의 공공 문화시설 이용실태 조사, 소외계층 이용 국내외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실태조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문화적 공간 조성 사업 대상시설 선정을 담고 있음
- 추진과제는 ‘2-4. 유니버설디자인 적합성 여부 검토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강구’임
  - 장애인편의증진법 등에서 규정한 기준은 배리어프리디자인 관점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것이며 이것만으로는 공공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증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문화체육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운영자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담긴 것임
  -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 ①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률(일본 배리어프리 신법, 미국 장애인법,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장애인 접근성 배려 조항 조사 분석, ②유니버설디자인 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한 법률 조항 및 체크리스트 연구개발, ③유니버설디자인 적합성 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기 위한 문화체육시설 관련법(장애인차별금지법, 박물관·미술관법,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담고 있음
- 해당연구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성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과 관련된 연구로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다루지 못하였음

## 4) 국가인권위원회(2021),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인적 편의 제공과 관련한 국내외의 법령, 최신 판례·결정례, 정책 등 기존 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에 관련된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기준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가 조화롭게 기능하고 있는지 살피고,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법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선진 10여 개국의 법령, 최신 판례, 결정례, 정책 등 국내외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와 관련한 주요 법제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 분석하였음
- 각 국가별로 1)정보통신·의사소통, 2)시설이용, 3)이동 및 교통수단을 기본적인 접근성 영역으로 보고, 나머지 영역의 경우 이를 분야 정보로 1)재화·용역일반 2)문화예술·체육·관광, 3)노동, 4)교육, 5)행정서비스·참정, 6)금융·보험·상거래, 7)건강·보건의료, 8)재난안전, 9)주거, 10)기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영역별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 및 절차를 분석하고, 외국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인적 편의가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제언 및 영역별로 인적 편의 제공 의무 기관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국·공립(대학) 박물관·미술관의 이용 시 필요한 인적 편의 제공으로, 관람권(입장권) 예매·구매, 해설사 관람 코스 이용, 오디오가이드 서비스 이용, 소장품 정보에 대한 접근으로 구분하여 개괄적인 가이드라인(general guidance) 제안함
- 정책 개선 방향으로서, 접근성의 제도화와 접근성 지원 제도의 강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행에 있어서의 공적 지원 고려의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정당한’ 편의에 관한 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하였음

## 〈표1-32〉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주요내용

-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 관련 국내외 법제 자료 수집 및 분석
  - 법령, 최신 판례, 결정례, 정책 등 국내외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와 관련한 주요 법제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 분석
- 해외 선진사례 수집 및 분석
  - EU,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일본, 홍콩,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10여 개 국가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장애유형별 최신 선진 사례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선별·분석·번역·정리
-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성 조치 관련 법제 개정안 제시
  -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방향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수요를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도출
  - 정보접근권과 문화 향유권 등 새로운 접근성 조치 대상 영역을 포함하는 정책 및 법령 개선 방향을 제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등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 규정들 간 정합성을 검토하여 법제 체계화 방안을 제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21),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 인용

5) 안금희 외(2020), 미술관에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반 터치 투어(Touch Your)에 관한 연구<sup>14)</sup>

-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서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의 확대를 위한 전시 연계 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실시된 연구임
  - 연구에서 검토한 선행연구 이양의 외(2019)에서 시각장애인의 가장 선호하는 문화생활을 묻은 결과, 영화감상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전시예술 감상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주요 문화생활 다섯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70%가 넘는 사람들이 전시예술품을 끄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시 관람이 어려운 이유로는 시각 위주의 관람 문화라고 응답하였으며, 전시 작품을 감상할 때 잔존시력을 활용하여 눈을 가까이 대고 작품을 감상한다고 응답하였음
  -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전시예술품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있으며, 시각장애인 대상의 전시예술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해당 연구는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각장애인의 주요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시각장애와 미술 교육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의의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내외 미술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를 고찰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전시 작품 관람을 위해서는 시각 외의 잔존감각인 촉각, 청각, 후각을 활용하여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스토리텔링 기반 터치투어>를 개발 적용하였음
- 해당 연구는 단순히 <스토리텔링 기반 터치 투어> 운영방법이 아닌 시각장애인의 고유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 방법을 찾아가는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음. 특히 미술관에서 시각장애인 미술관 작품 감상에 관한 접근방법 및 고려할 점을 정리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1-33〉 시각장애인 미술관 작품 감상에 관한 접근방법 및 고려할 점

구분	주요내용	
접근방법	터치 투어	많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작품이나 유물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터치 투어를 제공한다. 미술관의 보존팀과의 협의를 통해서 만질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보통 일회용 장갑을 끼고 터치 투어를 진행한다.
	셀프 가이드 터치 투어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미술 작품을 터치 투어로 관람하는 프로그램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작품과 점자설명과 큰 사이즈의 레이블, 작품에 대한 오디오 자료 등을 준비한다.
	입체 모형	터치 투어의 보조 자료로 만질 수 없는 작품이나 유물의 입체 모형을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만질 수 있는 현대 미술	현대미술의 경우 처음부터 관람자가 만질 수 있는 작품으로 제작된 것이 있다. 이러한 미술 작품을 활용하여 관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고려할 점	낮설지 않게 하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전시공간을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 낮설음의 느낌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 계획	미끄러짐, 충돌, 넘어짐 등의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물, 돌출물 등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방향 찾기	유도 표시 계획을 통해서 청각과 촉각 등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 벽재, 난간, 점자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편의 계획	공간의 구성과 통로는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하며 모든 물건과 기기에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청각, 촉각, 후각 등의 감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소음, 온도, 환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안금희 외(2020), 미술관에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반 터치 투어(Touch Your)에 관한 연구. 연구자 정리

14) 안금희(2020), 미술관에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반 터치 투어(Touch Your)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내용을 요약 정리

6) 김선희 외 3인(2019), 시각장애인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전시예술품 감상과정에 관한 질적연구<sup>15)</sup>

- 시각장애인의 전시예술품 감상과정을 이해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지원전략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는 시각장애인이 전시예술을 어떻게 감상하는지, 감상을 통해 어떤 체험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장애요소들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탐색적 사례연구를 위해 전맹과 저시력을 포함한 시각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연구참여자와 심층인터뷰 내용 분석결과는 연구질문의 범주에 따라 ‘전시예술품 감상 방법’, ‘전시예술품 감상 경험’, ‘전시예술품 감상의 장애요소’,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한요구’, ‘경험 가능한 전시품 만들기’이라는 주요 범주에 따라 정리되었음. 그 외 분석결과를 통해 얻은 주요범주와 하위범주를 <표1-34>에 제시함

&lt;표1-34&gt; 연구결과 주요범주와 하위범주

주요범주	하위범주
1. 전시예술품 감상방법	1) 촉각 또는 잔존시력으로 보기 2) 다감각 동원 3) 보조기기 및 타인의존
2. 전시예술품 감상경험	1) 제한된 감각의 재인식 2) 주체적 앞의 확장 3) 동등한 참여권리 인식 4) 동시대 공감하기
3. 장애요소	1) 접근장애 2) 이동장애 3) 이용장애(1) 시각장애인의 안전, (2) 전시작품의 보호)
4.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을 위한 요구	1) 접근 가능한 정보제공 2) 이용 가능한 매개시설 3) 관람 가능한 내부시설
5. 경험 가능한 전시품 만들기	1) 당사자 관점 숙고 2) 미해결된 시각적 요소를 다감각으로 대체 3) 공감에 입각한 청각자극 4) 다양한 촉각요소 반영 5) 배경감각 깨우기

출처: 김선희 외 3인(2019), 시각장애인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전시예술품 감상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번역, 인용

- 연구의 의의는 첫째, 시각장애인들의 지금까지 전시예술품 감상과정을 시각장애인들의 관점을 통해 파악했다는 것임. 본 연구의 경우도 김선희 외 3인(2019)과 같이 연구진이 장애인과 함께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페르소나 분석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접근성 요소 도출 시 활용될 예정임
- 향후 연구와 실천을 위한 제언으로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경험 가능한 전시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함. 특히, 장애인과 권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배리어프리(Barrier-Free) 생활인증제를 대중교통, 건축물, 여객시설 등의 영역을 넘어 문화예술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향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15) 김선희 외 3인(2019), 시각장애인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전시예술품 감상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재활복지 제23권 제1호.

7) 우채영 외 2명(2020), 대규모 공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연구 - 휠체어 이용자를 중심으로<sup>16)</sup>

- 해당 연구는 장애인의 공연 관람 및 문화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1,000석 이상 3,000석 미만의 대규모 공연장 4군데를 대상으로 BF인증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뷰조사를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사항과 불편사항의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
- 주요내용은 휠체어 이용자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접근이 취약한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 및 이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음. 따라서 공연장의 주 이용목적 공간인 관람석과 로비의 접수대, 그리고 매개공간인 주출입구, 승강기, 주차공간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용하는 BF인증 기준으로 구성됨. 주요 분석의 틀은 <표1-35>에 제시함

<표1-35> 주요 분석의 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관람석	휠체어 좌석 수	전체 관람석 중 1%이상 설치
	휠체어 좌석 위치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분산배치	2곳 이상 분산배치
	동행인 동석자리(선택적)	장애인 동행인과 동석 좌석 설치
접수대	설치 위치	접수대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
	설치 높이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설치
주출입구	주출입문의 형태	자동문 설치
	유효폭	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단차	단차가 없거나 경사로 존재
	전면유효거리	1.5m 이상
	주출입구의 높이차이	주출입구 접근로에서의 경사로 설치
승강기	내부 면적	폭 1.6m이상, 깊이 1.4m이상
	전면유효면적	전면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손잡이 높이	0.85m±5cm
	조작버튼 설치 높이	휠체어사용자용(0.85m±5cm)로 구분 설치
주차공간	위치	승강설비 및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
	주차구역 면수	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및 초과
	휠체어 활동공간 유효폭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주차장에서 접근로의 단차가 있을 시 경사로 설치
	안내 및 유도 표시	장애인 주차구역 바닥 및 입식 안내 표시

출처: 우채영 외 2명(2020). 대규모 공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연구 - 휠체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인용

- 해당 연구는 휠체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 다른 장애유형에 대한 만족도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대규모 공연장으로 한정하여 사례수가 제한적인 한계를 지님. 추후 사례수를 확대하고 다른 장애 유형을 지닌 사용자들을 고려한 공연장 디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함

16) 우채영 외 2명(2020). 대규모 공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연구 - 휠체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5호 통권 66호

8) 최상배 외 4명(2015),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정보 접근 실태와 개선 방안<sup>17)</sup>

- 해당 연구는 농인이 문화시설과 문화생활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농인의 문화시설 정보 접근 환경을 분석하고, 농인의 정보 접근 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를 위하여 농인 397명을 대상으로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문화정보 접근 요구, 그리고 주요 문화시설 이용에 필요한 문화정보 접근 개선사항을 조사하였으며, 독일의 농인 문화시설 접근 향상을 위한 지원 내용을 조사하였음

〈표1-36〉 조사내용

구분	평가항목
농인 문화시설 이용과 문화정보 접근 실태	-최근 1년간 문화시설 방문 빈도
	-문화시설별로 필요한 지원
	㉠ 농인 수어 해설가 배치
	㉡ 수어통역사 배치
	㉢ 수어 동영상 제공
	㉣ 쉬운 글 등 대체텍스트 제공
	㉤ 문자 전광판 제공
	㉥ 홈페이지에 필요 정보 제공
	㉦ 영상 전화기 등 정보접근기기 제공
	㉧ 농인 전용 연락처(예, 문자, 카카오톡 아이디 등)
	㉨ 장애인 전담 직원 배치
농인 문화시설 이용과 문화정보 접근 개선 방안	-문화시설 이용 시 농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전 농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방법
	-농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정도
	-농인에게 필요한 정보접근기기의 적절한 제공 여부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한 농인을 위한 온라인 정보접근 환경 제공 여부
	-기존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수어통역사가 배치된 문화시설 이용 경험 여부
	-문화시설 배치 수어통역사 서비스의 불편한 점
-농인 수어해설가가 문화시설을 수어로 설명할 때 해설 방법	
-농인을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더 자주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지원 정보 얻는 방법	

출처: 최상배 외 4명(2015),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정보 접근 실태와 개선 방안. 인용.

- 농인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청각기관의 손상과 듣기 기능 저하’ 그 자체보다,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이해의 어려움, 그리고 다른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으로 일종의 ‘문화결손(cultural deficit)’을 야기하여 농인은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편, 농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달리 신체적 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편견이 있기도 함. 그러나 실제로 농인은 자막이나 수어(手語, sign language)가 삽입된 영상물, 수어 영상도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등 농인을 위한 다양한 대체자료를 필요로 함
- 이 연구는 농인의 문화시설과 문화정보 접근 환경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따라서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농인의 문화정보 접근의 영역을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17) 최상배, 홍성은, 허일, 이미혜 and 안영희. (2015).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정보 접근 실태와 개선 방안.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2), 615-635.

#### 4. 실태조사 사례

- 국내에서 장애인 접근성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 외의 조사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고려한 요소와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함. 조사 사례분석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통계조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조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조사대상에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통계조사」는 본 조사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음
- 이를 위해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도록 함

##### 1)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sup>18)</sup>

-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실태조사)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조사로서 편의시설설치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종류별, 건물유형별, 시설주별,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장애인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는 5년마다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편의실태를 조사하며, 조사내용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에 따름
- 조사항목은 6개의 대분류, 19개의 중분류, 357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항목(357개 항목)은 해당여부(35개 항목), 설치현황(219개 항목), 세부질문(103개 항목)의 세 가지로 구성하고 있으며, 설치현황 항목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에 관여하는 항목이며, 세부질문은 설치현황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대상시설의 유형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50개 유형의 모든 시설을 기본으로 하며, 총 72종의 유형별 의무대상시설로 정함.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기준에 의해 229개 지자체의 20만개의 최종 조사대상건물수를 확정하였음
- 한편, 편의시설 종류별 세부 항목에 대하여 편의시설 전문가(BF인증 심사단, 장애인당사자)를 대상으로 각 항목별 중요도(5단계)를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한 편의시설별 핵심항목은 <표1-41>과 같음

〈표1-37〉 편의시설별 핵심항목

편의시설	종류	2018년도 도출핵심항목
매개시설	접근로	1_1_2_1 접근로 바닥마감과 미끄럼정도
		1_1_2_2 접근로 바닥툟과 평탄한정도
		1_1_3_2 접근로 기울기1/18이하
		1_1_4_1 접근로 보차분리
		1_1_4_2 접근로 보행장애물

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장애인개발원.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편의시설	종류	2018년도 도출핵심항목
	장애인주차구역	1_2_2_3 장애인 주차면수 확보
		1_2_2_5 장애인주차구역주차면 크기
		1_2_3_2 장애인주차구역 안전통행로
	높이차이제거	1_3_2_1 건축물 높이차이제거
내부시설	주출입구(문)	2_1_1_1 주출입구 (문) 턱 2cm이하
		2_1_1_2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일반출입구(문)	2_1_4_1 일반출입문 턱 2cm이하
		2_1_4_2 일반출입문 통과유효폭
	복도	2_2_1_1 복도 유효폭
		2_2_1_2 복도 단차
	계단	2_4_2_3 계단 첩면의 높이, 디딤판 너비
		2_4_3_1 경사로 유효폭
	경사로	2_4_3_3 경사로 기울기 1/12이하
		2_4_3_4 경사로 바닥면 재질
		승강기
	2_4_4_4 승강기 유효바닥면적('08이후)	
	2_4_4_5 승강기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	
	2_4_4_6 승강기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 높이	
2_4_4_11 승강기 도착여부 표시, 도착음		
휠체어리프트	2_4_5_1 휠체어리프트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2_4_5_2 휠체어리프트 유효바닥면적	
위생시설	일반	3_1_1_1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3_1_1_3 장애인화장실 통로 연결
		3_1_1_4 장애인화장실 바닥 단차
		3_1_1_5 장애인화장실 바닥마감/미끄럼정도
		3_1_1_7 화장실 남녀구별점자표지
	대변기	3_2_2_1 대변기출입문형태
		3_2_2_2 대변기 통과유효폭
		3_2_2_5 대변기 바닥면 크기('05이후)
	세면대	3_4_2_1 세면대 상하단높이
		3_4_2_2 세면대 휠체어 발판 깊이, 공간
	욕실	3_5_2_1 욕실 출입구 유효폭 / 단차
		3_5_2_4 욕실 바닥마감 / 미끄럼정도
		3_5_3_2 욕실 비상용 벨 위치
샤워실·탈의실	3_6_2_1 샤워실 및 탈의실 출입문 유효폭 / 단차	
안내시설	유도·안내설비	4_1_2_1 점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유무
	시각경보설비	4_2_1_1 시각장애인 경보설비 연속 설치
기타시설	객실·침실	5_1_2_2 장애인 객실 및 공용공간 접근성
		5_1_2_3 장애인 객실 출입문 유효폭
		5_1_2_4 장애인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5_1_4_1 장애인 객실 내부 화장실 바닥단차
		5_1_4_3 장애인 객실 내부 대변기 출입문 유효폭
		5_1_4_6 장애인 객실 내부 대변기 바닥면크기('05이후)
		5_1_4_18 장애인 객실 내부 샤워실 유효바닥면적
		5_1_5_2 장애인 객실 내부 청각장애인용 초인등/경보설비
	관람·열람석	5_2_2_1 관람석 및 열람석 출입구·피난통로의 접근성
		5_2_2_2 관람석 및 열람석 유효바닥면적
5_2_2_3 관람석 및 열람석 높이·휠체어 발판공간		
접수·작업대	5_3_2_1 접수대 및 작업대 접근성 및 이용성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조사는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서 2019년까지 달성되어야 할 편의시설 설치율 목표치 관리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데 의의가 있음.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의증진 관련 정책 수립 시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전수조사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요소를 도출하는데 있어 이 연구의 편의시설별 핵심항목을 참고하였음

**2)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회(202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통계조사<sup>19)</sup>**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통계조사’는 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서비스 관련 정책 및 평가에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필요성에 의해 실질적 장애인서비스 운영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으로 정책연구에 자료로 활용될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서「도서관법」에 설립된 전국사립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서비스 운영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됨
- 조사내용은 공동도서관은 기본정보와 시설 및 설비 총 2개 영역, 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 기본정보와 함께 소장 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 및 결산, 이용 및 이용자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됨. 그 중 장애인 도서관에 해당하는 소장 자료에는 대체자료 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 서비스 시설,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등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음. 더불어 이용자수 질문과 관련하여 도서관 회원등록자수, 방문자수와 이용자수에서 장애인 등을 별도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음. 주요 통계항목은 아래와 같음

**<표1-38> 장애인 도서관 접근성 관련 통계항목**

항목	소항목	세부항목
대체자료 수	점자자료	점자도서(종/권)
		점자악보(종/권)
		전자점자도서(종/건)
		전자점자악보(종/건)
		점자라벨도서(종/권)
		목점자혼용도서(종/권)
		음성점자자료(보이스브레일)(종/건)
	녹음자료	카세트테이프(종/점)
		CD-ROM 녹음도서(종/점)
		MP3 녹음도서(종/건)
		텍스트변환 MP3도서(종/건)
		기타 녹음자료(종/건)
	장애인접근 디지털파일	디지털음성도서(DAISY)(종/건)
		장애인접근전자책(EPUB)(종/건)
		장애인접근디지털자료(Text-PDF)(종/건)
	영상자료	화면해설영상자료[종/편(건)]
		한국수어영상도서[종/편(건)]
		자막영상자료[종/편(건)]

19) 「202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회.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항목	소항목	세부항목	
장애인 편의시설	기타자료	촉각도서(중/권)	
		큰글자도서(중/권)	
		읽기쉬운도서(중/권)	
		보이스아이북(중/권)	
		투웨이북(중/권)	
	매개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유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무	
		주 출입구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내부시설	출입구 유무	
		복도 유무	
		계단 유무	
		승강기 유무	
	위생시설	대변기 유무	
		소변기 유무	
		세면대 유무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무		
	유도 및 안내시설(장애인용 안내판, 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 유무)		
	경보 및 피난설비(경보피난설비, 시각경보시스템 유무)		
	기타 접수대 및 작업대 유무		
장애인서비스 시설	운영방식(장애인자료실/장애인코너/없다)		
	공간명칭		
	개실년도		
	담당부서		
	전담직원		
	총이용좌석수		
	이용자용 컴퓨터수		
	총면적		
	모바일도서관서비스유무		
	무선인터넷설치유무		
	공간구성	안내데스크 유무	
		열람실 면적	
		컴퓨터실 면적	
		회의실 면적	
		대면낭독실 갯수	
대체자료제작실-점자자료제작실 갯수			
대체자료제작실-녹음자료제작실 갯수			
대체자료제작실-수어영상자료 등 제작실 갯수			
보조공학기기	시각장애인 용 보조기기	문서인식 S/W 및 H/W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점역 S/W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점자정보단말기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점자프린터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화면확대 S/W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화면낭독 S/W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탁상용 독서확대기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휴대용 독서확대기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데이지 플레이어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바코드 리더기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확대경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기타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항목	소항목	세부항목	
	청각장애인 용 보조기기	신호 경비장치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화상전화기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음성증폭장치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강의,강연 청취기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골도 헤드셋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보완대체 의사소통용 애플리케이션 보유현황(개), 기타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자체/노병변 등	특수키보드 보유현황(개), 특수마우스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스위치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컴퓨터 입력 S/W 보유현황(개), 입력보조장치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자세보조장치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높낮이 조절 책상 보유현황(개), 경사각 작업테이블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터치스크린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모니터 이동보조기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필기구 홀더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원고 홀더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기타 보유현황(개), 이용정도(1~5)
	장애인용 보조기기	회원등록자수(비장애인/장애인)(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용자수 도서관 방문자 수(비장애인/장애인)(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용자 수 (비장애인/장애인)(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용책 수(실문자료 이용책 수)	
		(비장애인/장애인)(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용자수 및 이용책수	

출처: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202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통계조사. 인용

- 조사방법은 전국장애인도서관 통계시스템에 각 기관 통계담당자 직접 입력 및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됨
- 한편,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2021) 주요 결과 중 도서관구분 기본정보 중 장애인도서관의 도서관구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32개 장애인도서관 중 31곳이 시각장애인 도서관이고, 1곳(소리샘도서관)만 청각장애인 도서관으로 구분된 것을 알 수 있음
- 조사결과에 따른 제언으로는 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의 장서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거나, 인력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 감소에 대한 원인 확인이 필요하며, 장애인도서관이 전반적으로 실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조사의 한계점은 공공도서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공문으로만 조사에 응하는데 본 조사기관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사가 아니어서 응답거절 발생에 따른 설문조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음
- 해당 연구의 장애인 도서관 접근성 관련 통계항목은 본 연구의 도서관 대상 설문지 및 체크리스트 개발에 주요 항목으로 반영되었음

## 제3절 해외사례

- 본 절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살펴봄
- 특히 장애인 접근성의 영역 중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1. 유럽연합(이하 EU)

#### 가. 법제도 및 정책 개관

- EU<sup>20)</sup>는 장애인 관련하여 다양한 평등 법제 하에 세부 지침<sup>21)</sup>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보호하고 있음
  - EU 차원에서 제정된 각종 평등법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함. EU에서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지침을 제시하는데 이 중 장애인과 관련하여 「동등대우지침(Directive 2000/78/EC)」, 「교통약자 이동권 특별지침(Directive 2001/85/EC)」, 「시민의 이주 및 거주 권리 지침(Directive 2004/38/EC)」, EU 인권협약(EMRK) 등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음
  - 가장 최근 2019년 4월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제정한 유럽접근성 법은 2016년 EU의 웹접근성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됨.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EU 회원국 내의 '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를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함
- EU는 1990년대 유엔의 「장애인을 위한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 제정 이후 관련한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령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정하고 있음
  - EU는 1993년 유엔이 「장애인을 위한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하 '표준규칙')을 제정에 영향을 받아 이후 장애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오늘날 EU의 장애인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고, 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a Society Open and Accessible to All)의 기초 하에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음. 접근성의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장벽을 철폐하는 다양한 제도과 정책을 추진함(김선화, 2021; 홍선기, 2021)
- 2003년 <유럽 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EU 장애 행동계획 2003-2010」을 발표하였음. 이를 통하여 유럽 차원의 장애인 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유럽 장애 행동전략 2010-2020」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행동 전략(Action plan)을 제시함

20) EU는 소속된 당사국 간 합의에 기반 한 EU 법에 따라 운영됨

21) EU의 법제는 계층적 법 구조로 되어 있어서, 헌법적 성격을 갖는 것과 그에 기초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구성됨. 지침(directive)은 조약 등의 성문법과 함께 법령에 해당함

- EU는 2003년을 <유럽 장애인의 해>(European Year of Disabled People)로 정하고, 「EU 장애 행동계획 2003-2010」(EU Disability Action Plan: 이하 DAP 2003-2010)을 수립했음. 이 행동계획을 기초로 EU는 장애인들의 고용과 사회적 통합 및 접근성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국가인권위원회, 2021:5)
- 이후 DAP 2003-2010의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10년간의 장애인 정책 추진 전략으로서 2010년 11월 15일 「유럽 장애 행동전략 2010-2020: 장벽 없는 유럽을 위한 새로운 합의」(European Disability Strategy(EDS) 2010-2020: A Renewed Commitment to a Barrier-Free Europe)를 채택함
- 「유럽 장애 행동 전략」의 내용 중 ‘접근성’의 경우 장애인의 사회 및 경제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았으며, 행동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채형복, 2013; 김선화, 2021)
- 건축 환경, 교통, 정보통신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확인하고 제거하여 다양한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0년부터의 유럽 장애 전략 내 접근권(성) 관련 주요 정책성과는 아래와 같음

**<표1-39> 유럽 장애 전략 내 접근권(성) 관련 주요 정책성과**

연도	주요 제도 및 정책 추진	선행 및 후속 조치
2019	EU 위원회가 「유럽 접근성법」 채택	(후속 조치) 유럽 각국별 장애인 접근성 관련한 법제도 보완 및 정책 수립
2016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에 관한 지침 채택	(선행 조치)웹 접근성에 관한 연구 등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와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2015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기차 탑승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지침 채택	
2014	유럽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표준 채택	(선행 조치)건축 환경에 대한 접근성 표준,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에 따른 새로운 접근성 표준 개발을 위한 작업 진행
2013	문화, 스포츠, 관광 및 레저 활동에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회원국 장관 위원회 권고 채택	(선행 조치) 유럽의회 장애인 액션플랜 ‘Acces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culture, tourism, sports and leisure activities’ 수립
2012	탑승과 사전 공지 등 항공편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의 일률적인 적용을 위한 지침	
2011	장애인의 접근성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 해양, 도로, 교통과 관련된 법률 개정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21) 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자 재구성

## 나. 장애인 접근성 주요 법제도 및 정책

### 1) 유럽 장애 행동전략 2010-2020(European Disability Strategy, 이하 EDS 2010-2020)

- 본 행동전략은 ‘장애인이 그들의 권리를 누리고 온전한 사회경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DS 2010-2020는 배리어프리가 적용된 유럽 사회와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장애인이 그들의 권리를 누리고 온전한 사회경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EU는 이와 같은 주류화 접근을 통해서 EU에 속한 각국의 공공기관이 스스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조율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본 행동 전략은 EU 단계에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표와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영역은 접근성, 공적 생활에의 참여, 평등, 고용, 교육과 훈련, 사회안전망, 건강, 국제적 활동임
- 장애인의 사회 및 경제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접근성을 전략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9개의 의제 중 참여 영역에 문화,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활동에 완전히 접근할 권리를 포함함
  -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물리적 환경, 이동수단, 정보통신기술과 체계(ICT) 및 기타 시설과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기준으로 장애인들이 이 모든 영역에 접근하는데 여전히 장벽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장애인들은 EU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인 ‘연합시민권’(Union citizenship rights)을 포함한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여전히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고,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 아래 사회에 참여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보았음
  - 장애인들이 누리는 기본권 속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자유 이동권),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및 문화,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활동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 2) 문화, 스포츠, 관광 및 레저 활동에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회원국 장관 위원회 권고(2015)<sup>22)</sup>

- 본 권고는 유럽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충분한 사회 참여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수립된 액션플랜 2006-2015<sup>23)</sup>」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음
  - 2006-2015 장애인 액션플랜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실용적인 도구로서 역할을 하며, 모든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아야한 다는 점을 강조함
  - 액션플랜은 총 15개 분야의 실천 계획을 제시하는 데 그 중 2번 계획으로 문화적 삶에 대한 참

22) Council of Europe(2015), 「Council of Europe Disability Action Plan: Acces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culture, tourism, sports and leisure activities」

23) Council of Europe Action Plan to promote the rights and ful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ociet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urope, 2006-2015-<https://www.accessibletourism.org/?i=enat.en.reports.674>(접속기준: 2022.12)

여를 강조하였음. 특히 사회에 완전히 통합하려면 장애인도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장애인이 문화 활동과 협회에 참여하고 그들 자신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음

- 장애인들은 그들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개인으로서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장애인이 자립하거나 머무르려면 가능한 한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봄. 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은 문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및 관광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 유럽 평의회와 그 회원국들은 그들의 문화 정책을 정의하고 시행할 때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 예술적 삶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전망과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치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 장애인이 사회에서 동등하게 통합되고 완전한 참여를 위한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이러한 기본권에 문화에 대한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권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장애인의 문화, 스포츠, 관광 및 여가활동 참여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류화 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다양성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 두 가지의 접근방식을 취한다.
  - ②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이 창의적, 예술적, 지적, 운동적 발달과 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합리적인 숙박 및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잠재력,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어린 나이부터 배우와 관중으로서 문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 ③ 문화, 스포츠, 관광 및 레저 활동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국가, 지역 및 지역 차원의 공공기관, 민간 기업, 문화 및 스포츠 기관 및 전문가 및 시민단체, 지식인 NGO)를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장애인, 미디어, 학회 및 기타 - 국가, 지역 및 지역 전략, 장애인이 문화, 스포츠, 관광 및 레저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위에서 언급한 활동에 완전히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④ 장애인 및 그 대표단체와 법적·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문화·체육·관광·레저활동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상기 활동에 장애인의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가 이뤄져야한다.
  - ⑤ 특히, 모든 장애인이 신기술을 포함한 문화, 스포츠, 관광 및 레저 장소,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및 관련 정보 및 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계획이 이뤄질 경우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나 전혀 들지 않고 접근을 보장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비용의 주류화 및 최적화에 크게 기여한다.
  - ⑥ 모든 원칙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대중에게 개방된 모든 새로운 문화, 스

포츠, 관광 및 레저 서비스 및 시설이 장애인에게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을 위한 문화, 스포츠, 관광 및 여가 활동 분야의 모든 기존 객체, 상품, 제품, 시설 및 서비스에서 건축, 환경, 정보 및 통신 장벽을 식별하고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⑦ 장애를 이유로 문화, 스포츠, 관광 및 레저 활동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함을 보장하는 입법 틀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위에서 언급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자(공기업 및 민간기업 모두)에게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장애인이 제공하는 장소,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 ⑧ 공공조달 절차와 장려금 및 보조금이 장애인의 문화, 스포츠, 관광 및 레저 활동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적용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⑨ 문화, 스포츠, 관광 및 레저 활동을 제공하는 모든 관련 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의 직원에게 장애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는 배우와 관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일체를 포괄한다.
- ⑩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형태의 문화, 장소 및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문화, 스포츠, 관광 및 여가 활동에 걸쳐 모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장애인의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특히 읽고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 수화로의 해석, 점자 텍스트, 오디오 설명 및 현대 기술(정보통신 기술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⑪ 모든 이해관계자가 장애인의 다양성과 문화, 스포츠, 관광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성별, 연령 또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한 방법을 고려하도록 권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3) 유럽 접근성 법(2019)

- EU(EU) 위원회와 의회가 주도해 장애인을 위한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2019년 4월 17일 유럽의회에서 「유럽 접근성법」을 제정하였음
  - 「유럽 접근성법」은 「2010-2020 유럽 장애 전략」(2010-2020 European Disability Strategy)의 목표 중 하나로 추진됨
  - 제품과 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이 액션 플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이에 따라 2015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 접근성법」을 발표하였음. 이에 대하여 2018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협상을 통해 이 법안에 잠정합의하고, 2019년 투표를 통해 법을 채택하였음
- 유럽시장 내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이 법은 지난 2016년 EU의 웹접근성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EU 회원국 내의 시민, 특히 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됨

- 「유럽 접근성법」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소비정보의 의무적 제공을 규정하고 있음. 즉, 여기에는 적용대상인 무인 발권기, ATM 및 결제수단, 컴퓨터 및 관련 운영시스템, 스마트폰, TV, 소매금융서비스, 전자책(e-book), 전자상거래, 항공기 및 대중교통 서비스 등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임. 이러한 「유럽 접근성법」은 회원국의 상이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접근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법은 항공, 버스, 철도, 수상 여객 서비스의 ①웹 사이트, ②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기반 서비스, ③전자 티켓과 전자 티켓 서비스, ④실시간 교통 정보 등 교통 서비스 정보(터치스크린의 경우 EU 지역 내에만 적용)에 대하여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며, ⑤EU 내 도시 및 지역 교통 서비스의 자동서비스 단말기기(여객 운송 서비스의 목적으로 차량, 여객기, 여객선, 철도 차량 내 설치된 기기의 경우에는 EU 지역 외에서도 적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적용됨

다. 문화 활동 및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 연구 및 사업

1) ‘읽기 쉬운 문서’ (Easy-to-read) 사업(2010)

-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유럽국가들은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읽기쉬운문서’ (Easy-to-read)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본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보: 정보를 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유럽 표준"은 2010년 "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인 교육의 길(Pathways to adult education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프로젝트 파트너들에 의해 만들어짐
- ‘읽기 쉬운 자료’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만든 자료를 말함. 이러한 ‘읽기 쉬운 자료’는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문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읽기 쉬운 문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국가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에 준거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읽기쉬운 문서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아래의 공통의 로고를 활용하도록 함

〈그림1-3〉 ‘읽기 쉬운 문서’ (Easy-to-read) 사업 로고

	<p>a. Colour: Blue: PANTONE – 072;                  CMYK – Cyan 100%, Magenta 87%, Black 6%;                  RVB: 26-63-147;                  WEB: #333399</p> <p>b. Minimum size: 15mm</p>
---	--

출처: <https://www.inclusion-europe.eu/easy-to-read-standards-guidelines/>(2023.01.10 접속기준)

- 유럽의회의 본 정책을 통해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의 유럽 국가들은 읽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읽기 쉬운 자료’를 대체도서로 활발하게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고용평등법’의 규정에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의사소통 특성, 문해력 등을 감안하여 읽기 쉬운 버전의 문서를 제공하며, 장애인권리장전(Disability Rights Commission)에 기초하여 읽기 쉬운 문서 지침을 발간함. 또한 2011년 영국 보건부와 민간기관인 Mencap(영국 학습장애인옹호협회)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서작성 지침(Guidance for people who commission or produce Easy Read information, Mencap’s guidelines for accessible writing)을 개발하여 보건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안내책자를 개발하고 사법행정체계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함(국립장애인도서관, 2013; 서선진 외, 2014). 그밖에도 영국 민간기구 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의사소통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덴마크는 국립도서관 소속 도서관인 ‘노타(Nota)’를 중심으로 독서 장애인을 위한 읽기자료, 비디오, 소식지 등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제공함. 또한, 덴마크 문화국(The Danish Agency for Culture)은 독서 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함. 대표적인 사례로 ‘letbib.dk’은 외국 공공 도서관의 독서 장애인 이용자 서비스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덴마크 공공 도서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사업임
  - 스웨덴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 사과 기호가 부착된 ‘사과 책장’에 특수아동을 위한 서적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오디오북, 비디오 등의 정보를 교사와 부모에게 제공함.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은 학교와 협력함. 2012년 8월 IFLA 독서장애인 위성회의에서 ‘독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교사들 간의 협력(Collaboration between a public library and pedagogues regarding children and teens with print disabilities)’을 발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센터도 운영하고 있음

## 2) 중부유럽 문화유산 가치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COME-IN(2017)

- 유럽의회에 속한 회원국 중 중부 유럽의 중소 박물관 문화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
  - EU의 중부 유럽, 특히 중소 박물관의 문화 접근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COME-IN!(박물관에 대한 온라인 차원의 개방적 접근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박물관, 장애인 협회, 학계 대표, 교육 기관 및 정책 입안자의 다각적인 네트워크 형성하여 대중에게 박물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혁신적인 전략적 접근 방식을 공동으로 정의하고자 함
  - COME-IN!(COME-IN!) 프로젝트는 Interreg CENTRAL Europe Program<sup>24)</sup>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고, 중부유럽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제고를 위해 진행된 프로젝트로, 이 보고서의 근거는 COME-IN의 정의된 원칙뿐만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포괄성과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24) EU 차원의 범국가적 기금으로 민관 협력 차원에서 중부 유럽의 다양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 COME-IN!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이 중앙 유럽 문화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 박물관의 온라인 기술 역량을 향상 시키는 부분도 다름
- 이와 같은 박물관의 문화적 접근성 향상을 통한 중앙 유럽 문화유산의 가치 연계 활용은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함
- 특히, 박물관으로 대표되는 문화 현장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참여하고, 표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성의 문제를 탐색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문화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의 박물관을 방문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됨. 이 프로젝트의 최종적 비전은 모든 공감각적 체험을 통하여 문화에 대한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장 먼저 중앙 유럽에서 추진될 접근성 표준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성 기준”을 정의하고자 하는 모든 사용자의 요구와 예술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협력 박물관<sup>25)</sup>의 이해관계자와 파트너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표 완성. 이를 기준으로 추후에 중앙 유럽권의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을 포함한 방문객 접근성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협력 박물관의 협의를 통해서 완성된 접근성 지표를 통하여,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필요사항을 보여줌. 유엔 협약에 따른 접근성의 다양한 측면과 아울러 중소 박물관을 위한 서비스 체인을 포함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 박물관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을 설명하였음
  - 접근성 매트릭스에 대한 현 상황 진단에 있어 박물관·미술관의 서비스 체인(세로축)에 따른 분석법을 통하여 박물관 방문객에게 발생. 매트릭스의 가로축에는 유형별 접근 장애 요소를 배치하였는데, 물리적, 정보 및 소통, 사회적, 경제적 접근 장애의 4가지 요소를 통해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각각의 세부 평가 항목을 배치
-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동으로 개발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박물관의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안 모색하여 생활권역 내의 밀접한 문화 공간들이 장애인에게 보다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본 가이드라인은 접근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매트릭스로 유형화하여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러한 진단에 기초한 접근성 개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 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시사한 바가 크며 또한, 타 기관의 선례 등을 공유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이 있음
  - 특히, 범국가적인 단위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로서, 중소 박물관·미술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는 점과 접근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박물관 방문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서비스 체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는 점. 각 박물관·미술관이 가진 상황을 고려하여 매트릭스의 구분과 항목을 상황에 맞춰 조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표를 통해서 놓칠 수 있는 개별 상황에 대한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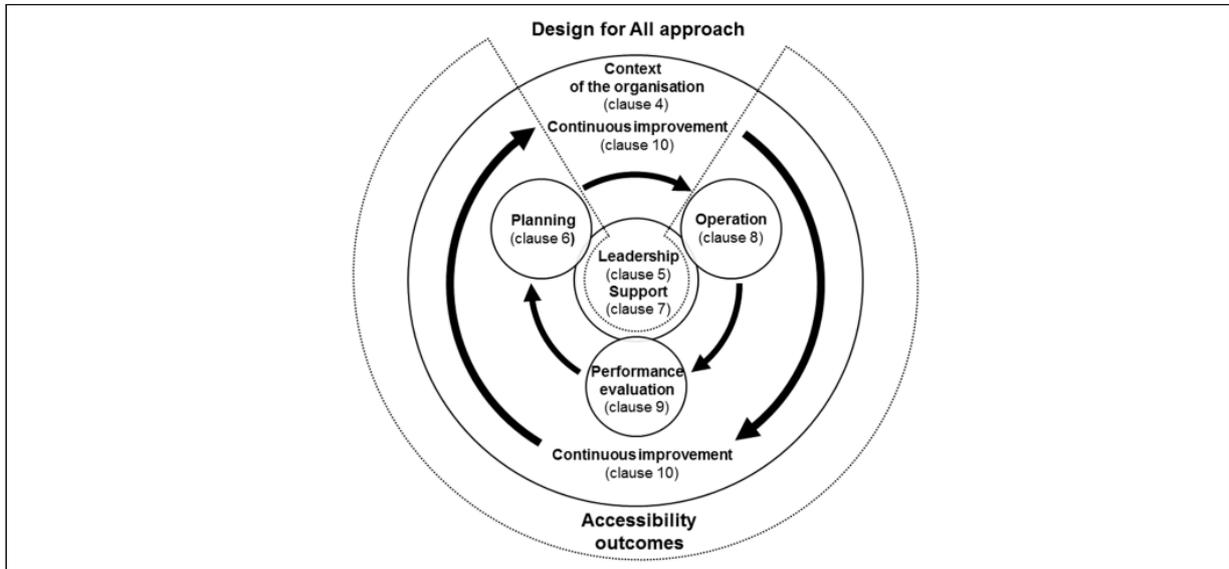
25) Archaeological Museum, Civic Museum and Gallery of History and Art, Udine, Maritime Museum “Sergej Maštra” Piran, Museum of the Working World, Archaeological museum of Istria, Thuringian Museum of Pre- and Ancient History, Archaeological Museum in Krakow.

악을 보완

### 3) 모두를 위한 설계/접근법 가이드라인 (Design for ALL)

- 「유럽 접근성법」 적용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유럽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아일랜드 표준연구소에서 Design for all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EU접근성법 적용을 위한 유럽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유럽의회는 「유럽 접근성법」 제정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 제조에 대한 접근성 기준으로서 아일랜드에서 만든 기준을 채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접근성 법에 해당하는 제품과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
  - 유니버설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통용이 가능한 서비스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생산자들을 위한 가이드로 볼 수 있음
  - 본 가이드에서 보는 접근성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제품, 상품,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장벽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모두를 위한 설계 접근법은 단순히 제품 제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제품과 서비스 생산 시 필요한 조직 운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룸
  - 모두를 위한 설계 접근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인간 다양성을 고려하였음. 이 접근 방식은 조직의 혁신에 영감을 주어 경영진이 포용적이고 경직되지 않는 사고방식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지원하도록 함
  - 특히 최적의 운영 및 활동을 통해 운영 부서가 접근 가능한 제품, 상품 및 서비스, 즉 본 가이드에서 말하는 '접근성 높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도구와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조직이 장애인을 포함하여 가장 광범위한 사용자가 제품,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 이해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개발 및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함
  - 본 가이드는 제품의 기술 설계 사양 등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설계의 균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제품과 서비스 설계를 위해 필요한 조직 운용의 방안을 제시함
  - 즉, Design for All에 의해 실현된 제품, 상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은 모든 사용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모든 조직이 이 접근 방식을 통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그림1-4〉 제품, 상품 및 서비스의 설계, 개발 및 제공을 위한 모든 접근 방식에 대한 설계 체계



출처: <https://www.nsai.ie/about/news/a-design-standard-that-works-for-all/>

#### 4) 기타: EU 기금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

- EU 기금 프로그램은 공동 자금을 조달하고 장애인의 문화생활 접근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있음
  - 장애인 카드: 2016년 EU 장애인 카드(EU disability card)는 8개 회원국에서 시범 운영되었음. 이 카드는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접근과 주로 문화 장소, 시각 및 오디오 가이드, 수화 투어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재정적,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유럽의 구조 및 투자 기금은 문화 유적지와 건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음. 특히 휠체어 사용자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는 오래된 극장이나 박물관에 투자 기금을 통하여 물리적 접근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Horizon 2020 프로그램(The Horizon 2020 programme)은 번역 소프트웨어 및 수화 아바타에 대한 아치 프로젝트(the Arches project)에 공동 자금을 지원함. 청각 장애인들이 컴퓨터 데이터 베이스와 애니메이션 수화 아바타를 사용하여 박물관에 전시된 예술 작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도록 함
  - EU의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은 예술에 의한 관객 블렌딩 프로젝트와 장애가 있거나 없는 관객과 예술가들이 동일한 문화적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인 앤 사운드 극장 프로젝트에 공동 자금을 지원하였음
  - 유럽 비욘드 액세스 프로젝트(Europe Beyond Access project)에 공동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적인 여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장벽에 직면한 장애인 예술가들을 지원함

## 2. 프랑스

### 가. 법제도 및 정책 개관

- 프랑스 장애인 관련 법제도와 정책은 복지국가와 국가 연대(la solidarite nationale)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
  - 19세기 산업재해법(1898년)은 장애인에 대한 원조(l'assistanat) 성격을 강조하였으나, 20세기 들어서 산업재해와 상이군인 등의 영역에서 피해보상 받을 권리로서 장애를 다룸
  - 1975년 「1975. 6. 30.자 제75-534호 법률」(이하 1975년 장애인 법) 을 통하여 국가의 장애인의 통합 의무(l'intégration des personnes handicapées)를 명시하였음
  - 1980년대 후반에 장애인 사회통합 정책은 더 다양한 법률에 반영됨.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1987. 7. 10.자 제87-517호 법률」(102)도 이 시기에 제정되는데, 동 법률은 창설 당시 종업원 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규모의 사업장은 최소 6%의 종업원을 장애인 등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였고, 이는 노동법전 (Code du travail)에 편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
  - 이 시기에는 「거주지, 직장,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는 1991. 7. 13.자 제91-663호 법률」(103)이 제정되기도 하였음. 또한 「자폐장애에 관한 1996. 12. 11.자 제96-1076호 법률」(104)이 제정되어 교육, 치료, 사회 등 여러 영역에서 자폐장애인의 필요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프랑스에서의 장애인 관련 법제도는 2005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었으며, 장애인 접근성 특히 문화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이 시기부터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음
  - 2005년 1975년 장애인 법을 모범으로 한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2005. 2. 11.자 제2005-102호 법률」(이하 「2005년 장애인 법」)이 통과됨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재편됨
  - 특히 프랑스에서 장애인을 위한 문화적 접근성에 대하여 2005년 장애인 법이 그 방향성과 법적 규제의 기준이 되었음. 문화부는 장애인을 위해 건설될(될) 환경에서의 접근성 조성을 위한 훈련을 의무화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하여 관련된 학위, 자격증을 신설 및 목록화 하고 확정함. 추후 국립 건축학교에서 해당 과정을 학과 과정 내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 2006년부터는 문화기관 및 문화 분야 전문가들이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부터 문화분야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분야별로 발간하고 있음
- 「2005년 장애인 법」을 계기로 시청각 자료 및 매체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원칙 생김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2005년 장애인 법」에서 '법률이 발표된 후 최대 5년 이내에 광고 메시지와 특정 프로그램의 특성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주요 채널의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절한 조정(le principe général d'adaptation) 을 반영해야한다는 한다(자막 처리 등)는 일반 원칙을 명시하였음
  - 최근에는 '시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사용에 의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조정'에 관한

조항들이 도입됨(시청각 통신에 관한 법률 제2009-258호)

- 프랑스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은 ‘접근성의 보편화’(l’accessibilité universelle)를 원칙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프랑스의 장애인정책의 초점은 장애인이 어떤 장애를 가졌든 그 장애인이 주변 환경에서 맞닥뜨리는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근성을 보편화하는 데에 있음. 특히, 프랑스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은 ‘접근성의 보편화’(l’accessibilité universelle)를 원칙으로 삼고 이를 목표로 함
  - 즉, 비장애인이 누리는 환경, 물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장애인도 동일한 수준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이를 특별히 요청하지 않아도 제도나 건물 등의 설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접근 가능한 보편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프랑스 장애인 문화접근성을 총괄하는 프랑스 문화부의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 문화부는 접근성과 문화부가 관여하는 접근성의 영역은 다음과 같음
  - 부처 간 정의에 따르면 접근성은 ‘생활단위의 도시, 또는 지역 내에서 개인의 가능성, 기술 및 능력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자원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는 것임’
  - 문화통신부에서 보는 접근성의 영역은 다음을 지칭함
    - ① 장소에 대한 접근: 건축과 환대의 문제로 건물
    - ② 문화 산업 제품, 작품 및 지식에 대한 접근 : 시노그래피, 문화적 기획의 각색, 기술적 장치 및 인간과 문화 예술의 매개
    - ③ 문화유산과 지식에 대한 접근 : 문화적 제공, 인적 매개활동, 적절한 경우 보상 조치의 적응 문제. 대중을 문화적 실천의 행위자로 만들어서 대중이 이 유산을 인식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전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④ 정보 접근, 사고 도구, 비판적 담론, 문화 교류, 시민 담론정보 통신 매체 적응, 언어 학습 및 숙달 문제
    - ⑤ 배우로서 예술적 활동에 접근: 전문적인 예술 활동과 기술 장치 제공과 관련된 커리큘럼 및 학습 기술 적응/예술 아마추어 및 취미 활동/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제공과 관련된 문화 매개 활동
  - 이와 같은 장애인 접근성 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문화 전문가 양성과 이용자 정보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음
  - 접근성의 문제를 구현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물리적 접근성 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접근해야함을 강조함. 특히 문화시설 기반과 관련하여 2005년 제정된 장애인 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축 환경의 접근성은 법적 의무이며, 동등한 권리와 기회, 장애인의 시민권 참여를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하는 환경, 여건, 조건으로 보고 있음

## 나. 장애인 접근성 주요 법제도 및 정책

### 1)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법」(2005)

- 2005년을 기점으로 프랑스 장애인 정책의 큰 변화를 이끈 법률적 기반
  - 프랑스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인 법률로는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2005. 2. 11.자 제2005-102호 법률」(이하 2005년 장애인법)이 있음
  - 2005년 장애인법은 총 8개의 부(제1부 총칙, 제2부 장애의 예방, 연구 및 돌봄, 제3부 장애인연금 급여 및 자원, 제4부 접근성, 제5부 장애인 신청, 정보, 판정 및 장애인권리인정, 제6부 장애인의 시민권과 사회참여, 제7부 기타규정, 제8부 경과규정)와 101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음. 동 법률은 장애인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을 다룬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치가 필요하였음
  - 상원은 동 법률의 제정 후 7년이 지난 2012년 시점에서 이를 평가하면서, 규칙제정의 측면에서는 220여 개의 하위법령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목표의 99%가 달성되었다고 보았음. 동 법률은 이처럼 방대한 영역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크게 다음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장애에 대하여 의학적 접근이 아닌 환경적 요소를 강조함
  - 2005년 장애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장애”(un handicap)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인지적 또는 심리적 기능이 중대하게, 지속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됨으로 인해, 다중장애로 인해, 또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건강문제로 인해, 한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한계 또는 사회생활 참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한”이라 정의함. 프랑스 상원은 동 조가 장애를 규정함에 있어 엄격한 의학적 접근을 벗어나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음
  - 2005년 장애인법은 제47조에서 장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시설법인 (l'établissement public)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뿐 아니라, 접근방식(인터넷, 휴대전화, 등)과 조회방식(전자파일 다운로드, HTML 웹페이지 등)을 불문하고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을 의미함. 동 조는 인터넷 접근성에 관한 국제기준(EU 지침 2016/2102119) 제6조)도 적용하여야 함을 언급함
  - 2005년 장애인법은 장애인 자택 돌봄, 지역사회에의 통합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건물과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의무를 제41조 내지 제54조에서 ‘공역무’라고도 번역되는 프랑스의 공공서비스(le service public)의 대상은 그 성격과 그에 따른 적용 법률 체계에 따라 행정적 공공서비스와 상공업적 공공서비스로 나뉨. 행정적 공공서비스의 예로 중고등학교, 대학교, 박물관, 공공병원 등의 운영을 들 수 있음. 행정적 공공서비스는 거의 전적으로 행정법의 지배를 받는 데에 비해, 상공업적 공공서비스에서 사업자는 이용자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며 공공서비스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음
-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의무를 일상생활 전반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문화시설로 대표되는 대중에

게 개방된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목표 달성 의무를 명시함

-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의무는 일상생활 전반의 다양한 장소와 영역, 즉 공중에 개방된 시설, 직장, 주택, 교통수단, 도로, 학교, 공공서비스, 여가활동 등에 부과됨(이 가운데 교통수단에 관한 내용은 아래 ‘다.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 상술함)
- 2005년 장애인법 제41조는 “대중에 개방된 시설”(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RP. 이하 ‘대중개방시설’이라 약함)과 “대중에 개방된 설비”(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IOP. 이하 ‘대중개방설비’라 약함)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대중개방시설의 등급에 따른 차등 목표를 설정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2015. 1. 1.까지)에 접근성 목표를 달성할 것을 규정하였음

## 2) 대중개방시설의 접근성(L'accessibilité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원칙과 관련 법령

- 2005년 장애인 법에 따라 대중개방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물과 새로 지어지는 건물 등에 적용되는 개방성과 접근성의 원칙 수립 적용함
  -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장애의 종류에 상관없이 접근성이 뛰어난 시설과 건물을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임을 강조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대중개방시설의 접근성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 해당되는 대중 개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모든 종류의 상업시설, 전문시설(병원, 약국 등), 바, 호텔, 식당, 은행과 부동산등의 중개업소, 공공 서비스 기관,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기관, 건강관련 시설, 극장,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 및 미술관, 축제 공간, 콘서트 공간 등을 포함한 문화 시설
- 「2014. 9. 26.자 제2014-1090호 오르도낭스」(이하 「2014년 오르도낭스」)
  - 「2014년 오르도낭스」는 대중개방시설 접근성 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달성하는 목표가 2015년까지 달성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제정된 것으로서 접근성 규범을 단순화하는 동시에 명시화하는 역할을 함. 또한 「2014년 오르도낭스」는 ‘접근성 계획 아젠다’(Agendas d’accessibilité programmée, Ad’Ap)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대중개방시설(ERP) 운영자에게 접근성 계획 아젠다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접근성 기준 충족 기한을 연장해주었음(3년 내지 9년)
- ‘접근성 계획 아젠다’(Agendas d’accessibilité programmée, Ad’Ap) 제도
  - ADAP는 2014년 9월 26일 조례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2014년 11월 5일 법령 제 2014-1326호에 의해 명확해짐
  - 이 계획은 접근성 규칙 준수를 위해 건설하는 당사자가 수립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접근성을 수행할 변경사항의 정량화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작업 일정을 수립하는 것임. 즉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고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지정된 기간(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3년) 내에 작업을 수행하겠다는 이행계획에 해당함

## 다. 문화 활동 및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 연구 및 사업

### 1) 접근성을 위한 문화시설 네트워크(La Réunion des établissements culturels pour l'accessibilité, RECA)(2003~)

- 2003년 모임 발족을 시작으로 2005년 제정된 장애인 법에 기초하여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로서 운영됨
  - 2003년 3월 28일, 문화부 장관은 그것의 공공 기관에 단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시설 수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할 것을 요청하였음. 이를 기초로 2005년 장애인 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8년 '접근성을 위한 문화시설 회의'(RECA)를 통하여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표 모임을 수행함
  - 2018년 기준 문화부의 22개 공공기관, 다른 부처의 후원을 받는 6개 공공기관, 2개 지방자치단체 등 32개 기관이 네트워크 형식으로 참여함
  - RECA 임무는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의 운영을 검토하고 모범 사례 공유를 촉진하며 모든 수준의 접근성 개선(건축, 편집, 컴퓨터 및 기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수칙 또는 원칙을 개발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시각 장애; 특히 방문 지원 문서에 픽토그램 사용; 청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경보 및 정보 장치;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접근성; 장애인의 수용에 대한 직원의 인식. 작업 그룹은 문화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안내 책자를 만들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문화시설 신기술 도입에 대한 시범적 적용: 장애인 방문객을 위한 신기술의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네트워크 활동의 주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음. 네트워크에 속한 기관들은 청각, 시각 및 응용 분야에서 문화 시설의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함. 예를 들어 "픽아웃"과 "오디오스팟"과 같은 위치 지정 방식, 안내 및 정보 장치를 시험하여 문화 장소에서의 접근성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이 접근성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효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접근성 계획 아젠다'(Agendas d'accessibilité programmée, Ad'Ap) 제도를 위한 아젠다 제작을 위한 시범적 적용: RECA 회원들을 대상으로 Ad'ap을 작성을 권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특히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접근성을 위한 시범 적용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협의에 대한 부분도 RECA 네트워크 기관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
  - 장애인 관람객 대상 탐색적 조사 실시와 관련 연구 수행: RECA에 속한 기관(12개)을 대상으로 장애인 매개 전문가와 문화 시설의 공공 설문조사 전문가를 통하여 장애인 관람객(또는 이용객)에 대한 문화시설 (박물관, 기념물, 도서관)이용에 대한 다양한 탐색적 조사를 진행함
  -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문화이용 행태를 더 잘 알게 되고 적용된 중재 시스템과 문화 시설에서 제

공하는 제안에 대한 그들의 수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함

- 탐색적 조사 방법을 통하여 장애가 있는 직접적인 이용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장애에 대해 구현된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 설문 조사 방법론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함

## 2) '모두를 위한 유산'상 (Le Prix 'Patrimoine pour tous')(2011~)

- 2011년에 제정된 Heritage for All상은 매년 운동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반화된 접근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한 곳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제도임.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 시설 내 자율적인 장애인 방문 가능성 보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포상으로 50,000유로의 상금이 수여되며 제정 이후 30개의 유산 시설에 상이 수여됨
- 평가 주요 기준: 일반화된 접근성에 대한 글로벌 접근 방식의 접근/온라인 정보 사이트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표준에 대한 고려사항/문화 정책 및 포용적 매개 활동과 관련한 건축 환경의 접근성/장애인을 대표하는 다양한 협회와의 파트너십의 존재 또는 개발/장애인을 보호 및 보육 시설과 함께 수행되는 조치의 이행/장애인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도구와 자원 개발

## 3)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라인 발간(2007~)

-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1993년 UN에서 선포한 장애인에 대한 평등 조항의 원칙의 후속으로 2005년 장애인 법 제정 이후, 2007년부터 문화부문에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일련의 현장가이드 북을 발간함
- 2007년 <문화와 장애: 접근성의 실제>, 2009년 <라이브 공연과 접근성>, 2010년 <정신 장애와 문화시설>, 2016년 <전시 및 전시장방문 동선 접근성>, 2018년 <영화관과 접근성>, 2020년 <접근 가능한 예술 교육: 무용, 음악, 연극 실용가이드>을 발간하였음
- 본 지침서들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 또한, 장애 해소를 통하여 문화예술을 누리고 즐기는 데 있어 보다 많은 대중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함. 최종적으로는 문화향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더 많은 잠재적 관람객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각 지침은 2005년 장애인법으로 의무화된 대중개방시설 접근성 원칙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 기초하면서 각각의 예술활동의 특성, 그리고 예술 향유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시설 설치 매뉴얼인 동시에 문화적 접근성에 각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 지침서라고 볼 수 있음

## 4) 프랑스 상원 문화교육통신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제안(2017)

- 2017년 7월 26일 프랑스의 장애인 관련 법령 제정 10주년을 맞아, 상원 문화교육통신위원회가 2016-2017 특별회기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상원 보고서 n° 648 (2016-2017) <문화와 장애 :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건 (Culture et handicap : une exigence démocratique)>을 발간함
- 동 보고서는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관련 정책과 현황 조사, ▲장애인의 문화예술 분야 참여 현황 파악 및 ▲정책 제언을 주 내용으로 함
-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향상하고 관련 법적 취약점과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7개 주제 하에 총 20개 제안함
- 7개의 주제는 장애인의 예술창작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수용 정책 수립, 장애인 관련 정책 정보접근성과 가독성 증대, 관련 교육의 중요성, 장애인 문화접근성 문제의 확장 등임

## 〈표1-40〉 프랑스 상원 문화교육통신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제안사항

- |   |
|---|
| <p>가. 사회 내 장애인의 가시성 증가 및 사회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장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관심 및 배려 증대</li> <li>2.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장애인의 가시성 증대 및 긍정적 이미지 확대</li> </ol> <p>나. 공공정책 수립 시 장애인 관련 문제 고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정부조직 재구성과 각부처간 협조를 통해 장애인 관련 문제를 다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4. 법령 제정 시, 구상단계에서부터 장애인 관련 문제를 고려하여 기술적 실행안 마련에 어려움이 없게 할 것</li> <li>5. 보다 많은 장애인과 관련 단체가 공공정책을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할 것</li> <li>6. 장애인의 의견을 한층 더 수렴하기 위해 관련 협회나 연맹의 설립을 장려할 것</li> </ol> <p>다. 장애인의 예술창작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공공지원을 보장할 것</li> <li>8.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공정책의 가독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것</li> <li>9. 공공문화기관의 예산 배정과 성과 목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보다 많은 장애인의 수용을 명시할 것</li> <li>10.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할 것</li> </ol> <p>라. 장애인 수용 정책 수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우선시 할 것.</li> <li>12. 의료기관 입원자의 문화 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실행안을 마련할 것</li> </ol> <p>마. 장애인 관련 정책 정보접근성과 가독성 증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 접근경로를 구현할 것</li> <li>14. '문화와 장애' 주제로 한 국가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정책 관련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홍보할 것</li> <li>15. 문화기관 및 공공조직의 인터넷 사이트 접근성 향상할 것</li> </ol> <p>바. 관련 교육의 중요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문화접근성의 중요성을 교육할 것.</li> <li>17. 문화, 건축, 디자인 등 관련종사자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고취 및 교육기관에 감독관을 파견할 것</li> <li>18. 초중등교육 및 언론,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와 관련된 교육을 확대할 것</li> </ol> <p>사. 장애인 문화접근성 문제의 확장 (구체안 제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 보다 유리한 요금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기관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li> <li>20. 직업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li> </o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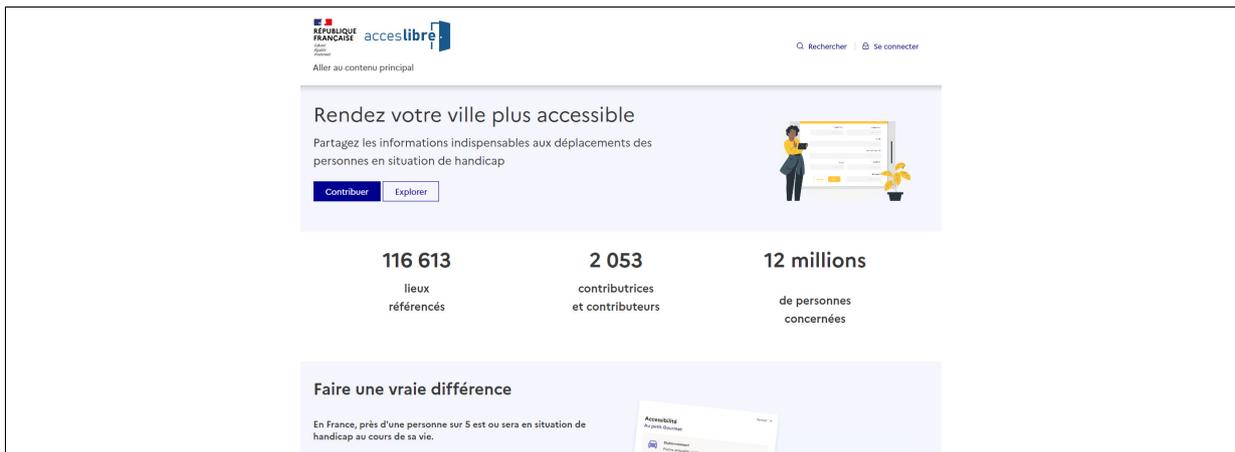
출처: 해외문화홍보원(2017), 프랑스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 법적 권리 현황과 개선 방안.

## 5) Acceslibre/Access culture 장애인 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 사이트

### ○ 공공: 대중개방시설 정보 공유 사이트 Acceslibre

- 프랑스 정부에서 운영하는 Acceslibre는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대한 접근성 정보를 나열하는 공개 웹사이트로, 장애에 관계없이 외부 활동 및 장소 방문을 계획하는 장애인에게 필수적 정보를 제공함
- 본 사이트는 일반인 참여가 가능하며, 오픈 지식백과식의 지식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픈 데이터로 관리됨. 즉 정보의 복제와 활용이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누구나 정보 제공차원에서 기여하고 대중개방시설(ERP) 방문 후 acceslibre에서 파일을 완성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대중개방시설(ERP)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경우 acceslibre에 대해 자신의 시설에 알릴 수 있는 홍보처로도 활용 가능함. 즉 acceslibre에서 또는 시설 자체 웹 사이트에서 직접 접근성 정보를 홍보하여 고객을 확장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그림1-5〉 Acceslibre/Access culture 장애인 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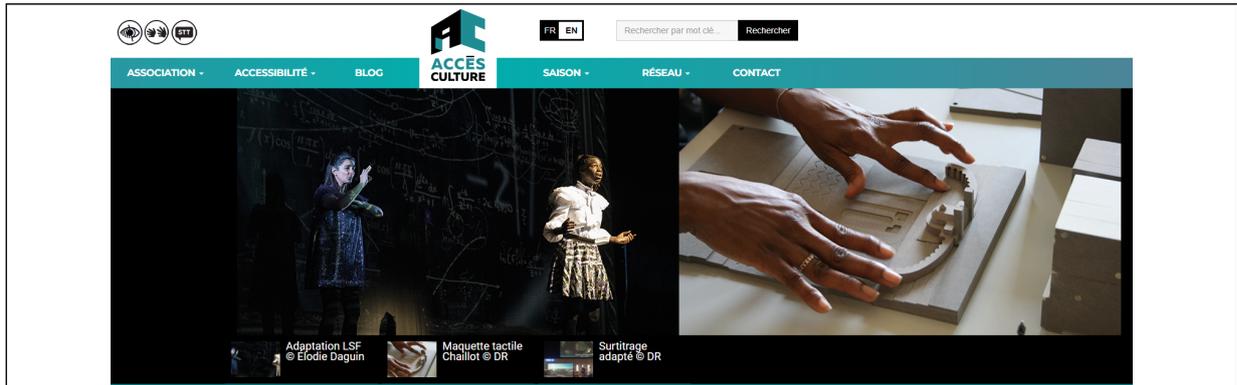


출처: <https://acceslibre.beta.gouv.fr/>(2023.01.10 접속기준)

### ○ 민간: 문화시설 장애인지원 서비스 정보 사이트 AccessCulture

- AccessCulture 협회는 프랑스의 140개 이상의 극장과 오페라와 협력하여 오디오 설명을 통해 시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과 LSF(프랑스 수화) 적용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라이브 공연 접근성 서비스를 구현함
- AccessCulture 활동이 시작된 1990년 이후, 문화시설에서의 대중들에 대한 접근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문화적 접근성 서비스를 지원해옴. 또한 관람객들에게 적합한 관람 환경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이를 적용하여 다양한 문화적 매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협회임
- 2006년 오랑쥐 재단의 지원과 함께 프랑스의 19개의 오페라 극장에서 순회공연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Access Culture의 네트워크가 확장하게 되었음

〈그림1-6〉 문화시설 장애인지원 서비스 정보 사이트 AccessCulture



출처: <https://accessculture.org/>(2023.01.10 접속기준)

### 3. 영국

#### 가. 법제도 및 정책 개관

-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예술정책의 발전과정 및 예술운동 전개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활동과 성과를 보였음. 초창기 영국의 장애인 예술의 치료가 목적인 예술 활동과 예술 요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신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이후 장애인들이 예술인, 참여자, 관객으로서의 평등권을 찾기 위한 사회운동의 맥락으로 전개되었음
- 1995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제정되면서 극장과 미술관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책무를 부여받게 됨
- 2010년 제정된 영국 평등법 2010(Equalities Act)은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흩어져있던 116개 이상의 관련 조항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여 차별금지법 (Equality Act 2010)을 제정하였음. 성, 종교, 인종, 연령 등에 관한 다른 법률들과 함께 장애인 차별금지법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역시 차별금지법으로 통합되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직접 차별을 금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영국 평등법은 간접차별과 복합차별의 규제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차별 입증에 대한 조항도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영국 장애인 문화예술 운동에 영향을 미쳐서 장애인 주도의 예술단체 및 옹호그룹의 증가, 정부 지원의 확대,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등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옴
-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에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었음. 공연이나 행사에서 수어 통역이 일반화되었으며, 공연에 자막을 도입하여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할 수 있었음. 또한, 오디오 가이드와 촉각 투어들이 도입되어 시각 장애인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었음
- 영국의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로 문화예술활동에 장애인이 진정으로 통합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중앙정부의 문화미디어체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음. 주 기능은 정책영역에 집

중되어 있으며, 집행기능은 왕궁관리청 등 45개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의해 수행하도록 함

- ACE는 평등법(Equality Act)에 기반 하여 장애예술전문자문위원회(Disability Reference Group)를 구성해 체계적인 장애평등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을 수립하여 시행 중으로 모든 장애인이 예술가, 참여자, 직원으로서 모든 종류의 예술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ACE는 1980년대 장애인을 위한 예술정책을 수립한 바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예술정책의 주요한 목적으로 4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음. ① 국민복권의 자본 프로젝트(capital project)를 통해 건물 신축 및 개축과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대신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② 장애인을 위한 뉴딜정책(Government's New Deal for Disabled People)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예술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③ 예술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자격과 기회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④ 예술분야의 장애인에 관한 현황조사를 통해 예술분야의 장애인에 대한 현황파악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나. 장애인 접근성 주요 법제도 및 정책

### 1) 평등법(Equality Act)(2010)

- 영국의 차별은 대부분 「Equality Act 2010」(이하 「평등법 2010」)을 기준으로 판별되며, 다양한 장애인 관련한 기준은 본 법을 근거로 법제도가 설계됨
- 「평등법 2010」은 법적용(30.9.2020)이후 1차 개정(30.9.2020), 2차 개정 (31.3.2021), 3차 개정(20.08.2021)을 진행하였음
- 직접 차별(direct discrimination), 간접 차별(indirect discrimination), 괴롭힘(harassment), 희생화(victimisation) 등으로 차별의 주요유형을 구분하고, 각 행위에 대한 고용주 등의 조치방안 등을 법해설에 구체적으로 설명함
- 합리적인 조정(Reasonable adjustments)을 통해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함
  - 합리적 조정의 구체적 상황과 실례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위반이 일어났을 때 조치사항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배포할 만큼 법의 효과성 담보에 대한 영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합리적 조정에 필요한 거의 모든 조치는 타법 혹은 하위법령, 규약, 표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웹 접근법(Web Accessibility Laws)의 실질적인 적용의 근거
  - 웹 접근법(Web Accessibility Laws):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웹사이트 접근성을 다루기 시작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온라인으로 실제 확대된 것은 평등법 2010(EQA)에서였으며, 평등법에서 웹사이트가 동등한 액세스 및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명시됨
  - 영국 인권위원회(The U.K. Human Rights Commission)는 웹사이트를 서비스로 정의할 때 법

정 행동강령을 강조함

- 영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등 및 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가 이 법률을 시행하며, 아일랜드에서는 Taoiseach 및 정부 정보 서비스 부서가 시행함
- 포용적 디자인에 대한 영국 표준(British Standards for inclusive design)
  - 표준의 권장 사항은 주로 새로운 개발 작업에 적용되지만, 기존 건축 환경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평가하고 실행 가능한 경우 개선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음
  - 대중교통 차별 가이드(Public transport discrimination guide): 장애인의 경험이 차별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차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필요한 서식, 증거 및 출처 등)의 수집에 필요한 실용적인 팁을 제공
  - 「평등법 2010」은 버스, 기차, 지하 및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으며 장애인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함
- 역사적 건물에 대한 접근권(Easy Access to Historic Buildings)의 명시
  - 대부분의 역사적인 건물의 생존은 지속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용에 달려 있으며 무엇보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민감한 변경은 특정 건물을 특별하거나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함. 그것의 독특한 물리적 특징, 배치와 상대적인 완성도, 건축의 재료와 방법, 또는 특정한 성격 및 사건과의 연관성에서 중요성이 생길 수 있음
- 정당한 편의와 관련된 정책들
  - 블루 배지 제도(Blue Badge Scheme): 장애인 승객 또는 운전기사를 위한 제도로써 가려는 목적지 근처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
  - 섹터 챔피언(The Sector Champions): 다양한 분야와 비즈니스를 대표하며 해당 분야의 리더로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품질 개선을 주도
  - 커뮤니티 챔피언 제도(Community Champions scheme): 장애인, BAME 커뮤니티, 노인, 신앙 단체 및 접근이 어려운 이들 등 더 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MHCLG(The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이 Covid-19 전염병 동안 수행할 목적으로 수립한 계획

## 2) 건축물 규정 Part M(2004/2015)(Part M of Building Regulation)

- 영국에서 대부분의 건축 작업에는 건축 규정 승인이 필요함. 건축 규정은 정부가 모든 건물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임. 건축법 1984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따라야 할 건축 규정을 정의하는 반면, 건축(스코틀랜드)법 2003은 스코틀랜드의 건축 규정을 규정함

- 건축 규정은 "구조", "배수", "화재 안전", "접근"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다루는 14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알파벳 문자로 지정됨. 건물 규정의 파트 M은 건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해 다룸. 건물 규정 파트 M은 모든 건물이 건물 내 모든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순환 시설도 포함됨
- 파트 M(Part M) 건물 규정의 기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파트 M, 건물 규정에 명시된 '건물 접근 및 사용' 요건은 세 가지 주요 사항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건물의 모든 부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모든 사람이 위생 편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건물에 많은 청중을 위한 좌석 배치가 가능한 경우 장애인을 위한 좌석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함
- 건물 규정 파트 M -승인된 문서:
  - 건물 규정의 파트 M을 포함하여 각 범주에 대한 자세한 사양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사양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문서(Approved Document)라고 함. 승인된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건축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준에 대한 주 장관의 기대를 대변한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함
  - 승인된 문서를 따르면 건축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됨. 승인된 일부 문서에는 정확히 따라야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이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계산, 수행할 테스트 등에 사용되는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승인된 문서에서 다루는 측면의 예는 다음과 같음: 건축 작업/재료용도 변경/재료 및 솜씨/에너지 효율 요건/작업의 통지
- 2015년 판 건물 규정 파트 M은 주거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더 나누고 정의 하였음. 이 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모든 건축 작업에 적용되었음
  - 문화시설과 같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의 경우 건물 규정 파트 M에는 다양한 액세스 요구 사항이 나열되어 있음
    - ① 거주지 이외의 건물에 대한 접근 - 이것은 경계 및 CA 주차, 계단 및 경사로 접근 등의 영역을 다룸
    - ② 건물로의 접근 - 접근 가능한 출입구, 전동 및 수동 작동문, 로비, 유리 출입구 등의 요구 사항이 나열됨
    - ③ 건물의 수평 및 수직 순환 - 입구 영역, 리셉션 홀, 내부 로비, 수직 순환, 승객 승강기, 내부 경사로 등을 포함
    - ④ 건물 내 시설 - 다과 시설, 취침 시설, 관객석 및 관객 시설 등이 이 섹션에서 다룸
    - ⑤ 건물 내 위생 시설 - 화장실,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화장실 및 샤워 시설, 별도의 남녀 화장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 이 섹션에 나열되어 있음

### 3) 포용적 설계에 대한 영국 표준(British Standards for inclusive design)(2005/2018)

- 영국 표준 BS 7000-6:2005 '포용적 설계 관리 가이드'는 모든 민간 기업, 공공 부문 및 비영리 단체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요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구조를 제공함
  - BS 7000 Part 6은 설계 관리 시스템에 대한 BS 7000시리즈의 일부이며, 포괄적 접근 방식이 궁극적으로 비즈니스와 관리의 전체를 포함하지만 조직 및 프로젝트 수준 모두에서 포괄적 설계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BSI의 실천 강령 BS 8300은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물의 설계 및 접근 방식에 대한 모범적인 실천 지침을 제공함. 장애인들이 구내와 주변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을 예상하고 극복하기 위해 구축된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설명함
  - BSI는 다음과 같은 건물에 적용됨: 교통 건물/산업 건물/관리 및 상업용 건물/보건복지관/다과,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건물/종교 건축물 및 관련 시설/교육, 문화 및 과학 건물/주거용 건물(예: 양로원, 주거 및 요양원, 학생 숙소, 아파트 블록의 공용 부분)/일반 대중이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구조물
  - BS 8300은 새 건물의 설계와 기존 건물의 개선 기준으로 접근성과 사용성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표준은 지속해서 개정 및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2018년 접근할 수 있고 포괄적인 외부 환경의 설계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새로운 파트 2가 제시됨

### 4) Inclusive Design Strategy (Olympic Delivery Authority 2008)

- 2012년 런던 올림픽 준비를 위하여 영국 전역에 포용적 디자인 설계에 대한 전략 적용이 됨
  - 올림픽 개최 도시인 런던시의 다양한 도시의 디자인에서부터 다양한 공간이용 등에 대한 포용적 준비의 기준으로서 포용적 설계 전략이 수립됨
  - 포용적 설계(Inclusive Design)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환경, 건물, 교통을 설계, 건설, 관리하는 방식에서 철학적, 태도적, 절차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으로 봄. 어떤 것이 포괄적일 때, 모든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고, 자신감 있고, 독립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위해 이러한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영국은 포괄적 디자인의 개선된 표준에 대한 현대적 벤치마크를 설정하도록 함. 국제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IPC)는 접근 및 포함에 관한 IPC 기술 매뉴얼에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이 지역의 런던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포용적 디자인과 접근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함
- 영국 건축 및 건축 환경 위원회(CABE)는 포괄적 설계의 5가지 원칙을 통해 포괄적 설계를 명시 하였음
  - 설계 프로세스의 중심에 인력을 배치한다

-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한다
  - 단일 설계 솔루션이 모든 사용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선택권을 제공한다
  - 사용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즐거운 건물과 환경을 제공한다
- 이러한 CABE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ODA(Olympic Delivery Authority)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포괄적: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쉽고,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응력: 사람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유연성: 다양한 사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함: 너무 큰 노력이나 분리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용: 연령, 성별, 장애, 신앙 또는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서비스
  - 환영: 일부 사용자를 배제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는 경우
  - 현실적: 모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이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하나의 솔루션이 모든 사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 5) 웹 접근법(Web Accessibility Laws): 공공 부문 기관(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2호) 접근성 규정(2018)

- 1995년부터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2010년 평등법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2018년 공공 부문 기관에 대한 접근성 규정이 구체화함
-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웹사이트 접근성을 다루기 시작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온라인으로 실제 확대된 것은 평등법 2010(EQA)에서였으며, 평등법에서 웹사이트가 동등한 액세스 및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명시됨
  - 접근권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은 법적 접근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려는 방법으로 전 세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음
  - 2018년 공공 부문 기관의 경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에 관한 EU 지침이 공공 부문 기관(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No. 2) 접근성 규정 2018(접근성 규정)로 영국에서 시행되었음
  - 접근성 규정은 EQA에 따라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기존 의무를 기반으로 하며 모든 사용자, 특히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법적으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0 및 2.1 에 명시된 다음

##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인식 가능: 정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사용자는 제공되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감각에 보이지 않아야 하므로 콘텐츠가 시각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함
  - 작동 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 및 탐색이 작동 가능해야 함. 이는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작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수행할 수 없는 상호 작용(예: 마우스를 사용하여 탐색할 수 있음)을 요구할 수 없음
  - 이해 가능: 사용자는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작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내용이나 작동이 이해를 넘어서는 안 됨
  - 견고성: 콘텐츠는 보조 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가 안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해야 함
  - 모든 공공 부문 기관은 특수 상황에 의하여 해당 조건에 대하여 면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 부문 기관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조직이 포함되도록 함
- 중앙 정부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웹사이트를 조정하도록 함
- 모든 새로운 공공 부문 웹사이트는 또한 웹사이트 또는 앱 전체의 접근성 수준을 명확히 하는 접근성 성명한다고 게시해야 함. 접근성 설명에는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액세스할 수 없는 부분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접근성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연락할 사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공공 부문 기관이 접근성 설명을 게시하지 않거나 접근성 설명이 잘못되면 중앙 디지털 및 데이터 사무국에서 해당 기관의 이름과 결정 사본을 게시하도록 함
  - 정부 디지털 서비스(GDS)는 매년 공공 부문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샘플을 검사하여 공공 부문 기관의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 하도록 함. GDS는 정보를 요청하고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앱 또는 모든 공공 부문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음
  - 접근성 규정의 예외: 공공 부문 조직이더라도 변경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매우 제한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다음 조직은 웹사이트 장애인 접근성 의무 사항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자선 단체와 같은 비정부 조직/대부분 공적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중에게 필수적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조직/학교나 보육원은 부분적으로 면제됨.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교 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양식과 같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는 제외할 수 있음
  - 그러나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조직은 여전히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근성 설명을 게시해야 함

## 다. 문화 활동 및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 연구 및 사업

### 1)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 ■ 유럽을 넘어선 접근(Europe Beyond Access)

- 영국문화원이 주도하는 유럽 비욘드 액세스(Europe Beyond Access)는 장애인 예술가들이 현대 연극과 무용 분야의 유리 천장을 깨도록 지원하는 4년간의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예술 작품과 경력을 국제화할 때 장애 예술가를 지원하고 문화 관리자와 프로그래머 사이에서 지식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함
- Europe Beyond Access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예술 및 장애 프로그램으로 British Council은 Europe Beyond Access의 7개 조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주요 파트너임. 이 프로젝트는 유럽 위원회의 Creative Europe 프로그램에서 공동 자금을 지원함
- 핵심 파트너는 다음과 같습니다. British Council(영국 및 폴란드); 오나시스 스테기(그리스); 홀랜드 댄스 페스티벌(네덜란드); Kampnagel (독일); Per.Art(세르비아); Skånes Dansteater(스웨덴) 및 Oriente Occidente(이탈리아).
- Europe Beyond Access는 장애인 예술가들이 현대 연극 및 무용 분야의 유리 천장을 깨고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혁신과 경력을 국제화/최고 수준의 발표 및 위임을 약속하는 주요 주류 조직의 네트워크 개발/유럽의 장애인 예술가들의 고품질 혁신 작품에 관심을 가진 유럽 청중의 접근성 향상/더 넓은 공연 예술 시장에서 접근 가능한 도구와 저변 확대

#### ■ Time to Act: 장애예술 접근성에 관한 연구

- Time to Act는 유럽 전역의 공연 예술 분야의 문화 전문가들이 장애인 예술가, 장애인 예술 전문가, 장애인 관객들이 문화 분야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한 국가 간 네트워크 기반 연구임. 인터뷰, 기존 문헌, 보고서 및 지침 분석과 42개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한 일련의 심층 조사로 진행됨
- Time to Act는 문화 전문가들이 전문 장애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에 대해 배우고 발표하는 것을 막는 장벽을 탐구하고, 그들의 지식과 자신감의 격차를 파악하며, 누가 동등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됨
- 연구결과 중 주요한 내용은 공연 예술의 전문가들이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이 필요함을 확인함: 설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지식이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약 6명 중 1명은 2년 동안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지 못했다고 응답함
- 지식의 부족은 장애인 예술가들의 더 많은 작품을 지원하고 프로그래밍하는 데 있어 그들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48%의 응답자가 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예술 프로그램의 접근성에 대해 쉽지 않다고 응답함
- 이 보고서는 설문결과에 따르면 문화기관 관계자들은 장애인 관객을 위한 접근성에 대한 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인 관객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확산하여

있다고 보지 않았음. 특히 온라인 접근과 관련하여 프로비저닝(provisioning)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 조사 대상 장소와 축제의 19%만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고, 12%만이 접근 가능한 예약 절차를 가지고 있어 웹 접근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함

#### ■ ‘장애예술 인터내셔널’ 플랫폼(Disability Arts International)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이 운영하는 ‘장애예술 인터내셔널(Disability Arts International)’은 장애예술 관련 주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2013년 EU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인 ‘언리미티드 액세스(Unlimited Access)’와의 협력하에 만들어짐. 장애예술 인터내셔널의 목적은 ‘탁월한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단체, 포용적 예술기관들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예술기관의 관객이자, 방문객으로서 장애인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법을 공유함
- 창작자로서의 장애 예술인, 그리고 향유자로서의 장애인들이 다양한 예술적 활동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보, 뉴스 방법론 등을 널리 소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핵심. 비장애 예술계에서 장애예술 영역의 독특하고 새로운 접근이나 창의적 시도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두 영역(비장애+장애 예술계) 간에 상호 배움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영국 예술계 전반을 풍성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전제되었음

### 2) 잉글랜드 예술위원회(England Art Council)

#### ■ 모두를 위한 예술 달성하기(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

- 2010년 영국 예술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예술 달성하기(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를 보면,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와 방향성과 함께 핵심목표를 제시하였음
- 핵심목표 중 하나로 예술적 재능과 우수성 증진을 강조하여 예술가들의 성과를 촉진하고 예술적 지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조함. 더불어 수준 높게 훈련된 다양한 분야의 예술분야 리더와 전문인력 배출을 강조하고 있음
- 2013년 ACE가 발간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위대한 예술과 모든 이를 위한 예술(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 보고서에서는 가장 우수한 문화예술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문화적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 Let’s Create: Introducing Our Vision 2020~2030

- ACE는 2020년 향후 10년간의 예술지원 정책 비전서인 Let’s Create: Introducing Our Vision 2020~2030 발표하였음. 향후 3개의 핵심목표(outcomes)와 4개 원칙(principles)을 제시하였음
- 핵심목표는 ① ‘창조적 사람들’, ② ‘문화적 커뮤니티’, ③ ‘창조 및 문화적인 나라’로, 이들은 각각 ①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② ‘문화에 대한 협업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마을, 타운, 도시를 풍요롭게’ 만들며, ③ ‘혁신과 협업에 기반을 둔 잉글랜드의 문화 분야가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4개 원칙으로는 ‘Ambition & Quality’, ‘Dynamism’, ‘Environmental Responsibility’와 ‘Inclusivity

& Relevance'를 제시하였음

- 10년 전 발표된 예술지원 정책 비전서와 비교할 때 일상적 삶 속에서 예술에 대한 접근성 확장, 문화적 다양성 가치의 적극적인 반영과 구현이 전제되어 있음. 또한, 향후 정책지원은 한정된 몇몇 장소에서의 수월성이 아닌 모든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술 향유 기회가 발현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음

## ■ 평등과 다양성 계획(Equality and Diversity Plan) 및 가이드라인 제공

- 2010년 평등법 제정 이후, ACE는 예술지원과 관련된 “Equality and Diversity Plan”을 3년마다 발표하여 관련 의제들이 예술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을 강조. 가령 ‘2015-2018 Equality and Diversity Plan’의 경우, 다양성 관점에서 흑인과 소수인종 중심 기관과 장애인 중심 기관의 정의를 제시
- ACE의 NPO 지원을 받는 예술기관이나 박물관·미술관에 있어 이사회와 고위관리직에 있어 흑인과 소수인종, 또는 장애인 비율이 51%를 넘으면 인정함
- ACE의 지원을 받는 National Portfolio Organization의 기관운영에 평등(equality) 의제 반영을 위한 액션플랜 가이드 등도 책자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제공. 최근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Equality Analysis를 수행하여, 향후 중장기 계획(Let’s Create: 2020-2030)에 반영할 의제 도출을 시도
- 장애예술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에는 잉글랜드 지역 내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중 장애인과 관련된 실태 및 현황 분석 보고서 Making a Shift Report를 발간

## ■ 건물에 접근하기: 예술 및 문화단체를 위한 지침서(Building Access: A good practice guide for arts and cultural organisations)

- 영국의 평등법(2010)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이 법은 연령, 장애, 성전환, 결혼 및 동거,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 신념, 성별 및 성적특성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음
- 평등법을 통하여 서비스, 교육 및 고용, 건물과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시설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하며, 사람들의 예술과 문화를 창조, 참여 또는 누리는데 대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사회적, 제도적 장벽들이 있는데, 예술 및 문화 부분에서는 다양한 건물 유형에 따른 물리적 환경이 창의성, 참여 및 학습의 장벽을 만들고 있음
- 포용적인 환경 양식은 사람들이 건축 환경을 사용하면서 평등하며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아동기부터 성인까지 모든 능력과 장애에 걸쳐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함. 본 매뉴얼은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영역을 강조하며 예술 분야 및 단체를 위한 건물 출입구 양식에 대한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며 합리적인 접근기준을 제공하고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축 규정 및 영국 표준에 대한 설명

## 지침을 제시

- 건축 환경의 접근 제공기준 마련: 평등법의 장애 평등 의무에 따라 조직과 개인은 장애인이 서비스와 고용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물을 개조하여야 함. 따라서 비상구와 출입구 조정, 건물의 구조, 무거운 문, 접근하기 어려운 위생시설, 부적절한 조명,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너비와 높이 등을 수정할 것을 요구.
- 합리적인 고려방안 마련: 변경에 대한 효율성, 실용성, 비용, 조직의 자원 및 규모, 재정 지원의 가용성과 법률에 대한 조정으로 개선하였을 경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 적절한 승인절차 진행하여 방안을 제시

## 3) 기타: 박물관, 문화유산 접근성 관련

■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1997), Disability Directory for Museums and Galleries

- 영국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협의회<sup>26)</sup>가 발간한 지침으로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안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93년 처음 발행되었으나, 1997년 내용을 갱신하여 발간하였음
- 비장애 중심의 사회적 담론과 물리적 환경 등이 장애를 만들고 있다는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과 장애를 성별, 인종, 계급, 종교, 성적 지향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체성(identity)과 문화로 수용하는 소수자 모델(minority model of disability)을 지향하고 있으며 크게 세 파트로 구성
- 1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원칙과 관련 통계, 용어, 법률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박물관·미술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방향을 제시. 특히 접근성의 이슈를 세분화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원칙을 다양성(diversity), 포용적 실천(inclusive practi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책무성(Accountability)으로 제시하여 박물관·미술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함
-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실무 지침과 모범사례를 다룬 2장에서는 다음의 10개의 주제 분류를 통하여 주제별로 일반 지침과 세부 내용을 기술함. 3장에서는 참고자료와 관련한 사이트 및 연계 기관 등의 정보를 수록하여 현장에서 이 지침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함
- 접근성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박물관과 미술관이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모두를 위한 즐거움, 학습, 영감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임. 과정이 다양성을 인식하고 평가함으로써 직원, 자원봉사자, 방문객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보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를 촉진<sup>27)</sup>한다고 봄

26) 2012년 5월까지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없어진 비정부기구(non-departmental public body and registered charity in England)

27) MLA(1997) p.9: "The Directory shows that by dismantling these barriers museums and galleries can help to tackle social exclusion and become places of enjoyment, learning and inspiration for all. It also demonstrates that the process will promote a more positive and creative culture which, by recognising and valuing diversity"

- 본 지침서 이후 관련한 장애인 접근성 인식 제고를 위한 대중 지침서 발간, 박물관 및 미술관 접근성 평가를 위한 평가 지침 등을 통한 박물관 및 미술관 접근성 개선 노력이 이뤄졌음. 이를 기초로 개별 박물관 접근성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됨

## ■ 역사적 건물에 대한 쉬운 접근개선 가이드(Easy Access to Historic Buildings)

- 장애인 접근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역사적인 건물의 생존은 지속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용에 달려 있으며 무엇보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지침을 제시함
  - 역사적 유적의 경우 유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특정 건물을 특별하거나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함. 그것의 독특한 물리적 특징, 배치와 상대적인 완성도, 건축의 재료와 방법, 또는 특정한 성격 및 사건과의 연관성에서 중요성이 생길 수 있음
  - 이러한 지침은 역사적 건물에 대한 기회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리적 접근 문제에 초점을 맞춤. 반면 이러한 지침은 영국의 주요 장애인법과 건축물법에 기초하기 때문에 본 가이드는 보다 손쉽게 큰 건축적 변화 없이 접근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
- 더욱 현실적인 방식으로 문화유적을 훼손하지 않고 접근할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유적 및 시설 관계자들이 접근성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함
  - 물리적 장벽은 종종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지만, 해석 및 서비스의 개선은 문화유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 물리적 접근에 대한 불가피한 제한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상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장애인이 서비스와 고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조해야 할 경우, 현실적인 방식 등을 제시함
  - 지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1. 액세스가 중요한 이유
    2. 접근성 향상 계획
    3. 접근을 현실로 만들기
    4. 공개된 정보 출처
    5.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

## 4. 북미 : 미국 및 캐나다

### 가. 법제도 및 정책 개관

#### 1) 미국

- 19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권리장전으로 평가되면서 전 세계 국가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
- 장애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법률들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됨. 포괄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장애인 실태조사, 입법 준비 등을 위해 국가장애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86년 2월과 1988년 7월 위원회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함. 그 후 국가와 민간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이러한 타협을 반영한 수정안들이 마련되었으며 1990년 7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장애인법이 제정됨
- 이후 장애인법은 개정을 거치며 장애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 범위를 점차 확대하였으며, 현재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써 운용되고 있음
- 장애인법은 U.S.C. Title 42, Chapter 126에 규정되어 있으며,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과 5개의 Subchapter로 구성되어 있음. 서문은 입법의 배경과 목적(Findings and Purposes), 동법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임
-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을 기초로 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편의제공 관련, 공공시설의 접근성과 관련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 그 외 장애인 교육법, 통신법, 웹접근성 법, 비디오 접근성 등 개별 법 상에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 2) 캐나다

- 연방 차원에서 캐나다는 연방 관할 구역에서 장애가 있는 캐나다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 가능 캐나다 법」(Accessible Canada Act)을 가지고 있음. 캐나다 장애인들은 캐나다의 모든 수준의 관할권에 적용되는 권리와 자유 헌장, 캐나다 인권법, 고용 형평법에서 추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1985년 제정된 캐나다 인권법에 따라 금지되며 1982년에 제정된 권리와 자유 헌장은 장애인들이 다른 캐나다인들과 같은 혜택을 받고 법에 따라 보호받을 것을 보장함
  - 캐나다의 경우 헌법의 캐나다 권리와 자유의 헌장(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제15조는 장애 차별금지와 장애 관련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가능성을 직접 규정하고 있음. 캐나다 권리와 자유의 헌장에 관련된 문제들은 보통 일반 사법체계를 통해 다뤄짐
- 특히 캐나다 고용평등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특정 집단이 다른 사람과 같은 고용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짐

- 캐나다가 '고용 차별'에 집중하는 이유는 캐나다의 인권 관련 입법과 정책이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고용체계 개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발전되었다는 역사·사회적 맥락에 근거한다고 함. 즉 헌법에 해당하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의 헌장과는 별도로, CHRA를 제정하고, 「Employment Equity Act(고용형평법, 이하 EEA라 함)를 제정한 입법 배경에는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이 없이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의 헌장에 명시된 주요한 사회적 목표와 정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고,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고용·서비스 현장에서의 차별금지 및 고용 평등이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국가 문제이자 인권정책의 최우선 목표이며 핵심영역임
- 즉, 이주민, 난민, 여성, 소수자 등 상대적으로 차별에 취약한 집단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가 다양성 및 다문화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인권'과 '고용 평등'이라는 두 관리전략에 초점을 둠

## 나. 장애인 접근성 주요 법제도 및 정책

### 1) 미국

#### ○ 미국 장애인법(ADA)

-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 주 및 지방 정부 서비스, 공공시설, 상업 시설 및 교통수단에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또한 TDD/전화 중계 서비스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 타이틀 II: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itle II는 단체의 규모나 연방 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주 및 지방 정부의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모든 주 및 지방 정부는 장애인에게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예: 공교육, 고용, 교통, 레크리에이션, 의료, 사회 서비스, 타운 미팅 등)에서 혜택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청각, 시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타이틀 III: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itle III은 "공공 편의 시설"(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 기관) 및 "상업 시설"(기타 사업체)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ADA의 Title III에 따라 은행은 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며 여기에는 보조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교육법(IDEA)

- 장애인 교육법(IDEA)은 연방법으로 1975년 의회에서 처음 통과되었습니다. IDEA는 학교에서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자격이 있는 모든 장애 학생은 공적 비용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즉, 개별 필요에 맞게 조정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DEA에 따라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 중에는 시각 장애인 또는 농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 ○ 통신법(제255조)

- 1996년 통신법 255조는 통신 장비 제조업체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경

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비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방 통신 위원회의 보고서 및 명령 이행 섹션 255는 1999년 9월에 발표되었습니다.

#### ○ 섹션 508

- 섹션 508의 ADA 요구 사항은 미국 연방정부와 비즈니스를 하려는 벤더가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도구가 접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순효과를 가집니다. 섹션 508 준수 요구 사항은 민간 부문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지만 많은 민간 기업이 508 조항을 준수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구매력입니다.

#### ○ WCAG 2.0/2.1

-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는 웹 접근성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업계에서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를 통해 W3C는 모든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정보와 기능에 동등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액세스 가능한 웹사이트는 웹 페이지 및 프로세스가 W3C 표준(WCAG 2.0/2.1 레벨 AA)을 준수하는지 검증될 때 달성됩니다.

#### ○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

-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은 모든 개인이 신시대 기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제정되었습니다. 타이틀 I: 커뮤니케이션 액세스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광대역을 사용하여 완전히 액세스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액세스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보청기 사용자뿐만 아니라 맹인 및 시각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이틀 II: 접근성법의 비디오 프로그래밍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비디오 프로그래밍을 더욱 쉽게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 ○ 저렴한 의료법(ACA) 섹션 1557

- 부문 1557은 Affordable Care Act(ACA)의 비차별 조항입니다. 이 법은 연방 자금 지원 의료 프로그램 내에서 장애, 연령, 출신 국가, 피부색 및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건강 보험 시장을 통해 건강 보험을 구입하는 개인에게 보호를 확대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첫 플랜 연도까지 적용 대상은 적용 가능한 건강 보험 및 그룹 혜택 설계가 적절한 보조 지원(예: 대체 형식) 및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섹션 1557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2) 캐나다

### ■ 장애물 없는 캐나다를 보장하기 위한 법(Accessible Canada Act)(2019)

#### ○ 캐나다 접근성 법 개요

- Accessible Canada Act(ACA)는 2019년에 발효됨. ACA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2040년까지 장애물 없는 캐나다를 실현하는 것임. 7가지 우선순위 영역에서 접근성에 대한 장벽은 다음과 같음: 고용/건축 환경(건물 및 공공장소)/정보 통신기술/정보 통신 기술 이외의 통신/상품, 서비스 및 시설의 조달/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운송(항공, 지방 또는 국경을 넘는 철도, 도로 및 해상 운송 제공업체)

- 의사소통은 먼저 미국식 수화/퀘벡 수화(Langue des signes québécoise)/원주민 수화를 캐나다 청각 장애인의 기본 언어로 인정함
- 법안에 기초하여 국가 접근성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Accessibility Standards Canada (ASC)를 제정함. ASC는 여러 우선순위 영역에서 장벽을 제거하는 표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여러 기술 위원회를 설립함
- 법안에 따라 접근성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중요 직책 2개를 신설함: 최고 접근성 책임자(Chief Accessibility Officer)는 접근성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장벽 없는 캐나다 실현을 위해 달성한 성과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함. 접근성 커미셔너는 ACA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단위의 책임자임
- 접근성 계획 준비 및 게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접근성 장벽을 식별, 제거 및 방지하기 위한 접근성 계획을 세우도록 함: 정책/프로그램들/관행/서비스
- 해당 계획은 3년마다 또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장애인 정책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또한, 계획에 대한 피드백 프로세스 설정하고, 조직이 접근성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정기적인 진행 보고서를 작성토록 함

○ 캐나다 접근성 표준의 설정: Accessibility Standards Canada (ASC)

- ACA에 기초하여 장애가 없는 캐나다를 만들기 위해 캐나다 접근성 표준(법에서는 캐나다 접근성 표준 개발 기구라고 함)이 설립되었으며 접근성 표준 캐나다의 의무는 다음과 같음.
- 접근성 표준 개발 및 수정/접근성 기준을 장관에게 규정으로 만들 것을 권고/접근성 기준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 제공/접근성에 관한 연구 지원 및 수행/장벽식별, 제거 및 방지에 대한 정보 및 모범사례 공유/최고 경영자(CEO)와 이사회가 조직을 이끌도록 함. 이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장애인이어야 함

○ 전국 접근성 주간

- National AccessAbility Week은 장애인의 기여를 기념하기 위한 연례행사입니다. 또한, 캐나다 전역의 지역 사회와 직장에서 포용과 접근성을 촉진하고자 함. 이 법은 National AccessAbility Week이 매년 5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기념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CRTC 2009-430

- 2009년에 발표된 방송 및 통신 규제 정책(CRTC 2009-430)에는 T-Base의 통신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항 및 임박한 기한이 포함되어 있음
- 2010년 7월 21일까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신이 선택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장애인 관련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홍보해야 함. 질문에 가장 잘 응답하는 방법과 장애인을 위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CSR 교육을 통해 전화 상담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 주별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

### ○ 온타리오 장애인 접근성법(AODA)

- 2005년 6월 13일, 2005 온타리오 장애인 접근성법(AODA)이 왕실 재가를 받아 현재 법률로 제정됨 AODA는 접근성 표준을 개발, 구현 및 시행하고 장애인을 위한 장벽을 제거하여 모든 온타리오 주민이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AODA에 따른 고객 서비스 표준은 대중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타리오에 있는 다른 조직(제3자)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타리오에 직원이 한 명 이상 있는 모든 공공 및 민간 조직에 적용됨. 고객 서비스 표준이 적용되는 모든 공급자는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함.
- 2011년 6월 3일, 온타리오주 정부는 2005년 AODA에 따라 최종 AODA 통합 접근성 표준 규정을 발표함. 최종 규정은 정보 및 통신, 고용 및 교통의 세 영역에서 접근성 표준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기로 함

### ○ 퀘벡-Loi assurant l'exercice des droits des personnes handicapées en vue de leur integration scolaire, professionnelle et sociale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1978년 제정되었으며, 2004년 국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의 사회·직업·사회적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로 제정됨

### ○ 매니토바주법(AMA)에 대한 접근성

- 2013년 12월 5일에 매니토바주 접근성법(AMA)이 법률이 되어 매니토바 정부가 필수 접근성 표준을 다루고 개발할 수 있게 됨. AMA는 접근 가능한 고객 서비스, 접근 가능한 정보 및 통신, 접근 가능한 건축 환경, 고용 접근성 및 접근 가능한 교통과 같은 민간 및 공공 부문 조직 모두에 접근성을 적용하기 위해 5가지 핵심영역에 중점을 둠

### ○ Nova Scotia의 접근성 법률

- 노바스코샤의 접근성을 존중하는 법안은 2017년 4월 27일에 왕실 재가를 받아 노바스코샤를 접근성 법안을 제정하는 네 번째 캐나다 주가 되었음. 이 법은 2030년까지 주 전역의 접근성 달성을 목표로 함

### ○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접근성 2024

-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또 다른 주임. 2014년 6월 주 총리는 접근성 2024 로드맵을 10개년 실행 계획과 함께 발표했으며, 이는 BC가 시민들의 장벽을 줄이는 데 큰 진전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

## 다. 문화 활동 및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 연구 및 사업

###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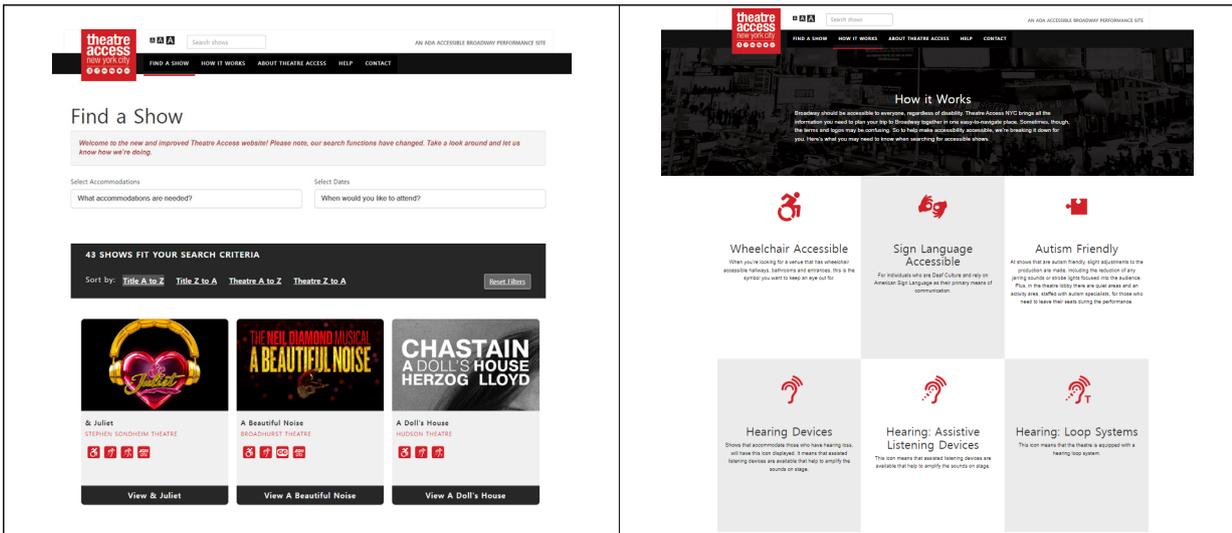
#### ■ NEA 접근성 가이드라인 적용 및 전담부서(Accessibility Office) 운용

- NEA의 예술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각각 ‘Art Works’와 ‘Challenge America’로, 전자는 규모가 큰 대신 지원대상이 개인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이며, 중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 지원 사업 자체가 아니라 어떤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더라도 사전에 프로젝트 관련 접근성 테스트를 먼저 자가진단하고, NEA 가이드라인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NEA가 ‘접근성’ 관련 별도 전담부서(접근성 사무소 Office of Accessibility)를 운영
  - 접근성 전담부서는 <미국장애인법> 및 NEA 내규(NEA Section 504)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참전용사, 시설 거주자(장애 및 사회복지 등) 등 소외집단, 또는 계층에 대한 예술창작 및 향유 기회 제공과 예술계 내에서의 커리어 등 예술지원 전반에서 접근성 의제가 주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의미와 실태 예술가 개인과 단체 등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과 그룹 대상의 의제와 문제를 예술작업과 실천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
  - NEA 접근성 부서가 담당하는 가장 큰 역할은 바로 NEA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임. NEA는 유튜브 및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자들이 사전에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튜토리얼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음

#### ■ Theater Access NYC

- Theater Access NYC는 현재 브로드웨이 쇼에 대한 접근성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웹사이트임
  - 뉴욕시의 재정적 지원(일부) 비영리 조직인 TDF와 The Broadway League(브로드웨이 산업을 위한 전국 무역협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음
- Theater Access NYC는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연 예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다음과 같은 접근성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여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 시장 내의 접근성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음
  - 라이브 및 사전 녹음 오디오 설명
  - 오픈 및 핸드헬드 캡션
  - 수화 통역
  - 자폐증 친화적인 공연
  - 휠체어 좌석 위치 및 접근 가능한 이동 경로 세부 정보
  - 보조 청취 장치의 가용성
  - 티켓 구매 옵션

<그림1-7> Theater Access NYC



출처: <https://theatreaccess.nyc>

## 2) 캐나다

### ■ 캐나다 예술위원회 접근성 계획(2023-25 Accessibility Plan)

- 캐나다예술위원회는 캐나다 공공 예술 기금으로 예술의 연구, 예술 향유, 작품 제작을 촉진하고 육성하는 임무를 수행함. 무용, 다원 예술, 공연 예술, 매체예술, 음악, 연극, 시각 예술, 문학과 출판계의 예술기관에 연방정부 차원의 예술지원 기금과 서비스를 제공
- 캐나다예술위원회는 캐나다 접근성 법에 근거하여 3년 단위로 접근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2023~2025년은 접근성 장벽을 없애고 새로운 접근성 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수립됨

- 접근성 계획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1-8> 캐나다 예술위원회 접근성 계획

1. 개요	3. 상담
1.1 캐나다 예술위원회의 설명	3.1 개요
1.2 연락처 정보 및 피드백 프로세스	3.2 장애인 직원과의 상담
1.3 대체 형식	3.3 이해관계자, 청각장애인 및 장애인과의 상담
1.4 정의	3.4 예술의 확장 전략
2. ACA 섹션 5에 설명된 영역	3.5 접근성 자문 그룹과의 협의
2.1 구축 환경	4. 결론
2.2 고용	
2.3 정보통신기술(ICT)	
2.4 ICT 이외의 통신	
2.5 상품, 서비스 및 시설의 조달	
2.6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	
2.7 운송	

출처: <https://canadacouncil.ca/about/public-accountability/accessibility/accessibility-plan>

## ■ 국립 액세스아트 센터(National accessArts Centre)

- 1975년에 In-Definite Arts Society로 설립된 National accessArts Center(NaAC) 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장애 예술 조직이며 2020년에는 캐나다 최초의 국가 공인 종합 장애 예술 조직임
  - 국립 액세스아트 센터는 1975년에 세워진 인데피니트 아트센터(Indefinite Arts Centre)를 전신으로 하며 2020년에 장애인 댄스컴퍼니 모모 무브먼트(Momo Movement)와 신체장애와 뇌 손상 장애 성인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티스틱 익스프레션(Artistic Expressions)을 합병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춘 시각예술, 무용, 음악, 연극, 문학 등 예술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아티스트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형태의 문화예술을 통한 무한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 동시에 한 가지 문화예술 형태가 아니라 틀에 박히지 않고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다원 예술의 창작 기회를 마련
  - 기관 비전(vision): 캐나다 전역의 커뮤니티는 장애가 있는 예술가의 재능과 기술을 인식하고 장려하며, 능동적인 활동을 지원함
  - 기관 사명(mission): 장애가 있는 예술가를 위한 예술적 교육, 창작, 전시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및 문화 생태계에 포함할 수 있는 신생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십 및 지지를 통해 그들의 창의성을 공유함
  - 현재 앨버타 주정부,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앨버타 예술재단(Alberta Foundation for the Arts), 캘거리 예술개발재단(Calgary Arts Development) 등에서 약 2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음. 나머지 50% 이상의 예산은 다양한 모금 활동으로 재원을 마련함
  - NaAC는 현장 스튜디오 지원 및 워크숍을 통해 발달 및/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300명 이상의 예술가를 지원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몰입형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가 있는 캐나다 예술가의 더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지원함
  - NaAC는 예술적 교육, 창작 및 전시/발표 플랫폼을 통해 신체 및/또는 발달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대표함. 학제적 임무를 통해 많은 예술가가 시각 및 공연 예술 분야에 걸쳐 작품을 훈련하고 발표함
- 국제 이니셔티브
  - 2018년 센터는 국제 탐방하고 글로벌 예술가 거주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캐나다 최초의 장애 예술 단체 중 하나가 됨. 그 이후로 캐나다 장애인 아티스트 및/또는 그들의 작업은 홍콩, 서울, 두바이, 과달라하라, 뉴욕 및 도쿄의 여러 도시 및 관련 예술가들과 교류를 진행함.
  - 2020년에 NaAC는 캐나다 외무부와 협력하여 캐나다 정부의 영구 컬렉션의 일부가 될 13개의 NaAC 예술가 작품을 보유함. 최초의 장애 예술 단체가 됨

## ■ National Network for Equitable Library Service

- NNELS(National Network for Equitable Library Service)는 캐나다 공공 도서관이 소유하고 유지하는 콘텐츠 저장 및 서비스 네트워크임
  - 국제 파트너, 도서관, 독자 및 발행인(특히 캐나다인)과 협력하여 인쇄 장애가 있는 캐나다의 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형식의 책 사본을 만듦
  - 시각 장애(일반적으로 "인쇄 장애"라고 함)에는 접근 가능한 형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세 가지 광범위한 범주가 포함됨
  - 대체자료는 시각 또는 청각의 중증 또는 전체 장애 또는 눈의 초점을 맞추거나 움직일 수 없음/책을 잡거나 조작할 수 없거나/이해와 관련된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이를 지원하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 캐나다 정부에서 ACA법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중임
  - NNELS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노바스코샤,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및 유콘의 주 정부로부터 전액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NNELS의 서비스 제공자는 캐나다의 도서관과 도서관 관련 조직에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커뮤니티 서비스 협동조합인 BC Libraries Cooperative임
- NNELS 운영 현황
  - NNELS가 2013년 12월에 시작된 이래로 약 1,891명의 사용자가 계정에 등록했으며 추가 수의 독자가 공공 도서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고 있음
  - 2021년 6월 현재 웹사이트에서 39,011건의 다운로드가 있었고 2020년에는 NNELS.ca 방문자가 약 56,781명임
  - 2021년 8월 현재 NNELS 컬렉션에는 50,377개의 제목이 있음 NNELS의 책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공됨. 장서 개발의 우선순위는 원주민 및 국제 언어로 된 자료임
  - NNELS의 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됨: 사람이 내레이션한 MP3 및 DAISY 오디오 오북(20,490), DAISY 또는 EPUB eBook(27,320), DOC 및 PDF(2,511), BRF(294) 등임
  - NNELS의 연간 예산은 약 \$500,000(네트워크에 대한 현물 기부 포함)이며 참여 관할 지역의 캐나다인의 경우 이용료는 1인당 \$0.03임

## ■ 기타: 캐나다 문화공간 접근성 관련 보고서

- 국립 캐나다 미술관(National Gallery of Canada) 접근성 계획 2023-2025
  - 본 계획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캐나다 국립 미술관(갤러리)의 접근성에 관한 계획임
  - 본 계획은 Accessible Canada Act(ACA)에 기초하여 작성됨. 캐나다 국립 미술관은 장애가 있

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향후 3년(2023-25)의 계획을 수립함

- 계획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우리는 우리 건물에 사람들이 일하고 방문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만들고 주변의 소음과 활동을 줄이도록 할 것입니다.
  - ② 우리는 직원을 위한 편의 시설(누군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경 사항)에 대한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 ③ 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벽이 없도록 새로운 직원을 찾고 고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 ④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벽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검토할 것입니다.
  - ⑤ 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벽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구직에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살펴볼 것입니다.
  - ⑥ 장애가 있는 직원을 위한 장벽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살펴볼 것입니다.
  - ⑦ 우리는 접근성과 장애에 대해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 ⑧ 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변경할 것입니다.
  - ⑨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건축 환경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팡이 감지 표면, 갤러리 공간의 조명, 그리고 색상 대비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 건축 환경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⑩ 다양한 능력을 갖춘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의 프로그램, 투어,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⑪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접근성에 관한 규칙을 작성하여 우리가 구입하는 새 물건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⑫ 우리는 콘텐츠가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형식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⑬ 우리는 포괄적이고 존중하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소통할 것입니다.
  - ⑭ 우리는 귀하가 우리를 방문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 웹사이트에 전달할 것입니다.
- 캐나다 온타리오 창의적 문화공간 접근성: 온타리오 예술 조직을 위한 툴킷(Accessibility in Creative Spaces: A Toolkit for Ontario Arts Organizations, 2019)
- 캐나다 온타리오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접근성 법 제정 이전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법률로 채택한 최초의 주임
  - 온타리오주에서는 문화적 창의적인 공간의 신규 신설도 있지만, 용도에 맞게 구축된 시설에서 적응형 재사용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지침을 배포함
  - 건물, 도서관, 신성한 공간 등은 툴킷의 목적상 창조적 공간으로 창조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간으로 간주됨
  - 툴킷은 예술 단체가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8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① 톨킷 정보
  - ② 접근성 소개
  - ③ 창의적 공간 및 접근성
  - ④ 접근성에 대한 예술가 및 창작 공간과의 대화
  - ⑤ 설계자, 건축가 및 창의적 공간을 위한 자원
  - ⑥ 화재 법규 및 안전 정책
  - ⑦ 크리에이티브 공간의 접근성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
  - ⑧ 결론
- 특히 물리적 접근성 해소만 다루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 경험이라는 행동에 맞춰 지식과 기술의 성장을 검토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 장에는 구축된 환경에서의 접근성과 경험적 접근성에 관한 예술 단체를 위한 자료, 비디오, 사례 연구 및 예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함

##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국내 주요 법령에서 장애인 관련하여 문화생활과 관련된 법을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법령의 내용은 문화와 관련된 법 위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종합계획 그리고 국정과제 등을 살펴보았음
- 장애인 관련 법률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률은 5개로 ① 장애인복지법,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③ 장애아동복지지원법, ④ 발달장애인법, ⑤ 장애인등편의법이 있음
- 문화예술 관련 법률 가운데 장애인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률은 5개로 ① 문화기본법, ② 문화예술진흥법, ③ 도서관법, ④ 박물관미술관법, ⑤ 공연법이 있음
- 다음의 표는 법에 명시된 내용 중에서 문화활동 또는 문화시설의 접근성 등에 대한 권리 또는 보장 등을 언급한 사항을 정리한 것임

〈표1-41〉 문화관련된 법에서 제시한 문화시설 접근성 내용

구분	조항 내용
문화기본법	제4조는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문화권을 누릴 권리를 명시 제5조는 문화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 제7조는 차별 없는 문화복지 증진을 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 제8조 6의2와 7은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
장애인복지법	제4조 2항과 8조는 문화 또는 문화생활을 포함한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권리, 참여 시 차별 금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 23조는 공공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한국수어 통역·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 제28조는 국가와 지자체 등은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 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는 국가와 지자체 등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를 명시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를 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를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4조 5항에는 장애아동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 기회 제공 등 장애아동의 권리를 명시 제26조에서는 문화예술 등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복지지원 제공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

구분	조항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평등한 접근권에 대해 명시 제3조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의 최단 거리 이동을 지원하여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제16조, 제16조2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편의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명시 시행령 제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의 자세한 규모와 조건을 명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5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대한 사항을 담도록 명시 제12조에서는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 제12조 2항 및 시행령 제6조를 통해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
도서관법	제5조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 제7조는 모든 국민의 차별없는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를 명시 제24조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3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공연법	제3조에 공연예술인의 정의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 제11조의5의 경우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킬 책무를 명시

- 법 이외의 장애인 인권헌장과 문화헌장 등에서도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특히 문화헌장에서는 문화적 권리와 권리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75개의 지자체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73개의 지자체는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문화활동 또는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종합계획 등을 제시하여 실행하고 있음. 주요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음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1차, 2022~2026년)

- 장애인정책종합계획(1차~5차)
-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3차, 4차)
-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실행하였는데, 장애인 접근성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노무현 정부에서는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문화시설의 장애인 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이용권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문화정보 접근권 확대
  - 박근혜 정부에서는 예술창작, 작품발표, 문화교류 활동의 구심점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정부에서 직접 설립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정식 개관
  -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배리어프리 무대·객석 및 장애인에게 필요한 멀티미디어 공연이 가능한 환경 조성 등 저작권·향유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예술 전용 공연장 조성
  -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외에도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와 창작물우선구매 등에 대한 추진과제를 제시함
- 연구사례와 실태조사의 사례는 접근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접근성 장애요소가 문화시설 유형과 장애인 장애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활용하였음
  - 김현경(2020)에서는 문화시설 장애인 장애요소와 장애인 접근성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장애인 접근성을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21)의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는 장애인 전용공연장 설립하면서 현황 및 환경 분석, 법과 제도 분석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2012)의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2012)과 관련된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성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과 관련된 연구로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다루지 못함
  - 국가인권위원회(2021)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는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인적 편의 제공과 관련한 국내외의 법령, 최신 판례·결정례, 정책 등을 고찰하여 제시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 연구는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 휠체어이용자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종류별, 건물유형별, 시설주별,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의 분석을 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과 결론 및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통계조사」는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수집을 위

한 통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조사방안과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조사의 어려움과 도서관의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해외사례는 EU, 프랑스, 영국, 북미(미국, 캐나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법제도와 정책, 실행을 위한 주요 연구 및 사례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음

- 우리 연구와 관련된 장애인 접근성 관련된 법만을 제시하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1-42〉 주요 국가에서의 법에 명시된 장애인 접근 관련 사항

구분	조항 내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대 유엔의 “장애인을 위한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 제정 이후 관련한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령과 정책을 지속해서 꾸준히 제정</li> <li>• 장애인이 그들의 권리를 누리고 온전한 사회경제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li> <li>• 장애인의 사회 및 경제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접근성을 전략의 핵심으로 보며, 참여 영역에 문화,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활동에 완전히 접근할 권리 포함</li> <li>• 유럽접근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유럽시장 내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임</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법」은 프랑스 장애인 정책의 큰 변화를 이끈 법률적 기반이 되는 법으로 장애에 대하여 의학적 접근이 아닌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음</li> <li>• 애인 법에 따라 대중개방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물과 새로 지어지는 건물 등에 적용되는 개방성과 접근성의 원칙 수립 적용</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의 차별은 대부분 평등법 2010(Equality Act 2010)을 중심으로 이해·판단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조정(Reasonable adjustments)을 통해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함</li> <li>• 웹접근성, 포용적 디자인에 대한 영국표준, 역사적 건물에 대한 접근권 등과 다양한 정당한 편의와 관련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음</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 주 및 지방 정부 서비스, 공공시설, 상업 시설 및 교통수단에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li> <li>• 학교에서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li> <li>• 통신 장비 제조업체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비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li> <li>• 저렴한 의료법은 연방 자금 지원 의료 프로그램 내에서 장애, 연령, 출신 국가, 피부색 및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건강 보험 시장을 통해 건강 보험을 구입하는 개인에게 보호를 확대</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접근성 법은 고용/건축 환경(건물 및 공공장소)/정보 통신 기술/정보 통신 기술 이외의 통신/상품, 서비스 및 시설의 조달/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운송(항공, 지방 또는 국경을 넘는 철도, 도로 및 해상 운송 제공업체)에서 장애물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함</li> <li>• 주별로 장애인 접근성 관련된 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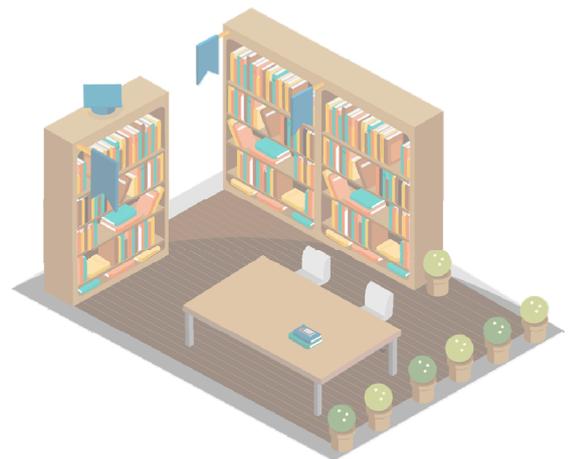
- 각 주요국은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연구와 사업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읽기 쉬운 문서’(Easy-to-read) 사업(2010)은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누구나 공평하게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임
- 중부유럽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COME-IN(2017)은 중소 박물관 문화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됨

- 모두를 위한 설계/접근법 지침(Design for ALL)은 유럽 접근성법 적용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유럽 기준을 제시하였음
- 접근성을 위한 문화시설 네트워크(La Réunion des établissements culturels pour l'accessibilité, RECA)(2003년~)는 장애인법에 기초하여 공공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로써 운영되며, 문화시설 신기술 도입, 접근성 계획 아젠다 등을 제시함
- "모두를 위한 유산" 상(Le Prix "Patrimoine pour tous")(2011년~)은 매년 운동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반화된 접근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한 곳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제도임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라인 발간(2007년~)은 문화부문에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일련의 현장가이드 북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 또한, 장애 해소를 통하여 문화예술을 누리고 즐기는 데 있어 보다 많은 대중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1997)는 영국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협의회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안내하는 목적
- 역사적 건물에 대한 쉬운 접근개선 가이드(Easy Access to Historic Buildings)는 사적 유적의 경우 유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변경을 하는 내용으로 문화유적 및 시설 관계자들이 접근성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함
- Theater Access NYC는 현재 브로드웨이 쇼에 대한 접근성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웹사이트이며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연 예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다음과 같은 접근성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여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 시장 내의 접근성 해소에 이바지함
- National Network for Equitable Library Service는 캐나다 공공 도서관이 소유하고 유지하는 콘텐츠 저장 및 서비스 네트워크이며, 국제 파트너, 도서관, 독자 및 발행인(특히 캐나다인)과 협력하여 인쇄 장애가 있는 캐나다의 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형식의 책 사본을 만드는 사업임

## 제4장. 장애인 접근성 요소 도출

-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





## 제1절 접근성 요소 도출 방안

- 2장에서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3장에서 관련된 국내외 법률과 연구 등을 살펴보았는데, 4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장애인들이 실제로 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고 접근성 요소를 도출하고자 함
  - 2장에서 접근성에 대한 정의와 우리 연구에서 다루는 장애인 장애유형과 문화시설 유형을 제시하고,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음
  - 3장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된 법률,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를 살펴보았으며, 해외 중 EU, 프랑스, 영국, 북민(미국, 캐나다)의 법률과 연구 및 사업을 살펴보았음
- 4장에서는 장애인 접근성 요소를 세부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페르소나 분석을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느낀 애로사항을 살펴보았으며, 페르소나 분석 결과와 3장의 사례분석에서 파악된 내용에 더하여 요소도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 사례분석을 통하여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접근성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를 통해서도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았음
  - 해외사례 분석에서는 해외에서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문화유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변형하여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등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음
  - 이번 4장에서는 사례분석에서 파악된 내용을 실제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 세부요소를 제시하고자 함
- 페르소나 분석은 기존의 페르소나 방법으로 장애인이 직접 문화시설에 가서 이용하면서 문화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살펴보고, 이후에 장애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접근성 장애요소와 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장비, 도구니 서비스 등을 파악하고자 함
  - 페르소나 분석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문화시설 유형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이용객과 예술인 관점 모두에서 살펴보도록 함
- 2장에서 제시하였던 김현경(2020)의 연구에서의 접근성 장애요소를 바탕으로, 현 연구에서 고려하는 문화시설로 확대하여 접근성 장애요소와 문화시설 운영요소에 대하여 재정의를 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위한 세부요소를 도출하고자 함
  - 접근성을 위한 세부요소는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도구, 서비스 그리고 시설의 정책 등을 의미함

- 즉, 문화시설에서 갖추고 있으면서 이를 장애인들이 이용한다면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에 와서 문화를 향유, 창작 등을 더욱 잘할 수 있는 것을 문화시설 접근성을 위한 세부요소라 함
- 문화시설 접근성을 위한 세부요소는 문화시설 접근성 장애요소, 운영요소를 문화시설유형과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제시하도록 하며, 방문객과 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함
- 특히 문화시설 접근성을 위한 세부요소를 전시, 공연, 열람 등의 문화생활을 할 때, 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도와줄 수 있는 관점으로 제시하고자 함

## 제2절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에 대한 페르소나 분석

### 1. 문화시설 접근성 연구에서 페르소나 분석이란?

- 페르소나(persona)는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가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오늘날에는 다양한 분야와 나라에서 조금씩 다른 뜻으로 사용됨<sup>28)</sup>
  - 이탈리아에서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쓰는 가면”을 의미함
  - SNS에서 사용하는 프로필 사진이나 어떤 인물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고유 이미지 등을 페르소나로 설명하기도 함
  - 영화계에선 감독이 자신의 분신 또는 상징처럼 애정을 갖는 배우를 뜻함
  - 마케팅에서는 어떤 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목표 인구 집단 안에 있는 다양한 사용자 유형들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 페르소나는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음
  - 섭외된 장애인이 해당 장애유형을 대표하여 문화시설을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따라서 해당 장애유형의 장애인이 문화시설에 방문하여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의 과정을 살펴봄
  - 장애유형별로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관람객, 공연자, 전시자, 이용객 등의 역할을 맡도록 하였음
- 본 연구에서 페르소나 분석은 문화시설을 방문한 장애인들의 행동을 살펴보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문화시설의 방문하면서 애로사항과 좋았던 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함
  - 섭외된 장애인들이 해당 문화시설을 방문하면서 역할(관람객, 공연자, 이용객 등)에 맞게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겪은 애로사항들을 체크하도록 함
  - 장애인들의 필요에 따라 중간 중간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끝난 후에 심층인터뷰를 통해 문화시설을 방문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방문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한 본인의 개선의견 등을 파악
  - 본 연구에서의 페르소나 분석은 페르소나와 심층인터뷰가 결합한 형태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행동으로 판단되는 부분과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을 결합하여 파악할 방법임

28) 나무위키의 내용 정리

## 2.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에서 페르소나 분석 개요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페르소나 분석의 목적은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전,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직접 느낀 부분을 토대로 접근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장애유형과 시설유형별로 각각의 사항에 맞게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이 도출되면 이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 서비스 등의 접근성에 필요한 세부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함
  - 사례분석과 전문가 의견 그리고 페르소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실태조사에서 사용할 체크리스트 및 조사표를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페르소나 분석을 위해 방문한 시설은 대부분 큰 규모의 시설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환경을 한꺼번에 파악하기 용이하고 작은 규모의 문화시설보다 대체로 환경이 좋기 때문이었음
  - 작은 규모의 시설은 둘러보거나 실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어 페르소나 분석에서는 다양한 설비나 도구 등을 파악할 수 있기 위해 큰 규모의 시설을 선택하였음
  - 페르소나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문화시설은 작은 규모의 문화시설보다 접근성 관련된 장비나 도구가 잘 설치되거나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 실제 접근성에 현황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기 때문에, 페르소나 분석에서는 접근성 관련된 다양한 환경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었음
- 조사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데로 페르소나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페르소나 기법을 통한 동행 조사로, 참여자(장애인) 1인과 연구진 1인이 시설을 둘러보면서 시설을 점검하고, 시설 방문을 끝낸 후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조사내용은 문화시설 정보수집, 이동, 도착, 이용(주차, 연습, 리허설, 공연/전시/관람/참여) 등의 전 과정의 장애유형별 시설 및 서비스를 확인하였음
  - 참여자의 동의하에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애로사항이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는 데 활용하였음
  -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인 2인, 지체장애인(휠체어, 의족) 2인, 시각장애인 3인, 청각장애인 2인, 발달장애인 보호자 2인,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2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표에 정리한 것과 같음

〈표1-43〉 페르소나 분석을 위한 동행조사 개요

연번	활동	문화시설 유형	장소	장애유형	성명	일자
1	예술활동	미술관	홍대KT&G 상상마당	뇌병변	김○○	9월 29일
2	예술활동	공연장	한국문화의집KOUS	시각	김○○	10월 1일
3	예술활동	공연장	국립극장 해오름	청각	고○○	11월 2일
4	예술활동	공연장	고양 아람누리	발달	조○○	10월 2일
5	예술활동	공연장	광림아트센터	발달	0000오케스트라	10월 14일
6	예술활동	공연장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발달	0000오케스트라	10월 14일
7	향유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지체	김○○	10월 4일
8	향유	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발달	곽○○	10월 5일
9	향유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뇌병변	김○○	9월 22일
10	향유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시각	김○○	9월 29일
11	향유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시각	전○○	10월 6일
12	향유	공연장	세종문화회관	지체	박○○	9월 27일
13	향유	공연장	서울남산국악당	청각	강○○	10월 7일

### 3. 문화시설 페르소나 분석 결과

#### 가. 장애유형별 문화시설 이용의 어려움

- 페르소나에 참석한 장애유형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으로 이들의 특징을 간단히 제시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문화시설 이용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도록 함

#### ■ 지체장애인

- 지체장애인은 골격·근육·신경 계통의 질환, 손상, 기능 및 발달 이상으로 신체의 이동과 움직임 등에 제한이 있는 장애를 말함
  - 지체장애인의 다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주로 운동기능 장애, 감각장애 증세가 나타남.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의수 또는 의족과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기도 함

- 지체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의 가장 기본이 되어, 주차시설, 이동의 폭, 화장실, 매표소 등 편의시설 또는 설치시설의 기준이 됨
  - 문화시설에서 관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제약사항은 크지 않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은 공연장의 좌석선택, 편의시설의 높이, 오랜 시간 머무를 때 신체적 어려움으로 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등의 제약이 있음
  - 전시시설 관람할 때 인기 있는 작품을 볼 경우, 사람들이 많이 붐비게 되면 이동도 어렵지만, 앞의 사람들로 인하여 작품을 보기 어려운 경우 발생
  - 휠체어 또는 의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간이 협소할 경우 주변 사물과 충돌위험이 다소 커 충분한 이동공간의 폭이 필요함

## ■ 뇌병변

- 뇌병변장애인은 주로 손발 사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함
- 뇌병변장애인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음
  - 이동 경로에 단차 또는 계단이 있으면 통행이 어려우며, 폭이 좁은 통로에서는 활동의 제약이 발생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시설물 이용이 어렵고, 시선의 높이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낮음
-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심한장애의 경우, 보호자나 동행자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은 전맹과 저시력으로 구분되며, 장애등급 판정지침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 장애로 구분됨
  - 대부분 사람은 시각장애인 모두가 전맹, 즉 앞을 전혀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88%로 시각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함
  - 시각장애인은 시각 기능이 떨어지는 대신 다른 다양한 감각이 발달하여 있는데, 특히 청각의 기능이 더욱 발달함
- 전맹인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위치를 구분하거나 공연장이나 전시관과 같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는 보호자/활동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
  - 시각장애인은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익숙한 공간이나 경험해본 공간에 대해서는 주변 사물의 위치나 방향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임
  -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처음 간 장소나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장애

물의 위치와 지형을 찾아 활동함

- 전맹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주요정보는 점자 또는 음성안내를 통해 해당 내용을 파악하며,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경우 큰 글씨 또는 음성안내를 통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 전시시설 관람을 할 때 이동을 위해서는 유도블록이나 점형블록, 핸드레일이 있으면 도움이 됨
  - 전시물 관람을 위해서는 오디오가이드와 모형 등을 만질 수 있는 터치투어가 있으면 관람에 도움이 됨

## ■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인은 정도에 따라 ‘농아’와 ‘난청’으로 분류되며, 농아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이며, 난청은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수술 등을 통해 남아있는 청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를 말함
- 농아 또는 청력이 매우 낮은 난청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전화 또는 대화 등의)소통이 어려우므로 정보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음
  - 문화시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를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문자, 자막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청각장애인들마다 대화하는 방법이 다른데, 수어(수어통역사) 또는 구어(입모양), 필담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므로 문화시설 방문자를 위해서는 수어와 문자 스크린 등을 같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는 나이에 맞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장애로,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통틀어 이르는 말임
  - 발달장애인들은 언어 및 행동에서 장애증상을 보이는데, 특히 상동 행동(같은 동작을 일정 기간 반복하는 행동)을 하는 특성이 있음
-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은 간혹 심적으로 어려우면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조용한 곳에서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은 보호자가 같이 방문하지만, 문화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발달장애인의 문화시설 이용이 더 용이할 것임

## 나. 시설유형별 분석

### ■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 전시물의 전시 기준이 비장애인 기준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느낌
  - 전시물의 높이가 비장애인 성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된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또는 어린이들은 이를 관람하기 어려움
- 유명 작가의 전시물 또는 인기 있는 작품의 경우, 많은 관람객이 몰려있어 관람객들에 의해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전시물을 관람하기 어려움.
  - 일부 국가에서는 주 관람 동선 외 전시물 측면에 이동 약자를 위한 구역을 별도로 표시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관람을 배려하고 있는 예도 있음
  - 휴일 또는 주말과 같이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에는 비장애인 관람객이 많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함
- 전시물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적으로 어두운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휠체어나 의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전시물을 보호하기 위해 철재로 된 와이어가 설치될 경우 지체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은 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어두운 곳에서는 휠체어와 의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함
  -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은 빛의 변화 등으로 인해 더욱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발달장애인의 경우 바닥 빛의 변화, 색깔 등에 집착하는 때도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장애인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명 및 분위기 조성 필요함
- 시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경우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것보다는 오감을 활용한 체험기회에 대한 바람이 큼
- 전시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위해 터치투어, 또는 음성해설 서비스 등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한 설비가 잘 갖춰진 시설은 거의 없었음
  - 대부분 문화시설은 일부 전시물에 한하여 전시물의 축소된 형태로 제작한 모형을 설치하여 촉각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촉각 전시물의 양은 전체 전시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음성해설을 지원하는 시설은 거의 없었음
- 장애인들은 대부분 전시안내서비스(안내해설사)를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장애유형별로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전시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었음
  -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같이 이용을 할 경우, 이동하는 속도 및 간격, 이해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관람에 불편함을 느낌

- 지체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들은 같이 다니는 속도, 공간규격, 장애물 등으로 물리적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설명을 듣거나 감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함
- 전시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적극 이용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전시기법이 다양화되어 터치스크린, 빛을 활용한 전시물 등 변화가 많은 전시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각장애인에게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음
  - 태블릿 PC 또는 터치스크린, LED 등을 활용한 전자형태의 전시물이 많은데, 휠체어이용자와 같이 눈높이가 낮은 이용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 및 기울기를 맞춰서 설치하여야 함
  - 조명을 이용한 전시물의 경우 전맹인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전혀 알 수 없으며,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빛의 변화 등으로 이동에 혼란을 겪을 수 있음
  - 빛을 이용한 전시물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등이 필요함

## ■ 공연장

### ※ 관람객의 관점에서

- 공연장 로비의 경우 특정 시간에 다수의 관람객이 모이기 때문에 안내요원들이 장애인 관람객의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과 사전교육을 하고 응대 필요
  - 장애인 공연의 경우, 장애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응대 교육하고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장애인 협회 또는 복지시설 등과 연계를 통해 장애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협회 또는 복지시설에서 응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표소는 대부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을 위하여 2중 높이로 되어 있었으며, 안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 의사소통되었음. 또한, 장애인 할인 정책도 되어 있었음
  - 매표소는 2중 높이로 되어 있어 비장애인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음
  - 대부분 할인 정책은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표시가 잘 보이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
- 매점과 같은 서비스 공간은 2중 높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휠체어 또는 작은 키의 어린이가 이용하기 어려웠음
- 공연장은 비장애인 관객을 중심으로 시설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하는데 준비된 사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함. 공연과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관람객의 입장에서 공연 관람을 위해, 사전에 예매하고 해당 시설의 로비에 도착하여 발권을 받아 입장 시간에 입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로비에 기다릴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

-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해당 장애인에게 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연인지 확인 필요
- 휠체어이용자 등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 설치 필요
-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전용석이 마련된 곳은 많지만 대부분 공연장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있으며, 좌석을 선택할 권한이 없으며, 좌석의 수도 너무 적었음
- 장애인 좌석은 가변 좌석인 경우가 많은데, 이 공간을 장애인이 아닌 조명이나 음향시설을 비치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자리는 장애인 좌석 중에서 좋은 위치의 좌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은 좋은 자리를 이용하기 어려움
- 장애인과 동반한 비장애인이 함께 서서 전시물을 보아야 하는데, 해당 위치에서 시야가 가려진다면 이마저도 어려움
- 휠체어석 근처에는 충전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큰 규모의 공연장은 휠체어석 부근에 충전장치가 있는 경우가 많음
- 대부분의 공연장은 안전시 관객의 이동이 쉽도록 표시등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좌석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었음
- 큰 규모의 공연장의 경우 표시등과 좌석확인이 가능하지만, 전맹 또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를 안내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함
- 청각장애인이 공연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서비스가 제공되어야 관람이 원활한데, 한국어 공연일 경우 자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외국어로 하는 공연의 경우 자막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덜 어려운데, 한국어 공연일 경우 자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오히려 이용이 어려움
- 자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막이 바뀌는 속도와 양도 고려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청각장애인 중 농인의 경우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쉬운 그림이나 수어 영상서비스를 통한 안내가 필요함. (농인에게 한글은 외국어로 인식되는 때도 있음)
- 청각장애인은 배경음악과 공연자의 소리가 동시에 나올 경우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더욱 공연에 도움을 주는 보조도구가 필요함

#### ※ 공연자 관점에서

- 많은 공연시설이 관객을 중심으로 시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자용 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음
- 공연자의 관점에서 대기실과 무대를 오가는 복도는 다소 협소한 편임
  - 복도가 원래 좁게 설계되어 있어서 휠체어이용자와 동행인이 같이 이동하기에는 좁은 경우가 많음

- 복도에 각종 장비 및 악기 등이 이동 경로에 임시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휠체어이용자가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대기실은 보통은 넓진 않지만,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엔 보호자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하기 좁은 상황이 발생
  - 대부분 대기실/분장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또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좁게 이용하게 됨
  - 대기실/분장실 안에 화장실이 있어 사용하는데 편리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대기실/분장실에 있는 화장실에 단차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음
- 장애인 공연자는 비장애인보다 이동 및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기실에 모니터를 두거나, 알림 사인(Sign) 장치 설치 등을 통해 무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필요함
  - 발달장애인 등 언어해설에 대한 이해가 낮은 대상을 위해 알림 사인 등으로 공연을 위한 준비 가능하도록 할 필요 있음
- 대기실과 공연장 간에 단차 또는 계단 등이 없도록 하여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단차 또는 계단이 있으면 경사로나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함. 또한, 안전을 위해 무대에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내 또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유형별로 공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함
  - 청각장애인은 연습이나 리허설 할 때 자막 등을 통해 언어전달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도구를 착용하여 청각장애인(무용 관련) 또는 시각장애인(악기)이 진동으로 박자나 리듬을 맞출 수 있음
  - 청각장애인이나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광판 또는 빛을 활용한 것도 효과적임
-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체력소모 또는 심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휴게시설이 필요함
  -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다른 감각이 민감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력소모가 클 수 있음
  -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오랜 시간 앉아있을 경우, 체력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공연 중간에도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발달장애인은 환경변화 또는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서 흥분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럴 때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안내, 장애인들이 우선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로, 장애유형에 따라 긴급상황 메시지 전달체계, 긴급상황 시 대처 매뉴얼 등을 공연장은 갖추고 있어야 함

## ■ 도서관

- 도서관은 주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공간이며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구분되어 이용하는 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잘 되어 있지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가 부족함
  - 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 이용을 위한 열람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장애유형별로 도서열람을 위한 보조장비를 각각 다르게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을 도와줄 인력이 필요함
  -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소음 발생에 대해 민감한 공간이므로 점자블록, 안내사인 등의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
  - 공공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시각장애인은 혼자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를 도와줄 인력이 필요함
- 심한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장애인과 같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접근 및 진입 공간, 자료열람 공간, 이동 공간 등 공간의 폭이나 통로의 규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도서관이 있을 경우, 장애인을 위한 열람시설 및 장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일반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움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서적이 높은 곳에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또는 음성으로 된 서적이 거의 없음
  -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자료 등도 거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면낭독서비스, 수어통역사 서비스, 요청자료에 대한 열람 프로세스, 지체/뇌병변장애인용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장애유형별 이용가능 장치 구비 필요함

## 다. 시설용도별 특이사항

### ■ 매개시설<sup>29)</sup>

- 문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 정류장과 가깝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어야 접근이 용이함
  - 장애유형과는 상관없이 장애인들은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을 때 하차한

29) 매개시설이라 함은 건축물에 접근하기 위해 건축물에서 갖추고 있는 시설로 건축물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를 포함한 공간 등이 이에 해당함

- 후 문화시설까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
- 시내 중심에 있는 일부문화시설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과 거리가 가깝지 않은 곳이 많았으며, 길도 평탄하지만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음
  - 장애인을 위한 택시서비스의 경우 시도 또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갈 경우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택시콜 이후에 배차시간이 1시간가량 걸려 이용에 불편함을 얘기함
  - 규모가 큰 문화시설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 주차구역은 있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의 규격을 갖추지 않은 시설도 있었으며, 장애인 주차를 허용하는 대수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시설도 있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물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 인근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위치(지하 주차장 등)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적절함
  - 공연을 위한 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공연자의 경우 이를 위해 이동이 편리한 승강기 근처에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시설에 방문하는 목적(공연/관람)에 따라 주차공간을 지하/지상으로 분리하는 것도 필요함
- 주차장에서 하차한 이후, 진입하는 경로의 폭이나 안전장치와 안내사인, 경고사인 등은 적절히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주출입구로 이동하는 경로에 외부 조형물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펜스설치 및 모서리 부분 충격완화 장치하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함
  - 시각장애인의 경우 주출입구로 진입하기 위한 건물 내부까지 유도장치(음성안내, 유도블록 등)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함
  - 휠체어이용자는 주출입구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경사로의 경우 규격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이용할 수 있음
  - 주출입구로 이동하는 경로의 바닥이 평탄하지 않고 돌과 흙으로 된 부분이 있을 경우 휠체어나 목발,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공연을 하는 장애예술인과 같은 경우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사전에 전화 등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대응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홈페이지 등에 대중교통 이용방법, 가장 가까운 정류소 또는 역, 엘리베이터 위치, 차도를 건너야 하는지 여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 배치 여부 등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공사 등으로 인해 기존의 이동경로를 통해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변동된 사항에 대해 사전 공지 및 현장에서의 안내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 내부시설<sup>30)</sup>

- 출입구는 장애인이 편하게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함
  - 문화시설의 출입구가 크고 무거울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손과 발의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비장애인 성인들도 문을 열기 어려움
  -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가장 좋은 문은 자동개폐문이며, 회전문은 위험하기 때문에 부적절함
- 이동통로는 휠체어이용자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차하는 복도에 서는 사람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 BF인증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시설의 문의 넓이도 휠체어가 출입이 편리하도록 마련되어야 함
- 이동통로의 복도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하며, 휠체어 등이 이동할 경우 소리가 나지 않는 재질로 하는 것이 좋음
  - 바닥재질이 미끄러울 경우, 의족사용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 등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바닥재질이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은 휠체어 등이 이동하거나 회전할 때, 소리가 과하게 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변 사람들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시선을 집중시키는 요인이 됨
  - 일부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펫은 재질에 따라 전동휠체어 바퀴에 걸리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승강기(엘리베이터)의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승강기는 비장애인과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복잡할 경우 빠르게 타고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센서가 있거나 문의 개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달힘 지연 버튼) 설치가 필요함
  - 휠체어이용자의 경우 휠체어가 문을 통과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울이 설치되어야 하며, 높이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카드 또는 표를 발급받아 출입하는 경우, 문이 개폐형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음성안내서비스 또는 직원의 안내가 필요함
  -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를 개폐기에 정확하게 대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직원 또는 주위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함
- 문화시설 중에는 벽면에 전시실 이동 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한 '이동약자를 위한 동선안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

30) 내부시설이라 함은 건축물의 수평·수직적 내부공간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말하며, 주출입구, 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이에 해당함

### ■ 위생시설<sup>31)</sup>

- 화장실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용하는 필수시설이며, 불편할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화장실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 것은 중요함
  - 같은 문화시설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되지 않은 시설도 있었음
  - 등받이의 재질, 화장실 내 손잡이의 위치 등은 휠체어의 폭이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위험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음
  - 화장실 내부는 전동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변기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 변기레버, 손소독제 등 화장실 내 물품 이용 시, 손을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화장실 세면대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필요에 따라 동성이 아닌 보호자가 도와주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화장실을 외부에 설치하거나 외부 로고에 보호자와 장애인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보호자와 장애인의 동반입장이 가능함을 표기할 필요 있음
  - 대부분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되어 설치되도록 하고 있는데, 비장애인 화장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성이 아닌 보호자가 도와주기 어려운 경우 있음
  -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가족화장실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때 개인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고려
  - 대변기가 정면과 마주보게 설치되어, 외부에서 문을 열었을 경우 민망한 경우 발생 가능
  - 반투명하게 문을 만들어 외부에서 볼 때, 옷을 입고 벗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경우 있는데,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하는 방법 등으로, 시각적으로는 외부에서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비장애인과 같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경우에도 휠체어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내부구조가 설계되어야 함
  - 화장실 출입구는 휠체어의 폭과 높이를 고려, 마주 오는 이용객과 마주칠 경우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
  - 화장실의 거울은 기울기를 활용하여 시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휠체어 이용자 또는 어린아이가 이용이 용이하도록 높이 또는 각도의 기울기를 맞춰서 설치되어야 함
-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장실에 들어서기 전 화장실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점자 또는 촉지도가 입구에 제공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앞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하며, 내부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지도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31) 위생시설이라 함은 배변하고 몸을 씻는 공간으로 남녀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 등이 이에 해당함

- 음수대는 음수대 높이, 제공되는 컵의 유형, 제공되는 컵의 위치 등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

### ■ 안내시설<sup>32)</sup>

- 문화시설에 들어갔을 경우, 본인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설비 필요
  - 시각장애인은 문화시설 내에서 본인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시실 입구 앞의 바닥 또는 전시실간의 전환이 있을 경우 등 주요지점에 점자블록을 활용
  - 주요 공간마다 전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음성안내가 제공되면 더 좋음
-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북과 실제 공간과 매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출구를 찾거나 원하는 전시실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음
-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축지도 등을 통해 시설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의 동선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시실 찾는 것과 화장실 이용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선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함
- 최근 안내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안내용 로봇 등)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함
  - 터치스크린이나 키오스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많은데 음성안내가 없어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높이가 맞지 않아 이용이 어려웠음
  - 안내용 로봇의 경우 일부 문화시설에서 사람대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 및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동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 있음
-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시각/청각/지체 장애 등 장애유형에 따라 문화시설 이용에 도움을 주는 도구들은 많이 구비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등은 여전히 부족함
  - 장애인은 보호자와 동반하여 출입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보호자 없이 방문하는 장애인에 대한 직원응대가 미흡함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도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장애인을 이해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직원이 필요함
  - 때로는 너무 과잉 친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을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방문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경우도 있음
  - 뇌병변 장애인, 전맹인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

32) 안내시설이라 함은 사인을 통해 건축물 및 부대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위치를 인식하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내사인, 축지도, 유도사인, 점자블록 등이 이에 해당함

는데, 이때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임

- 많은 경우,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직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직원을 두기가 어려운 경우,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전시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대상으로는 시각장애인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점자서비스 또는 음성해설 서비스 등이 필요함
  - 점자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자로 안내가 되어 있지만, 일부의 경우 점자의 크기가 너무 크게 제공하고 있어, 오히려 점자를 읽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점자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전맹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책자 또는 음성해설 등이 없이 전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 시각장애인의 70% 이상이 점자 문맹이므로 점자와 음성안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기기 또는 QR코드를 활용한 음성해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활용도가 더 높음

#### ■ 기타시설(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 규모가 있는 문화시설의 경우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하는데, 수동휠체어만 구비되어 있어서 전동휠체어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함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들 중에는 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도 고려하여야 함
-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유 등의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신체의 어려움 등으로 휴식이 필요한데, 이때 전동휠체어인 경우 충전도 가능하면 좋음. 충전시설이 복도 한복판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비장애인 들 등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민망한 경우가 발생함
  - 임산부 또는 수유가 필요한 대상들에게 휴식 또는 아기들 기저귀 등을 갈 수 있는 공간 필요
- 관람석과 열람석의 경우 모든 대상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관람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 필요
  - 공연장 관람의 경우 장애인들이 보호자 등과 같이 동반하여 관람이 가능하도록 좌석이나 비용을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전시시설의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시 관람 공간 마련 필요
  - 도서관 열람실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서비스를 하는 도구가 있는 장소에 있도록 배려 필요함
- 매표소, 매점 등은 데스크 또는 테이블을 2중으로 높이를 설치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또는 어린이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함

## ■ 웹접근성

- 웹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장애인이 실제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를 찾아 접속하여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음
- 시각장애인의 경우 사이트에 접근하려 할 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색하였을 때 맨 위에서 검색되지 않아 문화시설 사이트를 찾아서 이용하는데 오래 걸림
  - 포털사이트에서 문화시설을 검색하면 접속하려는 링크가 바로 나와야 하는데, 광고나 다른 사이트의 접속 링크가 상단에 많이 있어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
-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치안내 또는 피난안내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 이미지로 된 PDF 파일이거나 이미지로만 되어 있는 경우 대체텍스트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동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움
  - PDF파일의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정렬 순에 따라 정보를 전달받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법제도에 따른 정렬 통일이 필요함
- 현재의 웹접근성은 20개 지침 중에서 10개 이상을 중증 장애인 기준으로 통과되면 웹접근성 품질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움
  -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 등의 도구가 발달하였으므로, 웹접근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3절 문화시설 장애(예술)인 접근성 장애요소 도출

- 본 연구는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진행하는 기초연구로서,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접근성 장애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임
  - 접근성의 장애요소가 파악되어야 이를 해소 또는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들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게 됨
  -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방문해서,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콘텐츠를 이용하거나 또는 예술가로서 창작활동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이 향상됨
- 이번 절에서는 사례분석과 자문회의, 그리고 페르소나 분석 등을 기반으로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장애요소의 유형을 재정립하고 유형별로 필요한 세부요소들을 도출하도록 함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유형은 김현경(2020)이 연구에서 인용한 R. Sendell & J.Dodd. Alison Coles (ed.) (1998:14) 내용을 재인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내용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범위에서 공연장과 도서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로 확대하여 적용하였음
  - 세부요소들은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장애요소 유형별로 접근성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도구 그리고 서비스 등을 도출하여 제시하도록 함
- 접근성 장애 세부요소들을 제시하고, 이를 해소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췌하여, 이를 근거로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의 체크리스트와 조사표로 작성하는데 이용하고자 함
  - 세부요소들은 실태조사에서 조사할 문항과 항목으로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 의미 있게 도출하도록 함
  - 접근성 장애유형과 문화시설 그리고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세부요소를 파악하여 제시하도록 하며, 각 세부요소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록에서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높이도록 작성함

#### 1.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장애유형 구분

- 본 연구에서 문화시설은 크게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장,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로 구분하며, 시설을 찾아오는 장애인들에게 방문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할 서비스 고려
  - 문화시설은 크게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문예회관, 공연장), 도서열람시설(도서관), 문화활동 참여시설(생활문화센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해당됨

- 전시시설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전시시설에서 관람하는 장애인 방문객과 전시시설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장애예술인의 관점에서 접근성 고려 필요
- 공연시설인 공연장은 공연을 보러오는 장애인과 공연을 하는 장애예술인을 고려할 수 있는데, 공연을 보러온 관람객의 경우 전시시설처럼 이동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 공연을 하는 장애예술인의 경우는 리허설, 대기실/분장실, 공연장 등의 부분 고려 필요
- 도서관은 책을 읽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로 열람을 위해 찾아오는 장애인들이 열람 또는 정보를 잘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책을 읽기 어렵거나 학습에 장애가 있는 대상들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보조도구 또는 대체도서 등을 제공함
- 생활문화센터는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공간인 부분에서 역할을 고려하면 됨
  - ※ 생활문화센터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문화생활은 전시시설, 공연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자 함
- 운영요소는 공간과 건물(공간과 시설), 온라인 공간, 콘텐츠, 관람객에 공연자(전시자)에 시설 책임자를 추가로 고려하였음
  - 문화시설을 찾아오는 대상들은 목적에 따라 관람객(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 창작자(전시물 창작/전시, 공연/실연자 등), 도서열람자(도서관 도서열람), 문화활동 참여자(예술인이 아니면서 공연, 발표 등의 행사 참여하는 사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문화시설을 찾아오는 대상들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활동은 다른데, 크게 방문객과 창작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문객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향유하는 관점에서, 창작자는 장애인이 방문하여 문화향유만 하는 대상이 아닌 창작자인 예술인으로서 역할로도 고려하였음
  - 창작자 중에서 전시물을 창작/전시하는 대상들은 창작물을 만드는 공간과 전시하는 공간의 전시시설임대, 전시 기획 등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공연자들은 연습공간, 리허설, 대기실/분장실 등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시설책임자는 문화시설의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이나 콘텐츠나 프로그램 등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접근성 장애유형과 문화시설 운영요소를 김현경(2020)의 연구에서 인용한 R. Sendell & J.Dodd. Alison Coles (ed.) (1998:14) 내용을 재인용하고, 일부는 추가적으로 조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접근성 장애유형으로 정책적 접근을 추가하였으며, 문화시설 운영요소로는 관람객이 보다 넓은 개념인 방문객 또는 이용객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시설 책임자를 정책적 접근과 연계하여 추가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장애유형과 운영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음

- 정책적 접근은 문화시설의 중장기 계획, 내부 규정 정비, 장애인 협/단체나 복지시설과의 협력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문화시설 운영요소로 콘텐츠는 미술관·박물관의 전시물 컬렉션과 공연장의 공연 또는 프로그램, 도서관의 서비스에 각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함
- 방문객과 창작자는 이용객으로 합하여 사용하도록 하지만, 관람객은 물론 창작자 입장에서도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의 표현으로 이용객을 사용함
- 시설 책임자는 정책적 접근성과 관련된 운영요소로 규정 및 계획에 대한 접근을 고려하는 역할을 함

〈표1-44〉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장애유형과 운영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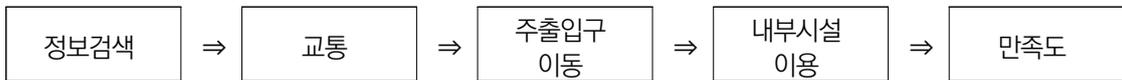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 요소
물리적 접근(Physical access)	+	공간과 시설(건물)
감각적 접근(Sensory access)		온라인 공간
지적 접근(Intellectual access)	+	인력
경제적 접근(Financial access)		콘텐츠 (컬렉션, 프로그램 포함)
정서적/태도적 접근(Emotional/attitudinal access)		이용객 (방문객, 창작자 등)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Access to decision-making)	+	시설 책임자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to information)		
문화적 접근(Cultural access)		
정책적 접근(Politic access)		

## 2.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장애요소 도출

- 이번 절에서는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 장애요소 도출을 하는데, 이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음
  - 하나는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요소를 도출하고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문화시설 이용을 원활하기 위해 필요한 설치, 도구 그리고 인력서비스 등임. 즉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직접 느끼고 접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됨
  - 다른 하나는 정책이나 제도적인 부분인데, 문화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장애예술인에게 시설개방,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시설과 연계 등에 대한 사항임. 이는 문화시설 차원에서 장애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정책이나 제도적인 부분은 크게는 법, 시행령, 규칙, 조례 등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법적인 부분의 틀에서 문화시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장애인 접근성의 장애요소를 없애려고 노력하는지, 또는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계획과 실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

-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방문해서 접하게 되는 장애인 접근 장애요소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문화시설과 장애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함
  - 문화시설은 모든 문화시설에 필요한 주차장이나 출입문 등은 공통으로 제시하고,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도서관으로 구분하여 해당 시설에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제시하도록 함
  - 문화시설별로 장애요소를 제시하는데, 접근성 장애유형과 장애인 장애유형별로 접근성 향상요인을 도출하여 제시하도록 함
- 장애인 접근 장애요소를 제시하는 방법은 가능한 이동경로에 따라 장애인 장애유형별로 접근성 장애요소를 도출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도록 함
  - 문화시설 이용객들이 찾아와서 이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문화시설을 이동하는 순서대로 접근성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소들을 제시함
- 문화시설 대부분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애요인은 ‘문화시설 공동 접근성 장애요소’로 제시하도록 하는데, 대부분이 이동과 편의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됨

■ 문화시설 정책/제도 접근 장애요소

- 문화시설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객으로 선정하고, 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려면 파트너십 형성, 가치관 부여,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기획 등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 마련 필요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 장애요소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규정마련, 직원의 응대서비스 등을 위한 문화시설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터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장애인과 함께 문화시설을 향유 또는 창작활동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여기에 해당됨
  - 무엇보다도 해당 문화시설의 콘텐츠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찾게 되는 목적과 연계되며, 배리어프리 공연이나 전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 마련 등이 해당됨

〈표1-45〉 문화시설 정책 및 제도의 접근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정책적 접근	시설 책임자	계획	전체	연간/중장기 계획으로 접근성 개선과관 관련된 계획 수립 시설의 디자인 또는 건물의 개보수 작업을 할 때 접근성 관련 원칙 고려
		규정		장애인 접근성 관련 내부 규정 마련 장애인 인력 채용 문화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용 정부/지자체 지원
정서적/ 태도적 접근	인력	고객응대		고객 응대와 관련된 매뉴얼(가이드라인) 마련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실시 장애인 고객을 위한 교육 실시 시설이용을 지원하는 전담직원 배치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	이용자	장애인 이용 현황		장애인 고객의 방문/이용정도 파악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평가와 개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을 위한 필요사항, 개선사항 등
감각적 접근	콘텐츠	프로그램	전체	장애인 고객 유치를 위한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운영
문화적 접근				장애인 이용자 문화시설 수요 또는 환경 고려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행사내용 예술인이 참여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실적 장애예술인이 참여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실적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경험 및 계획, 예산

#### ■ 문화시설 공통 접근 장애요소

-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공통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접근성 장애요소로서 정보검색과 교통, 이동, 편의공간과 문화시설의 정책/제도 등이 있음
  - 정책/제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제시하도록 함
- 많은 이용자들이 문화시설을 가고자 할 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게 되는데, 장애인들은 정보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보의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손의 사용이 어려워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시각장애로 화면의 글을 읽기 어려운 경우 등등 다양한 장애로 정보 검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웹접근성 인증제도는 정보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줌
  -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한 정보는 문화시설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콘텐츠 내용, 시설이용방법, 시설 안내 지도 등)를 제공하고 있어야 도움을 줄 수 있음

〈표1-46〉 정보의 접근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정보의 접근	온라인 공간	웹접근성	전체	웹접근성 인증 여부
		시설 이용 안내	전체	시설을 찾아오는 방법, 시설이용방법(매표, 예약 등),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콘텐츠에 대한 설명 및 가이드 제공 등등

○ 문화시설을 이용을 위해 찾아오기 위해서는 대부분 교통편을 이용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인데,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임

-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문화시설과의 접근 용이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지 어떻게 어디에 설치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임

〈표1-47〉 교통을 이용하였을 때 접근용이성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물리적 접근	건물	주차시설	전체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여부, 규격 장애인 주차구역 위치에서 문화시설의 접근용이성(거리, 안내표지판, 안전보행통로 설치 등)
		교통 및 정차시설	전체	대중교통 정차장에서 문화시설까지 접근용이성 택시 이용 시 잠시 정차할 구역
정서적/ 태도적 접근	인력		전체	정류장에서 문화시설까지 픽업서비스 제공

○ 주출입구까지 이동하는 경로는 찾기 쉽게 되어 있거나 도는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이용객들이 주출입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동통로는 휠체어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어야 함
- 이동할 때 단차 또는 장애물과 같은 방해요소가 없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유도블록 등은 도움이 됨
- 이동 중에 단차나 계단이 있을 경우,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게 경사로를 마련하여야 함

〈표1-48〉 주출입구까지의 이동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물리적 접근	건물	안내표지판	전체	설치여부
		이동통로(길)	전체	통행로의 폭이 충분성 통행로 방해물(높이 2.1m 확보, 단차)
			휠체어 이용자	단차제거시설(경사로, 승강기, 리프트 등) 설치여부 경사로 규격으로 설치(1/12의 기울기, 1.2m폭, 휴식 참, 미끄럼 방지)
		조명	전체	조명의 불편함 여부
감각적 접근		선형블록	시각	주출입구까지 연결되는 유도형 선형블록 설치여부

- 문화시설에 접근하면 주출입구를 통해 입장을 하게 되는데, 주출입구 문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작이 쉬워야 하며, 주출입구의 주변은 문화시설에 대한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내판 등이 필요함
- 주출입구의 문은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주출입구의 문은 방음 또는 안전 등의 이유로 무거우면서 두껍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힘이 약한 사람들은 문을 열고 닫는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경우, 여닫이문이나 회전문의 경우 이용이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 도와줄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주출입구를 입장하기 전이나 통과한 후에는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이동 동선 등을 파악을 많이 하는데, 이동 동선 또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안내판 등이 설치되면 이용객들이 편리함

〈표1-49〉 주출입구까지의 이동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물리적 접근	건물	주출입구(문)	전체	자동문 설치 권장 주출입구 문의 유효폭(90cm이상)
감각적 접근			전체	감지형 점형블록(주출입구 앞 30cm 앞)
물리적 접근	인력		전체	출입문이 열기 어려운 문인 경우 출입문 열어줌 호출벨
감각적 접근	건물	안내판	전체	안내표지판 설치
			시각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 안내판 음성안내 장치

- 문화시설에 들어오면 원하는 콘텐츠 또는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이동 동선들은 이동하기에 적절한 폭, 단차, 층간 이동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함
  - 이동공간은 단차 없이 평탄하고, 안전하여야 하며, 이동하는데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여야 함
  - 층간 이동을 위한 승강기나 리프트 등이 있어야 하며, 계단인 경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필요함
  - 승강기를 타고 이동할 때 안전성과 함께 조작반 높이나 버튼 등의 조작이 쉬워야 함

〈표1-50〉 주출입구까지의 이동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건물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물리적 접근	건물	실내이동공간 (복도 포함)	전체	이동공간은 단차없이 평평하고 안전하여야 함 복도의 유효폭(1.2m이상) 높이차이 있을 때 경사로 규격대로 설치 복도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 설치
			전체	공간이 다른 경우,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 재질을 다르게 처리
감각적 접근	건물	계단 (층간이동)	전체	계단,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설치 계단코는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어야 함 계단 측면은 손잡이가 연속적으로 설치
			시각	계단 시작과 끝의 지점 감지형 점형블록(30cm전면)
물리적 접근	건물	승강기	전체	조작반 높이(85cm내외 높이) 사람이 나 물체가 끼었을 때 되열림 장치 승강기의 층수, 문 개폐, 승강기 방향 등을 알려주는 음성서비스
			휠체어 이용자	개폐속도 기능버튼(단힘지연버튼) 설치 추방시야 확보 가능한 거울 설치(60cm 높이)
감각적 접근			시각	조작반 점자 표시

- 화장실은 이용자들 모두가 이용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공간임. 특히 장애인들은 이용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용 공간은 넓을 필요가 있으며,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함
  - 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위치여야하며, 일반화장실과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 1개씩 마련되어야 함
  - 모든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내부구조는 이용하기 쉽게 설치되어야 하며, 설명도 필요함
  - 화장실 내부 공간은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 용이할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변기 세면대 등은 규격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함

〈표1-51〉 내부시설의 화장실 이용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물리적 접근	건물	화장실	전체	접근이 가능한 경로에 화장실 설치 일반화장실과 구분된 장소에 설치 남녀 구분하여 각 1개 이상 설치
감각적 접근			시각	화장실 옆 출입구 옆에 감지용 점형블록 설치
		안내판	시각	화장실 입구에 화장실 내부구조를 설명하는 축지도 및 점자 안내판 설치
물리적 접근		화장실 내부 공간	전체	세정장치 형태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벨은 대변기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함(바닥면으로부터 60cm~90cm)
			휠체어 이용자	대변기 전면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1.5m×1.5m 이상) 대변기 양 옆 수평/수직 손잡이는 전동휠체어 진입 가능하도록 설치 세면대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 문화시설 대부분은 안내데스크가 있으며, 유료입장 또는 예약입장 등의 이유로 티켓을 발권할 경우 매표소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장애인이 쉽게 찾고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 안내데스크는 주출입구에서 쉽게 인지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휠체어 이용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의 높이와 안내데스크 하단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 안내데스크는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구가 비치되어 있을 필요가 있음
  - 매표소는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있어야 하며, 장애인 등의 할인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 무인정보단말기(KIOSK)나 매표소 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함

〈표1-52〉 내부시설의 안내데스크, 매표소 이용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물리적 접근	건물	안내데스크	전체	주출입구에서 쉽게 인지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설치
		안내데스크	휠체어 이용자	키 크기에 상관없이 이용가능 하도록 데스크의 높이를 2단으로 조성 안내데스크는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 들어갈 공간 확보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 이상) 전면에 휠체어 공간 확보
감각적 접근	이용객	안내데스크 비치된 도구	시각	시설 이용을 위한 점자안내책자, 돋보기 비치여부
경제적 접근			청각	시설이용을 위한 돋보기 비치 여부
물리적 접근	건물	매표소	전체	장애 및 동반자에 대한 할인 규정 명시
			휠체어 이용자	매표소 하단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 들어갈 공간 확보(높이 0.65m이상, 깊이 0.45m 이상) 무인정보단말기(KIOSK)는 휠체어 사용자가 조작 가능한 높이에 설치(높이 0.70cm이상, 90cm이하)

- 문화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힘들 때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나, 애기가 있을 때 수유공간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공간에서도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 가능하여야 함
  - 휴게시설 및 편의공간은 접근이 용이하여야 하며,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 임산부 등을 위한 별도의 수유실 설치와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이 마련되어야 함

〈표1-53〉 내부시설의 휴게시설 및 편의공간 이용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물리적 접근	건물	휴게시설/ 편의공간	전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나 휴게시설 설치 휴게실 내의 수유실 설치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 설치여부
			휠체어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단차 없이 평탄하게 조성 전동휠체어 충전가능 여부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가능하도록 공간 확보(가로 1.4m, 세로 1.4m) 다수의 시설물 설치 시 높이를 2가지 이상으로 고려

- 문화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상시 장애인 등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및 도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인이 경보 등을 보고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피를 해야 할 경우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이 설치되어야 함

〈표1-54〉 내부시설의 정보 및 피난설치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물리적 접근	건물	내부시설	전체	주요시설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주요시설에는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설치

### ■ 전시시설 접근성 장애요소

- 전시시설을 찾아오는 대상은 전시물을 관람하는 관람객과 전시물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창작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람객은 전시물을 관람만 하는 대상과 체험을 하는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체험을 통해 관람을 하는 대상들은 시각장애인(또는 발달장애인)을 고려할 수 있음
  - 전시시설의 접근성 장애요소에 대한 부분은, 전시시설 관람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다음으로 창작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함
- 전시시설의 관람객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전시시설 관람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으로 접근성의 장애요소를 살펴보도록 함
  - 전시공간에서의 이동 통로도 휠체어 사용자가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경로의 공간의 넓이가 충분하고 단차 없이 평탄하며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전시물을 보다가 쉴 수 있는 공간 필요함
  - 이동하면서 전시물을 관람하기 편하도록 되어야 하며,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 모두가 전시물을 관람 또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비나 도구 등의 서비스가 필요함

〈표1-55〉 관람객 관점에서 전시시설 이동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물리적 접근	건물	전시장	전체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고 요철 없이 평탄한 재질 통행 동선과 관람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전시물간의 유효폭이 3m이상 확보 전시장과 전시장 사이에 쉴 수 있는 의자 설치
			휠체어 이용자	전시공간 내부는 휠체어 이용자 통행 가능하도록 1.2m 이상 유효폭 확보 바닥면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만들 휠체어 대여서비스
			시각	보조견 대기공간
지적 접근			발달/청각	전시장의 끝과 끝 지점에 공간의 변화를 알리기 위해 색상과 재질을 달리 함
감각적 접근			시각	전시장의 끝과 끝 지점에 공간의 변화를 알리기 위해 실명점자표지판 설치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물리적 접근	콘텐츠	전시관람	휠체어 이용자	전시물 높이는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높이 별도의 보행약자 관람동선 제공 개방형 전시물은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해 낮게 설치
감각적 접근			시각	점자를 적용한 안내서 및 전시장 지도 제공 만질 수 있는 전시물
			청각	영상으로 만든 전시물 안내자료 문자자막 제공 전시내용에 대한 수어통역사 제공
정서적/ 태도적 접근	인력	안내	전체	이동지원 인력배치
	이용객		전체	시설이용 안내책자(방문, 전시 관련 매뉴얼 등) 보유 주요관람동선 안내 벽면 또는 바닥에 방향안내사인 설치 주의사항 픽토그램 제공
			시각	촉지도/전자안내도/전시관람유도선/유리충돌방지용 그래픽
	청각		기호/신호 표기 안내	
	전시관람	청각	보청기 대여	
		발달	조명이나 음량음향 효과 조정	

- 전시시설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관람을 위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장애인들은 장애유형에 따라 전시관람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각기 다른데,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콘텐츠와 보조도구 등을 마련하여야 함

〈표1-56〉 전시시설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관람환경 서비스 제공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문화적 접근	콘텐츠	전시관람	전체	도슨트 투어(전문가이드)/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 음성안내 가이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해설가이드/ 참여 전시(체험장 전시물)/감각전시(시각, 촉각, 후각, 청각 등)
			휠체어 이용자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물 설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별도의 관람 구역 마련
			시각	점자팜플렛/큰글씨팜플렛
			청각	한글자막서비스/수어통역사 배치/수어해설영상자료/난청 오디오 가이드
			발달	쉬운언어, 기호 또는 영상을 이용한 설명자료
정서적/ 태도적 접근	인력	안내	전체	전시 관람 시 안전사항 안내(비상시 행동절차, 응급조치, 대피 등)

- 장애예술인들은 전시물의 관람을 위해서 전시시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창작한 전시물을 전시하고자 찾는 경우도 많은데, 전시시설에서는 장애예술인들의 전시물을 창작하고 전시하는 활동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마련하여야 함
  -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예술인의 개인 영역 등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창작활동은 고려하지 않고,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만 살펴보고 제시하였음
  - 장애예술인들이 전시를 하는 과정은 전시시설을 임대하고, 전시물을 설치하고, 일정기간동안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전시하고, 전시기간이 끝났을 때 전시물을 해체하는 단계로 고려할 수 있음

〈표1-57〉 전시시설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관람환경 서비스 제공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정서적/ 태도적 접근	인력	교통	전체	픽업서비스
		안내		주요 동선 안내
		전시물		전시물 설치 및 해체 인력 배치
건물	전시동선 및 조명 파악 시간 배려			
정책적 접근	시설 책임자	임대료		시설 임대료 할인

#### ■ 공연시설 접근성 장애요소

- 공연시설 역시 공연을 보러오는 관람객과 공연을 하는 창작자(예술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연시설의 관람객은 전시시설과 달리 자리에 앉아서 무대에서 하는 공연을 보게 됨
  - 관람객들은 무대 위의 공연을 잘보고 이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은 공연을 잘 할 수 있고자 노력을 함
  - 공연시설에서는 장애(예술)인들이 관람과 창작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도구나 서비스 등을 통한 관람객으로서도 공연을 하는 예술가로서도 접근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표1-58〉 관람객 관점에서 공연시설 이용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물리적 접근	건물	공연장	휠체어 이용자	휠체어 좌석 마련되어 있으며, 앞, 위 관람객을 고려한 높이로 설치 휠체어 좌석은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 휠체어 좌석은 동반자도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좌석이 마련되어야 함 휠체어 좌석 부근에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전원플러그 설치 휠체어 대여 서비스
			발달, 청각	일반 관람석과 분리된 별도의 좌석/공간
			전체	좌석 발밑에 안전한 이동을 위한 조명등 설치 휴게의자 및 간이 쉼터 보조견 대기공간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감각적 접근	콘텐츠	공연관람	청각	자막서비스
정서적/ 태도적 접근	건물	안내	전체	장애인을 위한 안내 책자(방문, 전시 관련 매뉴얼 등)를 보유
	이용객	안내	전체	이동지원 인력배치
			전체	주요관람동선 아늑 벽면 또는 바닥에 방향안내사인 설치 주의사항 픽토그램으로 제공
			발달 청각	기호 신호표가 안내
공연관람	발달 청각	조명이나 음량음향 효과 조정 공연 중 이동을 허용하는 릴렉스 퍼포먼스		

- 공연을 보러 온 관람객은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 공연을 잘 보아야 하는데, 장애인들은 공연을 잘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움도 필요하며, 다양한 장비나 보조도구들이 필요함
  - 장애인들이 공연장에 들어오면 본인이 원하는 자리를 정해서 앉아 공연을 본 후 안전하게 귀가하여야 하는데,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공연을 보는 좌석의 위치 등이 적절하지 않음
  -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은 상황을 알려주거나, 수어나 자막서비스 등의 지원이 필요함
- 공연시설 역시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연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공연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야 함
  - 장애인들은 장애유형에 따라서 공연을 관람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콘텐츠와 보조도구 등을 마련하여야 함

〈표1-59〉 공연시설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관람환경 서비스 제공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문화적 접근	콘텐츠	전시관람	전체	음성해설사/휴대용 음성가이드/ 한글자막(대사, 소리, 음악 정보 등)/이해하기 쉬운 팸플릿
			시각	점자팸플릿/큰글씨팸플릿/저시력용 망원경/터치 투어/ 시각장애자용 집단보청장치(자기루프)/스마트 자막 안경
			청각	수어통역사/수어해설영상자료/음성텍스트변환프로그램
			발달	쉬운언어, 기호 또는 영상을 이용한 설명자료
정서적/ 태도적 접근	인력	안내	전체	전시 관람 시 안전사항 안내(비상시 행동절차, 응급조치, 대피 등)

-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은 공연장 뒤에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관람객과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

하며, 공연하는 무대와 접근성이 좋아야 함

- 예술가들은 대기실 또는 분장실을 이용하는데, 대기실/분장실까지 이동하기 수월하여야 하며, 무대까지 이동하기도 어려움이 없어야 함
- 특히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이동경로에 단차가 없고 폭도 충분하여야 함
- 분장실/대기실은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화장실은 충분한 넓이의 공간으로 휠체어가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함
- 무대 위는 장애인이 공연을 하는데 있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함

〈표1-60〉 공연/실연자 관점에서 공연시설 이용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물리적 접근	건물	무대 뒤 이동통로	휠체어 이용자	주출입구에서 대기실/분장실까지 이동경로는 단차 없이 이동 가능하며,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폭 확보(1.2m 이상) 대기실/분장실에서 무대실까지 이동경로는 단차 없이 이동 가능하며,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폭 확보(1.2m 이상) 이동 중에 단차가 있으면, 턱이나 단차 없는 우회로가 있어야 함 이동통로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함
			전체	화장실 설치(충분한 넓이의 화장실) 대기실의 공간은 충분히 넓이 확보
		대기실/ 분장실	휠체어 이용자	분장실/대기실 안의 화장실은 단차 없이 이동 가능
지적접근		무대	전체	공연자의 무대 추락 또는 벽면 충돌을 위해 무대 가장자리의 색상과 재질을 달한 경고표시 필요
정서적/ 태도적 접근	인력	안내	전체	무대 이동 등 도움 인력 배치 공연장 내 안전규칙 등 간결한 설명
				대기실/분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호 또는 색상
문화적 접근	콘텐츠	공연	청각	인덕션 루프(난청인을 위한 청각감응장치) 공연의 시작 및 사고발생 안내하는 자막스크린 표시
			시각	시각장애자용 집단보청장치(자기루프)
정서적/ 태도적 접근	건물	시간	전체	전시동선 및 조명 파악 시간 배려

#### ■ 도서관 접근성 장애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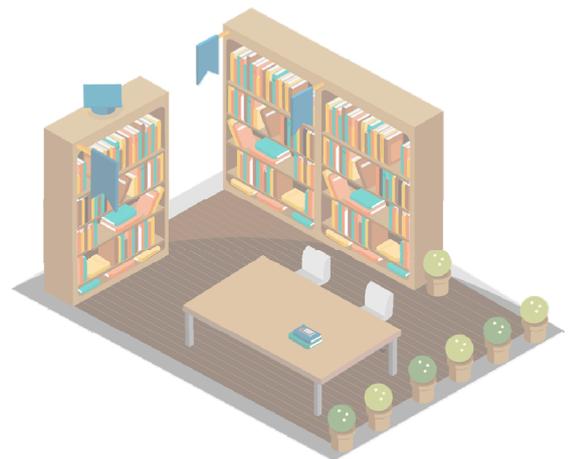
- 도서관은 도서를 열람하는 시설로서 열람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 장애요소를 찾아야 하며, 도서관은 조용하게 책을 볼 수 있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하여야 함
- 장애인을 위한 별도 자료실 마련이 필요하며,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구조가 설계되어야 함
-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장애유형별로 책 읽는데 도움을 주는 장비나 도구가 비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함

〈표1-61〉 열람자 관점에서 도서관 이용

접근성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구성요소	장애 유형	내용	
물리적 접근	건물	도서관	전체	장애인 자료실 별도로 설치 바닥은 단차제거 자료검색대는 출입구 인접에 설치	
			휠체어 이용자	안내데스크는 휠체어 접근 가능 공간 확보 휠체어 대어	
		서가	전체	서가배치는 위치와 공간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체계 마련 서가 가구는 안전하도록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거나 안전쿠션 설치	
			휠체어 이용자	선반의 높이 70cm로 설치 서가 사이는 휠체어 이동이 가능(폭1.5m 이상) 서가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손을 뺀어 닫는 높이	
		시각/ 휠체어 이용자	안전손잡이(핸드레일)/휴게공간/보조견 대기공간/휠체어사용 자석/높낮이조절책상		
		감각적 접근	건물	자료실	시각
정서적/태도 적 접근	콘텐츠				시각
		전체	대면 낭독실을 마련하여 대면 낭독서비스 소리가 반사되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장치 지양		
정서적/태도 적 접근	인력	안내	전체		도움인력배치
	이용객		전체		벽면 또는 바닥에 방향안내사인 설치 주의사항 픽토그램으로 제공
			시각		촉지도/점자안내도
			발달, 청각	기호 신호표기 안내	
문화적 접근	콘텐츠	도서	전체	장애인을 위한 도서목록	
			시각	음성지원도서/큰글씨도서/점자도서/촉지도서/TTS도서/낭독도서	
			청각	수어영상도서	
			발달	읽기 쉬운 텍스트로 된 도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현으로 된 영상(애니메이션) 도서	
문화적 접근	콘텐츠	독서보조기기	지체	높낮이조절책상/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승강형 전동휠체어/ 페이지터너	
			시각	(휴대용)음성독서기기/점자정보단말기/음성변환프로그램 (TTS)/ 화면 확대 프로그램/ 독서 확대기/ 수어영상자료 /TEXT-PDF자료	
			청각	영상전화기/보청기기/골도무선헤드셋/화상캠	
문화적 접근	콘텐츠	독서공간	전체	대면낭독실/장애인자료실/영상실	
			시각	시각장애인실	
정서적/ 태도적 접근	인력	안내	전체	전시 관람 시 안전사항(바상시 행동절차, 응급조치, 대피 등) 안내	

# 제5장. 문화시설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





## 제1절 조사개요

### 1.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방안

-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시설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표적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함
  - 실태조사는 장애인들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방해하는 장애요소들을 없애는 정책이나, 콘텐츠 그리고 설비와 장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임
  - 표적집단 면접조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또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시설 담당자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 실태조사는 4장에서 도출한 접근성 장애요소를 기반으로 설문지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는 시설담당자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체크리스트는 조사원인 직접 시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설문지는 시설담당자 또는 운영자만 알 수 있어, 조사원이 점검할 수 없는 문화시설의 접근성 관련된 정책이나, 공연/전시 계획, 장애인 대응을 위한 지침, 전시/공연 콘텐츠 등을 설문지로 구성하여 시설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을 받음
  - 체크리스트는 문화시설을 돌아다니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원이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주차장, 접근경로, 출입구, 내부 이동경로, 화장실, 휴게시설 등에 대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파악하여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음
  - 홈페이지 등의 웹접근성의 부분은, 웹접근성의 점검리스트를 만든 후, 이를 점검할 수 있는 대상들을 섭외하여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시설의 홈페이지 이용을 하는데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였음
- 실태조사는 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시설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사모집단을 정의하고 진행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하였음
  - 본조사의 모집단은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문화기반시설 리스트와 「2021 공연예술조사」의 공연장 현황을 결합하여 전시시설과 공연시설을 포괄하는 표본틀을 구축하였음
  - 실제 조사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포함하지만, 크게 전시시설과 공연시설로 구분하였으며, 도서관은 국립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도서관 통계는 표본수가 적어 별도의 통계를 제시하지 않도록 함
- 표적집단 면접조사는 시설담당자와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여 정책적 활용 또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시설담당자들에게는 각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정책의 변화와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향후 장애예술인의 전시/공연 행사 개최 예정 등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의 노력 또는 변화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장애(예술)인들은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발달(지적, 자폐성)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실제 문화시설에 갈 때 애로사항과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함
- ※ 2절과 3절의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통계보고서」를 찾아보기를 권장하며, 여기서는 주요내용만 제시하도록 하며, 그래프에 없는 내용도 글로 수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2. 실태조사의 개요

- 목표 모집단은 국내에 있는 모든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함
- 조사 모집단은 문화기반시설 중에서 전시와 공연 등의 관람을 하는 시설인 국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와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함
  - 실태조사는 장애인이 전시와 공연 등에 대한 문화향유 또는 창작활동, 참여활동을 위한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위와 같이 선정하였음
- 표본들은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의 국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리스트와 「2021 공연예술조사」의 공연장 현황을 결합하여 활용하였음
  - 일부 공연장 또는 문예회관은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과 「2021 공연예술조사」 모두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여 2,289개의 문화시설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함
- 표본규모는 1,500개로 하였으나, 응답거부와 조사일정 등으로 인해 1,167개의 조사가 응답하였음
  - 이 중에서 국립도서관 4개, 국립박물관 51개, 국립미술관 4개와 문예회관 262개, 정부기관 공연장 12개 등 총 333개 문화시설은 전수층으로 선정하였음
  - 전수층은 규모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조사가 안 되었을 때 비슷한 규모의 문화시설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화시설로 가능한 조사가 되어야 하는 시설로 명시한 것임
- 조사방법은 문화시설 관계자 면접을 통한 접근성 현황조사와 조사원이 체크리스트 직접 기입하는 접근성 점검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조사원인 문화시설을 이동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조사원인 직접 접근성 점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문화시설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여야 알 수 있는 부분은 설문지를 작성하여 응답을 받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문화시설 내 관계자와의 면접조사는 문화시설의 기본정보와 함께 내부 규정, 직원 교육,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기획 등 장애인 접근성 관련 정책 및 제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조사하였음.
  - 접근성 점검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별로 장애인의 향유 및 창작/전시 활동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및 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였음

〈표 1-1〉 실태조사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모집단) 국내에 있는 모든 문화시설</li> <li>• (조사 모집단) 문화기반시설총람+공연예술실태조사의 문화시설 2,289개</li> </ul>
표 본	• 목표표본 : 1,500표본 / 유효표본 : 1,167표본
조 사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시설 담당자) 면접조사 및 온라인, 이메일, FAX 조사 병행</li> <li>• (체크리스트) 방문 및 점검을 통한 조사원 기입방식</li> </ul>
조 사 기 간	• 2022.12.09 ~ 2023.02.10

### 3. 표적집단 면접조사(FGI)

- FGI는 문화시설 담당자와 문화시설 이용자인 장애인/장애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문화시설 이용자의 경우 장애유형 및 예술 장르별 다양한 장애예술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현황과 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방문 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함
  - 문화시설 담당자의 경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서 파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시설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선사항 및 개선 시 애로사항, 제약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함

〈표 1-2〉 표적집단 면접조사(FGI)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 :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현황 및 문화시설 방문 시 고려사항 등을 파악</li> <li>• 문화시설 담당자 : 문화시설에서 구비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 현황과 문화행사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문화시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및 제약사항 등을 파악함</li> </ul>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 : 장애유형 및 예술분야를 고려하여 10명 선정</li> <li>• 문화시설 담당자 : 시설유형을 고려하여 10명 선정</li> </ul>														
조사 방법	• FGI(Focused Group Interview)와 IDI(In-Depth Interview) 방식 병행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며 대면인터뷰 실시														
참여 대상	• 장애예술인 10명														
	<table border="1"> <tr> <td>참가자</td> <td>뇌병변/지체장애인[3명]</td> <td>발달장애인(보호자)[2명]</td> <td>청각장애인[2명]</td> <td>시각장애인[3명]</td> </tr> <tr> <td>조사진행</td> <td>2월 22일 13시</td> <td>2월 22일 16시</td> <td>2월 22일 18시</td> <td>2월 24일 16시</td> </tr> </table>	참가자	뇌병변/지체장애인[3명]	발달장애인(보호자)[2명]	청각장애인[2명]	시각장애인[3명]	조사진행	2월 22일 13시	2월 22일 16시	2월 22일 18시	2월 24일 16시				
	참가자	뇌병변/지체장애인[3명]	발달장애인(보호자)[2명]	청각장애인[2명]	시각장애인[3명]										
조사진행	2월 22일 13시	2월 22일 16시	2월 22일 18시	2월 24일 16시											
• 문화시설 담당자 11명															
	<table border="1"> <tr> <td>참가자</td> <td>박물관[4명]</td> <td>문예회관[1명]</td> <td>미술관[2명]</td> <td>문예회관[1명]</td> <td>공연장[2명]</td> <td>문예회관[1명]</td> </tr> <tr> <td>조사진행</td> <td>3월 7일 15시</td> <td>3월 8일 10시</td> <td>3월 9일 10시</td> <td>3월 9일 15시</td> <td>3월 13일 14시</td> <td>3월 22일 14시</td> </tr> </table>	참가자	박물관[4명]	문예회관[1명]	미술관[2명]	문예회관[1명]	공연장[2명]	문예회관[1명]	조사진행	3월 7일 15시	3월 8일 10시	3월 9일 10시	3월 9일 15시	3월 13일 14시	3월 22일 14시
참가자	박물관[4명]	문예회관[1명]	미술관[2명]	문예회관[1명]	공연장[2명]	문예회관[1명]									
조사진행	3월 7일 15시	3월 8일 10시	3월 9일 10시	3월 9일 15시	3월 13일 14시	3월 22일 14시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이용 경험 및 장애인 문화예술분야 향유 경험, 창작/전시 활동 경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 파악</li> <li>• 장애인 관람객 및 장애예술인 시설/서비스 제공사항 및 향후 계획 등 장애예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의 노력, 접근성 개선의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li> </ul>														
조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예술인 : 2023년 2월 22일 ~ 2월 24일</li> <li>• 문화시설 담당자 : 2023년 3월 7일 ~ 3월 22일</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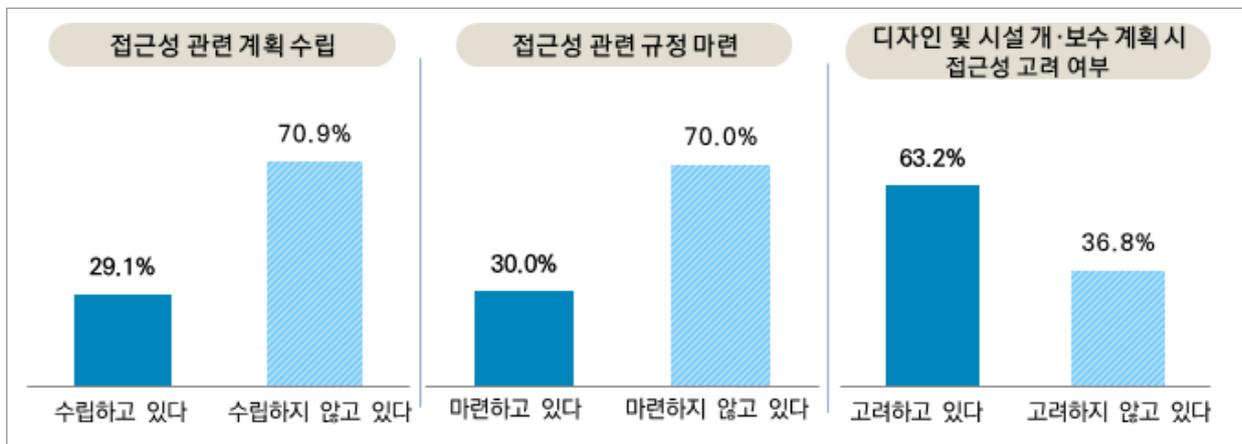
## 제2절 실태조사 주요결과

### I 문화시설 접근성 현황조사

#### 1.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제도

- ‘장애인 접근성 개선 관련 계획’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3.0%로 나타남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서관은 관련 계획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0%), 그 다음으로는 미술관(81.2%), 박물관(75.5%), 문예회관(74.1%), 생활문화센터(58.0%)의 순으로 조사됨
- ‘장애인 접근성 개선 관련 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1%로 나타난 반면, 수립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70.9%로 나타남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미술관(36.9%), 공연장(30.8%), 문예회관(30.5%), 박물관(2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접근성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0%로 나타난 반면,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70.0%로 나타남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도서관(50.0%), 미술관(36.9%), 문예회관(31.9%), 박물관 (29.8%), 공연장(2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웹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시설 개·보수 계획 시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원칙(웹접근성, 유니버설 디자인(U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에 대한 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2%로 나타남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및 시설 개·보수 계획을 위한 장애인 접근성 관련 규정 고려한 경우는 문예회관(71.2%), 박물관(66.4%), 미술관(65.0%), 공연장(5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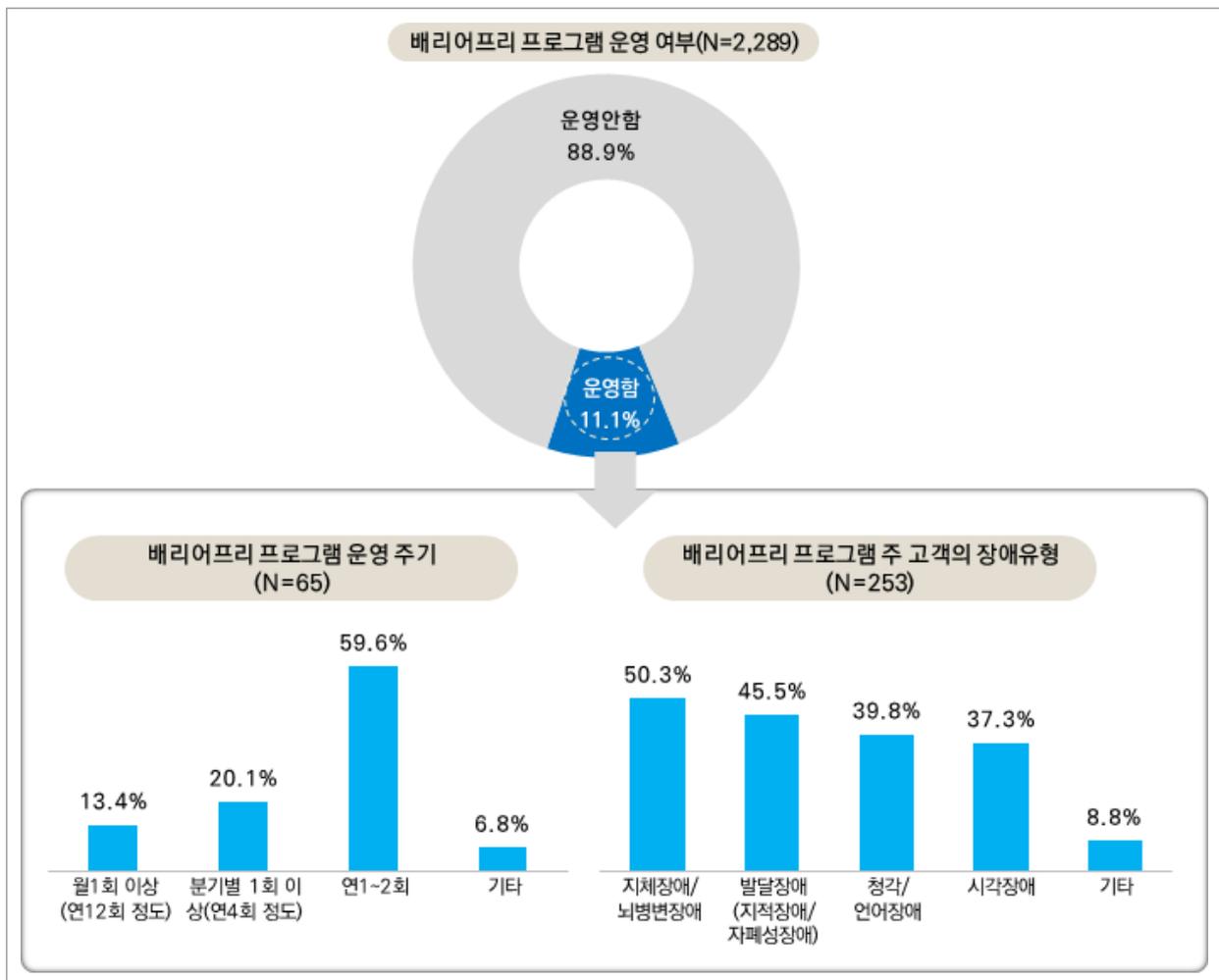


〈그림2-1〉 장애인 접근성 관련 계획 수립/규정 마련 여부

## 2.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기획

- ‘최근 3년간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운영하였다는 응답은 11.1%로 조사됨
-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운영 주기’를 조사한 결과, 연 1~2회 운영한다는 응답이 59.6%로 나타났고, 분기별 1회 이상(20.1%), 월1회 이상(13.4%)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주 고객의 장애 유형’을 조사한 결과, 지체장애/뇌병변장애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발달장애(45.5%), 청각/언어장애(39.8%), 시각장애(37.3%) 등의 순으로 이어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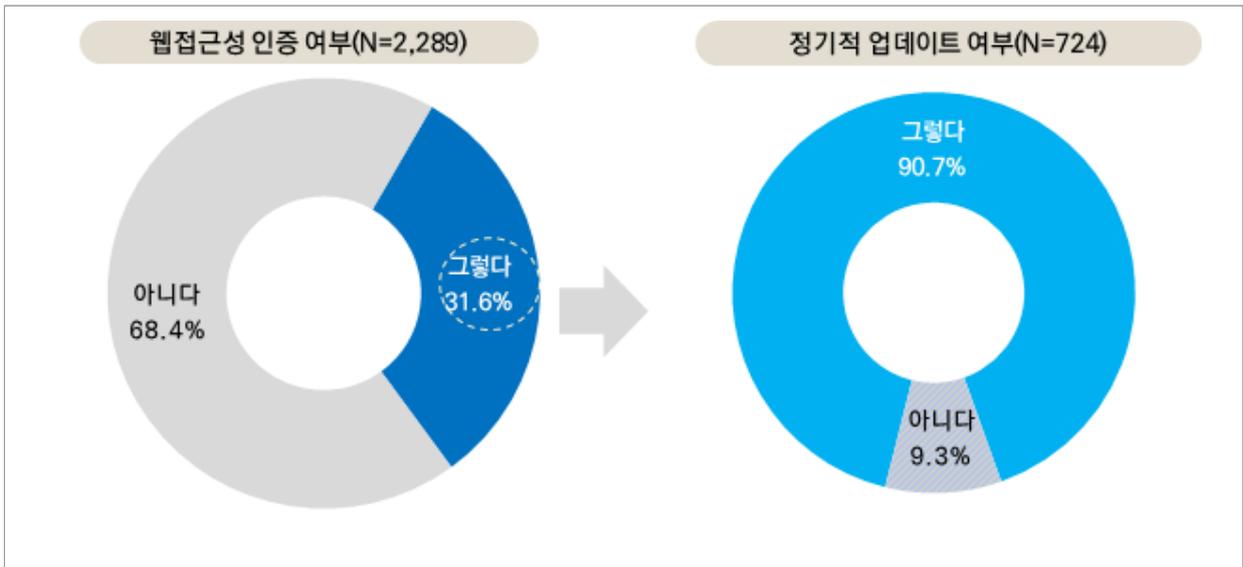
〈그림2-2〉 최근 3년간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주 고객의 장애유형

### 3. 장애인 정보 검색

#### ■ 웹접근성 인증 및 정기적 업데이트 여부, 주 어려움 겪는 장애 유형

- ‘웹접근성 인증 및 정기적 업데이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증을 받았다는 응답은 31.6%로 나타났고, 그 중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응답은 90.7%로 나타나, 웹접근성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었음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서관(100.0%)에서 웹접근성 인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문예회관(35.3%), 공연장(33.4%), 생활문화센터(32.4%), 미술관(29.9%), 박물관(29.3%)의 순으로 조사됨
- ‘홈페이지 이용 시 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유형’을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라는 응답이 8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체/뇌병변장애(46.4%), 발달장애(40.7%), 청각/언어장애(34.6%), 기타(1.3%)의 순으로 조사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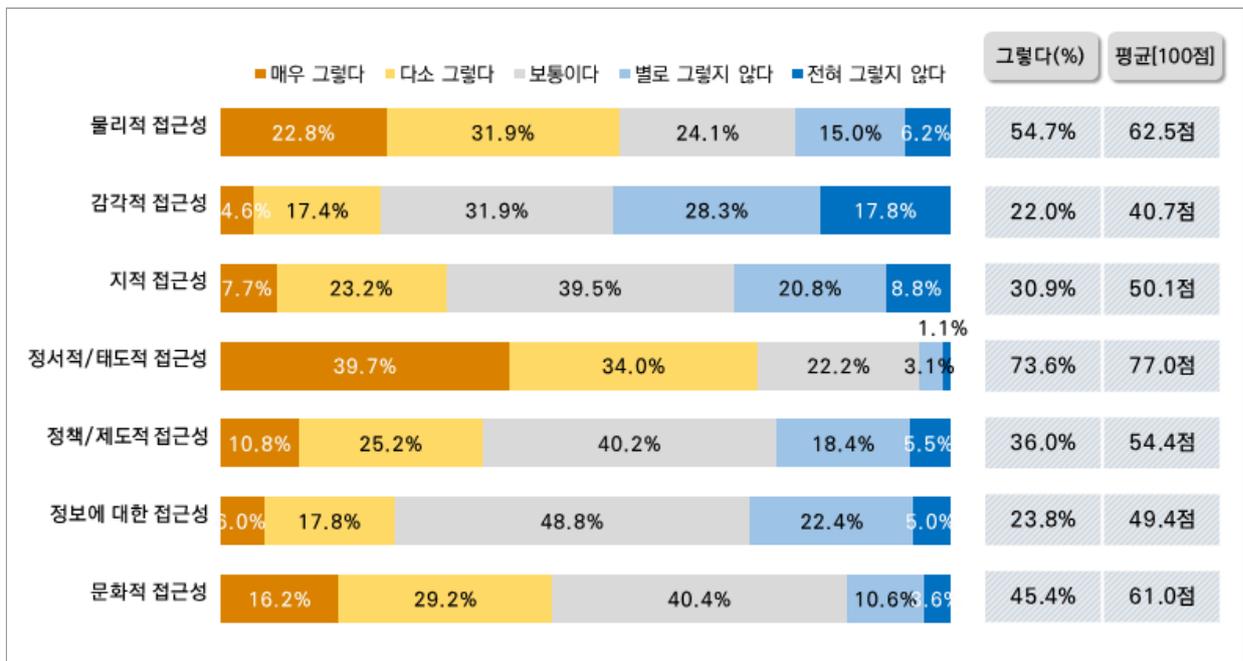
〈그림2-3〉 웹접근성 인증 및 정기적 업데이트 여부

## 4. 장애인/장애예술인 접근성 평가 및 개선사항

### ■ 장애인 고객 접근성 유형별 평가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73.9%로 나타남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술관(80.0%)에서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박물관(78.4%), 문예회관(77.4%), 공연장(66.5%), 생활문화센터(64.4%), 도서관(50.0%)의 순으로 조사됨
  -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비보유한 경우 장애인 고객 접근성 유형별 평가는 64.1점으로 보유한 경우(62.2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장애인 고객 접근성 유형별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서적/태도적 접근성이 7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물리적 접근성(62.5점), 문화적 접근성(61.0점) 등의 순으로 조사됨, 반면, 감각적 접근성은 40.7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됨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예회관(71.5점)에서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박물관(65.2점), 미술관(60.8점), 공연장(58.3점), 생활문화센터(54.3점)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문화예술활동 공간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한 전시공간(64.9점)에서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무대시설(64.7점), 공연준비공간(61.3점), 작업공간(57.2점)의 순으로 조사됨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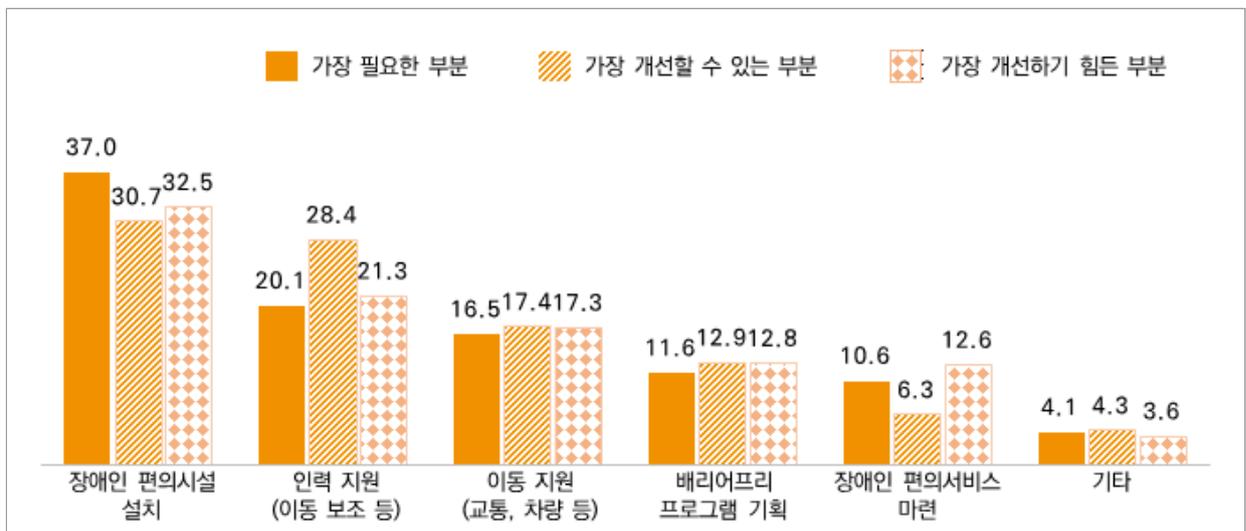


〈그림2-4〉 장애인 고객 접근성 유형별 평가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력 지원(20.1%), 이동 지원(16.5%),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기획(11.6%), 장애인 편의서비스 마련(10.6%), 기타(4.1%)의 순으로 조사됨
  - 시설유형으로 살펴보면, 도서관에서는 인력 지원(100.0%)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했고, 타 기관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했는데, 그 중에서도 생활문화센터(41.4%)에서의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됨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력 지원(28.4%), 이동 지원(17.4%),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기획(12.9%), 장애인 편의서비스 마련(6.3%), 기타(4.3%)의 순으로 조사됨
  - 시설유형으로 살펴보면, 문예회관과 공연장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가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응답했고(각 34.0%), 도서관의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서비스 마련과 이동 지원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 50.0%). 한편, 인력 지원의 경우에는 공연장(20.7%),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기획의 경우에는 미술관(21.1%)에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문화예술활동 공간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가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응답했으나, 전시공간(31.5%)의 경우 장애인 편의서비스 마련의 응답이 비교적 높게 조사됨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개선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력 지원(21.3%), 이동 지원(17.3%), 배리어프리 프로그램 기획(12.8%), 장애인 편의서비스 마련(12.6%), 기타(3.6%)의 순으로 조사됨
  - 시설유형으로 살펴보면,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가장 개선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응답 결과를 보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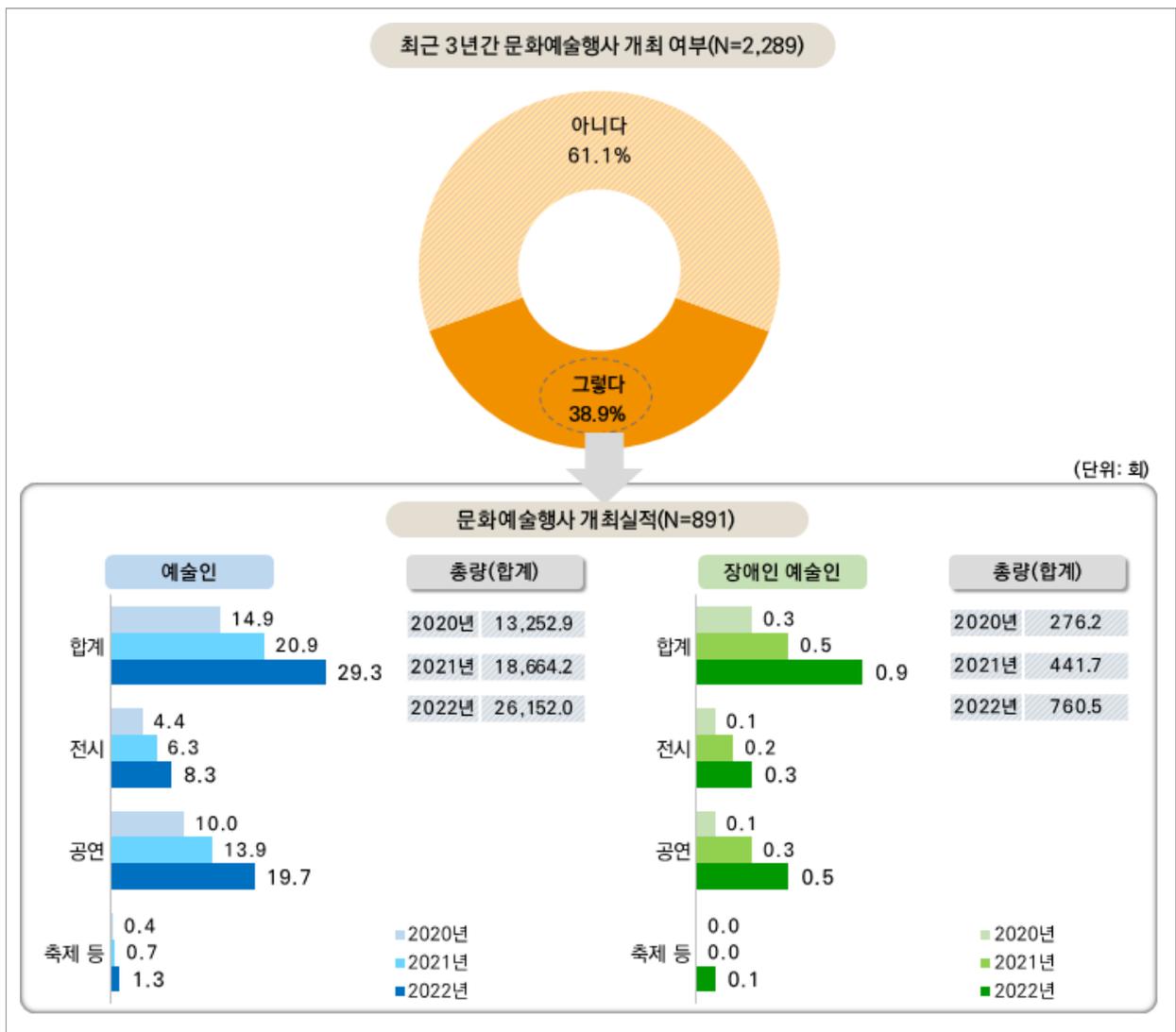


〈그림2-5〉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 및 개선사항

##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창작, 실연) 현황

- ‘최근 3년간 문화예술행사 개최 여부 및 실적’을 조사한 결과, 개최했다는 응답은 38.9%로 조사됨
- 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평균 개최 횟수’는 2020년 14.9회, 2021년 20.9회, 2022년 29.3회로 점차 증가하였고, 전반적으로 공연 > 전시 > 축제 등의 순으로 개최 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총량을 살펴보면, 2020년 13,252.9회에서 2022년 26,152.0회로 약 2배 증가함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평균 개최 횟수’는 2020년 0.3회, 2021년 0.5회, 2022년 0.9회로 나타났고, 총량을 살펴보면, 2020년 276.2회에서 2022년 760.5회로 약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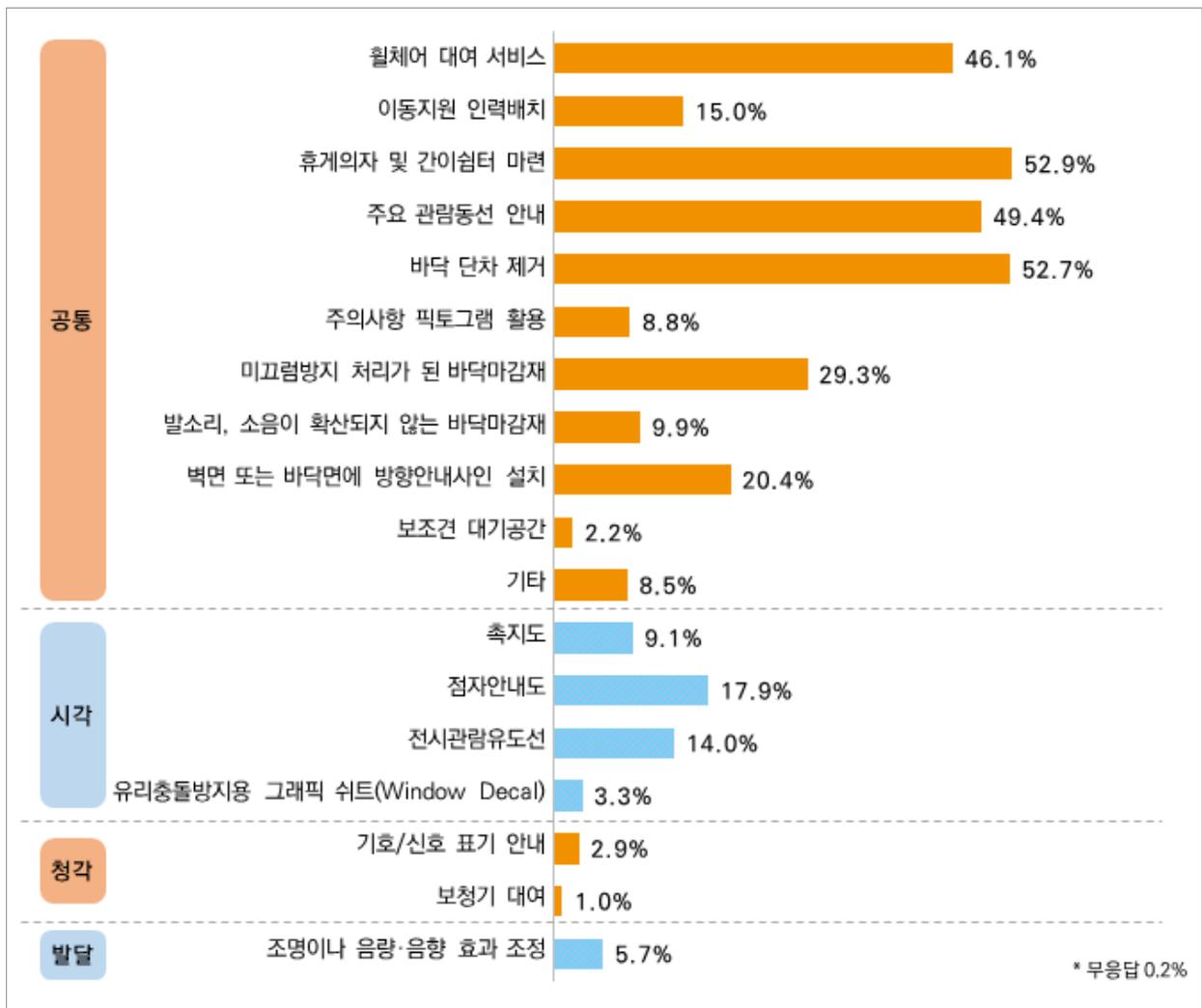
〈그림2-6〉 최근 3년간 문화예술행사 개최 여부 및 실적

## 6. 시설별 현황

### ■ 전시시설

- 전시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용 안내책자 보유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11.7%임. 안내책자 형태로는 점자책자가 58.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는 쉬운 글씨로 된 책자(32.4%), 큰 글씨 책자(28.8%), 기타(9.9%)의 순으로 조사됨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박물관(12.8%)이 미술관(8.3%) 보다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전시공간에서의 ‘장애인 이동을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 휴게의자 및 간이시터 마련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바닥 단차 제거(52.7%), 주요 관람동선 안내(49.4%), 휠체어 대여 서비스(46.1%) 등 주로 물리적 접근성에 관련된 항목의 순으로 조사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안내도가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조명이나 음량·음향 효과 조정에 대한 응답이 5.7%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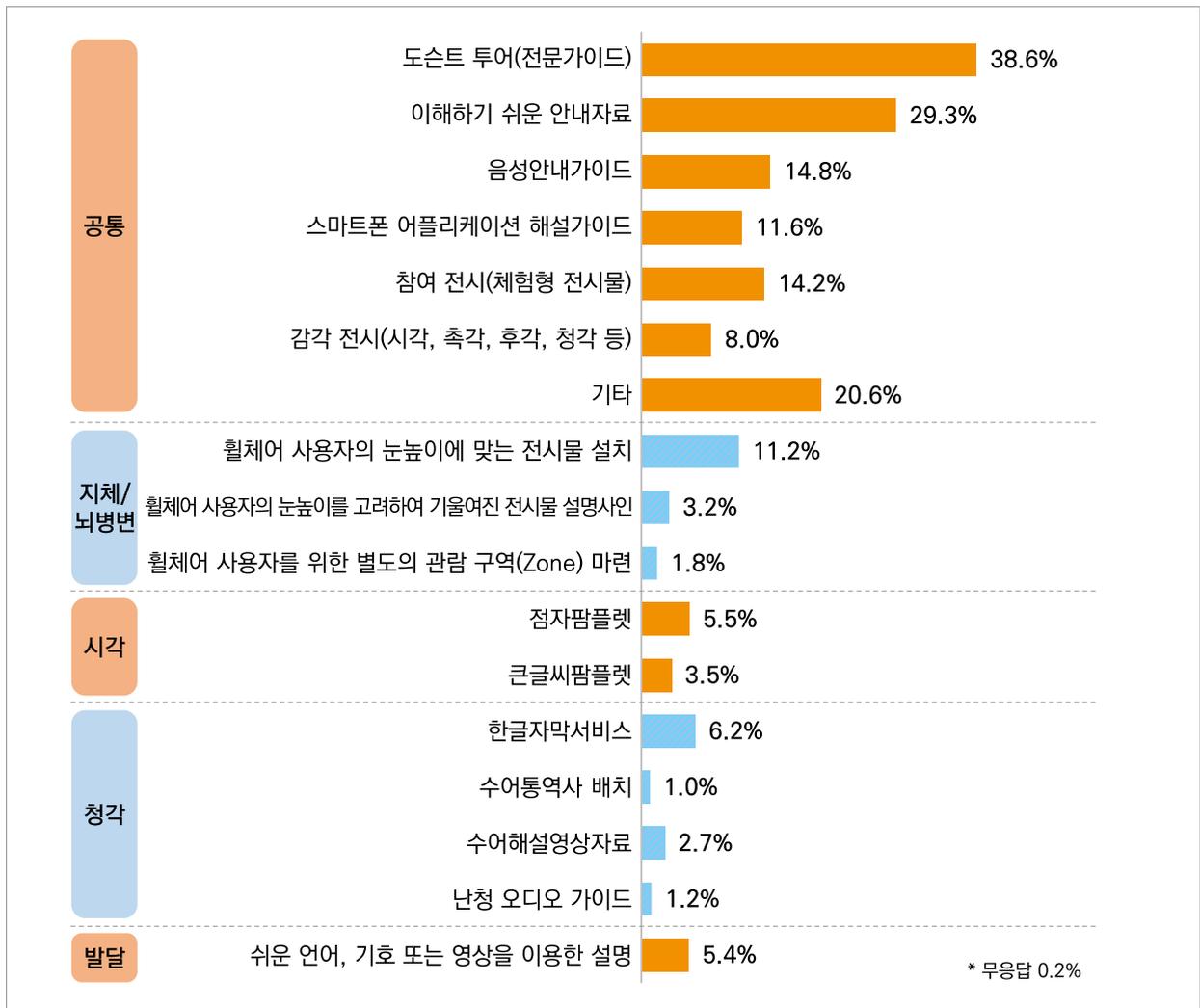
(단위 : %)



〈그림2-7〉 전시공간에서의 장애인 이동을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 ‘장애인의 관람환경 접근성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통의 경우 도슨트 투어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를 제외한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 (29.3%), 음성안내가이드(14.8%), 참여 전시(14.2%)등의 순으로 조사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물 설치 (11.2%), 시각장애인은 점자팜플렛(5.5%), 청각장애인은 한글자막서비스(6.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관람 구역(Zone) 마련(1.8%),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난청 오디오 가이드 등은 1~2%대의 낮은 비율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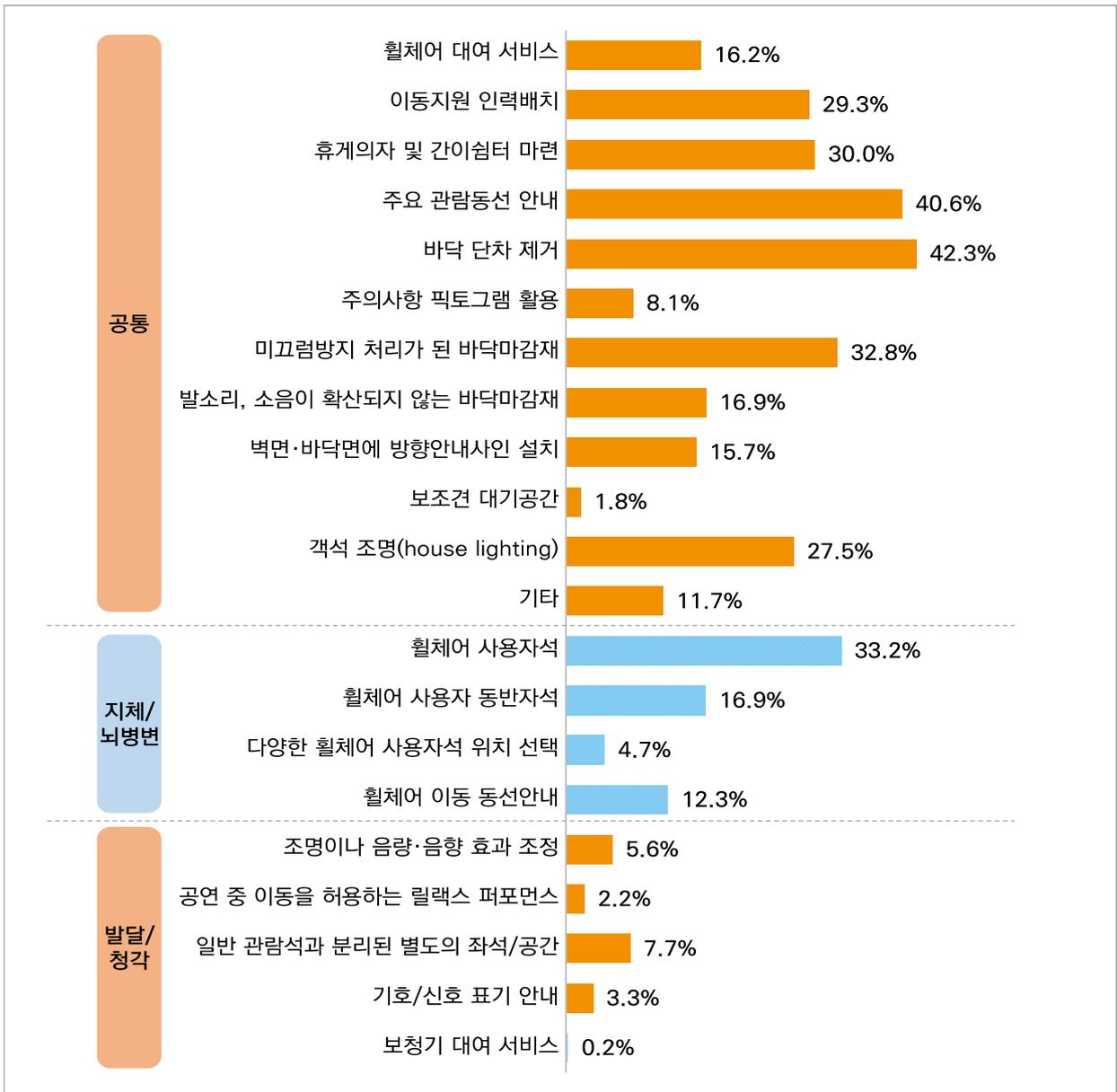


〈그림2-8〉 전시공간에서 장애인의 관람환경 접근성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 공연시설

- 공연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연 공간에서의 장애인 이동을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바닥 단차 제거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요 관람동선 안내(40.6%), 휠체어 사용자석(33.2%), 미끄럼방지 처리가 된 바닥마감재(32.8%), 휴게의자 및 간이침대 마련(30.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한편, 자문회의 시 휠체어 이용자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Needs)가 많았던 다양한 휠체어 사용자석 위치 선택(4.7%), 공연 중 이동을 허용하는 릴랙스 퍼포먼스(2.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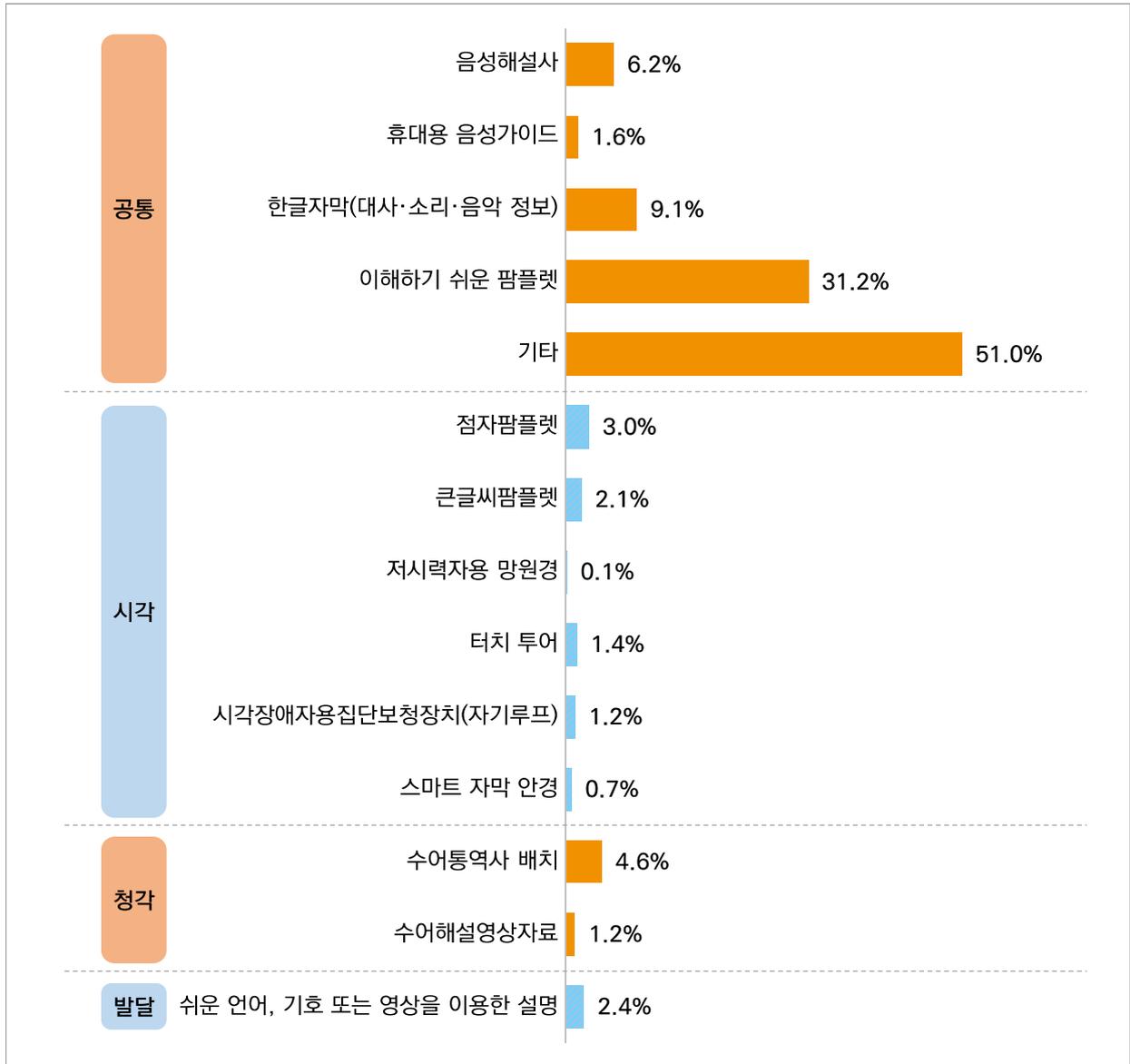
(단위 : %)



〈그림2-9〉 공연 공간에서의 장애인 이동을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 ‘장애인의 감각적 접근성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해하기 쉬운 팸플렛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글자막(9.1%), 음성해설사(6.2%) 등의 순으로 조사됨

(단위 : %)



〈그림2-10〉 공연 공간에서의 장애인의 감각적 접근성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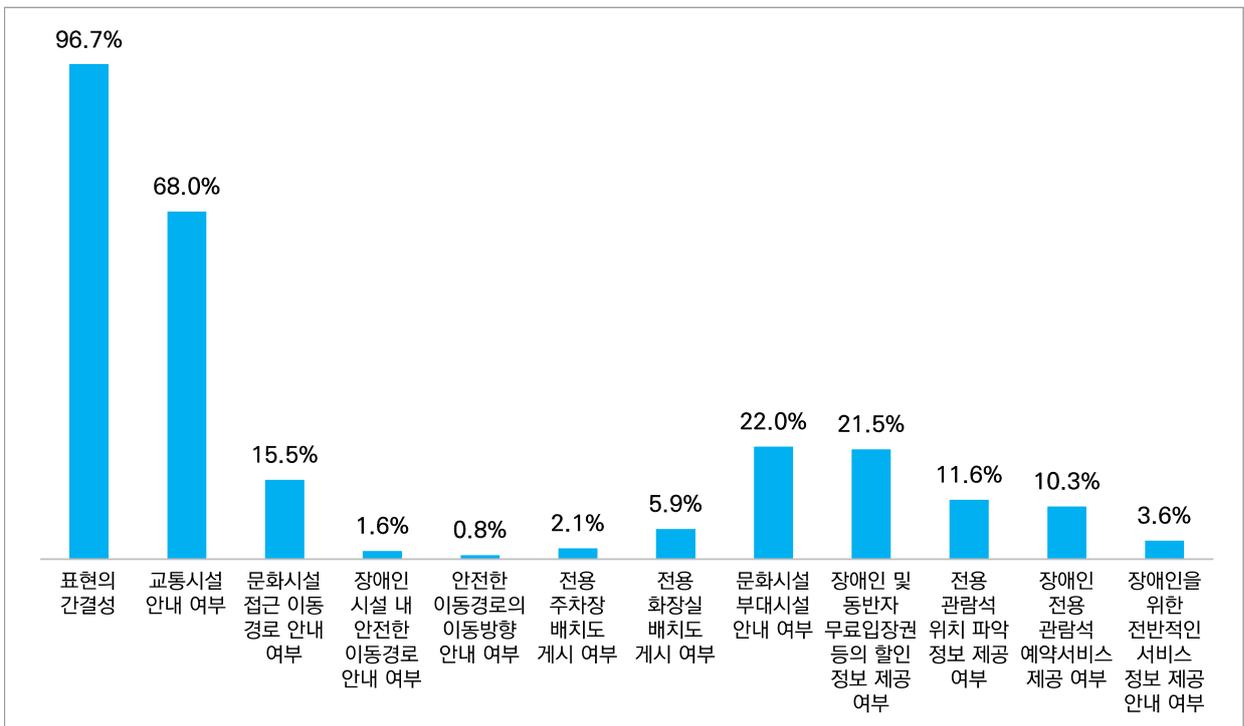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공연장 내 안전규칙 등 간결한 설명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대 이동 등 도움인력 배치(30.2%), 무대 단차 제거(28.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연습 및 대기 관련 제공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시작시간/대기시간 안내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넓은 대기실/분장실 제공(36.6%), 연습을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35.9%)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대기실 및 분장실 통로의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용이성’을 조사한 결과, 이동이 용이하다는 응답이 48.8%로 나타남

## II 문화시설 접근성 점검조사

### 1. 정보 검색

- ‘문화시설의 정보검색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현의 간결성(96.7%),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 홈페이지에서 안내(68.0%)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이동경로를 안내하고 있는 곳은 15.5%, 시설 내 안전한 이동경로를 안내하는 곳은 1.6%, 이동방향까지를 안내하는 곳은 0.8%로 조사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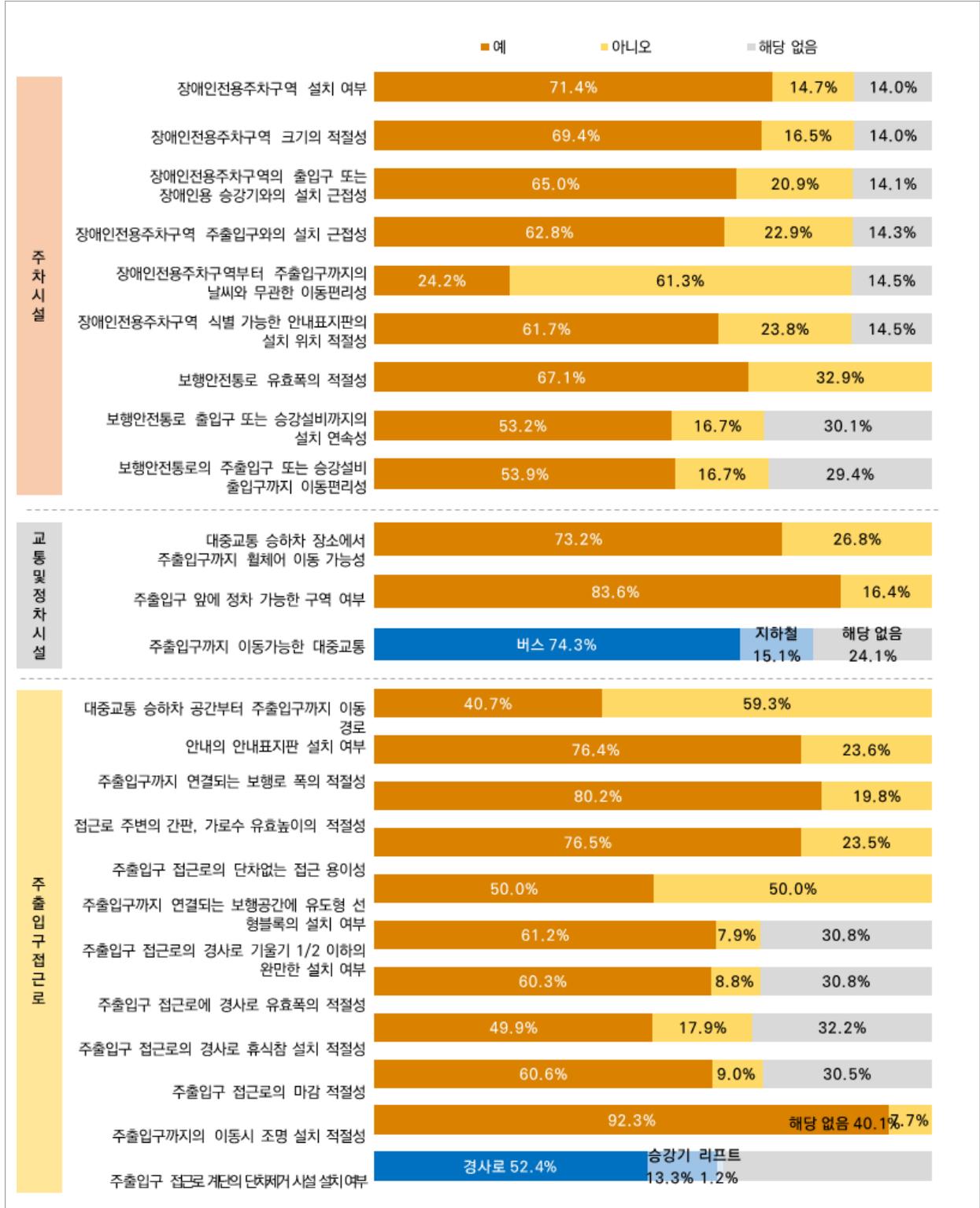
〈그림2-11〉 정보검색

### 2. 시설도착 및 진입

- 전체 시설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곳’은 71.4%, 그 ‘크기가 적절하게 확보된 곳’은 69.4%로 조사됨
- ‘보행안전통로’의 경우 전체 문화시설 중 67.1%가 1.2m 이상의 유효폭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공연장’과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비율이 각 58.6%, 56.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체 문화시설 중 ‘보행안전통로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까지가 연속적으로 설치된 곳’은 53.2%, 이동이 편리한 곳은 53.9%로 확인됨
- ‘전체 문화시설 중 대중교통 승하차 장소에서 주출입구까지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곳’은 73.2%, 주출입구 앞에 정차 가능한 구역이 있는 곳은 83.6%로 조사됨

- '주출입구까지 이동 가능한 대중교통'으로는 버스가 74.3%로 가장 높았고, 지하철이 15.1%로 확인됨
-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경우, 전체 시설 중 40.7%만이 대중교통 승하차 공간부터 주출입구까지의 이동경로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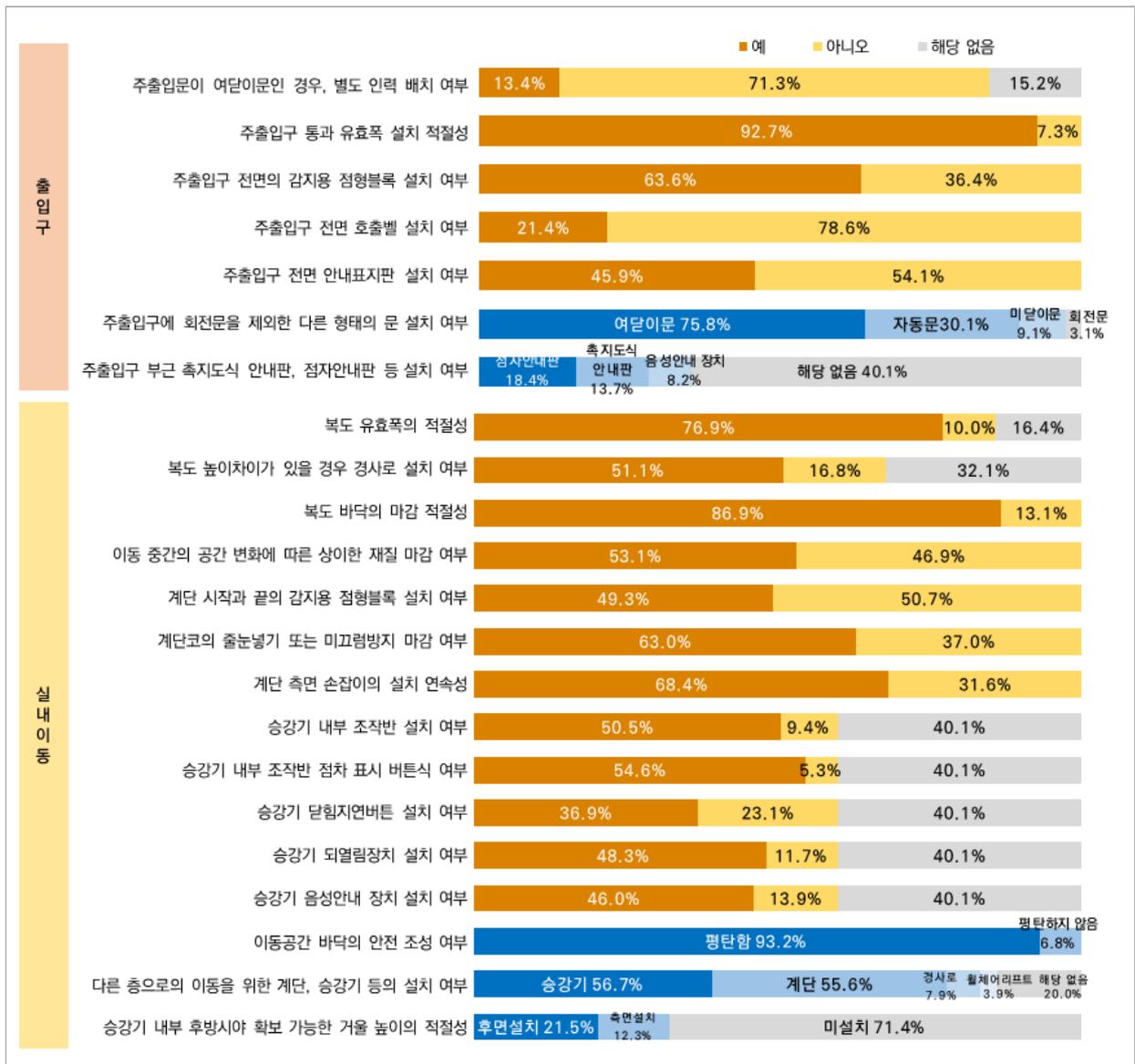
(단위 : %)



〈그림2-12〉 시설도착 및 진입\_주차시설부터 주출입구 접근로 이동

- 주출입구 문이 ‘자동문’ 30.1%, ‘여닫이문’이 75.8%로 나타났으며, 여닫이문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의 13.4%만이 문을 여닫아주는 별도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주출입구 전면에 호출벨’이 설치된 비율은 21.4%이며, ‘위चना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비율은 45.9% 나타남. ‘주출입구 부근에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안내판’ 설치 비율은 59.9%, 미설치 비율은 40.1%로 나타남
- ‘다른 층으로의 이동을 위한 승강기 설치’ 비율은 56.7%이며, ‘승강기 내부 조작반’ 설치는 50.5%, ‘담힘지연버튼’ 설치 비율은 36.9%, ‘승강기 음성 안내 장치’ 설치 비율은 46.0%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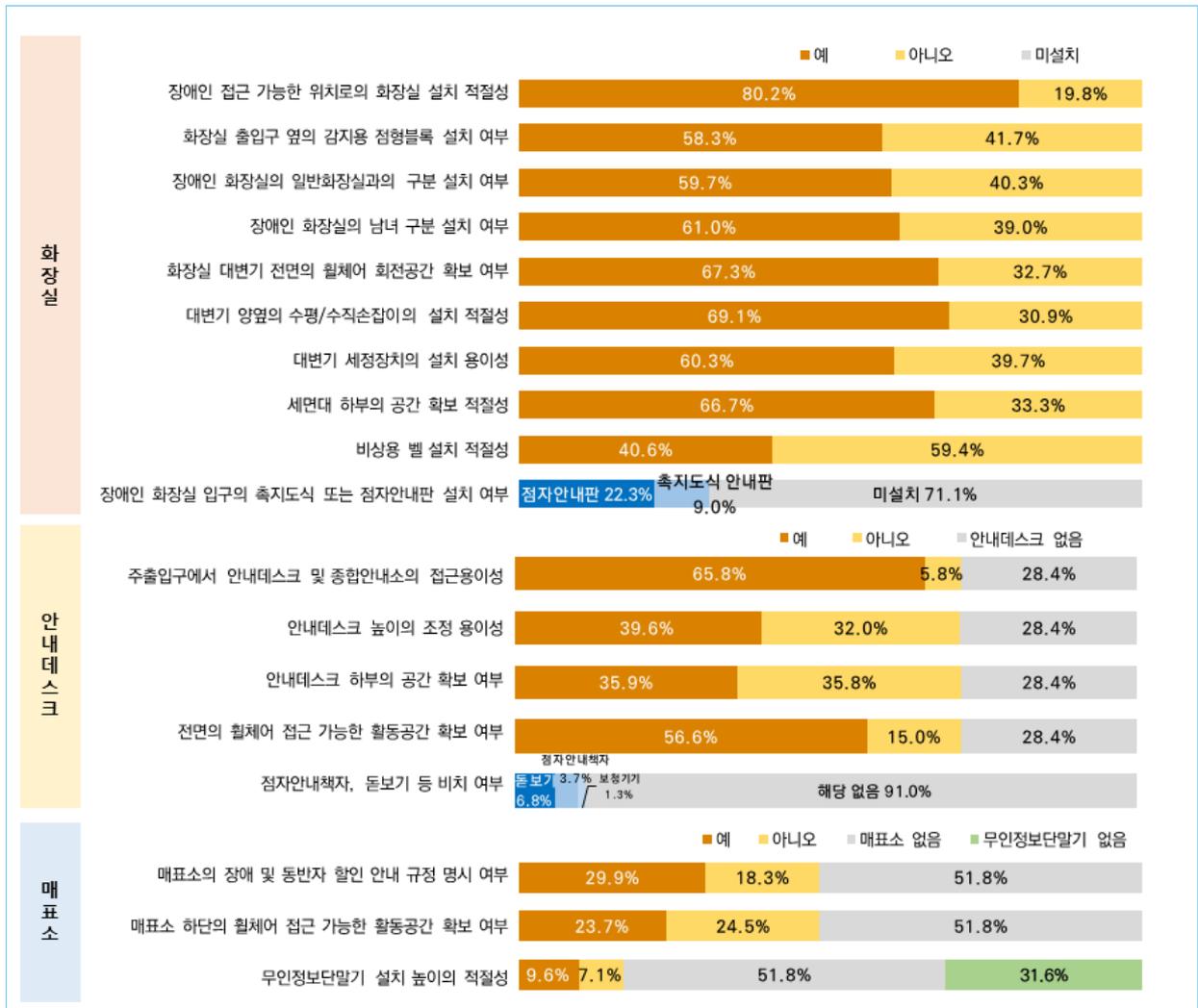
(단위 : %)



〈그림2-13〉 시설도착 및 진입\_주출입구부터 실내이동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위치로의 화장실 설치 적절성’은 80.2%, ‘일반 화장실과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 비율은 59.7%, ‘장애인 화장실 입구에 촉지도 또는 점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체 시설 중 31.3%로 나타남
- 또한, ‘화장실 대변기 전면의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 비율은 67.3%, ‘세면대 하부의 공간 확보’ 비율은 66.7%, ‘비상용 벨’ 설치 비율은 40.6%로 나타남
- ‘안내데스크 및 종합안내소가 주출입구에서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한 곳’은 65.8%, ‘안내데스크 전면에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공간이 확보’된 곳은 전체 시설 중 56.3%, ‘점자안내책자 또는 돋보기, 보청기기가 비치’된 곳은 전체 시설 중 9.0%에 불과함
- 전체 시설 중 매표소가 설치된 곳은 48.0%였고, 이 중 매표소에 장애인 또는 동반자 할인 규정이 명시된 곳은 전체 시설의 29.9%, 매표소 하단에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공간이 확보된 곳은 23.7%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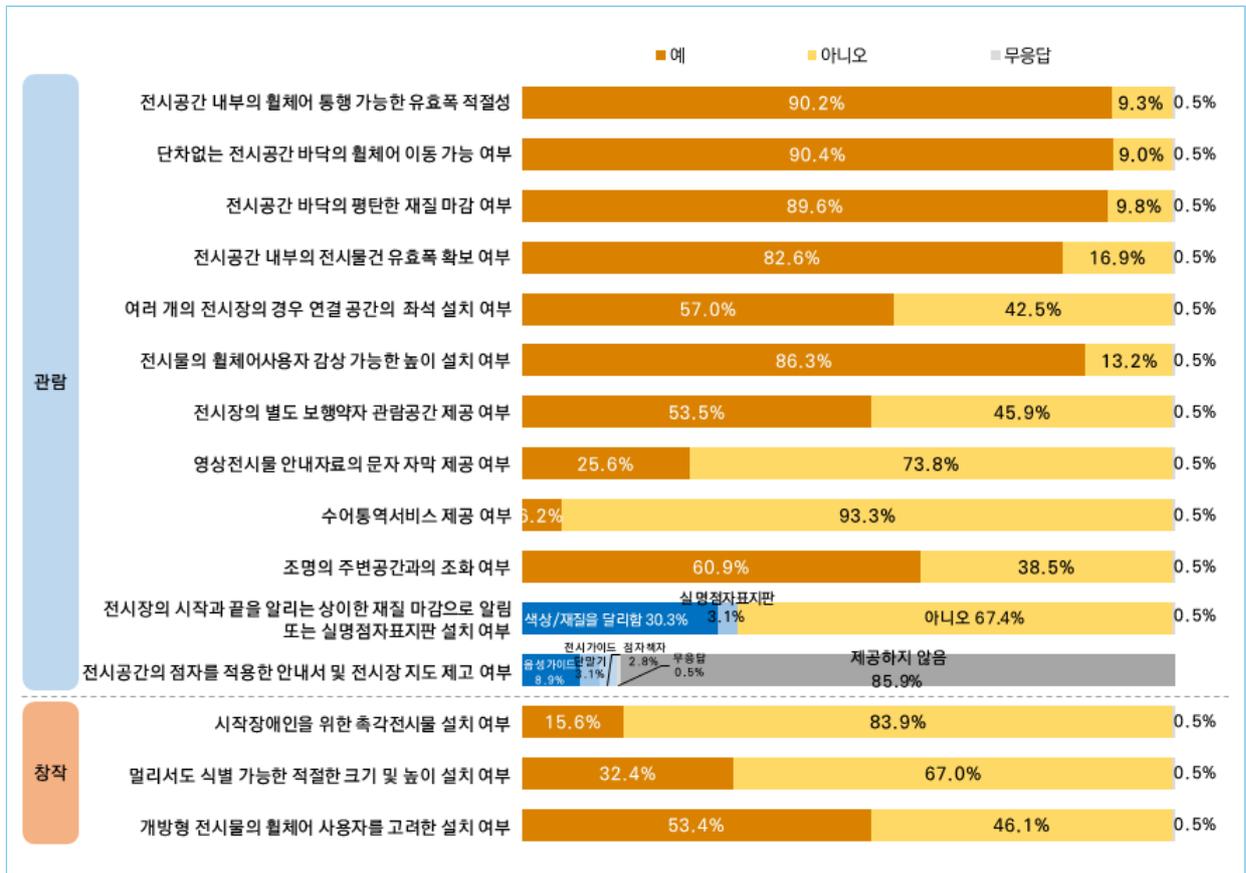
〈그림2-14〉 실내이동\_화장실, 안내데스크, 매표소

## 5. 시설별 현황

### ■ 전시시설

- 전시시설 관람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전시공간 내부에 1.2m 이상의 유효폭이 확보'된 곳은 전체 시설 중 90.2%로 조사되었고, '전시공간 바닥에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곳은 90.4%로 확인됨
- '영상전시물 안내자료에 문자 자막'이 제공되는 곳은 25.6%, '수어통역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6.2%에 불과하였음
- 한편, 전시시설 창작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전시물이 설치된 곳'은 15.6%, '개방형 전시물이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치된 곳은 53.4%로 조사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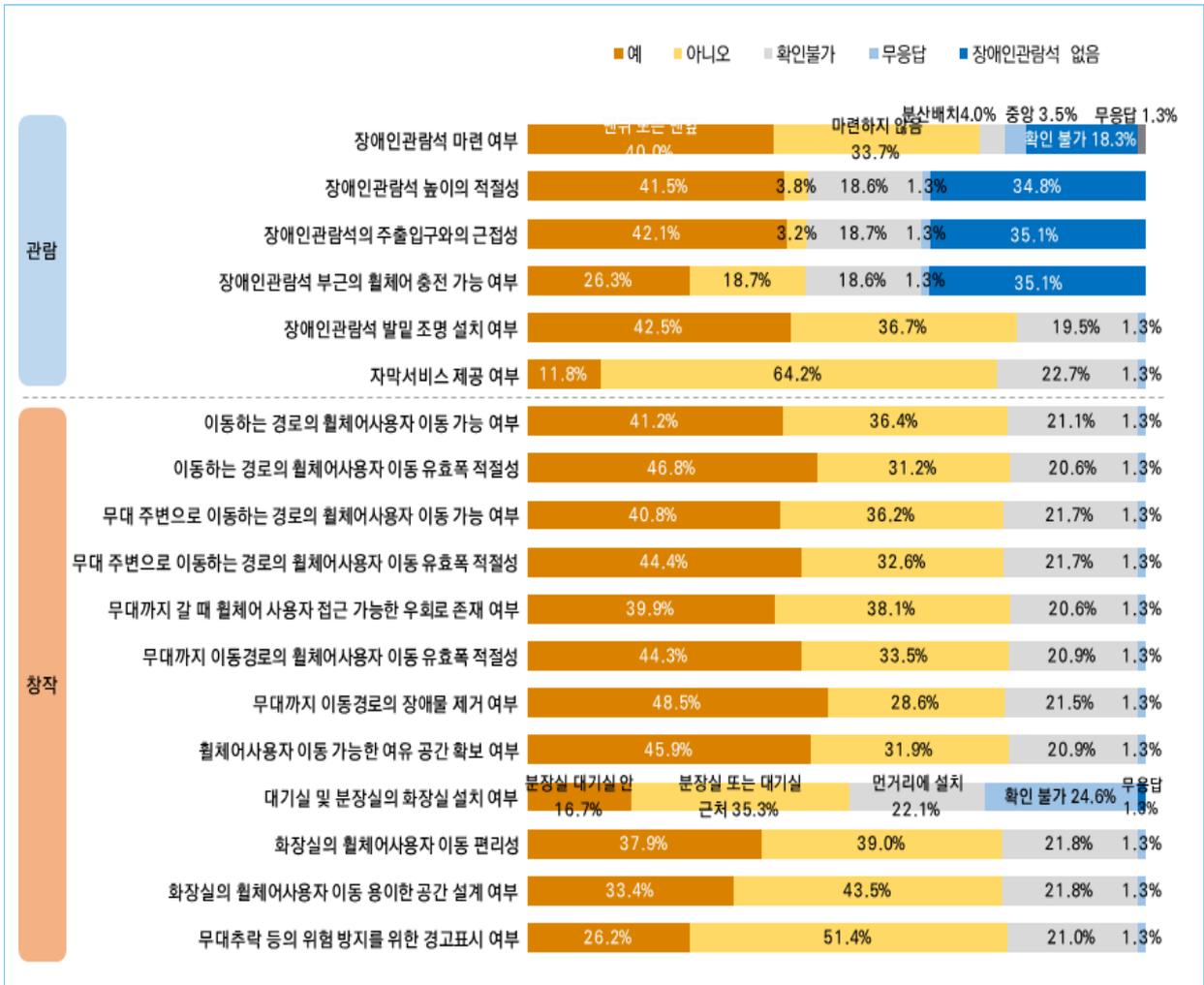


〈그림2-15〉 전시시설\_관람 및 체험

■ 공연시설

- ‘공연시설 관람 항목’을 살펴보면, 장애인관람석이 마련된 곳은 시설 중 47.5%였고, 대부분이 맨 뒤 또는 맨 앞에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장애인관람석의 높이가 적절한 곳’은 시설 중 41.9%였고, 장애인관람석이 주출입구와 근접한 곳은 42.1%로 확인됨
- 공연시설 창작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이동 경로에 단차가 없어 휠체어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한 곳’은 41.2%로 조사되었고, 그 경로의 ‘유효폭(1.2m)이 확보’된 곳은 46.8%로 조사되었음

(단위 : %)



〈그림2-16〉 공연시설\_관람 및 실연

### 제3절 표적집단 면접조사 결과

- 장애인이자 예술인인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방문 시 겪는 어려움, 개선 필요사항 등 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문화시설의 기획 및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화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의견, 접근성 개선 노력, 어려움, 향후 계획 등을 묻는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제4절에서는 표적집단 면접조사에서 청취한 의견에 실태조사 결과와 자문위원 의견을 추가하여 접근성 유형별로 정리하였음

#### ■ 정보에 대한 접근

- 장애인에게 문화시설 방문은 일상의 '여가'가 아닌 '특별한 외출'인 경우가 많음. 특히, 장애예술인의 경우 과거에 한 차례 이상 문화시설을 방문한 경험을 통해 많은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서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갈 수 있는 곳'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 안에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찾는 경우가 많음
- 많은 장애인이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검색을 하지 않고 해당 문화시설을 방문해 본 지인에게 '갈 수 있는 곳'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물어서 알아보고 있었음. 특히, 시각장애인은 정보에 대한 접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본인이 아닌 동반자가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장애인 본인은 따라만 가는 경우가 많음
-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문화시설이 웹접근성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는 해당 사이트가 장애인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 것일 뿐임. 장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가 장애유형별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와는 다른 이야기임
- 실제로 다수의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를 점검해본 결과, 많은 시설의 관람·편의시설 안내가 이미지로만 이루어져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보이스아이'와 같은 텍스트 음성 변환 프로그램으로 읽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 그러나, 문화시설의 관계자들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의 불편사항이 없을 것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일부 문화시설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최대한 텍스트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일부 시설의 경우는 장애인의 정보검색 편의성을 위해 홈페이지 프로그램 화면에 BF공연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으며, 화면의 글씨 크기 확대 기능과 함께 VR로 공연장을 찍어서 시설에 대한 안내자료도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이 더 많은 문화시설을 방문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시설의 홈

페이지 개발 및 업데이트 시에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시설을 찾아오는 방법’, ‘이동 동선 안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및 서비스 안내’ 등을 안내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시각장애인)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로 해당시설을 방문한 경험을 가진 지인에게 갈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등을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 (시각장애인) “많은 문화시설의 홈페이지가 실내공간의 구조에 대한 음성 설명이 부족합니다. 구조를 익히고 가면 많이 헤매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체로 시설 구조도나 층별 안내도가 이미지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텍스트화가 안되기 때문일 겁니다.”
- (박물관A) “저희는 홈페이지가 웹접근성 인증을 받아서 장애인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미술관B) “웹접근성 인증을 받았고, 홈페이지에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에 대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노력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연장B) “홈페이지에 BF공연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BF 공연만 보이게 정렬도 가능하게 했으며, 화면의 글씨도 확대가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VR로 공연장을 찍어서 시설에 대한 안내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연장A)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이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최대한 텍스트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검색의 어려움과 더불어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음. 배리어프리 공연 등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행사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특히, 문화시설별로 문화예술행사별로 장애유형별 이용가능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안내하는 안내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기존의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홍보도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체)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장애인 복지센터, 주민센터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인터넷을 비장애인만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아서 장애인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 (시각) “서울 관광 사이트를 보니깐 주요 관광지나 시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장애유형별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안내 사이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 등 좋은 기획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정보가 없어서 이용하기 힘들어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웹아이프리”, “넓은 마을”와 같은 장애인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 ■ 이동 편의성

- 이용자가 출발하는 지점부터 문화시설 도착, 도착이후 주출입구와 실내이동, 휴게시설 및 화장실 등의 이용까지 전반의 이동 편의성은 장애인 접근성의 필수 요소임
-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고 있음. 그러나 BF 인증을 받은 것은 최소의 기준을 갖춘 것일 뿐 이용의 편의성이 보장된 것은 아님
- 2018년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공연장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이로 인해 많은 문화시설이 개정 후 2년 이내 경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음. 그러나 신축이 아닌 경우 건물의 구조 변경의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경사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그렇게 만들어진 경사로로 설치기준에 따른 적절한 각도로 설치된 경우가 매우 드물어 휠체어 이용자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음

- (뇌병변) “문화시설 입구에 경사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경사로가 있어도 중간 정도까지는 경사로가 있고, 그 위부터는 짧은 계단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직원이 나와서 도와주는 방법 밖에 없어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도 각도 기준을 안 지킨 경우가 더 많아요. 저희는 아 이정도 각도구나 하고 느낌으로 알거든요. 기준치 이상인 경우는 오르막길이 다소 힘들어요.”
- (문예회관B) “2018년 공연법이 바뀌면서 공공기관의 공연장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저희도 3년 전에 계단이 있는 곳에 경사로를 설치하였어요. 이때 관람석을 줄여가면서 경사로를 설치했어요.”
- (미술관B) “야외 데크에 있는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각도 기준에 맞춰서 경사로를 만들려면 1.8미터가 필요한데 공간이 나지 않아서 개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동선을 개발하거나 대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 (공연장A) “저희는 40년 전에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용도변경이 있어야 하며, 현재 용도변경을 하면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부수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 많은 장애예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예술인도 마찬가지로 큰 공연장이 아닌 작은 규모의 공연장에 서는 일이 더욱 많으며, 관객의 경우도 역시 티켓가격이 비싼 대규모 공연보다는 다소 저렴한 비용의 작은 공연장을 접하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문화시설의 경우는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음
  - 시설 규모가 작을수록 시설이 건축된 시기가 오래된 경우 승강기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엘리베이터가 없는 시설의 경우 직원이 정식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많은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승강기가 설치된 문화시설이라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은 아니지만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음
  - 승강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들은 조작반과 통화장치가 너무 높은 위치에 설치되었거나 시각장애인

을 위한 점자 표시나 음성안내가 없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 하차 시 필요한 거울이 미설치된 경우, 그리고 닫힘 지연 버튼이 없는 경우 등임

- (지체) “BF인증은 공공기관, 큰 공연장 위주로 적용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소극장인데 BF인증을 받거나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 (지체) “저는 연극을 좋아해서 대학로 공연장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대학로 공연장의 다수는 지하에 있거나 2층 이상에 있어요. 그러나 승강기가 없고 좁은 통로에 가파른 계단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 직원 두 명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를 옮긴 적이 많아요. 여자로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연을 봐야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지체) “승강기가 설치된 시설이라도 공간이 좁아서 휠체어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조작설비가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작반과 통화장치가 너무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자가 누르기 힘든 경우가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나 음성안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뇌병변) “예전에 미술관을 방문하였는데 계단이 많아서 주출입구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여 미술품을 옮길 때 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종 창고를 빙빙 돌아서 미술관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 (문예회관A) “지난해 9월경 공연장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전화예약 시 휠체어 장애인임을 확인하면 공연 시작 전 경비 직원 또는 하우스 매니저가 마중을 나가 미리 무대 뒤의 이동통로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대 뒤가 좁고 어두우며 전선이 많아서 휠체어 이용자 분들이 다소 불편해하고는 하였습니다.”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시 휠체어 이용자는 대기실, 분장실, 무대 이동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기실, 분장실의 경우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무대이동시에는 단차와 계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예술인의 분장실 출입을 위한 단차 제거, 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장애인 단체 행사시 장애예술인을 지원해주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지체) “대기실 사용 시 대기 공간이 좁아 옷을 갈아입거나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분장실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바닥을 기어 다녀야 해요.”
- (공연장A) “장애예술인들이 분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하였고, 경사로 및 리프트를 만들었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구비해 두었습니다. 장애예술인은 공연장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부 지적이 있어 이동형 경사로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문예회관A) “장애인 단체 행사진행 시 대관하는 곳에서 진행요원을 대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하우스가이드, 감시실에서 장애인 수직엘리베이터 작동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약시인 시각장애인은 어둠에 취약하여 무대 뒤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문화시설은 암전 시에도 무대 끝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시각) “약시의 경우 계단이 너무 위험해요. 무대 뒤 같이 어두운 곳은 특히 안 보이는데, 피아노 같은 어두운 색 계열이 물건이 놓여있으면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계단이나 이동경로를 야광으로라도 표시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공연장A) “방음을 해야하다보니 대기실 단차는 제거하지 못했으나, 무대 끝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공연장 바닥에 표시를 해두어 암전 시에도 확인이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 (문예회관A) “장애예술인을 위해 무대 후방 쪽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개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 장애예술인이 공연할 경우, 무대지시 사항 및 공연진행을 위한 메시지 전달 방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예술인의 안전을 고려한 무대시설 구비가 필요함
- 문화시설은 비상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경우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시각) “큰 공연장 같은 경우 공연 전에 안전교육을 해주는데 작은 모니터로 설명해서 대피경로, 소화기 등 정확한 위치 파악이 힘듭니다. 공연 시작 전 대피로가 그려진 점자 자료를 제공한다면 대피로까지 직접 이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담직원이 와서 비상시에 자신의 안내를 기다려서 안내에 따라달라고 정확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예회관A) “무대에 소화전, 대피로, 점멸등 등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음성유도사인과 출입문 위치변경 등에 대한 개선은 2023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 감각적 접근

- 장애유형에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일부 감각에 있어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잔존감각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음. 문화예술 활동을 기획하는 측면에서도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잔존감각을 활용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장애유형별 맞춤 정보제공 및 보조도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각장애인은 문화시설 방문 시에 점자로 된 안내서 및 브로셔를 필요로 하고 있음. 시각장애인은 청각과 촉각을 통하여 세상을 더 잘 인지할 수 있음. 많은 문화시설이 외국어 브로셔는 주요 나라별로 갖추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의 언어인 점자 브로셔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맹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책자를 구비하고, 약시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큰 글씨 책자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 (시각) “공연시설에서 점자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드물고, 있어도 요청해야 주는 편이라 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외국어로 된 브로셔는 많이 있는데 점자로 된 브로셔는 제공해주지 않아서 외국인보다 시각장애인이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 (박물관A) “우리 박물관은 작년에 브랜드북으로 멀티미디어형 점자책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소속관별로 브랜드북을 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 (미술관A) “우리 미술관은 페이퍼리스 미술관이어서 브로셔가 없습니다. 대신 디지털기를 통해 음성해설, 사진,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음성해설, AI 로봇을 활용한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점자음성지원 키오스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문예회관B) “특별한 공연이 아니고서는 점자 브로셔는 제공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갖춰야하는 돋보기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은 문화시설의 공연시설을 가기 전 해당 공연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가야만 함. 음성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자의 얼굴 표정, 제스처 등을 보며 머리 속에 있는 스토리를 따라 공연을 관람하는 것임
- 시각장애인은 전시시설을 방문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 전시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져보거나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이 있어야 함. 그러나 많은 전시시설이 소수의 일부 작품만을 촉각전시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 ‘요식행위’로 비춰지기도 함
- 문화시설의 노력과 전달자가 제공하는 시설 및 도구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 대표적인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팜플렛 또는 큰글씨팜플렛을 제공하고나 스마트 자막 안경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연 및 전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전시, 후각과 청각을 활용한 전시도 기획할 수 있음.
-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거나 자막, 수어해설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청각장애인이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 방식은 수어통역사가 직접 설명해주는 것임. 수어의 특성상 표정이나 몸짓도 하나의 언어임. 수어해설영상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전달이 어려움
- 또한, 도슨트 투어를 장애유형별로 다양화했으면 함. 비장애인만 전문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물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수어로 된 도슨트 투어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음
- 최근에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시설이 많아지고 있음.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편리함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장애인도 많이 있음. 디지털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담 인력도 배치되어 있어 장애인이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시각)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경우 전시물에 점자해설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욱 많습니다. 해외 박물관에서는 모든 전시물에 점자가 다 있고 만질 수도 있게 해줘서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 (청각) “해외에서는 유명한 관광시설들 문 앞에 항상 수어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어 통역이 필요하면 불러달라고 수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는 않더라도, 국공립 등 대표적인 시설에서 먼저 시범으로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 (청각) “수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청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간혹 안내데스크에 ‘수어해설’이라고 적혀있는데 한글을 모르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픽토그램이나 영상물이라도 문화시설 입구에 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과 수어 통역을 모두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선택하여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문예회관A) “상설전시관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한 해설, 자막서비스, 음성가이드, 전자팜플렛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막서비스 및 수어해설 등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관하는 단체에서도 자막 서비스나 수어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네요. 저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장애인 관람객이 많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드는 서비스는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 (미술관B) “관람객 중 청각장애인이 있어 수어로 된 도슨트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현재 박물관에는 전시장별로 소수의 전시물의 촉각 설치물을 설치한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은 설치물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여겨짐. 검색 맞추기 식의 촉각 전시물이 아닌 전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시각) “촉각전시물이 있기는 한데 몇 개만 설치된 경우가 많아요. 전시물 전체 중의 비율을 생각하면 시각장애인이 관람할 전시물이 많지는 않지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 (박물관A) “많지는 않지만 전시실 내에 대표 전시물은 수어해설영상이나 촉각전시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 ■ 지적 접근

- 발달장애인의 경우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이는 발달장애인 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듯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필요함

- (발달) “발달장애인은 공간지각이나 장소인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표시 필요합니다. 미술관, 박물관 등 시설 내 지도를 색깔로 표시하거나 동물 캐릭터 등을 표시하여 누구든지 알아보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발달) “대부분의 문화시설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해설밖에 없어서 발달장애인이거나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도슨트 해설 또는 벽면 해설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정서적/태도적 접근

- 전맹인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과 같은 심한 장애의 경우 혼자서는 문화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움. 동행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는 함. 심한 장애의 경우 문화시설의 장애인 전담직원이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한편 많은 문화시설에서 전담직원이 아닌 경비 인력 등이 장애인 고객을 지원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발상황을 고려한 휴게공간 마련이 필요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릴렉스 퍼포먼스도 필요함

- (시각) “공연장을 갈 경우가 많은데 동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요. 공연장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1시간 정도 여유시간을 갖고 장소를 찾아가는 편이에요. 공연 시작 전에는 로비에 사람이 많아서 어떤 분이 직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렵게 직원을 찾아가도 시설에 직원이 적거나 1명일 경우 자리 안내받기가 힘들어요.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이용객들이 모두 들어간 후 마지막에 안내받는 경우가 많고요.”
- (시각/발달) “문화시설을 갈 때 주로 어머니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별이 다르다보니 화장실까지 같이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거나 가족화장실이 있으면 괜찮은데 따로 없는 경우는 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야해요. 화장실 입구까지는 어머니가 뒤에서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라’는 식으로 위치를 알려주고는 하지만 화장실 내부에 들어가면 헤매기 일쑤죠. 간혹 화장실 내부의 시설물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 (공연장B) “시각장애인의 경우 하우스매니저와 관객안내원이 좌석까지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티켓팅 할 때 장애인 등록증을 보고 확인을 하고 발권을 하면서 무전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 (발달) “소음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공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공연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관객들한테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 (공연장B) “출연자 및 관객이 발작을 하는 등 응급상황 경우, 따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침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구급차와 연결이 되게 해두었습니다.”

-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전시시설을 관람 시 작품의 높이나 기울기가 맞지 않아 관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많은 전시시설의 작품 설치 높이가 비장애인 성인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서 작품을 자세히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또한, 인기 작가의 작품의 경우 전시물 앞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 작품을 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음. 외국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와 같은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작품이 잘 보이는 일정 장소에 보행약자를 위한 관람공간(Zone)을 별도 배치해 줄 경우 장애인 관람자의 작품 감상이 더욱 수월할 것으로 여겨짐
- 공연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석의 위치가 공연장의 맨 앞 또는 맨 뒤에 위치하여 장시간의 공연을 관람할 때 불편한 경우가 많음. 장애인 관람자 역시 다른 관람자들과 같이 무대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음. 장애인전용석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석의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뇌병변) “미술관·박물관을 자주 가는 편인데 대부분의 작품이 비장애인 성인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와 같은 휠체어 이용자는 눈높이가 맞지 않아 제대로 된 관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어린이 관람자들도 있는 것을 고려하여 작품의 설치 높이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기 있는 작품은 서있는 사람들이 미술작품을 둘러싸고 있어, 휠체어에 탄 채로 작품 감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일본의 미술관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관람 자리(Zone)를 미술 작품 측면 바닥에 표시해 두었더라구요. 거기서는 작품을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지체) “공연장을 가도 휠체어 전용석은 가장 앞자리 혹은 뒷자리에 마련되어 있어요. 대피 가능성이 나 입장, 퇴장 등 이동편의성을 고려한 부분인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맨 앞자리는 공연을 보는 2~3시간 동안 고개를 너무 뒤로 젖히고 있어야 해서 힘들고, 맨 뒷자리는 배우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자세히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공연을 두 번 본 적도 많아요. 맨 앞 자리 한 번 맨 뒷자리 한 번 이런 식으로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좌석이 맨앞, 맨뒤자리 말고 중간 중간 있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문예회관B)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전용 좌석을 출입구 쪽에 배치하였습니다.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고립이 되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쪽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 (공연장B) “장애인 휠체어 좌석이 보통 뒤에 있는데,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있어서 맨앞 줄 2개열을 휠체어 관람 공간으로 변형하고 있습니다. 앞 열의 경우 양옆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동선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 문화시설을 신축 또는 개보수할 경우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간’의 관점에서 BF인증은 물론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적용하여 시설 및 공간을 만들었으면 함
-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으면 어린이도 볼 수 있다는 생각,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나 유모차나 보행이 어려운 노인도 출입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로 만들어진 설명자료는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 등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 경제적 접근성

- 장애인, 동반자 할인은 대체로 많은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장애예술인의 대관료 할인에 대해서는 할인을 받은 경험이 없음.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인 단체에 대관료 할인을 해주고 있으나 대규모 공연장 보다는 소규모 공연장을 주로 대관하는 장애예술인은 직접 경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각) “장애인 당사자와 동반자 할인 50%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대관료 할인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문예회관A) “문화나눔카드나 장애인바우처를 제공하여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장애인 할인 제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정책적 제도적 접근성

- 2018년 공연법 개정 이후 최근 들어 장애인 접근성이 이슈가 되면서 많은 문화시설에서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관객의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장애인 관객들의 장애유형이 다양하고 그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문화시설을 시작으로 접근성 점검 및 가이드라인 제작·배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미술관A) “최근 들어 장애인 접근성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국민의 5%정도이며 미술관 방문객으로 따지면 비장애인 대비 적은 비율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불편함에 대해 인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술관B) “근무를 하면서 보면 장애인 단체에서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는 단체별로 시설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별 장애유형의 영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접근성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만 봐도 저시력자, 전맹 등 유형이 있는데 전맹의 비율이 작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공연장A)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공문화시설 담당자가 파견을 나와서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이드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거든요.”

- 문화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은 시설 개보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런 경우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문화시설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문예회관B)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당장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보수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예산이 생겨서 전면 리모델링을 한다면 BF인증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예회관A) “작년에 개보수를 하면서 살펴본 결과, 신법 기준에서는 기준치 미달에 해당하는 요소가 많더라고요. 특히, 공간이라던가 진입로 폭, 문사이즈 등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적사항이 많아서 예산을 신청했지만 50% 삭감되어 받았어요.”

- 많은 문화시설이 장애인 고객을 응대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고객응대 전담 직원이 없이 보안담당직원과 하우스 매니저가 주로 고객응대 매뉴얼을 토대로 접객을 하고 있음
- 많은 문화시설이 직원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의무교육 외에 별도의 장애인 고객 응대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연장A)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1년에 7회 정도 별도의 장애인 응대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장 자문위원 중 장애인이 있으시고 이분들과 회의를 하면서 훈련도 같이하고 장애인단체들이 와서 같이 조사를 해서 개선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피훈련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 (박물관A) “의무교육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물론 장애인 고객 응대를 위해 직원들 전체가 별도의 수어 교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공연장B) “장애인 고객응대 전담직원은 없으며, 의무교육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턴 타 기관에서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장애유형별 세분화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조견을 데리고 오는 장애인에 대한 응대내용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 (문예회관)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과 같은 법정의무교육 외 정기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객 최초 접객은 보안담당 인력이 주로 담당을 하는데 별도의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보안담당 인력은 시설의 하우스매니저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많은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예술향유 및 활동에 대한 권리를 많은 비장애인이 ‘특혜’나 ‘배려’로 생각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비장애인 관람객의 민원으로 인해 장애인 관람객에 대한 시설 및 서비스를 늘리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
- 한편, 많은 문화시설이 장애인의 수요가 없어서, 또는 얼마나 올지 모르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점차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맞는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 문화시설이 비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장애인이 ‘안와서 개선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안 되서 오지 못 한다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 더불어 장애인 관객과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최적의 전용 문화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함

- (청각) “장애인들도 당연히 누려야하는 것을 ‘배리어프리’라는 단어를 통해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물관A)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야하는 것이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인식개선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예술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예회관A) “비장애인 이용객 인식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지체장애인이 출입하면 싫어하거나 항의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입장에서 재방문을 꺼려할 것 같습니다.”
- (문예회관B) “장애인 전용 문화시설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이 마음껏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관람객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 문화시설 중 일부는 정기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전시/공연/행사) 계획하고 있음. 계획이 있는 경우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별도의 배리어프리 공연을 기획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많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작품이나 공연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인식과 우려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박물관B)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장애예술인의 정기적인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관장께서도 장애예술인의 공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올해 약 24번의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 상하반기에 2차례 장애예술단체의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박물관A) “관람객의 수준이 높아져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이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이 일정수준의 퀄리티를 갖춰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장애예술인 공연에 대한 평가를 비장애인 예술인과 동일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리를 잘 갖춰서 관람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문예회관B) “한해에 두 번 정도 장애예술인 행사를 실시하며 지역구별 장애예술인들이 단합대회 하듯이 진행하며 광장에서 텐트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이 오는 행사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비상상태입니다. 행사에 동원되어야 하는 인원이 평소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 (공연장A) “청각장애인이 올 때는 수어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수어 공연은 작년에 7편을 했고, 올해는 10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어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하고 있는데 비용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연극 같은 경우에는 의상을 입히고 여러 사람을 무대에 올려서 하면 되는데 무용은 수어로 해설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우퍼조끼를 활용하여 진동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어 공연을 하는 것은 다른 극장에서라도 하는 것인데 우퍼조끼로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동으로 언어를 개발하는 것은 지속적인 시도가 필요해서 이를 통해 개발하고 매뉴얼화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자막, 전광판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관할 때 선정된 단체들에게 BF공연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기획단계에서부터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400개 단체에게 요청했을 때, 30개 단체가 의향을 보였고 실제로는 6편 정도만 진행하였습니다.”

## ■ 장애예술인 작품 우선구매

- 문화시설 대부분이 장애예술인 작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음.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공공부문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여김
- 이러한 기저에는 장애예술인의 작품 퀄리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예술인은 작품자체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임

- (박물관B) “우선구매는 다른 유사 사례들을 봤을 때 효율성 및 효과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단체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장애단체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문예회관B) “현재 있는 단원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획을 해서 객원으로 장애 예술인을 초청하기도 하는데 장애예술인우선구매의 형식으로 별도의 장애예술단체가 공연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물관A) “이번 정부에서 장애예술인작품우선구매를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기관이고 국고를 받아서 하더라도 예산이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작하고 구매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매하는 것은 감사 대상이므로 미술품을 사는 것보다는 공연장이다 보니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시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 (공연장A) “예술인은 예술품 자체로 승부를 봐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예술인의 활동반경을 넓혀주는 취지에서 공공부문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 장애인 창작물 정기적 공연

- 장애인 창작물 정기적 공연·전시를 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 통상적으로 공연·전시 일정을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연·전시 일정애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 (문예회관B) “올 한해의 공연·전시 일정은 전년도에 신청 받아 스케줄링하고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일정이 겹칠 경우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미술관B) “통상 1년 전부터 다음 해의 전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는 장애인 작가의 전시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연장A)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시 실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존 예산에서 쪼개서 구매하거나 공연기회를 주도록 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렇게 할 경우 다른 비장애인 예술인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 (공연장B) “장애예술인의 창작여건이나 활동여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자생할수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원한다면 효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예술인들이 이 제도에 매달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 (박물관A) “작품이 유물이고 수집하는 시기가 근대이후이기 때문에 현대작가 예술품을 구매할 근거가 없습니다. 박물관은 제외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 제4절 소결

- 5장에서는 문화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를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문화시설 담당자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예술)인들에게 표적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1. 실태조사

- 문화시설의 장애인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서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계획하거나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은 필요성 대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접근성 관련 개선 계획은 73.0%이지만, 수립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29.1%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접근성 관련 내부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비율은 63.2%이나,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비율은 30.0%로 나타남
  - 지난 3년간 배리어프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는 응답비율이 11.1%로 나타나 실제 공연/전시 콘텐츠에 적용한 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시설을 찾기 전에 정보를 검색하는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인증을 받은 기관은 31.6%로 나타났으며,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장애유형은 시각장애인(88.6%)로 나타남
  - 많은 문화시설들이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인 웹접근성의 인증도 받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시설들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73.9%가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편의시설(37.0%), 인력지원(20.1%) 등의 순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
  - 가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개선하기 힘든 부분의 순위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대비, 현재 여건상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부분 장애인편의시설 등 물리적 접근성을 우선순위로 두었는데, 이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시하였지만, 비용 등이 많이 드는 등의 문제와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개선이 어렵다고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난 3년간 문화예술행사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38.9%가 개최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중에서 장애인이 참여한 문화예술행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코로나로 인해 모든 문화예술행사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전체 행사 중에서 장애인이 참여한 문화예술행사의 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들은 문화시설의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도구 또는 설비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갖추고 있는 문화시설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휴게의자 및 간이승터 마련(52.9%), 단차제거(52.7%), 주요관람동선 안내(49.4%) 등은 상대적으로 높고, 보청기 대여(1.0%), 기호/신호표기 안내(2.9%) 등은 매우 낮음
- 공연시설은 바닥 단차 제거(42.3%), 주요 관람동선 안내(40.6%) 휠체어 사용자석(33.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어통역사 배치(1.0%), 난청 오디오가이드(1.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관람구역 마련(1.8%)로 낮은 수준으로 보임
- 전시/공연 관람 시설의 경우, 장애인이 방문하였을 때, 현재의 도구나 설비 등의 여건으로 봤을 때 혼자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차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71.4%), 안내표지(76.4%), 보행로 폭 적절성(80.2%) 등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도착해서 문화시설까지의 연결까지 모두 잘 되어 있는 문화시설은 많지 않음
  - 주차장부터 연속성(53.2%), 주출입구까지의 경사로의 적절성(49.9%)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문화시설에 들어와서 이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복도 유효폭의 적절성(76.9%)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다른 세부적인 접근성은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에서 이동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주출입구가 여닫이문(75.8%)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이용하기 어려우며,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을 경우 출입을 도와주는 인력을 배치한 곳이 13.4%만 되어 있으며, 여닫이문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호출벨을 설치한 비율도 21.4%로 비장애인과 동행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승강기의 경우 단침지연버튼 설치(37.1%), 음성안내 장치 설치(45.6%), 승강기 되열림 장치 설치(48.5%) 등이 상대적으로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임
- 문화시설의 경우 화장실, 안내데스크, 매표소 등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설치에서도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안내데스크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와 같은 높이가 낮은 대상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점자책자, 돋보기 등이 비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화장실의 경우 설치의 적정성은 80.2%로 높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도구 및 설비는 여전히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상용 벨 설치 적정성(40.6%), 장애인 화장실과 비장애인 화장실 구분 설치(59.7%) 등이 이에 해당함
- 문화시설별로 전시/공연 등을 위한 도구 또는 설비, 서비스 등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전시시설의 경우 이동공간의 유효폭 적절성(90.2%), 단차 없이 휠체어 이동 가능성 여부(90.4%) 등은 높지만, 수어통역사 제공 여부(5.2%), 촉각전시물 설치여부(15.8%), 영상전시물 안내자료 문자 자막 제공 여부(25.6%)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연시설의 경우 장애인관람석 마련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람석 마련(40.0%), 높이의 적절성(41.9%)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막서비스 제공은 11.8%만 제공하고 있었음
  - 공연시설에서 창작자를 위한 부분을 살펴보면 대기실(분장실) 내의 화장실 설치가 16.7%만을 갖추고 있었으며, 무대추락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한 경고표시(26.2%), 화장실을 휠체어이용자가 이동이 용이하게 공간 설계(33.4%) 등으로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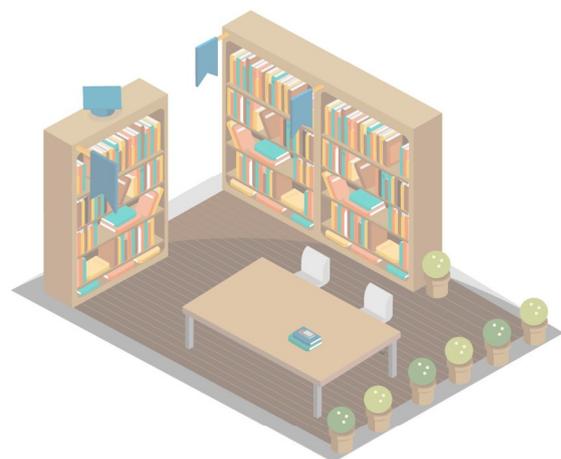
## 2. 표적집단 면접조사

- 시설담당자와 장애(예술)인이 느끼는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예술)인들도 장애유형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웹접근성의 경우 문화시설 담당자는 웹접근성 인증만 받으면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인식하지만, 장애(예술)인의 경우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설명이 부족하고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음. 특히 실내공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미지 등으로 되어 있어 음성 설명이 안 되어 있음
  - 문화시설 담당자의 경우 자세한 설명을 넣으면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이미지 보다는 텍스트화 시키는 것이 웹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홈페이지 등에 최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음
- 이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문화시설 담당자들은 얘기하고 있음
  - 휠체어 장애인 등은 경사도가 필요한데, 경사도가 없는 경우 또는 있더라도 경사로 기울기가 이용하기에 너무 커서 이용하기 어려움 경우가 많으며, 승강기의 경우도 장애인을 위한 닫힘지연버튼, 조작반 높이 등이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게 설치된 경우가 많음
  - 규모가 큰 문화시설의 경우 대체적으로 이동에 대한 접근성은 잘 갖춰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작은 규모의 문화시설의 경우는 접근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장애예술인들의 경우 작은 규모의 문화시설을 대관할 경우 어려움이 있음
  - 경사로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문화시설의 경우 이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당장 어렵지만, 많은 문화시설은 최근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음
  - 문화시설의 경우 방음, 전시효과 등으로 인해 일부 단차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조명 등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예술)인들이 많은데, 문화시설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장애(예술)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예술)인들이 전시/공연 관람을 하거나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도구 또는 인적 서비스가 필요한데, 실태조사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실정임
  -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와 촉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자/영상서비스와 수어통역이 필요함
  - 언어장애인들은 픽토그램과 같은 쉬운 표현으로 된 안내, 휠체어 장애인은 이동공간, 높이 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시설 담당자들도 최근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기는 어려움



## 제6장. 결론 및 제언

-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





## 제1절 연구 및 조사의 의의와 한계점

### 1. 연구 및 조사의 의의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예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한 향유와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볼 수 있음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의 기초연구와 실태조사는 문화시설별,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관점에서 문화시설 접근성 장애요소 및 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보았음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의 장애요소를 물리적 접근성만이 아닌 감각적 접근성, 지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정서적/태도적 접근성,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 문화적 접근성, 정책적 접근성으로 확대하여 살펴보았음
  - 문화시설 운영요소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공간인 건축물과 시설은 물론, 정보검색을 위한 온라인 공간과 문화시설에서 장애인의 이동 및 관람을 지원하는 인력,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 문화시설의 책임자 등으로 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장애요소들과 이를 해결 또는 보조해주는 방안을 살펴보았음

#### ■ 기초연구의 의의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의 기초연구에서는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시설과 장애인에 대한 정의,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후, 이를 종합하여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음
  - 장애인 문화시설 접근성은 모든 장애(예술)인이 문화시설에 방문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 또는 예술의 향유는 물론, 장애예술인이 문화시설에서 창작활동 등을 통해 예술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또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 기초연구는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는데,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사례분석과 파라소나 분석을 함으로써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와 체크리스트를 도출한 것이 의의가 있음
  - 사례분석에서는 우선 장애인 접근성 관련된 법, 정책 등을 살펴보았는데, 법은 장애인 관련된 법에서 문화예술을 포함하는 것과 문화예술 관련된 법에서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을 살펴보았음
  - 국내사례로는 연구 및 조사 관련 사례분석을 함으로써 현재 국내에서의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에

서 고려하는 내용과 한계 등을 파악하였으며, 조사 관련 사례분석에서는 현재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정도를 살펴보았음

- 해외사례는 EU, 영국, 프랑스, 북미(미국, 캐나다)의 사례를 법, 연구 그리고 진행되는 사업 등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이 잘되고 있는 국가에서 가고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 페르소나 분석은 장애유형별로 미술관/박물관, 공연장, 도서관 등을 이용하면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문화시설 이용 후 심층면접을 통해 문화시설 과정에서의 불편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였음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장애유형과 문화시설 운영요소를 도출하여, 각각의 경우별로 장애요소와 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도구, 설비 등을 제시함으로써 설문지와 체크리스트를 작성
  - 설문지와 체크리스트는 문화시설 유형, 문화시설 장애유형, 문화시설 운영요소,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도구, 설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설문지는 문화시설 담당자만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체크리스트는 조사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 체크리스트는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현장점검 내용과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웹 접근성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 현장점검은 조사원을 교육함으로써 진행하였으며 웹 접근성은 웹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진행하였음

## ■ 실태조사의 의의

-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양하게 진행됐지만, 대부분 물리적 접근성 관점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향유와 창작의 관점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조사로서 의의가 있음
  - 문화시설 관련된 장애인 접근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는 거의 없었으며, 특정 분야의 시설 조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리적 접근성을 파악하는 정도의 조사였음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의 경우, 장애인이 직접 문화시설에 와서 문화를 향유하거나 창작활동(전시, 공연 등)을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장애인이 문화시설에 와서 향유와 창작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도출하여 살펴보았음
  -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과 콘텐츠 등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문화시설의 노력 등도 파악하였음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을 크게 향유(관람)와 창작활동(전시, 공연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문화시설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문예회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문화시설에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관람과 창작의 관점에서 주로 살펴보았으며, 도서관의 경우 도서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관람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음

- 생활문화센터는 교육을 받고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관점에서 문화시설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예술인이 아니면서 예술활동을 하는 대상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예술인의 관점에서는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과 동일함
- 문화시설에서 장애인이 와서 향유나 창작활동을 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 도구와 설비 등을 파악하고 이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문화시설에서 장애인이 갖춰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현실에서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의 현황을 제시하였음
- 장애(예술)인들을 만나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직접 파악함으로써 장애(예술)인들이 문화를 향유하거나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장애유형별로 다르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음
-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많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시설에 와서 문화를 향유 또는 창작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도구나 설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제시하였음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시설 담당자와 장애(예술)인이 생각하는 접근성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됨
- 문화시설 담당자들은 BF나 웹 접근성 등 인증을 받는 대상은 인증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장애(예술)인들은 인증을 받아도 활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함

## 2. 연구 및 조사의 한계점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파라소나 방법을 적용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실태조사 이후에도 집단면접을 진행하였음. 많은 장애인의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심한 장애인 위주로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실제 문화시설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은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이며, 이들도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의 의견보다는 심한 장애를 가지는 일부 장애유형의 의견을 많이 고려한 부분이 있음
- 설문지와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해 진행하였던 페라소나 방법을 적용한 심층 인터뷰나, 실태조사 이후의 문화시설 담당자들은 대부분 큰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다양한 접근성을 고려하는 시설을 선정하였던 부분이 있음
- 많은 문화시설이 작은 규모의 시설이지만, 다양한 접근성을 고려하고 실행하고 있는 시설은 규모가 큰 시설이기 때문에, 설문지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규모가 큰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다양한 접근성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였음
- 실태조사 이후의 집단면접에서도 접근성 관련된 정책부터 물리적 접근성, 태도적 접근성, 정서적 접근성 등 모든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는 문화시설의 의견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규모가

큰 문화시설의 담당자를 섭외하였음

- 따라서 인터뷰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와 다소 괴리가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 부분이 있음
- 설문대상 중 다수의 시설이 공공 부문이어서 설문응답을 받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실제 실태조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답거절이 높아 진행이 어려웠음
  - 문체부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시하고 진행하였지만,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조사가 아니라면 거절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음
  - 설문지에 응답하는 대상과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여, 응답을 거절하는 때도 있어 설문조사와 체크리스트 점검 완료 표본수가 달라 통계 산출하는 방법을 다르게 진행하였음. 즉 가중값을 다르게 처리하였으며, 이는 통계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문제는 없음
- 표본으로 뽑힌 대상들이 응답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대체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표본수가 목표 표본수보다 적은 부분이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특정 집단을 별도로 해석하기에는 표본수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함
  - 도서관의 경우, 원래 모집단이 4개로 적었기 때문에 도서관 통계를 제시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도서관 부분은 제외하였으며, 도서관 부분은 일부를 부록에서 참고용으로 제시하였음
  - 설문조사와 체크리스트 점검의 표본수가 다르며, 체크리스트 점검에서도 웹 접근성 조사와 현장을 방문한 체크리스트 점검조사의 표본수도 다름
  - 표본수는 각각 다르지만, 통계를 해석하는 부분은 차이가 없음. 단, 일부 문화시설은 설문지 응답과 체크리스트 점검, 웹 접근성 점검 모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설에서 모든 점검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의 일부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문화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석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코로나 시기에는 문화시설을 폐쇄한 곳도 많으므로 지난 3년 동안 문화활동 등의 통계는 코로나로 인한 현상임을 고려하여 해석하고 활용하여야 함

## 제2절 시사점 및 제언

### 1. 시사점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된 통계가 필요한데 대부분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해당 문화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 중에서 문화시설을 찾는 장애인은 많겠지만, 장애인 여부를 외관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만을 시설에서는 파악할 수 있음. 즉,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장애인 관련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서 문화시설행사 개최 여부에 대하여 비장애인의 예술 활동과 참여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장애(예술)인들이 한 예술 활동과 참여 현황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 통계값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보임
-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문화시설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곳은 11.6%이며, 채용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직원 수는 평균 2.6명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곳이 80.7%이지만,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원칙, 대응방법 등은 각각 33.4%와 26.9%만 마련하고 있음
  - 법정 의무교육 이외에 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1.3%만 실시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방안은 향유와 다르며, 장애예술인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장애(예술)인들을 고려한 예술행사 개최 경험은 17.4%만 하고 있으며, 17.4%에 해당하는 시설의 행사를 살펴보면 미술전시회(17.0%), 체험 프로그램(11.5%), 배리어프리 공연(9.3%) 등으로 나타남
  - 장애예술인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응답한 문화시설은 8.5%로 낮은 수준임
  - 장애인들의 창작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은 4.7%이며, 향후 창작물 구매의향이 있는 문화시설도 20.9%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인식과 예산의 한계 등이 같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이 하는 예술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관객 모집이 쉽지 않으며, 대관료가 비싸기 때문에 큰 규모의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결국 장애예술인이 주로 창작활동을 하는 곳은 규모가 작은 문화시설이 대부분임
- 반면에 장애인의 향유는 주로 큰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접근성과 장애인의 향유를 위한 접근성을 위한 방안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에 방문하기 전 문화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 그리고 이동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검색을 하게 되는데, 많은 문화시설의 정보검색을 위한 접근성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시설은 31.6%에 불과하며, 웹 접근성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보검색을 위한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음
  - 문화시설에 접근하는 장애인 중에서 (전맹 또는 저시력)시각장애인이 이동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오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서 문화시설의 안내도와 배치도가 사진/이미지 또는 PDF파일로 되어 있음. 이런 경우 텍스트가 음성으로 변환되지 않아 정보검색의 어려움이 있음
  - 문화시설 내부의 이동동선을 알려주는 정보가 없다면, 시설의 이동을 도와주는 안내서비스 또는 보조도구가 필요한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시설은 거의 없음
-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한 결과, 많은 문화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성의 영역은 잘 되어있지만, 문화시설의 이용목적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접근성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는 71.4%, 복도 유효폭 적절성은 90.0%, 화장실 설치 적절성은 80.2%로 기본적인 사항의 설치율은 대체로 높은 편임
  - 날씨와 무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출입구의 이동편리성은 24.3%, 승강기 닫힘 지연 버튼 36.9%, 장애인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40.6%로 한 단계 더 고려해야 하는 접근성에 대한 설치는 많이 부족한 상황임
-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서비스, 도구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대기실/분장실 안의 화장실 설치는 16.7%, 휠체어이용자의 화장실 이동편리성은 37.9% 등 장애예술인이 무대 뒤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미흡한 상황임
  -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인 대비 리허설과 시설 내 이동을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대관시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장애유형별로 리허설과 공연을 위해 필요한 도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제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2. 제언

###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정기화 및 체계화 필요

####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의 조사협조 체계 마련

- 실태조사가 법령에 따른 의무조사가 아닌 이유로 공공 문화시설의 응답률이 저조함.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에서 문화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할 때 민간 문화시설보다 공공 문화시설의 개선이 쉽다는 점에서 공공 문화시설의 접근성 현황파악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공 문화시설은 실태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의 정기화

- 현재 다양한 문화시설의 접근성 및 물리적 접근성을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다양한 조사를 통합하고 정기화함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진행하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의 주기인 3년과 같이 진행 함으로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현황과 문화시설의 접근성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화시설에 있어서 장애인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장애(예술)인들의 경우에는 문화시설을 장애인이 찾아와서 향유 또는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즉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는 문화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조사자가 문화 시설을 다니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점검조사, 정보검색 접근성을 점검하는 3개의 체계로 구분하여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음

- 문화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본 연구에서 진행하였던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함. 즉,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새로운 도구나 설비 등이 추가될 경우 조사내용을 보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임
- 체크리스트는 조사문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 규격이 명확한 물리적 접근성은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도록 하며, 편의시설 등에 대한 규격을 마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함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매뉴얼 작성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문화시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많은 문화시설은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인데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 프랑스의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라인'의 시리즈처럼 전반적인 가이드를 제작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즉, 문화시설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을 장애유형, 문화시설유형, 예술활동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문화시설 전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의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매뉴얼은 물리적 접근성은 물론, 장애인의 향유와 창작활동 모두를 위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부분을 제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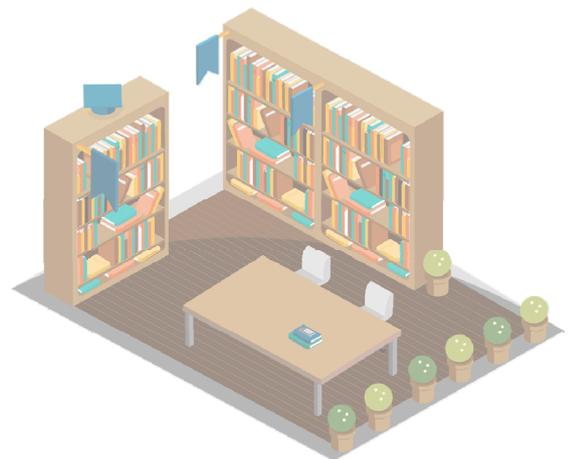
- 문화시설에 찾아와서 문화를 향유 또는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문 및 이동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리적 접근성을 갖춰야 함. 여기에는 장애인주차장, 이동 중 단차 제거, 복도 넓이의 폭, 화장실(내)의 규격, 승강기 규격 등이 휠체어이용자와 시각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함
- 현재 많은 시설의 담당자들은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어떻게 응대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시설 유형과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이 문화시설 이용하는데 기본적으로 갖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응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문화시설의 규격별로 갖출 수 있는 시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규모가 큰 문화시설은 많은 도구와 설비, 편의시설 등을 갖춰야 할 것이며, 규모가 작은 문화시설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접근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용목적의 경우 향유는 규모가 큰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콘텐츠를 다양한 서비스와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창작의 경우에는 작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고려하여 접근성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매뉴얼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접근성 관련한 매뉴얼은 모든 시설이 갖춰야 할 사항을 우선하여 제시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시간을 두면서 계획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향유를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하도록 하며, 이후에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
- 장애인의 접근성의 중요한 요소인 지적 접근성, 정서적/태도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과 장애인 고객 응대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 다음으로 문화향유 또는 창작활동을 위한 더 좋은 도구나 설비 등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창작활동의 경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장애예술인의 활동 비율이 높은 미술, 음악, 문학 등의 순서를 정해서 문화예술 분야별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부록1. 조사표 및 체크리스트

-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이란?

- ▶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은 문화시설에 방문한 장애인이 시설 및 문화콘텐츠(전시, 공연, 도서관 등)를 향유하거나 창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① ‘물리적 접근성’은 장애인 통행 및 이용과 관련한 편의시설, 접근성 인프라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의미함
  - ② ‘감각적 접근성’은 신체 일부 감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른 고유한 감각을 이용하여 문화콘텐츠를 향유 또는 창작할 수 있도록 편의서비스, 보조기기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의미함
  - ③ ‘지적 접근성’은 글을 읽기 어렵거나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도 문화콘텐츠를 향유 또는 창작할 수 있도록 색상, 그림 등을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④ ‘정서적/태도적 접근성’은 기관 운영 및 직원 교육 전반에 장애 감수성을 고려한다거나 장애예술 특화 관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해당 기관에서 장애인 고객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⑤ ‘정책·제도적 접근성’은 장애예술 관련 상위/관련 정책 및 계획 검토를 통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 ⑥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등을 통해 시설 및 콘텐츠를 홍보할 때 장애인 등 다양한 고객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 방문 전인 장애인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 ⑦ ‘문화적 접근성’은 시설에 방문하는 관람객의 삶과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시물 또는 공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 II. 문화시설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제도

■ 귀 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Q1	귀 시설은 <b>연간 또는 중장기 계획으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과 관련된 계획</b> 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Q2	귀 시설은 <b>연간 또는 중장기 계획으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과 관련된 계획</b> 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① 수립하고 있다	② 수립하지 않고 있다
Q3	귀 시설에서 <b>웹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시설 개·보수를 계획할 때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원칙(웹접근성, 유니버설 디자인(U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등에 대한 규정)</b> 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① 고려하고 있다	② 고려하지 않고 있다
Q4	귀 시설은 <b>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내부 규정</b> 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① 마련하고 있다	② 마련하지 않고 있다
Q5	귀 시설은 <b>장애인 직원</b> 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이 있습니까?
① 있음 (    명)	② 없음



Q13	귀 시설에서는 <b>장애인 고객의 방문이나 이용 정도를 파악</b> 하고 있습니까?
① 파악하고 있다 (☞Q13-1로 이동)                      ② 파악하지 않고 있다	
Q13-1	(Q13의 ①응답자만) 장애인 고객의 방문이나 이용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Q14	귀 시설에서는 <b>최근 3년간(2020년 1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장애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까?</b> ※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란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사로 등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제도·법률적 장벽, 문화·정보의 전달, 심리·정신적 장벽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프로그램은 일부 신체 감각에 손상이 있는 장애인이 다른 고유한 감각을 이용하여 문화콘텐츠를 향유 또는 창작할 수 있도록 인력과 편의서비스, 보조장비 등을 제공해주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합니다.
① 운영하였다 (☞Q14-1로 이동)                      ② 운영하지 않았다 (☞Q14-5로 이동)	
Q14-1	(Q14의 ①응답자만) <b>배리어프리(Barrier Free)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였습니까?</b>
① 정기적 (☞Q14-2로 이동)                      ② 비정기적	
Q14-2	(Q14-1의 ①응답자만) <b>배리어프리(Barrier Free) 프로그램을 운영주기는 어떻게 됩니까?</b>
① 월1회 이상(연12회 정도)                      ② 분기별 1회 이상(연4회 정도) ③ 연1~2회    ④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14-3	(Q14의 ①응답자만) <b>배리어프리(Barrier Free) 프로그램의 주 고객이 되는 장애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b> 해당되는 대상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지체장애/뇌병변장애                      ② 시각장애    ③ 청각/언어장애 ④ 발달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14-4	(Q14의 ①응답자만) <b>배리어프리(Barrier Free) 프로그램의 주 홍보대상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b> 해당되는 대상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일반 국민 전체    ② 장애인 단체    ③ 특수학교 ④ 지역 단체(장애인 단체 외)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Q14-5	(Q14의 ②응답자만) <b>배리어프리(Barrier Free)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b>
① 프로그램 수요가 거의 없어서    ②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③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이 부족해서    ④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이 없어서 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b>Q29</b>	<b>장애인의 관람환경 접근성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b>	
공통	<input type="checkbox"/> 도슨트 투어(전문가이드) <input type="checkbox"/>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가이드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해설가이드 <input type="checkbox"/> 참여 전시(체험형 전시물) <input type="checkbox"/> 감각 전시(시각, 촉각, 후각, 청각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지체/ 뇌병변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물 설치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기울여진 전시물 설명사인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관람 구역(Zone) 마련	
시각	<input type="checkbox"/> 점자팜플렛 <input type="checkbox"/> 큰글씨팜플렛	
청각	<input type="checkbox"/> 한글자막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수어통역사 배치 <input type="checkbox"/> 수어해설영상자료 <input type="checkbox"/> 난청 오디오 가이드	
발달	<input type="checkbox"/> 쉬운 언어, 기호 또는 영상을 이용한 설명(자료 등)	

<b>Q30</b>	<b>귀 시설은 장애인 관람객에게 <u>전시 관람 시 안전 사항(비상시 행동절차, 응급조치, 대피 등)</u>을 안내하고 있습니까?</b>	
	① 그렇다	② 아니다

<b>Q31</b>	<b>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전시)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b>	
공통	<input type="checkbox"/> 픽업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주요 전시동선 안내 <input type="checkbox"/> 전시물 설치 및 해체 도움인력 배치 <input type="checkbox"/> 전시 동선 및 조명 파악 시간 배려 <input type="checkbox"/> 시설 임대료 할인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설문항목 및 조사 검증	과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VI. [시설별 문항] 도서관

■ 다음은 도서관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Q27	도서관 자료실에서의 장애인 이동을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공통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대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안전손잡이(핸드레일) 설치 <input type="checkbox"/> 픽토그램(국가표준 시각기호) 적용한 공간 표시 <input type="checkbox"/> 발소리, 소음이 확산되지 않는 바닥마감재 <input type="checkbox"/> 벽면 또는 바닥면에 방향안내사인 설치	<input type="checkbox"/> 도움인력배치 <input type="checkbox"/> 바닥 단차 제거 <input type="checkbox"/> 휴게공간 <input type="checkbox"/> 보조견 대기공간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지체/뇌병변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사용자석 <input type="checkbox"/> 높낮이조절책상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이동 동선안내
시각	<input type="checkbox"/> 촉지도 <input type="checkbox"/> 음성해설	<input type="checkbox"/> 점자안내도
청각/발달	<input type="checkbox"/> 기호/신호로 표기된 안내	
Q28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도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공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도서 목록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시각	<input type="checkbox"/> 음성지원도서(오디오북) <input type="checkbox"/> 점자도서 <input type="checkbox"/> TTS도서	<input type="checkbox"/> 큰글씨도서 <input type="checkbox"/> 촉지도서 <input type="checkbox"/> 낭독도서
청각	<input type="checkbox"/> 수어영상도서	
발달	<input type="checkbox"/> 읽기 쉬운 텍스트로 된 도서 <input type="checkbox"/>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현으로 된 영상(애니메이션 등)도서	
Q29	장애인을 위한 독서보조기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지체/뇌병변	<input type="checkbox"/> 높낮이조절책상 <input type="checkbox"/> 특수마우스 <input type="checkbox"/> 페이지터너	<input type="checkbox"/> 특수키보드 <input type="checkbox"/> 승강형 전동휠체어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시각	<input type="checkbox"/> (휴대용)음성독서기기 <input type="checkbox"/> 음성변환프로그램(TTS) <input type="checkbox"/> 독서확대기 <input type="checkbox"/> TEXT-PDF자료	<input type="checkbox"/> 점자정보단말기 <input type="checkbox"/> 화면확대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수어영상자료
청각	<input type="checkbox"/> 영상전화기 <input type="checkbox"/> 골도무선헤드셋	<input type="checkbox"/> 보청기기 <input type="checkbox"/> 화상캠



## 2022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 ■ 문화시설 기본정보

리스트 번호	문화시설 명			
시설유형	① 도서관	② 박물관	③ 미술관	④ 문예회관
	⑤ 공연장	⑥ 생활문화센터	⑦ 기타( )	

## 1. 공통항목

## 1) 정보 검색

항목	내용	작성 내용
가. 정보검색	(1)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의 주요정보는 만8세 정도의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설명)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는 장애인이 문화시설에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는 장애인이 문화시설에 접근 가능한 이동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는 장애인이 시설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는 장애인이 시설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경로에 이동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배치도가 게시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파악할 수 있는 배치도가 게시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는 문화시설 부대시설(음식점, 카페, 기념품점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는 장애인 및 동반자 무료입장권 등의 할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는 장애인전용 관람석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는 장애인전용 관람석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홈페이지(모바일 포함)에는 장애인 이용 안내 등 장애인을 위해 준비된 전반적인 서비스 정보(장애인 인적지원 서비스, 점자/음성/수어서비스 등)가 안내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 시설도착 및 진입

항목	내용	작성 내용
A. 주차시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주차장 없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 공간을 확보하였습니까? 평행주차인 경우 폭 2m이상, 길이 6m이상 공간을 확보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주차장 없음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주차장 없음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는 주출입구와 가깝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주차장 없음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터 주출입구까지 눈이나 비를 맞지 않고 주출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주차장 없음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주차장 없음
	(7) 안전보행통로가 유효폭 1.2m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보행통로] 차량과 간섭을 피하기 위한 보행로	① 예 ② 아니오
	(8) 안전보행통로가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까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안전보행통로 없음
	(9) 안전보행통로는 대지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량간섭 없이 건축물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가 있는 출입구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안전보행통로 없음
B. 교통 및 정차시설	(1) 주출입구까지의 이동경로는 대중교통 이용시 접근이 용이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주출입구까지의 이동가능한 대중교통은 무엇입니까?	① 지하철 ② 버스 ③ 없음
	(3) 주출입구 앞에 잠시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까?(장애인택시, 자가용 등)	① 예 ② 아니오
C. 주출입구 접근로	(1)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를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주출입구까지 연결되는 보행공간은 장애인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접근로 주변의 간판, 가로수 등의 높이는 장애인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효높이(2.1m이상)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주출입구의 접근로는 단차와 같은 장애물의 방해 없이 접근이 용이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주출입구의 접근로에 계단이 있다면 어떠한 단차제거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경사로 ② 리프트 ③ 승강기 ④ 계단 없음

항목	내용	작성 내용
	(6) 주출입구까지 연결되는 보행공간에는 유도형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C. 주출입구 접근로	(7) 주출입구의 접근로에 경사로가 있다면,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이하로 완만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경사로 없음
	(8) 주출입구의 접근로에 경사로가 있다면,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주출입구의 접근로에 경사로가 있다면, 경사로의 휴식참이 높이 0.75m 이내마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높이차이가 0.75m이하일 경우 설치된 것으로 간주함]	① 예 ② 아니오
	(10) 주출입구의 접근로에 경사로가 있다면, 경사로의 바닥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주출입구까지의 이동시 조명은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D. 주출입구	(1) 주출입구에는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미달이문: 가벼운 재질, 바닥면에 턱이나 문지방, 홈 없이 설치] [여달이문: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되도록 설치]	① 미달이문 ② 여달이문 ③ 자동문 ④ 다른 형태의 문 없음
	(2) 주출입문이 여달이문인 경우, 문을 여달아주는 별도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여달이문 없음
	(3) 주출입구 통과 유효폭이 90cm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주출입문 30cm전면에 감지용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주출입구 주변에 이용자가 본인의 위치 및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안내판, 음성안내 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촉지도식 안내판 ② 점자안내판 ③ 음성안내 장치 ④ 없음
E. 실내이동	(1) 이동공간의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고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까?	① 평탄함 ② 평탄하지 않음
	(2) 복도의 유효폭이 1.2m이상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복도에 높이차이가 있을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복도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 있습니까?	① 예(미끄럽지 않음) ② 아니오(대리석 포함)
	(5) 이동 중간에 공간의 변화가 있을 때 다른 공간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바닥의 재질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였습니까?	① 계단 ② 승강기 ③ 경사로 ④ 휠체어리프트 ⑤ 없음
	(7) 계단 시작과 끝 지점 30cm전면에 감지용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항목	내용	작성 내용
E. 실내이동	(8) 계단코는 줄눈널기를 하거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되어 있습니까? [미끄럼방지재: 경질고무류 등]	① 예 ② 아니오
	(9) 계단 측면에 손잡이가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 실내이동	(10) 승강기 내부 우측에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85cm 내외 높이) [조작반 : 기계를 조작하거나 운전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배치한 판]	① 예 ② 아니오 ③ 승강기 없음
	(11)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한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승강기 없음
	(12) 승강기는 휠체어사용자의 이동을 고려하여 문의 개폐속도를 늦출 수 있는 기능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승강기 없음
	(13) 승강기는 사람이나 물체가 문에 끼었을 경우 문이 자동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승강기 없음
	(14) 승강기는 층수나 도어의 개폐, 승강 방향을 알려주는 음성안내 장치가 설치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승강기 없음
	(15) 승강기 내부에는 후방 시야 확보가 가능한 거울이 바닥으로부터 60cm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후면 설치 ② 측면 설치 ③ 미설치
F. 화장실	(1)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화장실 출입구 옆에 감지용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일반화장실과 구분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남, 여 구분하여 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입구에 화장실 내부구조와 이용 가능한 설비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① 촉지도식 안내판 ② 점자안내판 ③ 없음
	(6) 화장실내에 휠체어의 회전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대변기의 양옆의 수평/수직손잡이는 전동휠체어의 진입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대변기 세정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 광감지식, 벽 및 바닥누름, 측면레버, 아니오 : 후면레버]	① 예 ② 아니오
	(9) 화장실내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비상사태 대비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60cm~90cm사이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G. 안내데스크	(1) 안내데스크 및 종합안내소는 주출입구에서 쉽게 인지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안내데스크의 높이를 2단으로 구성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안내데스크의 높이는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① 예 ② 아니오
	(4) 안내데스크 및 종합안내소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① 예

항목	내용	작성 내용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② 아니오
	(5) 안내데스크 및 종합안내소는 점자안내책자, 돋보기, 보청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① 점자안내책자 ② 돋보기 ③ 보청기 ④ 없음
H. 매표소	(1) 매표소에는 장애인 및 동반자에 대한 할인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매표소 하단에는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무릎공간과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무인정보단말기(KIOSK)는 모든 이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없음
I. 휴게시설 및 편의공간	(1) 장시간 서있는 것이 곤란한 보행약자(장애인, 임산부 등)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나 휴게시설이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휴게시설 및 편의공간에는 전동휠체어를 충전시킬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별도의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였습니까?(가로 1.4m, 세로 1.4m)	① 예 ② 아니오
	(6) 다수의 시설물 설치 시 높이를 2가지 이상으로 하여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를 배려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휴게공간의 바닥은 단차없이 평탄하게 조성하여 모든 이용자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J. 경보 및 피난설치	(1) 주요 시설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주출입구 ② 메인로비 ③ 화장실 ④ 휴게시설 및 편의공간 ⑤ 모두 없음
	(2) 주요 시설에는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주출입구 ② 메인로비 ③ 화장실 ④ 휴게시설 및 편의공간 ⑤ 모두 없음

## 2. 문화시설별 특성 항목

### 1) 도서관

항목	내용	작성 내용
A. 자료실	(1) 일반자료실과 구분된 별도의 장애인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안내데스크 전면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높이 70cm 선반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자료검색대는 일반자료실의 동선이 시작되는 출입구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자료검색대, 자동대출반납기는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해 조작 높이를 낮추거나 다층 높이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서가배치는 자신의 위치와 공간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서가에는 시각장애인이 자료를 찾는 것이 용이하게 점자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서가 사이는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통로 유효폭 1.5m 이상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서가 가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거나 안전쿠션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서가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손을 뻗어 책이 닿는 높이까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자료실에는 점자블록과 점자표기를 설치하여 주요 정보 및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자료실 바닥은 단차를 제거하고 돌출물이 있을 경우 점자블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 자료실에는 주출입구에 점자를 병기한 안내사인 또는 음성 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자료실에는 동선이 시작되는 출입구에 점자안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 자료실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독서를 돕는 인적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6) 자료실에는 시각약자 및 시각장애인의 독서를 보조하는 독서보조기기를 배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 자료실에서는 대면 낭독실을 마련하여 대면 낭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8) 자료실에서는 소리가 반사되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장치는 지양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9) 자료실에서는 탁상용 확대기, 화면확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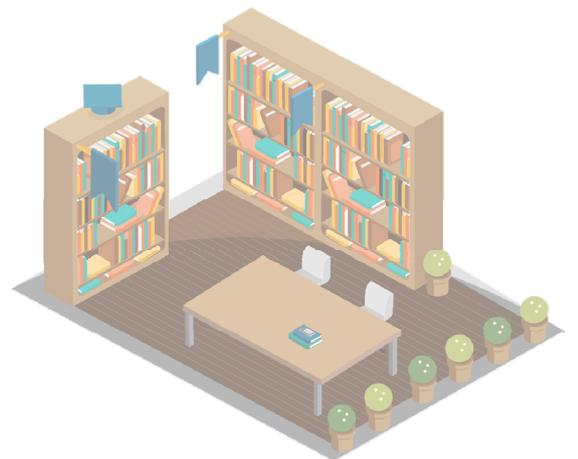
항목	내용	작성 내용
A. 관람	(1) 전시공간 내부는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90cm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전시공간의 바닥면은 휠체어사용자가 단차 없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전시공간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고 요철 없이 평탄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전시공간 내부의 통행 동선과 관람 동선이 중첩되지 않도록 전시물간의 유효폭이 3m이상 확보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전시장과 전시장 사이의 연결 공간에 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전시장의 시작과 끝 지점 30cm전면에 공간의 변화를 알리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전시물은 휠체어사용자가 명확히 볼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전시장에는 휠체어사용자, 어린이 등 눈높이가 낮은 이용자를 위해 일반 전시관람 동선 외 별도의 보행약자 관람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를 적용한 안내서 및 전시장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전시가이드단말기 ② 음성가이드 ③ 점자책자
	(10) 전시 내용을 음성 및 문자로 전달하는 전시가이드 단말기, 음성가이드, 점자책자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① 전시가이드단말기 ② 음성가이드 ③ 점자책자
	(11) 전시유인물은 약시자, 난독증이 있는 관람객 등을 고려하여 큰 활자, 분명한 서체의 사용과 충분한 줄 간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영상으로 만들어진 전시물 안내자료는 문자 자막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 청각장애인 관람객에게 전시내용에 대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전시물을 비추는 조명이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 저시력자 등의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고 주변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B. 체험	(1)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질 수 있는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체험전시 중 시연을 할 경우 크기가 크고 대비가 높은 모형을 사용하여 멀리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개방형 전시물은 휠체어 사용자들을 고려해 최대한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3) 공연장

항목	내용	작성 내용
A. 관람	(1) 장애인전용석(휠체어사용자)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맨뒤 또는 맨앞 ② 중앙 ③ 분산 배치 ④ 마련하지 않음
	(2) 장애인전용석(휠체어사용자)은 앞,뒤 관람객을 고려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장애인전용석 없음
	(3) 장애인전용석은 접근, 대피가 쉽도록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장애인전용석 없음
	(4) 장애인전용석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동반자도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좌석 및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장애인전용석 없음
	(5) 휠체어사용자 전용좌석 부근에 전원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어 공연 중에 휠체어를 충전 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장애인전용석 없음
	(6) 공연을 위해 조명이 어두울 때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좌석 발밑에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자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B. 창작	(1) 주출입구에서 대기실 또는 분장실까지 이동하는 경로는 휠체어사용자가 단차 없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주출입구에서 대기실 또는 분장실까지 이동하는 경로는 휠체어가 이동하기에 충분한 유효폭(1.2m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대기실 또는 분장실에서 무대 옆이나 뒤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휠체어사용자가 단차 없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대기실 또는 분장실에서 무대 옆이나 뒤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휠체어가 이동하기에 충분한 유효폭(1.2m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휠체어사용자가 대기실 또는 분장실에서 무대까지 갈 때 턱이나 계단 없이 접근 가능한 우회로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 대기실 또는 분장실에서 무대까지 가는 경로는 휠체어가 이동하기에 충분한 유효폭(1.2m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대기실 또는 분장실에서 무대까지 가는 경로는 무대장치, 음향장치, 전선 등 장애물이 제거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대기실 또는 분장실은 휠체어사용자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대기실 및 분장실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분장실 또는 대기실 안 ② 분장실 또는 대기실 근처 ③ 분장실 또는 대기실에서 먼거리
	(10) 대기실 및 분장실에서 이용하는 화장실은 휠체어사용자가 단차 없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대기실 및 분장실에서 이용하는 화장실은 휠체어사용자가 들어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공연자의 무대추락 및 벽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무대 가장자리의 색상과 재질을 달리하여 경고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부록2. 용어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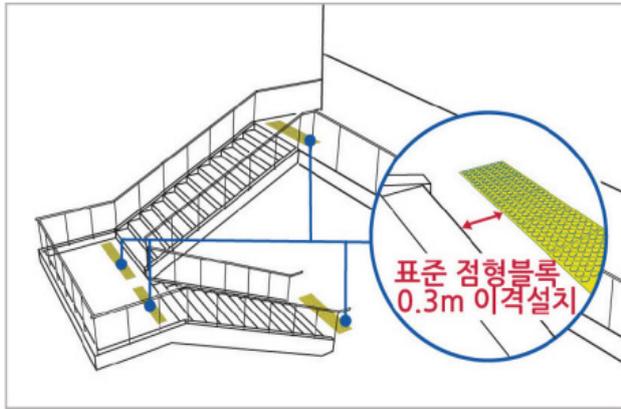
-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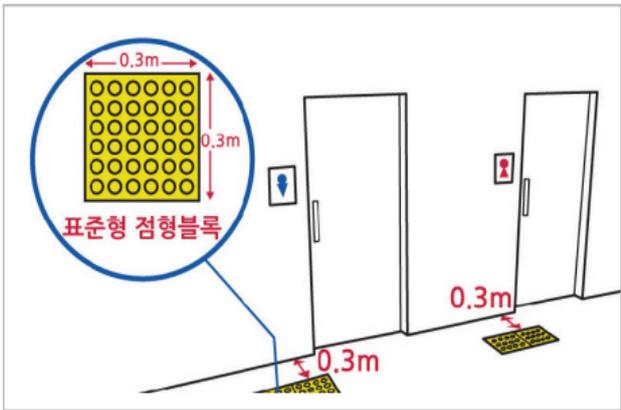


## 용어정의

<p><b>감지용 점형블록</b></p>	<p>시각장애인이 장소를 이동하거나 도착했을 때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함</p>
------------------------	---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점형블록을 규정에 맞게 설치한 사례 사진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서 0.3m 이격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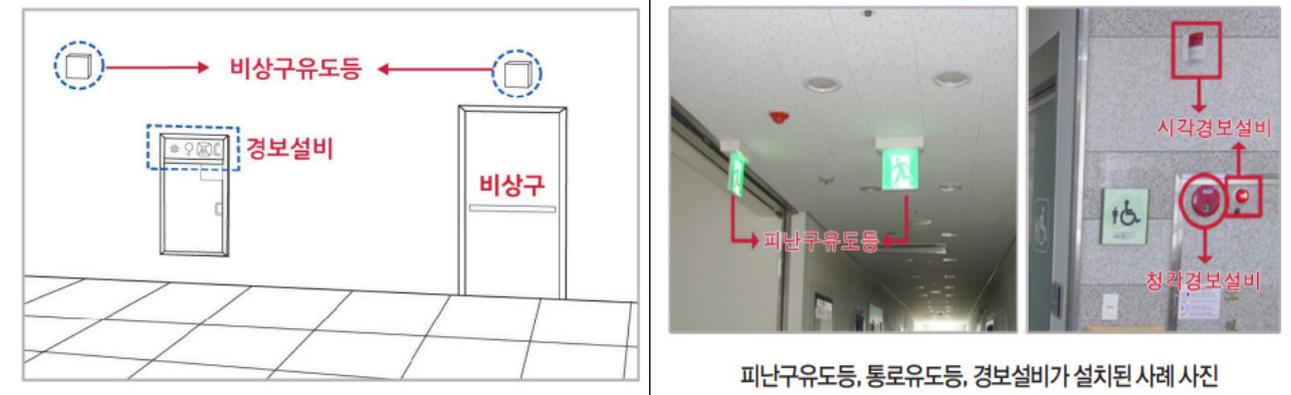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p><b>경고안내</b></p>	<p>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감지하게 하기 위해 색상, 재질 등을 달리하여 설치나 표시를 하여 추락이나 충돌을 예방하는 장치</p>
--------------------	---



\*출처: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경보 및 피난설치</b>	시각적, 청각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비상시 대피를 위한 장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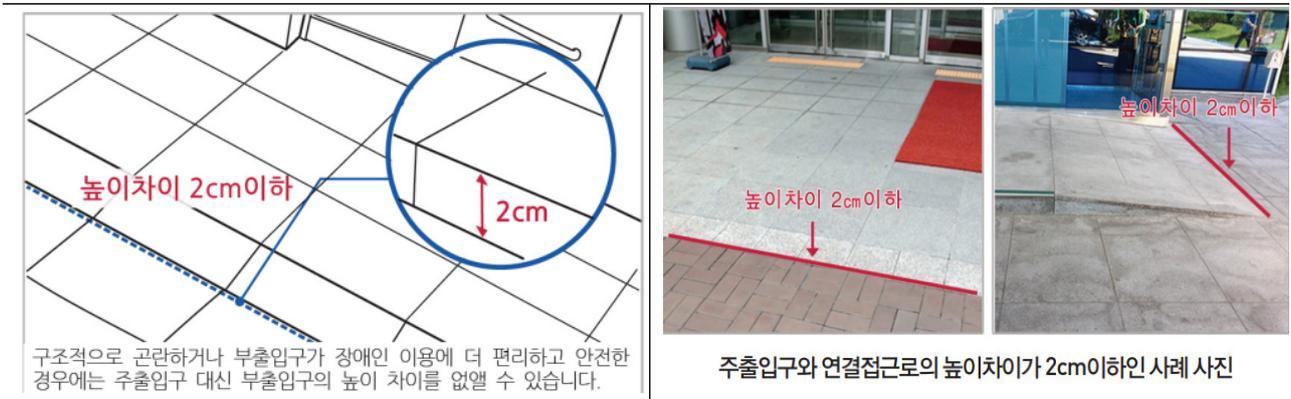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낭독서비스</b>	시각장애를 위해 자료 등을 낭독해주는 서비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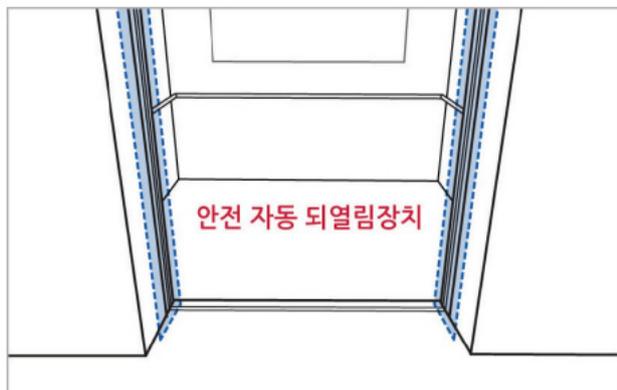
\*출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b>단차제거시설</b>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부출입구가 장애인 이용에 더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차이가 2cm이하인 시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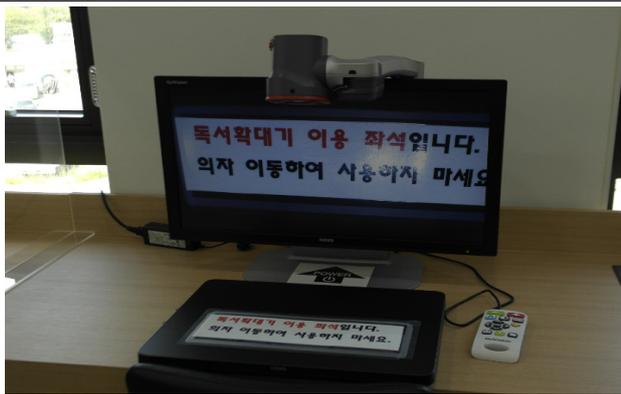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p><b>달힘지연장치</b></p>	<p>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 문에 끼었을 경우 문이 자동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 열림 장치나,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등이 승강기를 이용할 때 문닫힘을 지연해주는 장치</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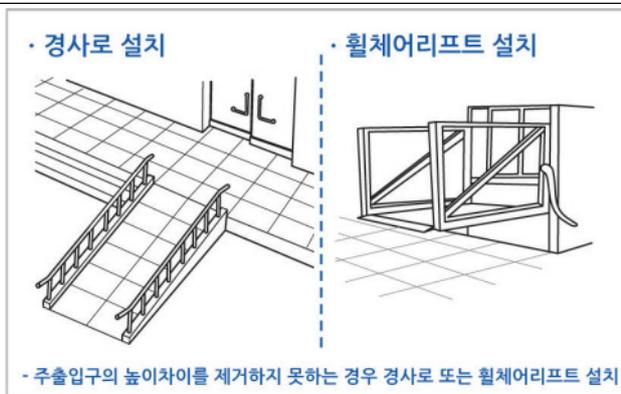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p><b>독서확대기</b></p>	<p>시각장애, 저시력자를 위해 글자를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p>
---------------------	--



\*출처: 광주양산도서관, 관악구청

<p><b>리프트</b></p>	<p>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지 못하거나 계단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설치</p>
-------------------	--



주출입구에 경사로 혹은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사례 사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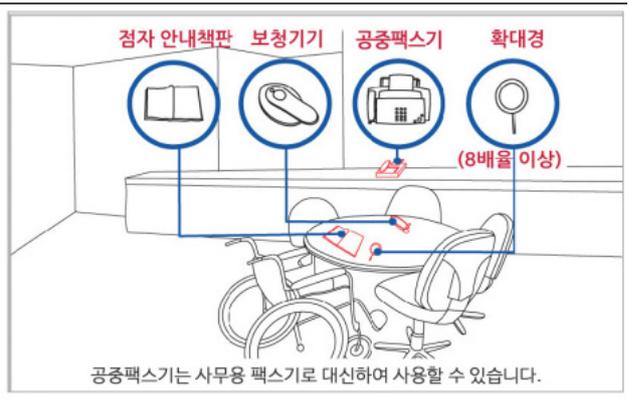
<p><b>바닥 재질(표면)</b></p>	<p>시각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용자들을 위해 계단, 경사로 등 방향을 전환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지점에는 재질과 표면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고 휠체어 사용자의 바퀴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평탄한 재질을 사용해야 함</p>
-------------------------	--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 경사로바닥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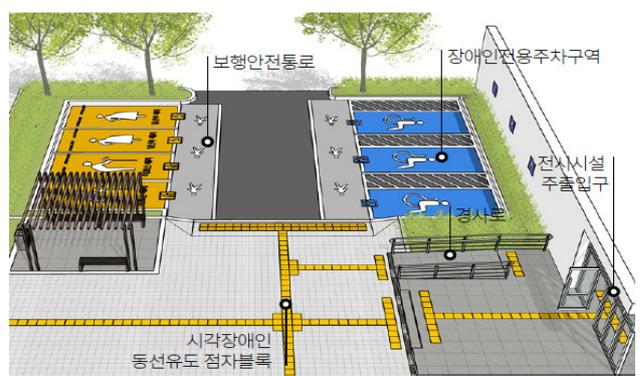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p><b>보청기기(자기루프)</b></p>	<p>바닥에 배선되어 있는 안테나에 마이크로부터 음성신호를 보내면 루프에 전파가 발생하여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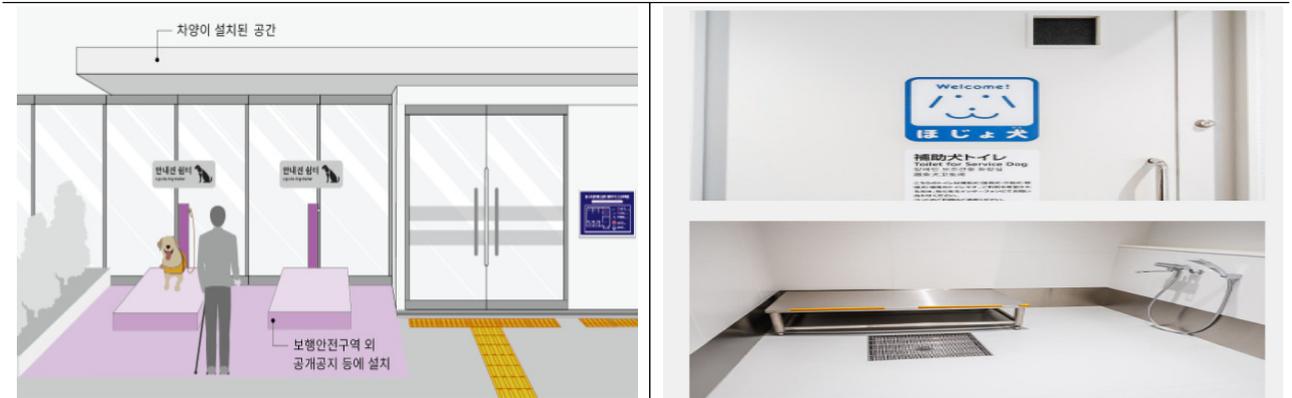
\*출처: 문화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길잡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p><b>보행안전통로</b></p>	<p>이동 시 불편을 줄일 있도록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되어 있는 시야가 확보되고, 계단이나 차도와의 경계석 등이 제공되어 차량과 간섭을 피하기 위한 통로</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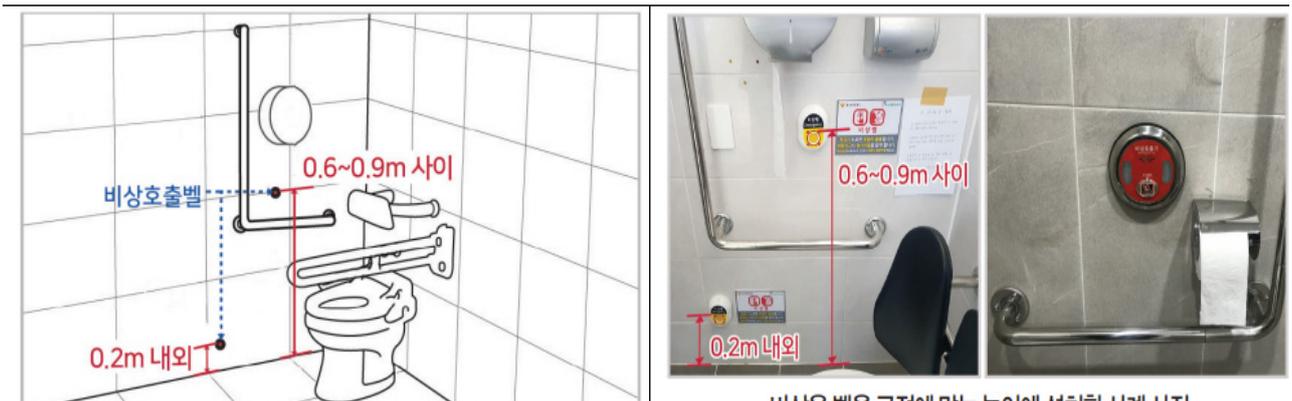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p><b>보조견 대기 공간</b></p>	<p>장애인을 도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보조견이 시설 내에서 대기 할 수 있는 공간</p>
-------------------------	--



\*출처: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후쿠오카 국제공항

<p><b>비상용 벨</b></p>	<p>비상사태 발생 시 도움요청을 위한 비상용 호출 벨로 대변기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 없을 때, 또는 바닥에 넘어졌을 때도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p>
---------------------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p><b>서비스 제공</b></p>	<p>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을 위해 안내사인을 부착하여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함</p>
----------------------	--



\*출처: 국립장애인도서관

<b>세면대 하부 공간</b>	세면대의 하부 공간은 휠체어 사용자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와 규격을 갖춰서 설치
------------------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세정장치</b>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물내림 장치
-------------	---



대변기 세정장치를 광감지식으로 설치한 사례 사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수어통역서비스</b>	청각장애를 위해 제공되는 의사소통 서비스
----------------	------------------------



\*출처: 강원도민일보, 충청일보

수평/수직 손잡이	장애인의 사용을 위해 규격에 맞춰진 지지가 가능한 손잡이로 이용편의를 위해 수평, 수직손잡이는 연결하여 설치
-----------	--



대변기 양옆 0.6m~0.7m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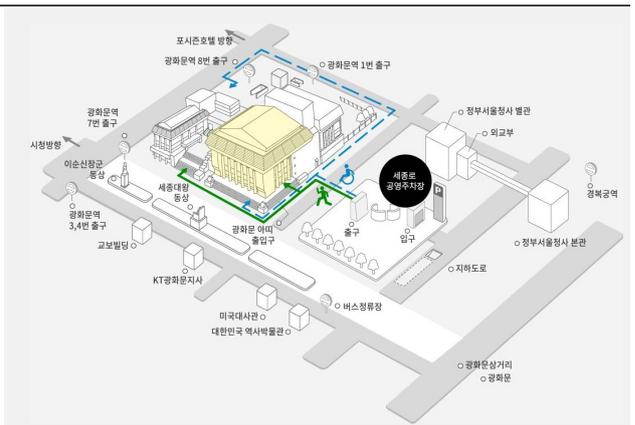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시설안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시설내의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및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
------	--

### 층별안내

**1F**

- 로비
- 미술관미팅
- 서음박스
- 아트존
- 열린마당
- 1전시실
- 카페
- 두레
- ☘ 세소
- ☘ 비남계단
- ☘ 복합실
- ☘ 문화보존실
- ☘ 의무실
- ☘ 열거대어
- ☘ 에스컬레이터
- ☘ 크로싱
- ☘ 수유실



### 장애인해피콜서비스

**장애인용 워터 편의시설**

티켓 할인 혜택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해피콜 서비스

휠체어 리프트 시설

엘리베이터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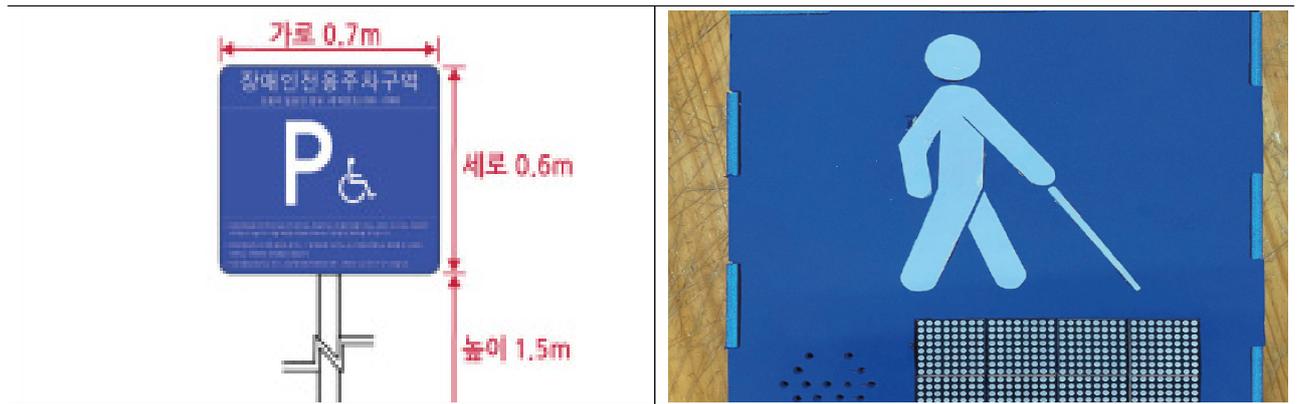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세종문화회관

안내데스크 높이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을 위해 높이가 낮게 설치하고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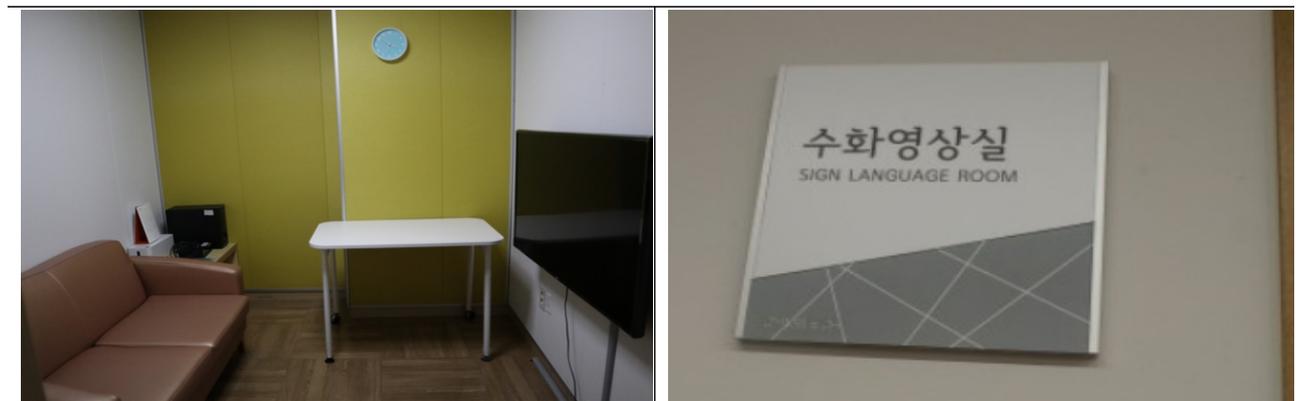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표지판	어떤 내용을 소개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표시를 해놓은 규격과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판(ex: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판)
-------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디어컨텐츠

영상자료실	청각장애를 위한 영상이나 수어통역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
-------	-----------------------------------



\*출처: 국립장애인도서관, 서울도서관



음성, 점멸안내장치	승강기 내에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도착여부를 알 수 있도록 음성과 점멸로 알려주는 장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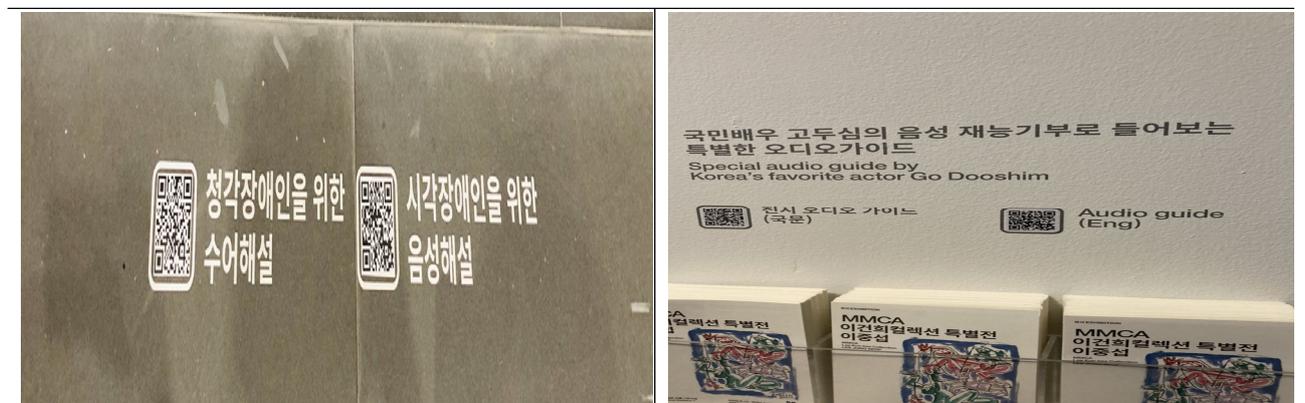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동편리시설	다른 층이나 계단 등 장애물이 있을 때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경사로,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중 하나 이상 설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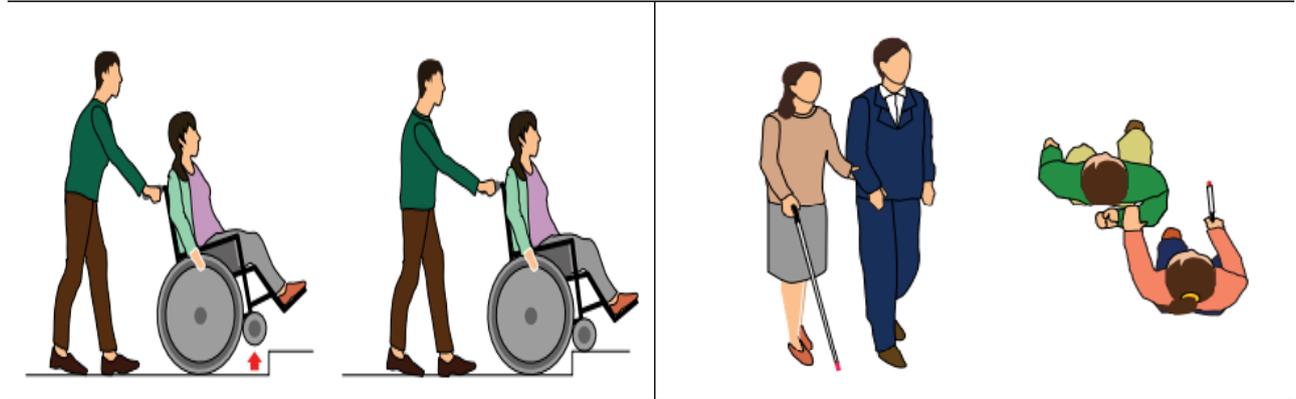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용가이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이 제공됨
-------	--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인적서비스	사람에 의하여 실시되는 서비스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다양한 관람객에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방법(ex: 픽업서비스, 접근성매니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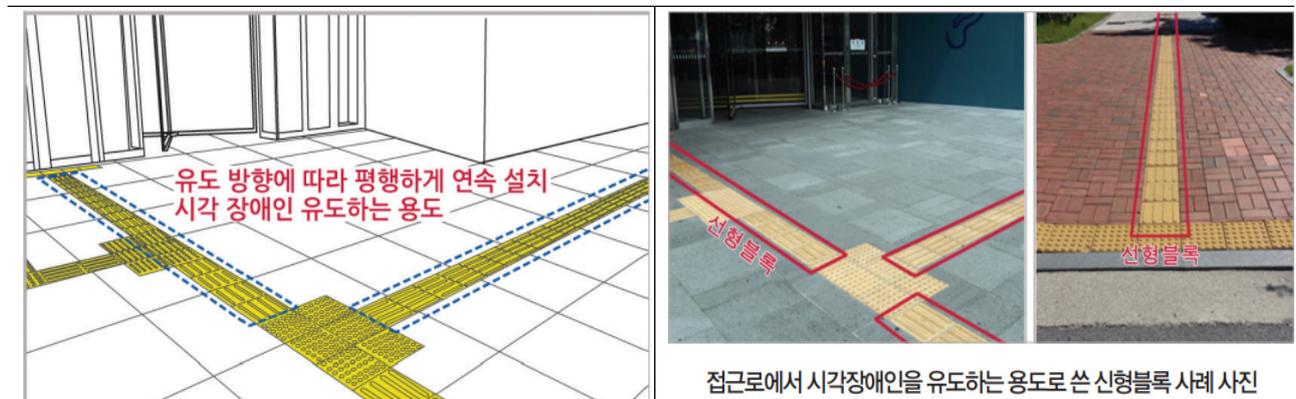
\*출처: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

일반화장실 및 구분	휠체어 사용자, 노인, 유아동반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장소로 일반 남녀 화장실 입구에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입문의 바깥 픽토그램, 문자 등으로 다 목적 화장실임을 알 수 있어야 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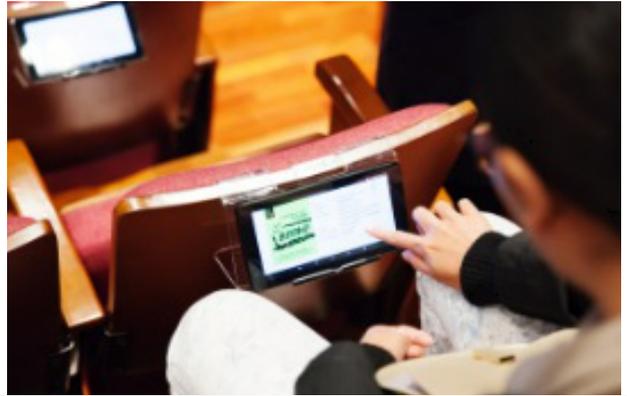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도형 선형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설치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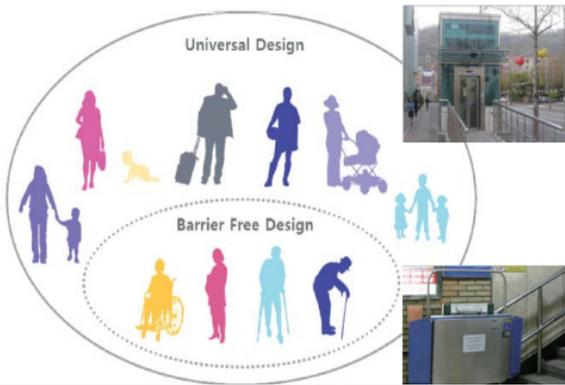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자막서비스</b>	약시자, 노인, 청각장애인을 위해 객석 등받이 부분에 설치되거나 휴대기기를 이용하여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



\*출처: 시장경제

<b>장애물 없는 환경(BF)</b>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	--



\*출처: 문화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길잡이, 문화체육관광부

<b>장애예술</b>	장애를 가진 예술가가 제작하고 시연하는 모든 활동으로, 장애에 대한 정체성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로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행위
-------------	--



\*출처: <https://www.grafolio.com/works/626371>, 크리스천투데이, [www.handspeak.kr](http://www.handspeak.kr), 한겨레

<b>장애인 관람석</b>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
----------------	---



\*출처: 헤럴드경제, 대학로 아트센터

<b>장애인식개선교육</b>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으로, 장애유무를 떠나 포용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선교육
-----------------	---

### 교육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이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16조(2021.6.4)에 따라 확대 적용된 교육대상기관을 명시하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및 교육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명확히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시행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은 교육결과를 좀 더 편리하게 보고하고, 보고된 교육결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교육목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사회 조성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4, 시행규칙 제2조의 2-7 (2021.6.4)

#### 인기 콘텐츠

-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녕, 아!"(장애에 대해 잘 아는 ...)
-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갈라짐"
-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세로고집"
- 2022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홍보영상(모션그래...)
- 유아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상상놀이대"

#### 최신 콘텐츠

- [2022 장애공감주인] 원산한솔 x 행수 클라리넷주... 2023-01-06
- [시리얼 2회] "연실에서 휠체어 타고 목욕하면 무조... 2022-12-14
- [시리얼 1회] "안 보이잖아 사랑스런 아가를 키우고 ... 2022-12-14
- [웹툰] 코코디(디)의 대우형 제1화 2022-11-28
- [웹포스트] 장애인식개선교육 엠티넷 2022-09-29

#### 인기 콘텐츠

#### 최신 콘텐츠

\*출처: 장애인식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b>장애인용 승강기</b>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여유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함
-----------------	---



진입방향 우측 0.85m 내외의 높이에 가로형 조작반을 설치한 사례 사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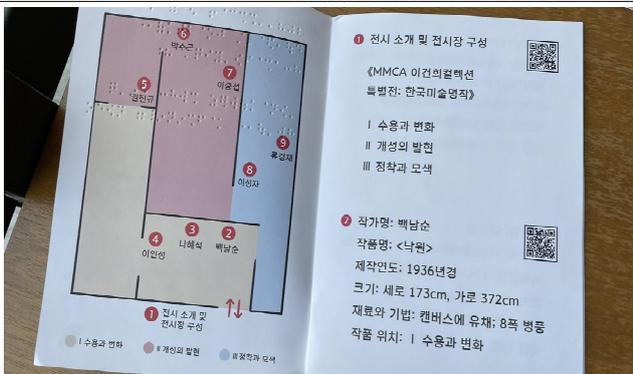
<b>장애인용 안내책자</b>	시설물의 프로그램이나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책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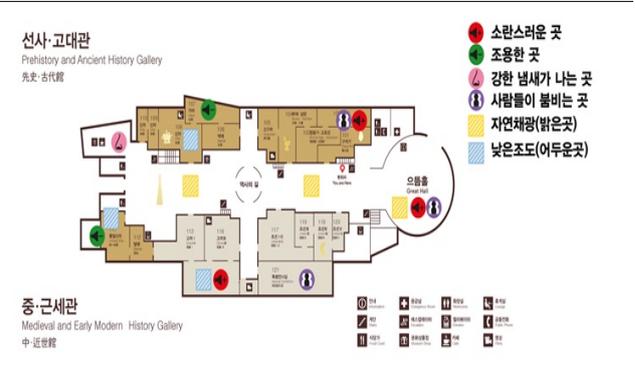
점자책자



시각음성해설, 작품감상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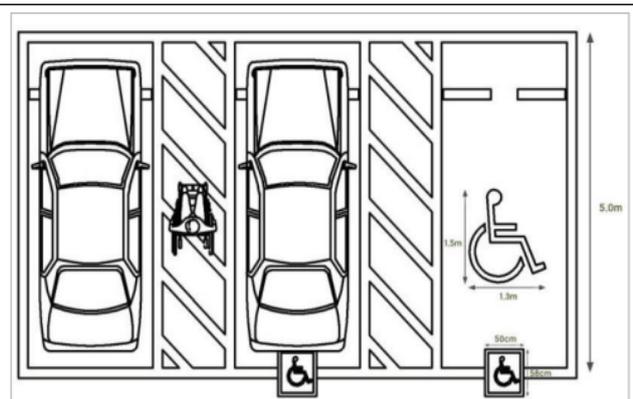
큰글씨 책자



쉬운언어, 기호를 이용한 안내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장애인전용주차구역</b>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 규정 및 규격에 맞는 자가용주차시설
------------------	---



주차바닥면에 규격에 맞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를 한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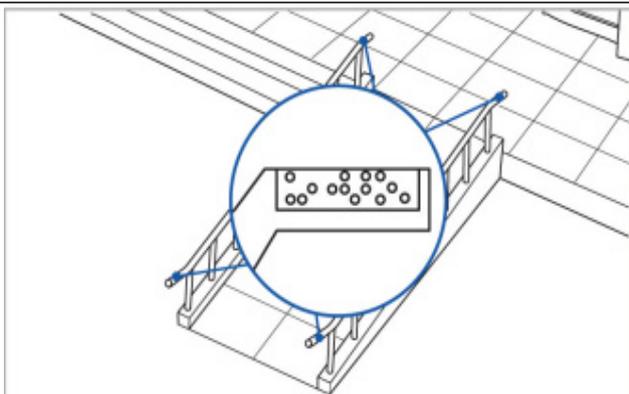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동휠체어 충전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시설내에 배치되어 있는 전동휠체어 플러그
----------	--------------------------------------



\*출처: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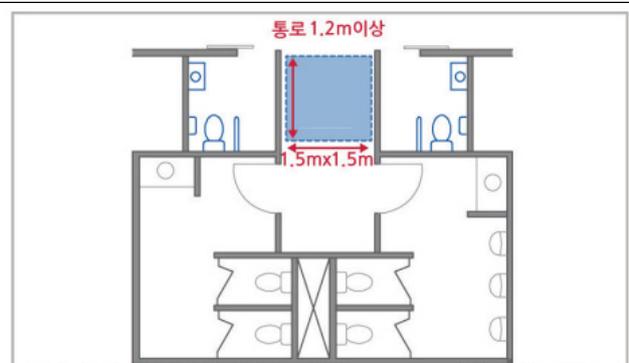
점자표지판	시각장애인이 건축물 내부의 각 실에 대한 정보를 가시적으로 파악하여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부착하는 시설물에 부착하는 점자안내판
-------	---



손잡이 양끝부분과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사례 사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근 경로 적절성	휠체어 사용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통로의 폭이나 높이를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경로가 진입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해야 함
-----------	--



\*휠체어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통로의 경우 1.5mX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2m이상의 통로에 연결하여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한 사례 사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p><b>조작 위치(전시 위치)</b></p>	<p>조작하고자 하는 기계와 전시물에 따라 적절한 높이는 다르지만, 서있는 성인과 휠체어사용자가 공통으로 조작하기 쉽고, 보기 쉬운 범위에 설치</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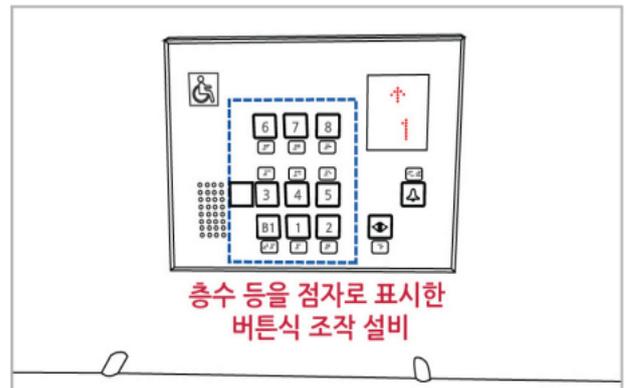


\*출처: 리움미술관

<p><b>조작판</b></p>	<p>기계를 조작하거나 운전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배치한 판</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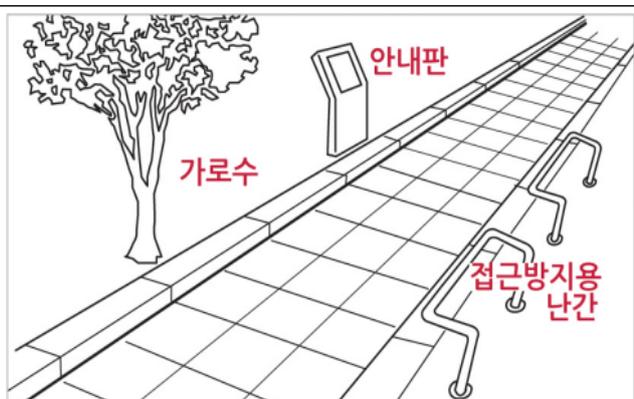


조작 설비가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한 버튼식을 설치한 사례 사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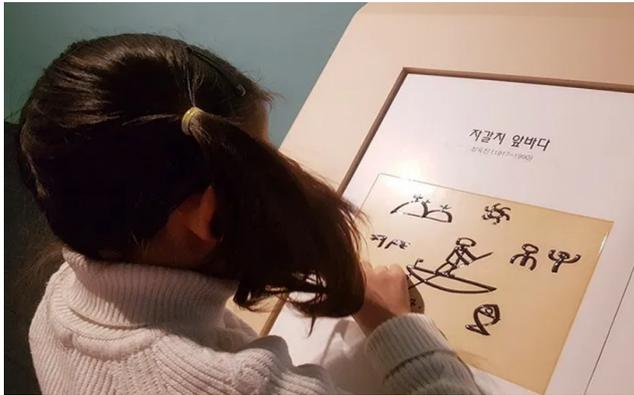
<p><b>주출입구 접근로</b></p>	<p>대상시설이 위치 한 대지의 경계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출입구(문) 전면까지의 진입동선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p>
------------------------	--



접근로 보도 위에 장애인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는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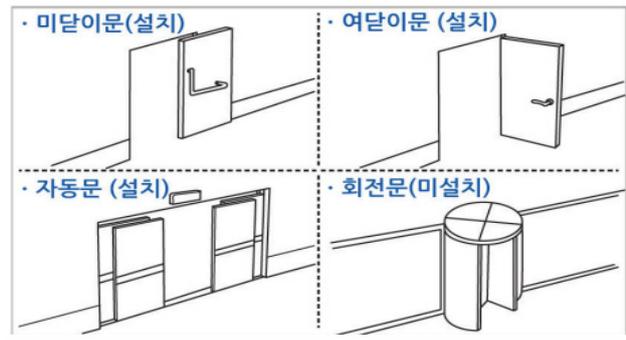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p><b>체험전시(터치투어)</b></p>	<p>작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감각을 확장하기 위해 시설의 전시나 공연 관람전 세트나 소품을 촉각으로 경험하는 것</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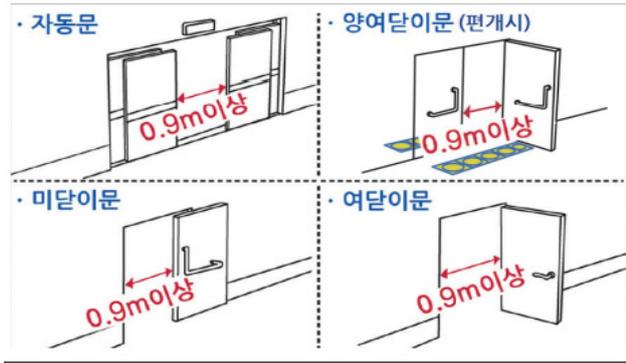


\*출처: ssalad, 서울아트가이드

<p><b>출입문</b></p>	<p>입구 진입을 위한 문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효폭과 형태를 기준에 맞도록 설치</p>
-------------------	--



기준에 맞는 여달이문, 자동문 형태의 출입구 사례 사진



출입구 유효폭이 0.9m이상인 출입구 사례 사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페이지터너**      지체, 뇌병변 장애 등을 위한 문서나 책자를 다음페이지로 넘겨주는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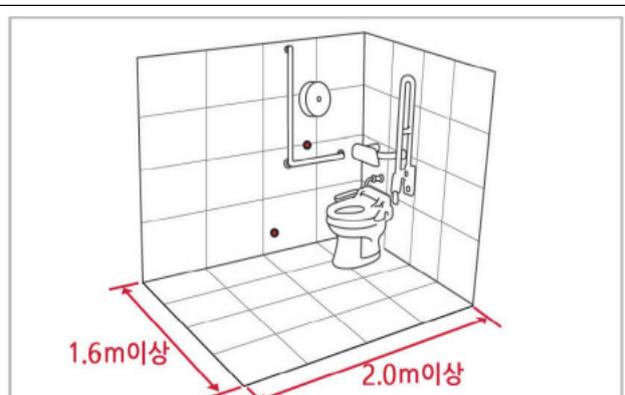
\*출처: 뉴시스, 국립장애인도서관

**휠체어 대여 서비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보행이 불편한 장애를 위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휠체어 여유 공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회전이나 공간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공간확보가 중요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휴게공간 및 쉼터

시설내에 벤치나 휴게시설, 별개의 공간을 설치하여 장시간 활동하기 힘든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들 포함한 관객 모두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임산부 휴게시설 휠체어 및 유모차 접근 가능 공간 확보 사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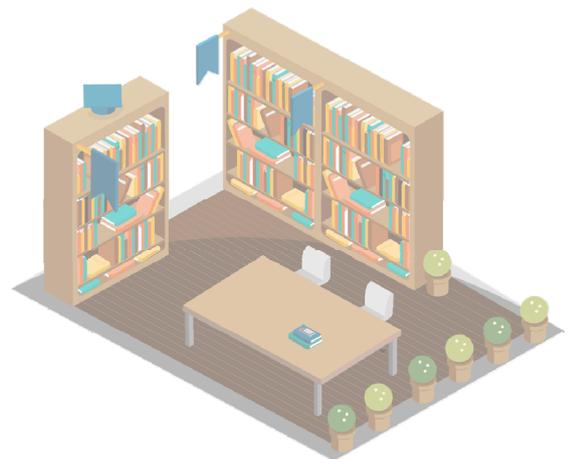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부록2. 용어 정의

- 2022년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



## ■ 배리어프리 인증 관련법

### 〈표1-6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 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표1-6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6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 웹접근성 인증 관련법

### 〈표1-6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0. 12. 10]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 〈표1-6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표1-6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

### 〈표1-67〉 장애인 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박 근 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전문위원)

### 공동연구

조 현 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현 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장 선 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차석전문원)

### 연구참여

양 서 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 2022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기초연구 보고서-

조사주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주관기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조사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쇄일	2023년 1월
발행일	2023년 1월
인쇄인	더크리P&B (주)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